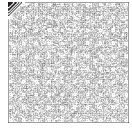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63-1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집
2010. 10. ~ 2017. 12.

2018. 2.



국가인권위원회

일러두기

이 결정례집은 장애차별결정례집이 발행된 이후 2010. 10. 1. 부터 2017. 12. 31. 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중 장애인에 관한 차별에 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사례 그리고 중요 직권조사, 정책권고 자료를 선정·수록하였습니다.

이 결정례집은 장애인에 대한 △ 고용차별 △ 교육차별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차별 △ 사법·행정·참정권 차별 △ 괴롭힘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 순서에 따라 편성됨으로써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례를 찾아보고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책권고도 실음으로써 이와 관련한 유사사례 조사의 용이성을 고양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례집에는 장애인에 대한 △ 고용차별 사례 5건 △ 교육차별 사례 8건 △ 재화·용역제공 차별 사례 28건 △ 사법·행정·참정권 차별 사례 8건 △ 괴롭힘 등에 의한 차별 사례 7건 △ 기타 2건 등 장애인 차별사건 사례를 58건 △ 정책권고 20건으로 전체 78건의 대표사례를 실었습니다.

결정문은 가능한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자 하였으며, 다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성명 등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CONTENTS

I CHAPTER 진정사건 결정례

1. 고용차별

1 2014. 10. 21.자 13-진정-0889400 결정【장애인 고용 차별】…………… 5

중증 또는 경증 장애여부뿐만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 판단하여, ○○○○○○원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담당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향후 채용 공고 시에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 2015. 8. 20.자 15-진정-0627300 결정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제공 거부】…………… 17

7급 세무직 공무원 회계학 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3 2015. 8. 20.자 14-진정-0632700 결정【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26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며, 피진정인이 성과평가 기준표를 수정하였기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하나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4 2015. 9. 18.자 14-진정-0826600 결정【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 차별】 34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등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이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5 2017. 4. 3.자 16-진정-0764100 결정【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39

○○○교육감은 진정인의 임용권자로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서 ○○○교육감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 교육차별

1 2012. 1. 10.자 10-진정-0710700 결정【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등 차별】 53

폭력사건에 대한 학교자체조사에서 상대학생과 학급동료 및 교사들에게는 서면진술서를 받은 반면에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수업참여 제한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교육차별행위라고 판단되나, 피진정인이 대입 수험생들의 학급담임교사로 학생들의 수업분위기 또는 출결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학교장이 피해자와 상대방 학생간의 폭력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는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학교장 및 관할 교육감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2012. 6. 13.자 10-진정-0175100 외 2건 병합 결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67

장애학생은 교육기관 내 각종 시설을 장애인 아닌 학생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기에 강의실 이외에 외국어교육센터 등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교육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3 2014. 11. 17.자 14-진정-03092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76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인 장애학생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한 특수교사도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장애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학교장(피진정인1)에게 그 외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교육부 장관 및 ○○시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것을 권고

4 2014. 12. 16.자 13-진정-0787500 결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차별 등】** 89

특수목적고 특수교육전형자 음악실기평가 심사위원 구성 시 일반전형과 달리 비전공자인 학내 교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예술고등학교장에게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과 ○○○도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5 2015. 1. 19.자 14-진정-0870400 결정 **【교육시설 이용 장애인차별】** 103

청각장애로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 상의 수업진도를 따라 가기 어렵거나 개별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것은 교육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

6 2016. 2. 17.자 15-진정-0860000 결정 **【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109

폭력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호자에 대한 통보를 지연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장애학생이 피해를 회복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7 2017. 6. 12.자 16-진정-0644000 외 8건(병합)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등】 120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가래흡인 조치는 교육에 있어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하루 2~3회 정도의 시행이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피해학생에게 가래흡인 조치 지원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

8 2017. 10. 31.자 17-진정-0627100 결정
【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에 의한 차별】 132

특수학급에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운영비 집행을 제약하고,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광역시교육감에게 ○○○○초등학교장(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차별

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임대 차별

1 2017. 10. 31.자 16-진정-0134300 결정
【4D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147

4D 영화관 이용 경험이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주) 대표이사에게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4D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과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

2 2016. 2. 17.자 15-진정-0890200 결정 【주택 임대시 장애인 차별】 157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임대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1 2010. 10. 20.자 09-진차-1023 결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 163

신용카드 발급 시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규정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 2011. 4. 26.자 10-진정-05322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175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 존재 여부를 확실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제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양회 대표이사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과 감독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2012. 7. 18.자 12-진정-0222500 결정 【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 182

진정인이 청약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녹취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보증보험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금융위원자에게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4 2013. 8. 21.자 13-진정-0388500 결정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91

보험회사가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정신과 처방약 복용 및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라 판단하여,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 보험심사 담당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인수 관련 지침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자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



5 2014. 11. 17.자 14-진정-00130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200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거절은 심사 과정 상의 관행이거나 담당 직원의 자의적 결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보험인수심사기준에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는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로 판단하여, 피진정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다.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1 2011. 11. 28.자 11-진정-03101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 거부】** 206

휠체어 장애인에게 지하법당 출입을 거부함에 있어 계단을 오르내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모든 관람객들이 출입 시 신발을 벗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사 주지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위하여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경사로 등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권고

2 2011. 12. 29.자 11-진정-353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215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이더라도,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당해 수단의 선택에 따른 침해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여,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당초 목적달성을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3 2012. 5. 25.자 11-진정-0555300 결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의 차등 부과】** 222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한 2층 거주세대에게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일률적 적용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파트에

대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 부과를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되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4 2012. 11. 29.자 12-진정-0012500 결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차별】 230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아파트 주출입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심리적 위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점,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점, 전체 9개동 중 3개동을 제외하고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거주하는 등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경사로 설치비용이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5 2013. 1. 29.자 12-진정-0782400 결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239

비장애인에게는 일반주차구역에 장·단기 주차를 허용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단기 주차만을 허용하고 장기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주차서비스를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주)○○○○개발 대표이사에게 초과 징수한 주차비를 환급할 것과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그리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 등을 권고

6 2014. 10. 21.자 13-진정-0951100 결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 253

휠체어 장애인에게 영업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수평보행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마트 ○○점 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



7 2015. 9. 18.자 15-진정-0290800 결정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259

화장실은 남·여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과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건물의 신축과 증축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동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경상북도 ○○시장에게, ○○동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8 2017. 6. 12.자 16-진정-04063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264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주거시설로서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입주자대표 회의는 장애인 입주민의 이동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동식 경사로 설치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사로가 필요한 장애인 입주민에게 자비로 탈·부착이 가능한 경사로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의결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등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경사로를 마련할 것을 권고

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1 2011. 4. 26.자 10-진정-373100 등 13건 (병합) 결정
【시내버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268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 지도·감독 강화 등을 권고

2 2012. 7. 18.자 11-진정-03179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 280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피진정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적합하게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3 2012. 7. 18.자 11-진정-05274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 294

항공기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동등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기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에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 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객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 저비용항공사에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4 2012. 8. 22.자 11-진정-0188500 결정【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 304

시티투어버스는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광역시시장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시티투어버스 이용을 위하여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5 2015. 3. 30.자 14-진정-0547800 결정【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 … 311

○○역 근방의 ○○대로를 휠체어 장애인이 횡단하려 하면 승강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700여 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침해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교통수단, 토지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광역시시장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6 2016. 12. 28.자 15-진정-0919600 결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319

공항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해 보안검색대 통과 및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하고, 관리·운영하는 공항의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7 2017. 6. 12.자 16-진정-0892900 결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339

정차역 안내를 2회의 음성안내로 진행하는데 반해 청각장애인은 모니터에 표시되는 1회의 문자 안내만을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차별행위로 ○○○○공사 사장에게 ○○○○(○○○)를 포함한 ○○를 이용함에 있어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를 추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8 2017. 7. 3.자 결정 15-진정-06676000외 13건 (병합)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345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이며, 교통사업자가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업자의 의무이기에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교통사업자가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예산 지원,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

마.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 1** 2011. 5. 17.자 10-진정-00366900 외 7건 (병합) 결정
【진료기록부 발급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370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 학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발급 시에는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 2** 2012. 5. 1.자 10-진정-0563400 외 92건(병합) 결정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390

방송사들이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게 하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방송사 사장에게 웹 사이트에 대하여 「웹 접근성 지침 2.0」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 3** 2016. 4. 22.자 14- 진정-0887500 외 1건(병합) 결정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412

A기업이 본인확인을 위한 보안문자 확인단계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주)○○○○○○○ 대표에게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

바.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

- 1** 2012. 6. 13.자 11-진정-0074901 결정
【장애인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에 의한 차별】 418

○○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영장 입수를 위한 입수보조시설인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 및 ○○도시공사 사장에게, ○○○○○○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조속히 제공할 것을 권고

- 2** 2012. 6. 13.자 11-진정-03715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제한】 425

공공도서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층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서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도서관 내 자료실, 열람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 3** 2013. 4. 3.자 12-진정-0636400 결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434

사립대학교의 박물관도 2012. 4. 11.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점자로 된 안내자료 제작비나 바코드변환프로그램 구입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기에 점자 등이 있는 안내책자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인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차별

- 1** 2012. 3. 23.자 10-진정-0621700 결정
【피해보상금 산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443
-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애를 종합평가함에 있어 기왕증에 대하여 전문의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진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만으로 노동 상실률을 산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게 진정인의 기왕증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액을 재산정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장애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 2012. 6. 28.자 12-진정-0440800 결정
【중증장애인 구급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456
-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하고, 「헌법」 제1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교도소장에게 피해자가 수용 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여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
- 3**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462
- 수사기관은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반전화 발신번호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진정한 스스로 답변·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련 내용 문의 시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인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4 2012. 8. 22.자 10-진정-0621700 결정
【제빵 실기시험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470

청각장애를 가진 수험자의 경우 수화통역이 아닐 경우 다른 수험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필기시험에 있어 청각장애인 수험자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라 판단하여, ○○○○○○이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빵 실기시험에 수화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5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
【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478

정신적 장애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이나 진술권 등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정신적 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형사·사법절차에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정당한 편의 제공인데, 조사 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행위는 장애인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2014. 4. 22.자 결정 14-진정-0160100 외 7건 (병합) 결정
【6·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 484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진정이 제기되어 진정요지별로 각하 또는 기각 결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므로 현행 기표대의 규격을 조정하고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시각장애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어 정확히 기표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는 특수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천공식 기표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7 2014. 11. 24.자 13-진정-0822000 외6건(병합) 결정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은 차별】 496

한쪽 눈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시야각이 좁고 거리감각에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 운전 시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2종 운전면허 경우보다 더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나,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보조장치가 개발되고 있고 단안 시각장애인의 운전능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상반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안 시각장애인의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시력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정책개선을 권고

8 2017. 4. 3.자 16-진정-1022500 외 24건(병합) 결정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지요원 소집순위 차별】 513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 보충역의 자원활동도가 낮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체등급 판정을 할 때 병역자원의 수급상황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를 가진 자의 활동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병역자원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일단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자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에게 후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장에게 사회복지요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5. 괴롭힘 등

- 1** 2011. 10. 18.자 11-진정-01701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527
- 가족 및 가정 내에서 장애의 특성을 이용하여 장애인 동생의 금전을 착취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 횡령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을 고발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 사용한 6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과 피해자의 통장·도장·신용카드·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함.
- 2** 2013. 5. 6.자 12-직권-0001700· 외 1건 (병합) 결정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536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 및 비하적 언어 사용과 성희롱, 폭행, 금품수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지도자의 경우 장애인선에 대한 구타 및 폭언 등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대한○○○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들을 지도·지원하는 상위기관으로서의 책임이 무겁다 판단하여, 대한○○○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시 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 배치 등을 권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 3** 2013. 9. 24.자 13-진정-0177400 결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562
- 피해자, 진정인, 다수의 참고인의 진술과 사진 및 동영상 등에 의할 때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폭언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여, ☆☆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 특수교사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 학교장이 내부고발이 있었음에도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그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운 바, 해당 학교장을 주의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4 2015. 6. 30.자 13-진정-0841400 결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575

피해자들을 면전에 두고 모욕감을 준 것은 아니나 피해자들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참고인들에게 하였던 것으로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할 특수교육실무원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일은 아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교직원에게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 ○○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5 2017. 3. 6.자 16-진정-1038200 결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 착취 등】 581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 임금으로 인정할 만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적 착취를 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 ○○군수에게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

6 2017. 6. 12.자 17-진정-01691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592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플라스틱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발을 서게 한 행위는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기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 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게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장에게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



7 2017. 8. 11.자 17-진정-0270400 결정【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607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장애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장애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장애인차별행위로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6. 기타 사건

1 2013. 6. 18.자 12-진정-0519200 결정
【국어능력인증시험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617

국어능력인증시험 주관처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뇌병변 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며, (재)○○○○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 2013. 6. 18.자 13-진정-0073700 결정
【법무사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630

국가기관으로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시험을 주관하면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다만 본 진정사건은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한 것은 아니기에 해당 사건은 각하함.

II
CHAPTER

정책권고

1. 고용

1 2013. 11. 12.자 결정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645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법령에서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은 근로지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근로지원인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 등 권고

2. 교육

1 2015. 6. 30.자 결정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6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에 의해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아예 취학하지 못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의무교육을 권리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시설거주 장애인은 학령기에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 유예나 면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방임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부의 지침은 방임의 피해자인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의무교육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교육부장관에게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교육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



2 2015. 7. 2.자 결정【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667

2014년에 실시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과 사생활침해 그리고 교육차별실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대 등을 권고

3 2017. 3. 23.자 결정【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680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와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 설정과 교육환경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유아특수교사 충원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기관 설치 확대,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국무총리에게 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권고

3. 재화 및 용역 제공 관련

1 2011. 12. 23.자 결정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권고】…………… 693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의 사설물 및 금융자동화 기기, 인터넷 뱅킹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해당 은행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의 정책적 개선책을 권고

2 2012. 12. 11.자 결정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 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707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보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

3 2016. 2. 17.자 결정【「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7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이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라는 점에서, 통행과 시설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보행상 장애'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자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 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

4 2016. 6. 13.자 결정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73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내릴 수 있도록 탑승교와 항공기 연결부분의 높낮이 차가 없도록 할 것, 한국공항공사사장에게 공항건물 구조상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원주, 군산, 사천 공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것, 7개 국적항공사 사장에게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교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항공기 탑승과 하기·공항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편의를 항공사에 사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

5 2016. 8. 22.자 결정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768

유선 및 도선의 규모, 승선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에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각각의 정책적 개선책을 권고

6 2014. 10. 21.자 결정【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798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도모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



7 2016. 11. 24.자 결정【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809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 포함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및 홍보,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및 안전교육 실시, 경보·피난설비 보급 및 연구·개발할 것을 권고

4. 사법·행정 및 참정권

1 2010. 10. 21.자 결정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821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2 2013. 5. 16.자 결정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827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권고

【1】 대법원장에게,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의사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고, 관련인들의 의견을 청취절차를 마련하여 본인의 생활상 수요가 고려된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후견사무 감독을 위해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

【2】 법무부장관에게,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판단기준과 피성년후견인의 심판절차수행능력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결정조항의 폐지 및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제도를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신상 구속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할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

3 2014. 1. 13.자 결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 843

대법원에 계속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함.

5. 복지

1 2016. 10. 6.자 결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857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기본급여량 등의 점진적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 편차 완화,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향상을 통한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

2 2017. 3. 30.자 결정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864

난민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3 2017. 7. 3.자 결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87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행동문제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개별 시설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개별 시설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해당 장애인에게 현 상황을 감내하도록 방관할 수는 없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재의 원칙, 중재의 방법과 과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이용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추가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설유형 다양화,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고

6. 인식 및 기타

1 2014. 8. 20.자 결정【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881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및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게, 장애인 보도 준칙을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방송 및 신문기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방송과 신문에서 장애인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질 것에 대해 의견을 표명

2 2015.12.29.자 결정【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890

○○시 ○○○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하여 '○○중학교내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되며, ○○시장과 ○○○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3 2012. 10. 22.자 결정【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895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장애인의 인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기초로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CHAPTER

I

진정사건 결정례

1. 고용차별

1

2014. 10. 21.자 13-진정-0889400 결정
【장애인 고용 차별】

【결정사항】

- 【1】 ○○○○○○○원장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 【2】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직무적합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여부만으로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 【2】 이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제1항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장애인으로 2013년 11월 피진정인이 공고한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금융행정직”에 지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는 채용공고와 달리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년 하반기 정기공채-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채용인원 : 2명) 분야에 지원했으며,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지원자가 총 129명으로 채용공고문상 “자격제한 없음”에 따라 정신장애를 가진 지원자도 응시를 한 상태였고, 지원자 총 129명 중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에 합격한 10명이 면접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최종 2명이 합격하였다.

2)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를 직접 외부출장을 통하여 의료기관 및 고객 면담을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업무로써 중증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정신장애 등)를 가진 자는 안타깝게도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지원자들까지 포함하여 120명 이상을 참여시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다수의 장애인에게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역효과로 재정적 문제까지 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에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비장애인 분야와 동일하게 5배수를 면접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5가지 평가요소[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가점은 이공계 5점, 지역인재 5점, 고졸자 5점, 여성 5점,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점을 부여하였다.

4) 합격기준은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총점의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으로 정해졌으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서류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 평가요소 중 ‘직무적합성’ 부분에 장애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지 여부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5) 진정인의 서류심사 총 평점은 57.2점으로 합격기준 60점에 미달하여 부득이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원 채용사이트에 불합격처리되었음을 통지하게 되었다.

6)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단에 채용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진행해왔으나, 2013년부터는 장애인 채용을 폭넓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천을 받는 특별채용이 아닌 공개경쟁채용으로 온라인 입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유능한 장애인력 지원이 많아 이러한 진정이 발생했으나 향후 장애인력 중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다. 참고인

1) 심사위원

가) 피진정인에 의해 지명된 ○○○○○○○원 내부 직원 5명(심사위원장 1명,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2013. 11. 19. 오후 ○○○○○○○원 10층 회의실에 함께 모여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채용분야(보험상품 개발, ○○○금융고객상담, ○○○금융상담, ○○○센터 업무지원)에 지원한 총 370명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다.

나) 서류심사는 지원자들이 인터넷으로 제출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스캔서류)를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컴퓨터로 검토하면서, 서류심사 5개 평가항목[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에 대해 각 지원자별 평가점수를 전산프로그램에 개별적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 업무는 보험심사 및 보험조사 업무로 구성되며, 보험심사 업무는 가입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서류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현장 방문, 보험 가입자의 기왕증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병원 방문, 진료기록 확인, 피보험자, 경찰서, 소방서 등 방문, 사실관계 조사 등 업무의 약 90%가 외근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가 있으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류심사 시 지원자들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지원자들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등 장애상태에 가장 중점을 두어 직무적합성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직무적합성과 연계하여 사고력, 표현력, 적극성 등의 항목도 평가하였다.

라) 심사위원들은 평가점수 배점에 관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지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서류전형의 간사를 담당한 인력개발팀장으로부터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미만이면 서류심사에 불합격된다는 얘기를 서류심사 전에 전해 듣고, 서류심사 시 합격자 10명(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들의 평점이 60점 미만으로 산출되도록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배점하였다.

2) ○○○○팀장

가) 보험심사 업무는 앉아서 하는 서류심사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장애가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종종 장애가 있으면 업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 지원자 중 사실상 경증장애인만을 채용하게 되었다.

나) 2012년까지는 보험지급심사팀에서 보험심사 및 조사 업무를 병행하였으나, 2013. 1. 1.부터 보험조사실이 신설되어 보험조사 업무(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는 보험조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보험심사 업무(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는 보험심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다) 내근을 주로 하는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통상 순환보직에 의거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직 변경도 가능하다.

3) ○○○(○○○○조사팀)

가) 보험심사 업무는 보험금 지급 약관을 기초로 보험금 지급청구 건에 대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으나, 보험조사 업무는 보험업법 및 보험약관 등 위배조사, 보험사기 조사, 병원, 경찰서, 소방서, 검찰청 등 방문, 교통사고 현장 방문 등 외근 업무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기동력이 있어야 하고, 많이 걸어야 하며,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외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증장애가 있으면 수행하기 힘든 업무라고 생각된다.

나) 보험조사 업무 담당자가 통상 고객을 만날 때 복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방문해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장애인이 조사를 한다면 장애가 있는데 누구를 조사하러 오느냐며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을 것 같으며, 이런 사유로 장애인 조사업무 담당자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의 진술,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3년 11월 「○○○○○○○○원 신규채용 모집요강」이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에 「채용분야 :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직급 : 금융행정직, 인원 : 2명, 자격기준 : 제한 없음」이라는 내용과, 서류심사에서 사회 형평적 채용직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보험심사)에는 진정인을 포함한 총 129명의 장애인[1급 : 2명, 2급 : 18명, 3급 : 19명, 4급 : 11명, 5급 : 19명, 6급 : 26명, 기타(온라인 입사지원서 상 장애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4명]이 지원하여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0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이 중 2명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였으나 진정인을 포함한 나머지 119명은 서류심사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여 모두 탈락하였다.

다. 서류심사 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5개 평가요소에 대해 직무적합성 30점, 사고력 20점, 표현력 20점, 적극성 20점, 가점 10점으로 합산되며,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가점 10점이 부여되는 바,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지원자 총 129명 모두에게 서류심사 가점 항목에서 10점이 부여되었다. 진정인은 서류심사에서 평점 57.2점을 받았으며, 서류심사 합격자 10명의 평점은 최고 87.6점에서 최저 84.2점까지 분포하고 있고, 불합격자 119명의 평점은 최고 58.2점에서 최저 51.6까지 분포하고 있다.

라.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심사에 응시한 지원자 10명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8명, 시각장애 2명으로 분류되며, 장애등급은 지체 5급 3명, 지체 6급 4명, 상이 7급 1명, 시각 5급 1명, 시각 6급 1명이고, 이중 최종 합격자는 총 2명으로

지체장애 6급 1명, 시각장애 6급 1명이 선발되었다.

마. 심사위원들은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에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서류심사 합격점 60점 미만이 되도록 점수를 배점한 결과, 장애등급이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으로 구성되고,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사. ○○○○○○○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으로 19××년 설립되어 ○○○보험 심사 및 조사 업무를 비롯하여 ○○○금융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직원대상 교육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제1항 가호는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사호에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

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심사에서 진정인을 탈락시켰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진정인의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를 담당한 서류심사 위원들이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와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인정하고 있는 점,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서류심사 내용에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되어 있어 장애인 지원자라면 누구나 면접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주된 사유는 진정인의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중증장애를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 탈락시킨 점이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가 보험심사 업무수행의 성질상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2013년 11월 공고한 「○○○○○○○○원 신규채용 모집요강」이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사회 형평적 채용직,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에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보험조사 업무도 포함된다면, 채용 공고 문에 “보험심사·조사(장애인)”라고 공고됐어야 하고, 또한 공고문의 자격기준에도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활동 장애가 있는 경우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고되어야 하나, 채용 공고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채용 공고문 상 “○○○ 보험심사·조사”라는 또 다른 채용분야가 함께 공고되었음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이 공고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에 보험조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기관이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통상 순환보직 제도에 의거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기초해 볼 때, 보험심사 업무는 활동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보험조사를 하는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조사담당 직원들은 연평균 200일 정도 관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병원, 경찰서, 소방서,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고, 피보험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많은 외부 활동과 기동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성 측면에서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하지 장애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경우 또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험심사 업무는 ① 사고보험금 청구 건 발생 시 건별 분석을 통하여 의학적·법률적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며, ②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을 구별하여 약관상 지급

범위 결정 및 전산 프로그램 입력, 부지급 처리가 될 경우 통지문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③ 제출된 서류상으로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나 보험범죄가 의심될 경우 보험조사팀에 조사를 의뢰하며, ④ 보험심사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시 민원처리를 한다거나 법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의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의 업무라는 점에서 보험조사 업무와 달리 활동 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한 보험심사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동 장애가 있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장애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6)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서, 직무적합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여부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이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5. 8. 20.자 15-진정-0627300 결정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제공 거부】

【결정사항】

- 【1】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 【2】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

【결정요지】

7급 세무직 공무원의 회계학 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 응시자와의 형평성과 대리응시 의혹 등으로 피진정인이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여 시험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제11조

【진 정 인】 ○○○○○○○○○○연대

【피 해 자】 윤○○

【피진정인】 인사혁신처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2.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손으로 필기를 하기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으로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에서 회계학 과목의 메모대필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1조와 제25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공무원 채용의 필기시험 목적은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활용(계산)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문제풀이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리응시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회계학의 계산과정을 대리하는 시험감독관을 배치할 경우, 해당 시험감독관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등의 결과에 따라 시험성적이 응시자의 실제 실력에 비해 높거나 낮게 평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해 부정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행정쟁송 제기 가능성도 높아진다.

피해자가 응시한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은 단 1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어서 만약 특정 장애인 응시자에게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를 제공할 경우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계획』,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검증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손을 사용하여 필기를 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는 18명을 선발하는 2015년 7급 세무직 공무원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였고, 피진정인은 2015. 6. 23. 피해자에게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휠체어 전용책상,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의 7개 과목으로 구성된 7급 세무직의 필기시험 중에서 회계학은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피해자는 회계학 시험에서의 메모대필이 가능한지를 피진정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2015. 7. 8. OMR 답안지 표기를 위한 대필만 가능하고 회계학 시험에서의 메모대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회신결과에 따라 2015. 8. 29. 시행되는 2015년도 세무직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필기가 가능한 다른 응시자들은 회계학 과목에서 출제되는 계산문제를 시험지 여백에 메모하면서 풀 수 있으나, 피해자는 메모 없이 암산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5. 판단

가. 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 기본권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란 형식적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쟁점인 피진정인이 7급 세무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피해자를 차별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회계학 시험에서의 메모대필 거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7급 세무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에서 회계학의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한다.

그런데, 7급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필기시험의 목적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활용(계산)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응시자의 암산능력이나 필기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필기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필기 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시험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이 사건 시험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메모대필이란, 피해자가 불러주는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에 불과하고, 메모를 대필하는 자의 지적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응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회계학

의 계산문제를 푸는 것은 본인이 직접 시험지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 풀이하는 통상의 방법에 비추어 훨씬 느리고,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메모를 대필하는 자가 피해자의 문제풀이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면, 피진정인이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 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메모대필자가 피해자의 문제풀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은 이 사건의 메모대필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서, 제3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주저해서도 아니된다.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의 각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차별 외에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정의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간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간의 경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급 세무직 공무원의 회계학 시험에서 피진정인이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여 시험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3

2015. 8. 20.자 14-진정-0632700 결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결정사항】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 시간의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3】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가)(1)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다리 관절염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진정인은 2014년도 교원 성과평가 기준의 학교 공헌도 항목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의 합산일이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복무사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교사가 지각, 조퇴, 병가, 연가를 많이 사용하면 학생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지각, 조퇴, 병가, 연가를 합산하여 연간 5일 이하를 사용한 성실한 교사를 인정해 주고, 근무태만으로 인한 지각, 조퇴, 병가, 연가의 남용을 예방 하고자 지각, 조퇴, 병가, 연가의 사용일수를 성과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비장애인 교사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장애인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체(하지 기능) 2급 장애인으로 201×. ×. ×. ~ 201×. ×. ×.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특수학급 교사로 근무했으며, 201×. ×.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출되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2014년도 교사 성과평가 대상 기간은 2013. 3. 1. ~ 2014. 2. 28.까지의 1년이고, 「2014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는 아래와 같은데, 학교공헌도 분야의 ‘지각, 조퇴, 병가, 연가’ 항목은 평가기간 중 지각, 조퇴, 병가, 연가를 합산하여 5일 이하일 경우에는 3점, 5일을 초과하면 0점으로 평가한다.

「2014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

분 야	세 부 항 목
수업시수 및 생활지도 (30점)	수업 시간 수 (27점)
	수업 및 생활지도 (3점)
담당업무 (40점)	담임 여부 (10점)
	근무 일수 (20점)
	업무 곤란도 및 충실 이행도 (10점)
전문성 개발 (20점)	연수 이수 시간 (17점)
	연구대회 입상실적 컨설팅 장학 실적포상 (3점)
학교 공헌도 (10점)	외부대회 학생지도 입상 지도교사 실적(2점)
	외부공모사업 운영 실적 (3점)
	초과근무 시간 수 (2점)
	지각, 조퇴, 병가, 연가 (3점)

다. 진정인은 평가기간 중 병가 5일, 연가 1일, 병조퇴 7시간, 조퇴 50분을 사용하여 합산 6일 7시간 50분으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항목에서 0점을 받았고, 다른 평가대상자 8명은 5일 이하로 합산되어 3점을 받았다.

라. 위와 같은 학교 공헌도 점수를 포함한 평가대상자 9명의 최종 평가점수는 1위 94점, 2위 93점, 3위 92점, 4위 90점, 5위 89점, 6위 84점, 7위 83점, 8위 82점, 9위 81점이었고, 이 중 평가점수 1~3위에 해당하는 3명은 S등급(성과상여금 3,131,610원), 4~6위 3명은 A등급(성과상여금 2,616,120원), 7~9위 3명은 B등급(성과상여금 2,229,5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진정인은 평가점수 90점으로 평가대상자 총 9명 중 4위를 차지하여 평가등급 A등급을 받았다.

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작성된 「2015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평가대상기간 : 2014. 3. 1. ~ 2015. 2. 28.)에 의하면 학교 공헌도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었던 ‘초과근무 시간 수 (2점)’와 ‘지각, 조퇴, 병가, 연가 (3점)’ 항목은 삭제되었다.

5. 판단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헌재 1991. 6. 3. 89헌마204),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연가”를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정의하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가”란 위 규정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므로, 만약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이나 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에 불이익을 주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학교공헌도 항목을 포함시키고, ‘지각, 조퇴, 병가, 연가’의 합산일이 5일 이하인 자는 3점, 5일을

초과하는 자는 0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러한 평가기준은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보건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여성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휴가를 덜 사용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휴가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인정사실과 같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은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앞서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교원의 휴가 사용으로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우려되었다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소속 교원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그 시기를 조정해 보거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등으로 교원의 휴식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정휴가일수에 훨씬 못미치는 5일의 휴가일수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교원의 휴식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 이○○ 교장이 201×. ×. ×. 퇴직을 하였고, 「2015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항목이 삭제되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2. 생략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 6. 생략

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의 종류

-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3) ~ (4) 생략

나. 휴가의 실시원칙

- (1)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 (2)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2015. 9. 18.자 14-진정-0826600 결정
【채용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 차별】

【결정사항】

○○○○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모든 직위에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채용 시 청각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진 정 인】 성○○

【피진정인】 ○○○○관장

【주 문】

○○○○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2급 장애인으로 2014. 8. 21. ○○도서관의 ○○직 ○급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중증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준점수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하는 간접차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도서관은 국내·외 지식정보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국민에게 제공·보존하고 있으며,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영어능력 우수자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독해와 듣기 능력 모두 측정 가능한 공익 영어성적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인 영어 소양 능력을 갖춘 자를 채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후 개선방안으로 ○○직 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과 담당업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채용 방안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다. 참고인 (인사혁신처)

청각장애의 정도가 듣기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등급 2~3급에 한하여 사법시험 및 5급 공채(행정·기술직), 국가자격시험 시 공인영어검정시험의 듣기 분야를 제외하는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청각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나. 진정인은 2014년도 ○○도서관 ○○직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공인영어검정시험”에서 듣기 분야를 점수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외국 도서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해외자료에 대한 수집·조사,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 업무의 증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의 ○○직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서 임용한 00명중에서 0명을 온·오프라인 자료수집, 국외자료 구입·수집·등록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부에 배치하고, 0명은 디지털 장서의 계획 수립 및 이용서비스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에, 0명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에 각각 배치하였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므로, 만약 피진정인이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피진정인이 채용의 조건으로 영어 듣기 능력이 일정 정도 이상일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직공무원의 채용 시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한 이유는 향후 ○○도서관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영어능력 우수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역할 강화 업무와 밀접한 직위를 지정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본 소양으로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모든 직위에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채용 시 청각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2017. 4. 3.자 16-진정-0764100 결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1】○○○교육감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음.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교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진정인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이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 교육감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진정인은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로 인해 수업 준비 및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16. 9.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기관 진술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의3은 인사혁신처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본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나 예산이 없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시·도 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가 ○○○교육청 사업 진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관계기관

1)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

신처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인사혁신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분류체계상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 소관 특별법인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채용 등 인사절차도 별도로 관리되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도 각 시·도 교육청 예산(교육비 특별회계)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할 때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새롭게 근거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소속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2) 교육부장관

각 시·도 교육청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실시 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관도 교육감이고,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도 교육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은 2017. 2. 1. 기준으로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제주 등 7개 교육청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각 제정하여 지원하며, 일부 시·도 교육청은 별도 규정 없이 지원하는 등 장애인 교원 지원에 관한 근거 및 양태는 다양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므로,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 교사인데, 2016.

9. 교원 직무수행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나. 2017. 2. 1. 기준으로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충남, 강원, 제주 등 7개 교육청이 소속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

원회 규칙」 및 「시각장애인 교원 등 업무보조원 운영비 지원 계획」을 각 지원 근거로 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는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및 제32조의2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3조 제5호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장애인 공무원인 진정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같은 법 제53조 제5항은 진정인과 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위 제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애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진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한수웅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

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6.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2. 교육차별

1

2012. 1. 10.자 10-진정-07107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등 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
- 【2】 ○○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 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

【결정요지】

- 【1】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수업을 포함한 학급활동 참여는 학생의 수업권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제한조치는 관련 법령 및 학교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2】 폭력사건에 대한 학교자체조사에서 상대학생과 학급동료 및 교사들에게는 서면진술서를 받은 반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어떤 서면진술서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수업참여 제한조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행위로 결정

【참조조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및 제1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최○○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관리·감독 기관인 ○○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진정인의 아들로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2010. 10. 13.과 같은 해 11. 1. 같은 반 학생 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가해 학생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만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며 집에서 쉬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 8. 진정인이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등교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는 수업 참여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2010. 10. 13. 정○○이 내 왼쪽 머리를 때려 오른쪽 보청기가 떨어졌다. 머리를 맞게 되면 머릿속 칩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화가 나 정○○의 눈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고 있다. 같은 해 11. 1. 등교했다.

2) 2010. 11. 1. 등교 후 점심을 먹고 왔는데 정○○이 내 책상을 넘어뜨려 놓고 책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놀리고 얼굴을 때렸고 나는 정○○을 때리지 못하였다. 같은 날 면담 시 피진정인이 “이제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졸업식 날 와라”라고 말하였기에, 나도 “안녕히 계세요. 졸업식 날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010. 10. 13. 사건 당일 진정인은 피해자가 정○○으로부터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학급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정○○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머리를 누른 사실은 있었다. 그 동안 피해자의 심한 폭력성으로 인하여 학급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였고, 학급 친구들이 잘해 주어도 피해자의 폭력성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스스로 학교에 오기 싫다고 반복하여 말한 바 있다. 이에 사건 이후 진정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를 당분간 쉬게 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특수반 순회수업에 참여하는 식으로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수능시험을 앞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자를 집에서 쉬게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후에 같은 해 11. 1.부터 등교시키는 것으로 하였고 당시 진정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2) 피해자가 다시 학교로 나왔던 2010. 11. 1.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점심을 먹고 와서 본인의 책상과 몇몇 학급 친구들의 책상을 엎어뜨리고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가방으로 정○○의 얼굴과 가슴을 쳤고, 이로 인해 정○○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흥분하여 교실 앞문 쪽으로 가서 유리창 2개를 깨고 정○○의 왼쪽 팔을 다시 4대 정도 때렸다. 그러나 당시 학교에 방문한 진정인은 피해자의 폭력으로 먼저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왜곡하여 주장하였다.

3)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었지만,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교내봉사 5일 정도로 감경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럴 경우 피해자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담임교사로서 학급 학생들이 고3 수험생이라는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도 계속 울면서 “자기가 맞았다, 이제 학교에 안 올 거다, 졸업식 날 오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진정인도 피해자를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담임교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4)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0. 11. 8. 진정인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진정인은 “○○이가 집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고 하면서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하였다. 당시 본인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차라리 교실에 오셔서 같이 있으시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

1) ○○고등학교장

피해자는 2009. 7. 특수학교에서 본교의 일반학급으로 전학 온 이후 같은 반 학생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유 모를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반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성하였다. 이번 2010. 10. 13.과 같은 해 11. 1.에 발생한 피진정인 학급의 학생들 간의 다툼은 피해자의 선제 폭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학생이라고 한다면 폭력행사에 따라 생활지도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경우 과거에도 여러 건의 폭력적 행동에 대해 병원 및 가정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선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학급의 학생들이 안정을 찾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귀가 조치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하는 것으로 조치한 것이다.

2) 조○○, 박○○, 한○○, 최○○, 김○○, 최○○, 김○○
(○○고등학교 3학년 교사)

피해자는 보청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청력이상이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이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반에 2년간 배정되어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온 덕분에 대학에도 합격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서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폭력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졸업까지 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3학년 진학 후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의 정도가 심해졌으며, 일 년 내내 주기적으로 사고가 반복되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장애학생과 통합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학년의 다른 지체장애 학생과 달리 지적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상태이고 체력이 좋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급 학생들을 먼저 놀려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교칙을 적용한 처벌을 생각하지 않았다. 피해자 어머니인 진정인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출석 문제도 사실 피진정인의 강요가 아니라 피해자와 진정인도 원하였던 측면이 있었고, 이는 수능을 앞둔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여러 교사들이 권유하였던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3) 윤○○(특수교사)

피해자가 특수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인 ○○고등학교에 전학 올 당시 학교 내 특수학급 인원은 이미 정원 초과된 상태였고, 진정인도 피해자가 일반학급으로 배치되어 수업받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는 피해자를 일반학급으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는 순회수업 등 1:1 수업에서는 큰 문제없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집단수업에는 맞지 않아서 학업 수행에 있어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그리고 학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왼쪽 귀는 인공와우수술을 하였고, 오른쪽 귀는 보청기 등 청각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따라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글도 읽고 쓸 수는 있으나, 발음이 부정확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 피진정인은 2009. 7. 1. 피해자가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배치된 2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였다.

나. 2010. 10. 13. 사건과 관련하여

1) 피해자는 2010. 10. 13. ‘정○○이 먼저 피해자를 놀리고 때려서 피해자의 보청기가 빠졌으며 이에 화가 나 정○○의 눈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정○○과 학급 동료들인 정○○, 박○○, 박○○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급식실에서 돌아와 먼저 책으로 정○○의 얼굴을 때렸고 정○○은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상체를 숙이게 하였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사건 이후 정○○은 ‘창상으로 후시딘 연고(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3)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는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할 테니 2010. 11. 1.까지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하였고, 정○○에게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2010. 11. 1 사건과 관련하여

1) 2010. 11. 1. 학교에 다시 등교한 피해자는 ‘정○○으로부터 먼저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정○○과 학급 동료 4명의 ‘피해자가 먼저 가방으로 정○○의 얼굴과 가슴 쪽을 때려 정○○의 오른쪽 얼굴이 긁혔으며, 정○○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때렸다’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0. 11. 11. ○○○○정형외과에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상해부위의 좌측 협골부 피하출혈, 부종 및 압통이 인지됨’과 ‘추후경과 관찰 요함’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정○○의 경우는 2010. 12. 14. ○○정형외과에서 ‘좌전박부 타박상’, ‘상기 병명으로 타 이상이나 미발견증이 없는 한 발병일로부터 2주 간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3)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2010. 11. 1. 이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출석으로 처리하면서 학교수업 및 외부행사에 일절 참여시키지 않았고, 정○○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피진정인과 학교 측은 두 건의 폭력사건 발생 당시 작성된 정○○ 및 같은 학급 동료들 16명의 진술서, 동료 교사들 5명의 참고 의견서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상기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또는 학교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마. 피진정인은 두 건의 폭력사건 발생 직후 진정인과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출결사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피해자를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서 쉬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도 일정부분 피진정인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사실이 있다.

바. 피진정인은 두 건의 폭력사건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공식 보고하지 않았고, 학교장은 폭력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은 없다.

사. 2010. 11. 8.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수업참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은 전화상으로 진정인에게 “차라리 교실에 피해자와 같이 와 있으시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차별금지) 제4항은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법이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수업참여에 있어 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교육과정에서 담당학급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특수교사 등과 협력하여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수업을 포함한 학급활동에

의 참여는 학생의 수업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에게 등교를 하지 말도록 조치하는 등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학교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며,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해당 조치를 위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이상의 관련 법령에 따라 두 건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두 건의 폭력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하면서 사건 관련 상대 학생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학급 동료들 및 교사들로부터는 서면진술서를 받은 반면 청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로부터는 어떠한 서면진술서도 받지 않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

서 피해자를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잠정결론지어 피해자에 대해서만 수업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참여에서 배제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참고인 진술 등에 의거할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대입 수험생들의 학급담임 교사로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분위기 또는 출결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진정인이 소속된 학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7호의 교육책임자이며 피진정인 학급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상대방 학생간의 폭력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향후 상기와 같은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 소속 학교의 교육책임자인 학교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에게 장애인차별예방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영혜 위원 한태식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012. 6. 13.자 10-진정-0175100 외 2건 (병합) 결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결정사항】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교육기관 내 각종 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학생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기관은 장애학생들에게 학습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2】 피진정대학교는 해당 건물에서 장애학생이 강의를 들을 경우 접근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해 주고 있다고 하나, 그 이외의 외국어교육센터 등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 있다고 판단됨.
- 【3】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해당 교육시설의 건물 중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외국어교육센터 또는 향후 입학할 수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실험 실습실 등을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 1층이나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로의 이전 및 재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4조 등

【진 정 인】 1. 김○○

2. 이○○

3. 임○○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들로서, OO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의 조형예술대학 5호관과 자연과학대 본관은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이 2층 이상으로 이동할 수 없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조형예술대학 5호관은 1988년도에 건축된 □자형 건물로 마주보는 동은 높이가 같으나 옆의 동이 1/2층씩 높이가 다른 계단식 형태로 장애학생 접근권 확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4억에 달하는 과도한 공사비와 더불어 건물 안쪽에 설치된 풍광이 뛰어난 정원의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 해당 건물에는 전체 118개의 방이 있고 이 가운데 43개를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이 조형예술대학 5호관의 강의실에 배정되면 접근이 가능한 강의실로 100% 변경해 주고 있다.

또한 자연과학대 본관은 수학과와 전산통계학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두 학과에는 휠체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이 없으며, 만약 휠체어 장애학생이 수강하려는 교과목의 강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면 접근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해 줄 것이다. 본관동 내 승강기 설치장소를 검토한 바 1층 정면 외벽에 설치 가능하나 지하층 운행이 불가하여 효율적인 시설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승강기가 설치될 경우 운행동선에 기 배치된 사무실의 이전, 벽면과 복도 확장 등 추가 시설공사에 따른 건물 안전이 우려된다.

전체 106개 건물 중에서 두세 개의 건물이 전동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현재 사립대학의 재정이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상황에서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 건물에 장애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도 아닌 곳에 몇 억씩 소요되는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것은 투자대비 효용성 문제가 발생된다. 상기 결과를 종합한 결과 자연과학대 본관동 및 조형예술대 5호관 승강기는 단기적으로 설치가 어려우며 재정 및 기타 여건이 확보될 경우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피진정대학교에 재학 중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들이다. 피진정대학교의 조형예술대학 5호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자연과학대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각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휠체어가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은 2층 이상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조형예술대학 5호관은 2층 이상에 외국어교육센터, 교양대학 학생회실, 전공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과학대 본관은 수학과와 전산통계학과와 전공실험실습실과 교수연구실, 학과학회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다. 2010. 6. 18. 피진정대학교의 시설팀에서는 조형예술대학5호관의 승강기 설치에 대한 전문 업체의 자문결과를 사무처에 보고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같은 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것을,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판례(2001가단76197)에서는 ‘장애인 학생에 대해 입학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등록금이 납부되는 등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대학 측은 장애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주어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과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차별은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에 있어서 차별

의 금지를 뜻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교육기관 내 각종 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학생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 시설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교육 시설에서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면, 이는 사실상 장애인을 제한·배제하게 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에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내의 학습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에도 위반되게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시설의 제공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뜻하는 정당한 편의에 관한 정의규정을 고려할 때,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의 재배치와 관련한 제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진정인들의 교육기회가 제한 혹은 배제되었는지 여부

피진정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2011. 4. 11.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피진정대학교의 조형예술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시설물 접근성을 살펴보면, 조형예술대학 5호관의 2층 이상에는 외국어교육센터, 전공실험실습실 등이, 자연과학대학은 학과학회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 및 이동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이 해당 건물의 2층 이상으로 접근하여 각 교육관련 시설들을 방문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한편, 피진정대학교는 해당 건물에서 장애학생이 강의를 들을 경우 접근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해 주고 있다고 하나, 그 이외의 외국어교육센터 등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는 차별행위로 해당 학교건물에서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뿐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 및 그 수단 중의 하나로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휠체어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조치

위와 같이 피진정대학교는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에게 가장 편리한 이동설비인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피진정인 역시 자연과학대 본관동 및 조형예술대 5호관 승강기는 단기적으로 설치가 어려우며 재정 및 기타 여건이 확보될 경우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향후 재정 및 해당 건물의 안전성 검사 등 기타 여건이 확보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해당 교육시설의 건물 중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외국어교육센터 또는 향후 입학할 수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실험실습실 등을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 1층이나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로의 이전 및 재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 ~ ④ (생략)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3조(차별금지) ① ~ ③ (생략)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2. 다음 각 목의 시설 :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 나. (생략)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3

2014. 11. 17.자 14-진정-03092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결정사항】

-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교육부 장관 및 ○○시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1과 2는 학교의 장과 교감으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진술 조력인으로 조사에 참여한 특수교사 역시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수정·조정하지도 않았고 조사 과정 중 절반 정도를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최종 확인서도 읽어보지 않는 등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2】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술 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2조, 제40조, 일반논평 12호 (아동권리위원회, 2009), 일반논평 10호 (아동권리위원회, 2007),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일반논평 제1호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진 정 인】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1. ○○중학교장
 - 2. ○○○
 - 3. ○○○
 - 4. ○○○
 - 5. ○○○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시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으로 2014. 3. 7.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4. 3. 14.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이때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3 (○○○,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 교사)

2014. 3. 14.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목격한 학생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내용이 달라 피해자에게 “목격학생은 네가 △△△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했으나, 조사 중에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가 와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려갔다.

2) 피진정인 4 (○○○,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장)

2014. 3. 14. 5교시에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진정인 3이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처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목격학생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달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니?”라고 물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내용이 추가되어 조사가 진행된 20분간 3장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3) 피진정인 5 (○○○, ○○중학교 특수교사)

2014. 3. 14.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입회하였다. 피해자에게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확인서에 ○○가 한 걸 적어봐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그 외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입회도중 피진정인 4의 부탁으로 목격학생에게 전할 말이 있어 총 20분 조사 중 마지막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마지막 작성한 확인서는 읽어보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1급 중복장애 판정을 받은 만 17세의 장애아

동이다. 피해자는 서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행이 불안정하며, 지능지수(IQ)는 35이고 사회성숙도는 약 4세 수준이다. 뇌병변장애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2년을 유예하여 2014. 3. 3. ○○중학교 3학년으로 복학하였다.

나. 피해자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 △△△은 2014. 3. 7. 16:00경 학교정문 밖 언덕길에서 어떤 남자 선배로부터 몸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친구 A, B와 함께 2014. 3. 13. 16:10경 특수학급 교사인 피진정인 5를 찾아갔다. 피진정인 5는 교감인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고, △△△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건발생을 설명하였다.

다. 다음날인 2014. 3. 14. 11:00경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는 “장애인 오빠가 나를 붙잡고 막 엉덩이, 가슴, 생식기 뒤에도 만졌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에게서 받았고, 교감인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하였다.

라. 같은 날 오전 경 인성생활부 교사이자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12:00경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C, D, E, F의 4명의 학생을 한 장소에 모아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4명의 학생은 “학교 끝나고 20분 뒤 정도 △△△가 보여 가봤는데, ”장애인 오빠가 구석으로 몰아“, ”가슴과 손을 더듬더듬하고, 껴안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 같은 날 13:00경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1차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1차 확인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에게 놀이터에 가자며 가방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1차 확인서를 본 피진정인 3은 “△△△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냐?”, “목격학생은 네가 △△△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얘기를 피해자에게 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던 중, 피진정인 4는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렀다. 피진정인 4가 받은 2차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을 잡고 놀이터에서 5분만 놀자고 가방을 잡은 거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를 데리고 가고 집에 오는 길에 △△△를 만나서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는 가고 저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놀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본 피진정인 4는 피해자에게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니?”, “(다른 학생들이) 말릴 때 뭐라고 그랬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어야 하지 않겠니?”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차와 4차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가방을 붙잡고 꺼안았다.”,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을 했다.”라고 적었다. 이때,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진행한 20여분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중 처음의 10여분만을 입회하였으며, 마지막의 4차 확인서가 작성될 때는 입회하지 않았다.

사. 같은 날 14:00경 모든 조사가 완료 된 후, 진정 외 □□□교사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5:30경 학교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2를 면담하고, 사건의 경위를 처음 알게 되었다.

아. 같은 날 16:00경 피진정인 1은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등교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하였다.

자. 2014. 3. 20. 16:00에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진정인과 함께 출석한 피해자는 △△△의 가방만 잡았고, 손이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 손과 가슴을 만졌다는 목격학생의 확인서, 피해자가 과거에도 좋아하는 표현을 꺼안고 뽀뽀하는 행동으로 했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 다른 학생보다 △△△가 예쁘고 궁금해서 같이 놀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추인하고, 서면사과와 보복금지를 함께 결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자 동석과 관련하여,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강요’는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므로,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자, 부모, 아동의 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상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명시 없이 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장애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은 사안조사 이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매뉴얼(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496, 2013. 01. 27.)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처리 절차상 유의사항으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조사방식의 적절성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입회한 피진정인 5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상담실을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4의 질문은 적절한 사람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장애인 특수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피진정인 4의 다른 부탁을 듣고 다른 목격학생을 만나러 가는 등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아닌 피진정인 4의 조력인에 그쳤다. 피진정인 1과 2는 학교의 장과 교감으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술 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별 지〉

관 련 규 정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

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채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iii)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v)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vi)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3.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2호 (아동권리위원회, 2009)

22.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권리를 가진다. “자유롭게”는 아동이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피청취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게”는 또한 아동이 조종을 당하거나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자유롭게”는 본질적으로 아동 “자신의”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즉, 아동은 타인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23.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 조건,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존중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25.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려면, 아동은 관련 문제, 선택,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결과와 이것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아동의 견해를 청취할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은 또한 자신의 견해를 어떠한 조건 속에서 표현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정보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동의 명쾌한 결정을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4.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0호 (아동권리위원회, 2007)

56. ICCPR 제14조 3(g)항에 따라, CRC는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러한 인정 또는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57. 아동에게 자백 또는 자기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다른 덜 폭력적인 방법은 많이 있다. “강요”는 광범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심문 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한 자백의 가능성은 “사실을 말해주면 바로 집에 보내주마.”라는 식의 보상, 또는 더 가벼운 형벌이나 석방이 약속될 때 더 커진다.
58.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증언이 전체적인 정황상 자발적이고 강요된 것이 아니며,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심문방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 법원 또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자, 부모, 아동의 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경찰 또는 여타 수사당국은 강요되거나 신빙성 없는 자백 또는 증언을 유도하는 심문 기법과 관행을 회피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법 앞의 평등)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절해야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되도록 보장한다. 보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6.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호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16. 제12조 제3항에서는 당사국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법적 수행 능력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때, 이러한 지원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7. 법적 수행 능력의 행사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 의지 및 선택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해야 하며, 대리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중략)... “지원 (support)”이란 광범위한 뜻을 가진 용어로서 다양한 종류와 규모를 가진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특정한 종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법적 수행 능력을 행사할 때 자신들을 도와줄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선택하거나 또는 동료 지원이나 변호, 또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다른 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 발췌)

2) 사안조사 진행 과정(p.91)

단계	처리내용	비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3) 피해·가해학생 조사 시 유의할 점(p.96).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거나,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8.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496, 2013.01.27. 발췌)

2)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유의사항(p.122)

-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큰 차이가 나며,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4

2014. 12. 16.자 13-진정-0787500 결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차별 등】

【결정사항】

- 【1】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
가. ○○예술고등학교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나. ○○○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2】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폄하, ○○○도교육감의 교육권 보장을 소홀히 했다는 진정은 기각

【결정요지】

- 【1】 ○○예술고등학교장은 2014학년도 특수교육전형자 음악실기평가 심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일반전형과 달리 비전공자인 학내 교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수확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구별하여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 【2】 실기평가 후 심사위원이 피해자의 실기능력과 학교적응력을 폄하하고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사위원의 일부 발언이 장애학생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나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외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엇갈리는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기에 기각함
- 【3】 진정인은 ○○○도교육감이 피해자의 교육권 보장에 소홀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교육청의 중재로 재평가가 논의된 바 있으나 재평가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진정인이 재평가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도교육감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리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기각함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진 정 인】 최○○

【피 해 자】 여○○

- 【피진정인】
1. ○○예술고등학교장
 2. ○○예술고등학교 실기평가위원회 교사 7인
 3. ○○○도교육감

【주 문】

1.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피진정인 1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 나. 피진정인 3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 가. 피해자는 201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예술고등학교 첼로 전공에 지원하였는데 피진정인 1은 일반전형과 달리 해당 악기의 전공자를 포함하지 않고 학내 교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 피해자의 실기평가를 진행하였다.
- 나. 위 실기평가 후 심사위원인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실기능력과 학교적응력을 폄하하고 모욕하였다.
- 다. 위 가항과 나항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예술고등학교 실기평가일인 2013. 10. 1. 피해자가 첫 곡인 쇼스타코비치 1번 1악장을 연주하려고 하자 피진정인 2의 평가위원 중 성명불상의 여성 평가위원이 “누가 쇼스타코비치 하겠어요? 바하부터 하세요.” 라고 하였고, 1분30초 정도에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다음곡인 쇼스타코비치도 7분이 넘는 곡을 2분이 채 안 되는 정도에서 중단시켰다.

실기연주가 끝나자 실기평가위원들은 피해자의 면접을 실시한 후 진정인에게 “장애 아이가 왜 예고를 지원했습니까?”, “여긴 장애 아이가 와도 도와줄 사람도 도움 받을 수도 없는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바쁘고 아이들도 바빠서 애를 도와줄 수도 없는데 점심시간, 예배시간, 오케스트라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에서는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애들 케어가 되지만 이곳에서 8교시 앉아 있어야 하고 도움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라고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여성 평가위원이 “○○○교수한테 레슨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 ○교수한테 레슨이나 받으며 지내면 되지 학교는 왜 오려고 해요?” 그리고 “애 실력이 형편없는데요. 이래가지고 이 학교를 어떻게 와요?”, “특례여도 우리 학교 못 올 형편없는 실력입니다.”, “○○○선생이 애 실력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학교에 △△△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여긴 교사도 아이들도 너무 바쁘고 예민해서 장애학생들을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왜 오려고 하세요?” 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의 남성 평가위원이 “아이가 악보는 잘 보나요?”하고 묻자 여성 평가위원은 “아무리 악보를 잘 외우고 피아노를 했다고 해도 우리 학교에 올 실력은 아니예요.”라고 하였다. 이어 남성 평가위원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녔던 ○○이란 학생 알죠? 그 엄마도 왜 처음에 학교에서 살았잖아요. 개도 1, 2학년 때는 암전히 학교생활 잘하다가 3학년이 되어서 사춘기가 되니 여자아이에게 꽃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해도 하고, 골치 아팠습니다.”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2014. 10. 4. 탄원서를 작성하여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접수하여 다음날 장학사로부터 ○○예술고등학교의 입시곡으로 재평가를 받을 것을 제안 받았다. 그러나 평가 당일 녹음한 것으로 제3자에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재평가 제의를 거절하였더니 장학사는 진정인에게 학교와 직접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 측이 재평가 기회를 주는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며 정식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1) 실기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일반전형 입시는 학교장이 선발권을 갖고 계획부터 선발 후 발표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며 본교에서는 대상 학생의 수학능력 및 학교 적응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일반전형 입시 평가관리와 특수교육대상자 심사관리를 반드시 동일한 입시환경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 입시 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여 본교 교사와 함께 채점을 한 실기평가점수와 중학교 내신점수를 합산한 뒤 석차를 매긴 후 합격자를 직접 가리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한 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부에서 별도로 해당 악기에 대한 심사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아왔다.

201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실기평가 심사위원을 본교의 음악교사들인 음악부장 1명, 피아노 전공 2명, 작곡 전공 1명, 바이올린 전공 1명, 성악 전공 1명, 트럼펫 전공 1명의 모두 7명으로 구성하여 수학능력 및 학교 적응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의견서를 피진정인 3에게 제출하였다. 본교의 음악과 전임교사들은 음악전공분야에서 모두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있어 전문성 면에서 매우 탁월하며, 본교의 평가 포인트는 학생의 실기능력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력도 동시에 평가하므로 함께 가르치고 배울 전임교사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2) 심사위원들의 피해자 면접 및 평가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는 2014. 10. 1. 실시되었으며, 실기평가장은 원칙적으로 학부형이 입장할 수 없으나 평가위원들이 착석한 후 학부형인 진정인이 실기평가장에 입장하였고, 진정인이 평가위원들 뒤쪽에 위치하여 피해자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점을 배려하여 묵인한 채 실기평가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바하’나 ‘콘체르토’가 입시곡인 경우 ‘바하’를 먼저 연주하나, 피해자가 ‘쇼스타코비치 협주곡’을 먼저 연주하려고 해서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여 ‘바하’와 ‘콘체르토’ 순으로 연주하도록 하였으며, 연주시간은 총 4분여로 일반전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2014학년도 입시전형요강에 의하면 일반전형 및 특례전형 모두 첼로 입시곡은 ‘바하곡’과 ‘고전주의 또는 낭만주의 콘체르토’ 두 곡이며, 피해자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협주곡(현대곡)는 입시곡이 아니어서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바로 실격시킬 일이지만, 피해자가 장애학생이었기에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연주 후 피해자 혼자 남기고 심사위원 7명이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의 성함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와의 면접이 끝나고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기실력과 지도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은 없었다.

심사위원이 진정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학교 첼로교수인 ○○ ○○교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학교는 알아보았는지를 묻게 되었고, 해당 교수님에게 피해자가 계속 레슨을 받으면 되겠다는 발언은 한 바 있다.

그리고 진정인이 피해자의 실기능력에 대해 “○○○교수마저 초견 실력을 부러워한다.”, “○○예고 첼로 풀등정도는 이길 수 있다” 등의 피해자의 실력에 대해 과하게

평가하기에 “실력이 안 된다”는 말은 한 바 있으나 “여기 교사도 아이들도 너무 바쁘고 예민해서 장애학생을 못 도와줍니다.”라고 한 것은 음악교사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입학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이 없음을 우려하여 그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었으며, 다른 장애학생을 예시로 제시한 것은 ‘자폐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 외 진정인이 진술한 바대로 “실력이 형편없다”, “그 교수한테 레슨이나 받으면 되지”,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여자아이에게 꽃혀서” 등의 발언은 한 바 없다.

3) 피해자에 대한 재평가 제의와 진정인의 거절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권유와 피해자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감안하여 피해자에게 재평가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진정인이 원하면 첼로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교 입시 지정곡이 아닌 피해자가 실기평가시 연주한 곡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진정인은 무조건 “합격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며 재평가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3

2014. 10. 5. 피진정인 1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고, 같은 달 7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 평가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했으므로 진정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다.

같은 달 8일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재평가 방식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달 10일에 피해자의 음악성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연주곡 그대로 해줄 것과 빠른 시간 내 진정인과 직접 면담을 시도해서 해결해 볼 것을 피진정인 1에게 권유하였고, 같은 달 14일 다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관계 교사들과 평가방식에 대해 최종 협의를 하고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진정인은 10. 1.의 평가 당일 녹음한 것을 제3자에게 평가 받을 것만을 고집하고, 그 외 평가방법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전화로만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전화가 아닌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학부모가 재평가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조치나 해당 학교의 실기평가절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그리고 ○○○도교육청의 ‘2014학년도 유·초·고등학교 입학예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계획’, ○○예술고등학교의 홈페이지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예술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례입학 관련

피진정인 3은 2013. 8. 16. 『2014년도 고입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각 고등학교에 공지하면서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자사고의 경우에는 학생의 수학능력(예술고는 ‘예술능력’)을 판단한 후 2013. 10. 4.까지 ‘학교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로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앞서 피진정인 1은 2013. 6. 25.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4년도 ○○예술고등학교 입학전형 음악실기곡으로 첼로는 ‘바하곡’과 ‘고전주의 또는 낭만주의 콘체르토’ 2곡을 지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진정인은 2014. 9. 14. 첼로 전공에 피해자의 입학원서를 접수하였다.

나. 실기평가 심시위원회 구성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학내 음악 교사들인 (음악부장 1명, 피아노 전공 2명, 작곡 전공 1명, 바이올린 전공 1명, 성악 전공 1명, 트럼펫 전공 1명의 모두 7명으로 구성하였고, 첼로 전공의 전임교사는 없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2014. 10. 1. 실시된 피해자의 실기평가는 진정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협주곡’은 ○○예술고등학교의 입시 지정곡이 아니었으나 심사위원들은 피해자를 실격처리 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피진정인은 2014. 10. 1. 위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다음날인 10. 2. 피해자에 대한 학교장의견서를 피진정인 3에게 제출하였고, 피진정인 3은 같은 달 29일에 개최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예술고등학교에 배정하지 않았다.

다.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의 발언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은 피해자가 연주를 마치자 진정인을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족 및 형제관계, 첼로연주의 시작, 연습량, 평소 생활 등을 질문하였고, 이후 학부모인 진정인을 불러 “도와줄 사람도, 도움 받을 수도 없는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여기 교사도 아이들도 너무 바쁘고 예민해서 장애학생을 못 도와줍니다.” 라고 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의 제자임’을 확인하고, ‘○○○○학교 진학’에 대한 언급, ‘해당 교수에 레슨을 받으면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과거 자폐장애학생이 사춘기로 학생들과 마찰이 있었던 예를 들어 학생지도가 힘들었던 것을 언급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재평가 관련

피진정인 3은 2014. 10. 5. 피진정인 1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과 피해자의 재평가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진정인은 재평가를 수용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실기평가 심사위원 구성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일반전형 실기평가의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하여 학내 교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구성한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학내에 해당 악기 전공자가 없음에도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학내 음악교사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심사위원을 구성한 이유로 일반전형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대상 학생의 수학능력과 학교적응능력을 종합하여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피진정인 3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할 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은 피진정인 3이 결정한다는 점,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심한 반면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소수이거나 한명이라는 점, 학내 음악교사들이 모두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우수한 전문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나 모두 실기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평가절차라는 점, 최종 배정은 피진정인 3이 결정하지만 특수목적고의 경우 학교장인 피진정인 1의 의견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실기평가는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의 입학여부를 가르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실기평가를 악기 전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사위원들로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예술적 능력’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내 교사들만으로 구성된 심사절차는 학생의 ‘예술능력’보다는 ‘학교적응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학생이 소수 또는 한명이기 때문이라는 사유는 피진정인 1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 1이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을 일반전형과 달리 비전공자인 학내 교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수학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구별하여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2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비하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면접과정에서 피해자의 학교적응력과 실력에 대해 폄하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으면 되겠네요.”, “특례여도 우리 학교 입학은 어렵다.”는 발언은 피해자의 실력에 대한 평가로 피해자나 진정인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는 있으나 장애에 대한 비하나 인격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도와줄 사람도, 도움 받을 수도 없는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발언은 장애학생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나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외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엇갈리는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미흡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2014. 10. 5. 피진정인 1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고 피해자의 재평가를 권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비록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재평가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여 진정인이 재평가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 3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1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별 지〉

관 련 규 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2015. 1. 19.자 14-진정-0870400 결정
【교육시설 이용 장애인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6호의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장애인 입학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교육편의제공을 해야하는 기관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교육과정 이수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거나 개별지도를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직업학교 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고자 △△△△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전문학교’라 한다)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교의 재직자 훈련과정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 진정인과 통신중계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진정인에게 개별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교육진행상 타 훈련생들에게도 정상적인 진도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은 2014. 10. 12.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직자 그래픽디자인’과 ‘DIY맞춤가구제작’ 과정을 신청하면서 메모란에 “청각장애인이라 문자로 연락해주시기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날인 13일 15시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피진정인과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이때 피진정

인은 진정인에게 “장애인 과정이 아니어서 수업참여가 어려울 거 같다”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초중고 대학교 일반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상당하기 위해 퇴근 후 방문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6시면 퇴근한다”라고 하면서 “담당 강사하고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상담을 종료하였다.

같은 날 17시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선생님께 여쭙보니 수강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시고,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지도는 어려워서 수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 촉진법」 제2조에 근거한 실업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조 6호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교육책임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개별지도가 어렵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하였는바, 진정인은 개별지도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거나 개별지도를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1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6

**2016. 2. 17.자 15-진정-0860000 결정
【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결정사항】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호자에 대한 통보를 지연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학생이 피해를 회복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임○○

【피진정인】 신○○(△△학교장)

【주 문】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4. 12. 10. △△학교 최○○ 교사가 수업 중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교사를 분리하지도 않았고, 폭행사

건에 대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서 학교폭력사건을 왜곡, 은폐하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12. 10.에 발생한 담임교사의 학생체벌행위를 해당 학급 사회복지무원이 학교에 제보하였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에서 피해자의 몸 전체를 검사하였으나, 멍 자국이나 체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14. 12. 12. 사건을 보고받고 가해교사와 목격자인 사회복지무원들을 각각 불러 체벌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목격자들은 교사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체벌했다고 증언한 반면, 교사는 체벌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이후 같은 달 13일자로 발부된 병원 진단서와 상처사진을 제출했다.

사건을 제보한 사회복지무원은 평소 가해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회복지무원의 제보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진실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웠다. 잘못된 제보에 의해 누군가 억울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에 진상조사를 먼저 한 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발생 시기가 학기말이었고 2014. 12. 26.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된 관계로 진상조사 모임이 여의치 않아, 2015. 1. 2.에야 학교 교원들로 이루어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해교사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대구의 집에 내려가 2015. 1. 2.에 개최된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물론 1. 6.에 개최된 2차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당초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15. 1. 8.에 사건발생사실을 알리면서 진상을 조사하여 교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 사표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 1. 12. 학교가 속해있는 법인이 이 폭행사건을 경찰에 고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교 진상조사는 중지되었다. 피진정인은 법인의 요구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법인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은 학교장의 권한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교사의 분리를 위해 학급교체를 실시하였다. 가해교사가 병가 후 2015. 5. 6.에 복직하게 되자, 피진정인은 피해학생이 고등부인 점을 감안해 가해교사에게 초등과정 수업을 담당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의 학급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학생의 부모를 통해 가해교사에 대한 판결 결과를 2015. 10. 16.에 알게 되었으며, 사립학교는 교사의 징계권이 법인에게 있는데 가해교사에 대한 법인의 조치가 없었기에 학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가해교사에게 ‘수업 및 업무정지’조치를 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사회복지법인 ○○○)

법인은 2015. 1. 9.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원장으로부터 폭행사건에 대해 연락받았고, 1. 12. 학교폭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조속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처리를 위해 광주경찰서에 신고하였다.

2015. 1. 12.과 1. 14.에 피진정인에게 폭행사건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2. 11.에 이르러서야 진상조사서를 법인에 제출하였다.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관계인 진술, 피진정인 및 관계인 제출 자료,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1급 자폐성장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 학교는 1996년 사회복지법인 ○○○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특수학교이다.

나. 2014. 12. 10. 사회복지무원들(박○○, 박○○)이 교무부장에게 수업 중 교사 최○○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제보하였다. 교무부장으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교감은 제보자인 사회복지무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보건교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당일 작성된 보건일지에는 “탈의 후 얼굴, 몸을 살펴보았으나 상처나 멍은 없었음. 옆구리에 책상에 긁힌 듯한 자국은 미미하게 보임, 약을 바를 정도는 아님. 침상안정 30분 후 관찰한바 이상이 없어 교실로 보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14. 12. 12. 교감이 제보된 사건에 대해 학교장인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진정인은 목격자인 위 사회복지무원 2인과 가해교사를 면담하였다. 가해교사는 당시에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2014. 12. 16.과 12. 26.에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였고, 2015. 1. 2. 학교 측에 경위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교감 이하 6명의 교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2015. 1. 2.과 같은 달 6일에 2차례 개최되었으나, 가해교사는 불출석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15. 1. 8.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로 폭행사건에 대해 알렸으며, 피해학생의 부모가 다시 피해자가 거주 중인 거주시설 ‘□□□□□’에 알려, 해당 시설의 원장이 소속 법인인 ○○○의 기획실장 이○○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2015.

1. 12. 위 기획실장이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였다.
- 바. 2015. 1.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교감과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로 학급교체방안과 가해교사 출석에 의한 진상규명 노력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별도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 사. 피진정인은 폭력사건으로 인한 가해교사 사직요구 탄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2015. 1.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교사에 대해 수업 및 업무정지, 2. 2. ~ 2. 13. 10일간 부담임에게 담임권한 위임을 결정하였다.
- 아. 2015. 2. 5. 피진정인은 제3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때에는 가해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모두가 출석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가해교사는 2. 27.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5. 5.까지 휴직하였다가, 복직 후에는 피해자 학교급인 고등부가 아닌 초등부를 담당하였다.
- 자. □□지방법원 ○○지원은 2015. 9. 18. 가해교사의 폭행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10. 2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0. 21.부터 가해교사의 담당 수업 및 업무정지를 결의하였다.
- 차. 한편, 피진정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교사에 대해 별도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폭행사건을 은폐, 왜곡하려 하였는지 여부

2014. 12. 12.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폭행사건이 제보되었음을 보고받은 피진정인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하여 연락하는 것을 미루다, 약 한 달 후인 2015. 1. 8.에야 연락을 취하였다. 피진정인은 교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소속법인에도 같은 이유로 보고를 지연하다가 2015. 1. 12. 사건을 인지한 법인의

로부터 보고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2014. 12. 12.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바로 가해교사와 목격자를 면담하였던 점,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인 2015. 1. 2.과 1. 6.에 학내에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였던 점, 1. 8.에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을 은폐 혹은 왜곡하려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피해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사립학교장인 피진정인에게 교사에 대한 징계권이 없었던 점, 징계권을 가진 법인이 2015. 1. 12. 사건을 인지하고도 가해교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진정인이 피해학생과 교사의 분리를 위해 학급 및 학교급을 교체하였고, 법원판결을 인지한 후 2015. 10. 20.에 교사에 대한 업무정지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가해교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해학생의 치료, 후유증의 조기발견,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사건에 대해 조속히 통보하지 않고 약 한 달 가량 통보를 지연시켰고, 사건발생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2015. 1. 2.에야 제1차 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1. 16.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논의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하나, 별도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대처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진정인은 특수학교의 장으로서 자기옹호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보호자에 대한 통보를 지연하여 피해학생의 후유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호자에 대한 통보를 지연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학생이 피해를 회복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7

**2017. 6. 12.자 16-진정-0644000 외 8건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등】**

【결정사항】

- 【1】 특수학교인 ○○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할 것
- 【2】 교육부장관에게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
- 【3】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각 기각함.

【결정요지】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중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도움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이 고려된 교육의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 【2】 해당 학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 되지 않음.
- 【3】 피진정인이 가래흡인 조치의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진 정 인】 강○○

- 【피 해 자】**
- 1. 임○○
 - 2. 조○○
 - 3. 이○○
 - 4. 최○○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의사 진단서에 기초한 경우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1, 3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2, 4는 이들의 어머니이다. 피진정인은 위 학교의 교장인데,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행위 등을 하였다.

가. 피해자1은 연하곤란 장애(삼킴 장애, 가래나 음식물을 삼키지 못 하는 장애)가 있어서 가래흡인 조치가 필요하다. 2013. 3.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일과 중 1~2회 정도 담임교사로부터 가래흡인 조치를 지원받아 왔는데, 2014. 11.경 가래흡인기의 캐놀라(cannula)가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진정인은 ‘교사에게 가래흡인을 하게 한 행위는 불법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피해자2를 비난하였다. 이후 피해자2는 하루 2차례 정도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1에 대하여 가래흡인 조치를 하고 있다.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이너휠체어와 트레이는 걸상·책상과 같은데, 피진정학교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개인이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일과 중 근육을 이완시켜 줄 침상이 필수적인데, 피진정학교에는 침상이 없는 학급이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수련회, 수학여행 등 숙박이 필요한 교육활동 신청 시 보호자 동반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1, 3은 7년째 수련회를 가지 못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련회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잔류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위험요소가 있는 아이는 집에서 쉬면서 가정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 더 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피진정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이 실질적으로 교사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되지 않고,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이나 서면 전달 등으로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해자1은 가래 제거를 위해 매시간 흡인을 해야 하는데 학부모와 협의에 의해 담임교사가 흡인을 하던 중 2014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안정을 찾은 바 있다. 당시 불법의료행위를 한 담임교사를 지도했고, 보호자인 피해자2에게 교육청의 지침을 알리고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사람(활동보조인)이 가래 제거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 보호자가 학교에 올 수 없는 경우에만 보건교사가 도울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시교육청 지침인 「2016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안내」에

따라 학부모가 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한 학생 전원이 선정되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서 사용 중에 있다.

그리고 교실 바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으며,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쉴 때 사용하는 침상 또는 바닥 매트 등은 학교예산으로 구입하여 모든 교실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지체장애학생 중 다수의 학생들이 호흡, 섭식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뇌전증으로 인한 위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각 학생마다 그 정도와 횟수, 대처방법 등이 달라 상시 학생의 건강을 살펴야 하므로 1대1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여행은 학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학생의 교육권에 앞서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교육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단위형(9:00~12:00), 종일형(9:00~14:00) 현장체험학습을 연 6회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잔류학생을 지도할 교사와 보조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학생들까지 학교에 나오는 경우에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장으로서 의견을 내었고, 모든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해당 학생의 가정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

4) 진정요지 라.항

학부모와의 상담결과 학부모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요구하거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개별화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수시로 수정·보완하여 재수립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교육부장관)

가래흡인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준수되는 것을 전제로, 특수학교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참고인2(○○○○시교육감)

가래흡인 등의 의료행위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할 수 있으나, 특수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이 근무하고 있어 다수의 특수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의료적 처치를 모두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수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응급의료행위 중 응급사고 발생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과 피진정인의 관계

피진정학교는 ○○○○시 ○○구에 소재한 공립 특수교육기관으로, 정신지체와 지체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통합된 형태의 학교이며, 피진정인은 이 학교의 교장이다. 피해자1, 3은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피해자2, 4는 이들의 어머니이다.

나.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1) 피해자1은 중도중복장애학생으로 연하곤란 장애가 있어 가래를 뽑아내는 가래흡인 조치가 필요하다. 2013. 3. 피진정학교에 입학한 이후 담임교사가 피해자1의 가래흡인 조치를 하였는데, 2014. 11. 8. 가래흡인을 하던 중 기도에 삽입하고 있는 튜브가 빠져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보건교사와 학부모가 응급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2) 위 사건 발생 이후 2015년에는 피해자1의 활동보조인이 교실 밖에 대기하다가 가래흡인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피해자2가 매일 2~3회 학교에 방문하여 가래흡인을 하고 있다.

3) 피진정학교에는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보건교사 1명이 상근한다.

다. 학습보조기기 미지원

1) ○○○○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신청·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3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피진정인은 2016. 5. 10. 가정통신문을 통해 위 지원 사업을 안내하였으며, ○○○○시교육청은 2016. 5. 31.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통보하였다.

2) 피진정학교 교실에는 침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실 바닥에 온열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라. 수련회 등 학습활동에서의 장애인 배제

1) 피진정인은 2016. 3. 9.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체학급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서에는 일시, 장소, 예상경비와 함께 학생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라는 점과 수요조사 결과 신청 학생이 전체 대상학생의 70%가 넘지 않으면 계획이 취소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조사 결과 대상학생의 37.5%가 신청하여 계획이 취소되었다.

2) 2015. 9. 11. 제12회 피진정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5학년도 ○○수련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잔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위원이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학교의 생활부장이 “학교 등교를 해도 되고, 가정학습도 무방한데 등학교 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며, 학생 20명 정도 되는데 교사가 한 명이라 학교에 남아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이 “위험요소가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쉬면서 가정교육을 받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마.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관련자 배제

피진정학교는 2017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담임교사와의 면담 또는 개별화교육팀과의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보조인력·의사소통 수단·시설이나 설비 등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는 위 법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장애학생 중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도움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미국의 경우 어떠한 조치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도 훈련을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섭식·도뇨관 삽입·가래 제거 등에 있어서는 훈련된 담임교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1, 2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같은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장애인에게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진정인과 같은 교육책임자는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진정학교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근하고 있는 점,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1의 가래흡인 조치를 지원하는 데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1의 가래흡인 조치의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의사 진단서에 기초한 경우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습보조기기 미지원)

인정사실 다.1)항과 같이 이너휠체어·트레이는 3년에 1회 정도 ○○○○시교육청에 개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입학 첫 해에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3년에 1회 정도의 지원으로는 장애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학습보조기기 등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것은 교육청 예산 문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정사실 다.2)항과 같이 피진정학교 교실에 침상과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수련회 등 학습활동에서의 장애인 배제)

중도중복장애학생은 섭식·배설·호흡·경련 등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경우가 있어, 체험활동 시 장애학생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해 충분한 지원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체험활동에 숙박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별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교사, 실무보조원 외에 장애학생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장애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숙박이 포함된 수련회를 위하여 전문인력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학교의 테마형 교육여행 추진에 대한 회의 중 있었던 피진정인의 발언은 수련회로 인하여 등하교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볼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배제하는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관련자 배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담임교사와의 면담 또는 개별화교육팀과의 회의를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이 담임교사 면담 또는 서면 전달에 의하여 수립되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진정인이 학부모 등 장애인 관련자의 참여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라.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한수웅 위원 김기중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3조(차별금지)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8

2017. 10. 31.자 17-진정-0627100 결정
【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에 의한 차별】

【결정사항】

- 【1】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
-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는 지난 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허가하지 않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
- 【2】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해 이 학교는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강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으나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B(중복 장애 학생)는 하루 1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음.
- 【3】 또한 지난 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45%)만 집행했는데,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개가 96.5%을 집행한 것에 비추어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된 것이며, 예산일부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복도 물 끓이기 등)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됨.
- 【4】 장애학급 예산집행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됨.
- 【5】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학교장의 행위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4조제1항, 제13조

【진 정 인】 ○○○

【피 해 자】 ○○○ 등 6명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1.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특수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이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다. 피진정학교의 교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차별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6년 하절기에 피해자들이 수업하는 특수학급의 교실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더위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

나. 진정인이 2016년 겨울 피해자들의 직업체험 수업을 위해 제과제빵 체험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장애학생은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학부모도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버릇이 되어, 이후 지원금이 끊기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학습기회를 차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가) 2016. 6. 21.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진행하는 ‘초청의 날’ 행사 시 피진정학교의 행정실 직원인 참고인1에게 에어컨 가동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허락하지 않아 특수학급에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 2016. 7. 21. ○○지역 수업일 중 가장 더운 날에도 피진정인은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나) 에어컨이 가동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특수학급에서 수업 중 더위로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 ○○○는 장루주머니(의료기구 : 소장 및 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복부 밖으로 배출하여 받는 주머니)를 착용하고 하루 1번씩은 주머니 교체를 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교실에서 직접 옷을 전부 벗기고 갈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가 몹시 힘들어 하였다.

피해자 ○○의 어머니는 본 진정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진정인을 찾아와 ‘2016년 여름 ○○은 온몸과 사타구니에 땀띠가 났었다’고 말하며 울었다.

2) 진정요지 나.항

2016년 특수학급 연간 운영계획을 세울 때 피진정인은 예산을 포함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 개별 사업계획도 피진정인에게 사전보고 할 때는 승인하였는데, 돈을 지출하는 품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인당 2만원이 집행된다고 보고하자, “장애학생에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장애인 학습은 결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계획을 제출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2014. 3. 1. 피진정학교 부임 후 에너지 사용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피진정학교 특성상 1층과 2층은 상대적으로 시원하므로 에어컨 가동을 조절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사회적응활동의 일환으로 직업체험인 제과제빵 체험을 하겠다고 결제를 받으러 온 바 있다. 피진정인은 통합학급뿐 아니라 특수학급 담임을 한 경험이 있어 남다른 고충을 이해하며 애정을 가지고 있다. 장애 관련 연수 시에 들은 이야기 중 “공교육 지원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는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가 우울증이 오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진정인 등에게 전달한 기억은 있다.

체험학습은 방과 후에 가끔 하는 편인데 제과점 조합에 문의한 바, 장애학생의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완성된 반죽에 밀고 찍고 장식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활동이 끝나며, 교사의 보조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제과점 조합에서 구워주면 가지고 돌아오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진정인 등 특수반 교사가 결제를 받으러 왔을 때 일반학급과 비슷한 체험활동보다는 특수반에 맞게 필요한 사회적응 활동의 일환인 직업체험 활동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있다.

실제 특수학급에서 사회적응 활동으로 실시한 내용은 2016년 수봉공원 가기, 영화 보기, 나비공원 방문, 물건사기(슈퍼), 케익 만들기 등이다. 사회적응 훈련의 목적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증진, 지역사회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경험과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을 도모한다.’라고 하지만 흥미 위주의 체험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도 조언을

한 것이다. 특히 2015년에 제빵체험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2016년에 실시하려고 한 내용을 제기하는 것은 놀랍고 안타까웠다.

피진정인은 교사이기 전에 국가공무원으로서 나라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교직 경력 36년이며, 2014년 공모교장으로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학교경영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 학부모 만족도 92.24점, 교원평가 동료평가 87점을 얻었다. 나라 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아이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한 것이며 장애차별이라는 개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다. 참고인

1) ○○○(2016년 피진정학교 행정실 근무)

2016년 피진정학교에서 에어컨을 중앙에서 조절하는 업무를 하였다. 여름 시작 시 피진정인이 ‘에어컨 가동 시간표’를 참고인1에게 전달하여 그에 따라서 에어컨을 운영하였다. 피진정인이 학교 순시를 하면서 에어컨을 어디는 틀고 어디는 끄라는 식으로 수시로 전화 또는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끄는 업무가 힘들었고 신경이 쓰였다.

2016년 하절기 장애학생이 학습할 때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고, 교사와 과목선생들이 저학년 특수반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한 시간 가량만 에어컨을 틀었으며,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틀어줄 엄두를 내지 못했다. 특수학급 교사인 진정인으로부터 ‘에어컨을 틀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 건으로 피진정인에게 혼란 적도 있다.

2016. 6. 21. 비장애인 학생이 참여하는 ‘초청의 날’ 행사 시 진정인으로부터 ‘에어컨을 틀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피진정인으로부터 ‘특수반 학생의 수업 중에는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기본지시사항 외에 별도의 지시가 없어서, 진정인에게 ‘교장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하셨는데요.TT’라고 메신저로 답한 후,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시켜도 되는지 피진정인에게 문의하러 갔으나 야단만 맞았다.

2015년 실수로 한 개 교실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가 피진정인에게 발각되어 행정실장이 두 시간 동안 야단맞았고, 참고인1은 복도 밖에서 한참이나 서 있다가 교장실로 들어가 “제가 잘못했다”고 피진정인에게 용서를 빌었다.

2) ○○○(피진정학교 행정실 근무자)

피진정학교에 설치된 에어컨은 도시바 제품으로(UFO-100), 행정실 컴퓨터로 운전·장치·잠금 등을 제어하는데, 2016년 5,634건의 에어컨 전산제어 기록 상 2개의 특수학급 수업시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3) ○○○(피진정학교 특수교사)

2016년부터 피진정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특수 교육대상 학생은 해줘도 기억을 못한다.”, “일반학생들에게 돈 쓰는 것 이상으로 쓰지 말라.”, “계속 지원을 해주다 지원이 끊기면 학부모들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4) ○○○(피진정학교 특수교사)

2015년 1학기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불러 “특수반 비를 400만원 남겨라”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2학기에 예정된 특수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의 반을 남기게 되었다.

5) ○○○(피진정학교 교사)

2016년부터 피진정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참고인5가 담임을 맡은 학급에 특수반 학생인 피해자 ○○○이 있었다. 2016. 12. 진정인이 참고인5의 학급으로 찾아와 특수교사들이 사회적응활동비와 관련해서 피진정인에게 사전승인을 받으러 가서 거부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6) ○○○(전 피진정학교 교사)

2016년 피진정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학년 회의시간에 진정인이 특수반 비를 사용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찾아갔던 얘기를 들었다.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사업비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

7) ○○○ 등 3명(피진정학교 교사)

본교의 모든 부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직접체험비 사용, 특수반의 예산 사용 등 행사 계획 및 예산 집행을 사전에 교감과 피진정인에게 승인을 받고 내부 결제를 상신하고 있다. 특수반 경비를 처음 계획한 예산만큼 사용하지 못한 것은 피진정인이 사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 및 ○○광역시○○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 피진정학교의 2016년 에어컨 운행 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소재하며, 23개 학급에 554명의 학생이 재학한다. 피해자 6명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로 이 학교의 특수반 학생인데, 피해자 중 3명은 저학년 특수반으로 피진정학교의 본관 1층에 있는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3명은 고학년 특수반으로 본관 2층에 있는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피진정인은 교직 경력 36년으로 2014년 공모교장으로 피진정학교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이 학교의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의 에어컨은 교실의 천장에서 찬바람을 발산하는 제품으로 행정실에서 그 가동을 제어한다. 2016년 피진정인은 ‘에어컨 가동 시간표’를 참고인1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에어컨이 가동되었다. ‘에어컨 가동 시간표’에는 전 학급과 특별실에 대해 시간대 별 운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2개의 특수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학습시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교사 등이 점심식사를 하는 1시간 동안만 저학년 특수반의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2016년 피진정학교는 6. 21.~9. 23. 동안 에어컨을 가동하였으며, 이 기간 중 에어컨을 제어한 횟수는 총 5,634회이다.

2016년 기상청 관측상 수업기간 중 ○○광역시의 제일 더운 날은 2016. 7. 21.로 섭씨 32.3도였다. 이날도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이 작성한 ‘에어컨 가동 시간표’에 따라 에어컨이 가동된바, 피진정인이 근무하는 교장실의 경우 09:08~16:00 동안 가동되었고, 각 학년 교실, 어학실, 영어체험실, 자람교실, 발간실, 행정실, 각 학년 협의실, 미화원휴게실, 학운위회의실, 희망교실, 방과후은행나무, 미술실, 과학실, 보건실, 상담실, 어울림터, 음악실 등에 에어컨을 가동하였으나, 장애학생인 피해자들이 수업하는 특수반 2개 학급의 교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는 “왜 6학년 3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는 안틀어요?”라고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가 수업 중 눈이 풀리고 힘들어 하여 진정인이 얼음 팩을 대어주었다. 피해자 ○○○(중복 지적장애)는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어 하루에 1번은 주머니를 교체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직접 교실에서 옷을 전부 벗기고 주머니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너무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며 갈아주었다. 피해자 ○○○는 더워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 중에도 자주 물을 마셨다. 피해자 ○○는 사타구니 등 온몸에 땀띠가 났다.

다. 2016년 피진정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이 집행되었다. ○○광역시○○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피진정학교 등 총 46개교인데, 2016년 ○○광역시○○교육지원청의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5%이나, 피진정학교는 위 예산의 45%가 집행되었다.

2016년 피진정학교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을 복도 물
끊이기, 정보실 컴퓨터, 책상 개선, 학교 페인트 공사 등의 신규사업에 사용하였다.

라. 2016. 12. 12. 특수교사인 진정인과 참고인3은 피진정인에게, 장애학생인 피해자
1인당 2만원이 소요되는 제과제빵 체험학습의 예산 집행 계획을 보고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은 습관이 되고,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애인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 이때 장애인 부모가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제13조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또는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조절한 것이
며, 특수학급은 국어·수학 시간에만 1명 또는 2~3명이 수업을 하여 학생들의 체온에
의한 실내 온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해당 교실은 1, 2층에 있어 다른 교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시원하여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자인 피진정인이 가장 무더운 날씨로 관측된 2016. 7. 21. 피진정인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에는 09:08~16:00 동안 몇 분간의 정지시간 외에는 에어컨을 계속하여 가동하면서도 장애학생이 수업하는 특수반의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은 장애학생인 피해자 ○○○가 “○학년 ○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는 안 틀어요?”라고 교직원에게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달리 차별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학생인 피해자들이 수업을 받는 2개의 특수반 교실에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반하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이 부임하기 전인 2012년과 2013년에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부임한 2014년에는 74%, 2015년과 2016년은 45%만을 집행하였다. 이는 피진정학교가 속해 있는 ○○광역시○○교육청 산하 46개 학교들의 평균 집행률(96.5%)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인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의도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장애학생의 체험학습으로 추진된 제과제빵 체험에 대해, 피진정인이 ‘보호받은 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을 위한 특수교과운영비 예산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 집행을 거부하고,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진정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특수교과운영비의 집행을 제한하고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에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3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조현욱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3조(차별금지)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차별

가. 재화 · 용역의 제공 및 임대 차별

1

2017. 10. 31.자 16-진정-0134300 결정 【4D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결정사항】

【1】 ○○○○○○○(주) 대표이사에게,

1. 중증장애인의 4D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2. 4D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4D 영화관을 이용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4D 영화관 이용 경험이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단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4D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영화관 이용을 제한 및 거부한 행위임.

【2】 또한 4D 상영관 특성상 관람석의 진동으로 중증장애인이 부상당할 우려가 있고 영화관에서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관람석에서 휠체어로 이동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진 정 인】 ○○○

【피 해 자】 1. 김○○
2. 김△△

【피진정인】 ○○○○○○○(주)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1. 중증장애인의 4D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2. 4D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피해자1)은 척수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해자2는 뇌병변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다. 2016. 2. 15. 피해자2는 ○○ ○○동에 소재한 ○○○○○(주)(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의 ○○○○지점의 4D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위 영화관의 직원은 피해자2에게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며 영화관 입장을 거부하였다. 같은 해 2. 26.에도 피해자1, 2는 위와 동일한 차별행위를 당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회사의 4D 상영관은 특성상 관람석의 앞뒤, 상하, 좌우 진동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 관절, 팔, 목 등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1) 4D는 4D 영화를 '경험(experience)'할 수 있는 체험형 영화 상영 시스템이다. 4D 영화관은 특수 영화관 중 하나로, 2D(일반영상)이나 3D(입체영상)과 더불어 체감적 효과인 모션체어, 물, 날씨 효과(바람, 비, 안개, 눈)와 특수효과(비눗방울, 레이저, 조명, 향기)를 제공하여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관이다.

경우 휠체어에서 그대로 착석해 관람이 가능한 2D(일반영상) 상영관의 장애인 관람석과는 달리 4D 장애인 관람석은 직원이 장애인을 안거나 업어서 휠체어 착석과 이석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2D에 비해 장애인 관람객의 이동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4D 상영관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1은 19××년생으로 척수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해자2는 19××년생으로 뇌병변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해자1은 4D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었던 시기에 일반석에서 관람을 하였는데, 양팔 사용이 가능하여 휠체어에서 관람석으로 혼자서 옮겨 앉았다. 피해자2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진정이 제기된 이후에 4D 상영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팔을 사용할 수 없어 동행하였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관람석에 앉았다.

나. 피진정회사는 19××. ×. 설립되어 본사는 ○○시 ○○구에 소재하고, 2017. 3. 31. 현재 국내에서는 ×××개 장소에서 ×××개 스크린을, 국외에서는 ××, ××, ×××, ×××××, ×××, ×× 등 ×개국 ×××개 장소에서 ×,×××개 스크린을 운영하며, 4D 상영관은 국내에 ××개를 두고 있다.

다. 4D 영화관은 2D(일반영상)이나 3D(입체영상)과 더불어 체감적 효과인 모션체어, 물, 날씨 효과(바람, 비, 안개, 눈)와 특수효과(비눗방울, 레이저, 조명, 향기)를 제공하여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관이다. 4D 영화관의 관람석은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이며, 의자의 높이는 바닥에서 앉는 곳까지 55센티미터로 일반 관람석보다 다소 높다.

라. 피해자들은 피진정회사에서 운영하는 ○○시 ○○동 소재 4D 상영관을 방문하였는데, 피진정회사 소속 직원은 2016. 2. 15.은 피해자2에 대해, 2016. 2. 26.은 피해자 1, 2에 대해 각각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영화관 입장을 거부하였다.

마. 피진정회사는 ‘4D 이용 안내’라는 게시물에서 “안전한 관람을 위해 아래에 해당되는 고객님의 관람을 제한하오니 일반 상영관에서 관람 부탁드립니다. 1. 만 4세 이하 또는 신장 1m 이하의 어린이, 2. 만 7세 이하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3. 임신부 및 단독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라.항 및 마.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4D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영화관 이용을

제한 및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차별로 보지 않으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영화관 이용을 제한 내지 거부한 행위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4D 상영관 특성상 관람석이 앞뒤, 상하, 좌우로 상당히 진동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관절, 팔, 목 등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진정인은 이미 장애인 이용자의 낙상 등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관람석에 관람자의 허리를 감싸는 형태의 안전벨트를 설치하였고, 관람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휴대용 비상호출벨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 ② 4D 관람석의 작동방식이 중증장애인에게 부상을 유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보호자가 중증장애인과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4D 관람석 작동방식의 문제라면 피진정회사의 직원을 호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직원의 호출은 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비상호출벨을 눌러서도 가능한 점, ④ 진동의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중증장애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영화 관람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 점, ⑤ 피진정인이 4D 영화관을 이용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4D 영화관 이용 경험이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단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4D 영화관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부상을 우려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행 하에 4D 영화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4D 영화관에서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증장애인이 관람석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려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력의 배치’를 명시하고 있고, 피진정회사도 직원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영화관 입·퇴장 시 휠체어 이동과 관람석 착석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점, ② 위 직원에 대한 적절한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 용이하게 착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서 대형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점, ③ 4D 상영관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의 역할은 보호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피진정회사의 직원도 할 수 있는 일인 점, ④ 비상상황에서는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 ⑤ 피해자와 같이 스스로 휠체어와 관람석을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중증장애를 이유로 4D 영화관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형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4D 영화관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나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4D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4D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4D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3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조현욱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2

2016. 2. 17.자 15-진정-0890200 결정
【주택 임대시 장애인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0. 8. 9. 10진정3517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진 정 인】 조○○

【피 해 자】 변○○

【피진정인】 음○○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구 ○○동에 위치하고 있는 피진정인 소유의 건물 ○○○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부동산 직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차 공고를 하고,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임차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협의하여 2015. 9. 17. ○○부동산에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로 약속하고,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과 만났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이 계약을 작성하는 동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던 피진정인이 계약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부동산에서 나갔고, 진정인에게 “재고는 어려워요. 내일 딴 사람이 보러온다고 했어요. 언어장애인인 것을 몰랐나요? 세입자와 소통 할 때가 많아요. 언어장애인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19○○년생으로 4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바, 본인이 각 세대를 방문할 수 없어 임차인들과 대부분 전화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2015. 9. 17.에 피해자의 딸이라는 젊은 여자가 부동산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였고, 계약을 작성하는 중에 피해자와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인 것을 알았다. 처음부터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으면 계약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적은 주택을 찾아서 계약을 해야 주인과 필답이나 손짓 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각 당사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 기타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2015. 9. 17. 피진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시 ○○구 ○○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진정인과 피해자를 만났다.

나. 피진정인은 부동산 사장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인 것을 알았으며, 이후 계약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부동산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재고는 어려워요. 내일 판 사람이 보러 온다고 했어요. 언어장애인인 것을 몰랐나요? 세입자와 소통할 때가 많아요. 언어장애인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에 부동산을 이탈하였고, 진정인에게 “재고는 어려워요. 내일 딱 사람이 보러 온다고 했어요. 언어장애인인 것을 몰랐나요? 세입자와 소통할 때가 많아요. 언어장애인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바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인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장애를 이유로 한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건물 등 임대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점, 혹은 그 거부행위가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단지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 그 외의 다른 사정이나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주장한바 없고, 여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차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인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수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2

2010. 10. 20.자 09-진차-1023 결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

【결정사항】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주식회사가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을 대리하여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불허하였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피진정인은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은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이고,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라도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뇌병변 장애인 등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람에 한정하여 제3자 대리신청을 허용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자필 작성이 불가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 문】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뇌병변장애(1급) 및 언어장애(3급)를 가진 장애인으로, 2008. 9. 5.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주식회사 ○○점카드센터를 방문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을 대신하여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서명한 후 진정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했으나,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8.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거부의 원인은 신용카드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는 것인바 이의 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신청서의 자필 작성은 불가피하고, 장애유형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모두 검토하여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화상통화 등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을 통해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참고인

1) ○○○○주식회사

당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이하 “서면신청”이라 함),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이하 “공인인증신청”이라 함) 한다. 두 방식 모두 신청과정에서 신청인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서면 신청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 자필 작성 및 서명을 해야 하고, 공인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담당직원과의 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정인은 2008. 8. 22. 자택에서 공인인증신청 방식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진정인이 가진 언어장애로 인해 당사 직원과의 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인근 카드센터로 직접 방문해줄 것을 진정인에게 요청하였고, 진정인은 2008. 9. 5. 당사의 ○○점카드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상 자필 작성이 불가능한 진정인을 대리하여 활동보조인이 작성 및 서명한 신청서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어려웠다.

당사는 2009. 7. 16. 금융감독원의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절차 개선요청’ 공문을 수령한 후, 가족이나 활동보조인 등 대리인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장애인이 이에 동의하면 본인 작성 및 서명과 동일한 의사표시로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 심사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 등 제3자의 대리 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 ○○○(진정인의 전 활동보조인)

2008. 8. 22. 진정인이 공인인증신청 방식으로 ○○○○주식회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달 26. ○○○○주식회사 상담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본인이 “○○○씨가 언어 장애가 심해 활동보조인인 제가 ○○○씨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하자, 상담원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씨가 카드센터로 나오셔서 직접 카드 가입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해 9. 5. 진정인과 함께 ○○○○주식회사 ○○점카드센터를 방문하였고, 본인이 진정인을 대신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서명한 후 진정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달 8. ○○○○주식회사 ○○점카드센터 직원이 전화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어서 카드 발급이 안 되니, 본인 서명이 불가하다면 ○○○씨 아버님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씨의 아버님을 모시고 나오세요.”라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8. 22. 진정인이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신청 방식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자, 같은 달 26. ○○○○주식회사 상담원이 신용카드 신청여부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진정인은 뇌병변장애(1급) 및 언어장애(3급)를 가진 장애인인 관계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당시 활동보조인 ○○○가 진정인을 대신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상담원은 활동보조인과의 통화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인근 카드센터로 직접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2008. 9. 5. 진정인은 활동보조인 ○○○와 함께 ○○○○주식회사 ○○점카드센터를 방문하여 활동보조인 ○○○가 진정인을 대신하여 작성·서명한 회원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8. 동 카드센터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자필 서명이 아니어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니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버지가 카드센터로 방문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같은 달 10. 동 카드센터장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했으나 진정인의 아버지가 부재중이었고, 동 카드센터장은 진정인의 자필 신청서 작성이 불가함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기제출한 자료를 반환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이 2009. 7. 16.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업자에게 발송한 문서(중여총-00289,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요청)에 의하면, 시각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필 신청서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내용에 대한 구두 녹취 또는 대리인 작성 및 장애인 본인 확인 등의 방법으로 「여성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장애인도 다양한 모집채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편의 도모를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접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요청’ 관련 공문 수령 후 ‘장애인 심사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였는데,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중 실물식별이 가능한 자는 고객센터 내방, 센터 직원을 통한 본인 확인 실시하되 본인 통화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중 실물식별이 불가능한 자는 통화녹취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재화의 공급·이용과 관

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가 차별행위에 이르지 않으려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차별시정 및 차별예방 의무가 있는 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과 같이 ○○○○주식회사는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을 대리하여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신용카드 발급을 불허하였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2항 위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 외 제3자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진정한과 같은 뇌병변장애인, 손가락을 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는 장애인의 상태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은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라는 취지이고,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라도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뇌병변장애인 등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람에 한정하여 제3자 대리신청을 허용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별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본 사안은 뇌병변장애인, 손가락을 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정된다는 점,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시정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필요적 규정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만으로 해

결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인정사실과 같이 금융감독원이 대리인 작성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필 작성이 불가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문경란 위원 김태훈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4.~6.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생략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① 생략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생략

③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생략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⑤ 생략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생략

②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②~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⑥ 생략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4조의2·제25조 제4항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3. 생략

②~③ 생략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4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략
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가 확인될 것

④~⑦ 생략

제6조의8(모집인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략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4.~7. 생략

②~③ 생략

2

2011. 4. 26.자 10-진정-05322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결정사항】

금융회사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과 감독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금융회사가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지능지수, 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개별평가를 한 후 종합적으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 존재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제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7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앙회 대표이사

【주 문】

1. ○○중앙회 대표이사에게,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감독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8. 18.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읍내지

점(이하 ‘○○○○’이라 한다.)을 방문하였으나, ○○○○ 대출담당자로부터 정신장애가 있으면 ○○중앙회 지침 상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상호금융의 여신규정은 고객에게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여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정치산과 관련한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한정치산 선고 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하여 대리 또는 동의를 받아 여신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본 진정사건은 대출금 신규 건이 아닌 기한 연장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현 대출담당자의 착오로 발생된 것이다. 향후 이런 사례가 영업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문서지도 하겠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4. 10. 22. 정신장애3급으로 등록되었고, 2006년부터 ‘○○○○○’(인테리어업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9. 9. 8. ○○○○에서 500만원

대출을 받았고, 2010. 8. 17. ○○○○을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절차를 밟던 중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같은 해 8. 18. 대출금을 상환했다.

나. 2010. 9. 17. ○○○○ 감사팀장 ○○○와 대출담당 직원 ○○○이 진정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진정인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연장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다. ○○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제1편 여신업무공통 114쪽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시 유의사항》에는 “정신지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정신지체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지체인은 대출과 관련된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대판 2001다10113)의 입장이므로 지체인과의 거래 시에는 법률규정에 따라(한정자산 등의 선고 후 후견임 선임)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과 관련하여 단위 ○○ 영업점에서 ○○중앙회에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중앙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질의일시	영업점	질의내용	답변내용
2010. 6. 25.	○○○○○ ○○ 지점	본건 예금주는 3년 만기 정기에탁금을 가입하여 현재 7개월 남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함. 정신지체4급이라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해약한다고 함. 해약을 하면 고객님의 이자손실이 너무 많음. 후견인도 없고 대리인도 없는 상태임.	사정이 딱하지만 정신지체인인 경우 의사능력자로 보고 업무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정자산선고 등을 받게 한 후 후견인과 거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09. 5. 4.	○○○○○ ○지점	정신지체장애가 있어 말만 조금 어눌하게 할 뿐 자필 및 대출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고 정상생활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의사능력자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우선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한 후에 후견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밖에 없음.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여신업무방법(예) 112쪽을 참조.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대출 제한을 하고 있는지 여부

1)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전대출 등 금융상품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 회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적장애인을 의사능력자로 보아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각 영업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의 정도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능지수, 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개별평가를 한 후 종합적으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한 것이다. 또한 그 취지 역시 비장애인이 장애인 당사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을 무효인 법률행위로 판단한 것이지, 지적장애인의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방해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러므로 금융회사는 대출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출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의 존재 여부를 확일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지도·감독기관의 적극적 차별예방 조치의 필요성

○○감독원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독원으로 하여금 각 금융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태훈 위원 한태식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3

2012. 7. 18.자 12-진정-0222500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금융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3】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동반자의 신분증 지참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정인이 청약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피진정보험사 직원이 진정인에게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녹취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보증보험 대표이사

【주 문】

-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2012. 3. 30. ○○보증보험(이하 ‘피진정보험사’라 한다.) ○○지점을 방문하여 진정인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했으나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지점장은 진정인이 서류를 읽을 수가 없어서 보험체결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류를 거것으로 읽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하였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구한 것과 시각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2. 3. 30. 16:00경 ○○보증보험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점 대리점 설계사 ○○○(이하 ‘설계사’라 한다.)과 면담하고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발급을 요청하였다. 설계사는 청약과정에서 진정인이 보증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읽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진정인 및 진정인의 활동보조인 ○○○(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였는데 활동보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았다.

2) 진정인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을 확인한 후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만 하면 되지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왜 필요하냐며 흥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탁자를 내리치는 등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에 지점 사무실에 있던 지점장 ○○○(이하 ‘지점장’이라 한다.)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원만히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다 보니 “우리가 거짓으로 서류를 읽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3) 설계사가 2012. 3. 30. 17:30경 진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또한, 지점의 부지점장 ○○○(이하 ‘부지점장’이라 한다.) 및 설계사가 2012. 4. 16. 진정인을 방문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였을 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2012. 4. 17.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진정인을 방문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인데, 진정인이 이를 장애인 차별로 여겨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였다.

4) 결과적으로, 당사가 진정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절차상 당사자 간의 오해로 인한 불만사항이 장애인 차별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청하게 된 것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어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에 의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3. 30. 16:00경 활동보조인과 함께 지점을 방문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약하였으나, 설계사는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므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였으나 활동보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이 진정인 본인의 신분만 확인하면 되지,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왜 필요하나며 항의하자, 지점장이 “우리가 거짓으로 서류를 읽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말하였다.

나. 2012. 3. 30. 17:30경 설계사가 진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다. 진정인이 청약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주계약명은 전대차계약(월세 등 지급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진정인이며,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고, 보험기간은 2012. 4. 9.부터 2014. 4. 8.까지이며, 보증내용은 점포 임차료, 관리비 및 원상회복 비용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보험대상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의 거부행위가 진정인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이 진정인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진정인은 당시 활동보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진정인이 보증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바, 본 진정의 보험증권 발급 거부의 주된 원인이 진정인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 이상, 피진정인의 보험가입거부 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보험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므로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며, 아울러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진정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청약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피진정인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의 보증보험청약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i)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해당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동반자의 신분증 지참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는 점, ii)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i) 진정인이 보증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지라도 피진정보험사 직원이 진정인에게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녹취’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iv) 현실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직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약관련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도 전화상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분 확인, 보험상품 및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v)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보험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진정인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녹취 또는 서명 등을 받아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활동보조인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점, vi) 나아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게 했다는 점, vii) 이에 더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며, 같은 법 제30조에 가족은 원칙적으로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의 가족도 아니며 법정대리인도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으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대리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서 진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재발방지의 필요성

이 건에 있어 피진정보험사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등 계약 지연으로 인해 진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향후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계약당사자인 진정인 본인이 이행보증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까지 요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4

**2013. 8. 21.자 13-진정-0388500 결정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 담당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는 보험인수 관련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 【2】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험업법」을 위반한 피진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해당 여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는바, 피진정 보험회사가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정신과 처방약 복용 및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7. 6. 28. 06진차61 결정, 2012. 7. 18. 11진정1948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조·제8조제1항·제15조·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제1항,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96조제2항, 제209조제3항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 1. 피진정인에게,

-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
 - 나.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다.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피진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3. 5. 28. 진정인은 전화 상담을 통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
○보험주식회사(이하 ‘피진정보험회사’라 한다)에서는 진정인이 지적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홈쇼핑 광고방송을 통해 당사에 보험상품 가입을 청약하기 위해 상담신청을 하였으며, 당사에서는 상담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고지한 사항(지적장애 3급, 정신과 처방약 복용)이 인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2) 진정인이 상담 신청한 ‘무배당 ○○○○○○ ○○○○운전자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사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진정인의 경우 당사와의 보험가입 상담과정에서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다고 하고, 진정인에 대한 보험계약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사유로 한 보험계약으로 계약무효조건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당사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험가입이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상품판매 거절’로 불가피한 조치이며,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상담 녹취록 등이 포함된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진정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13. 5. 28. 피진정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 가입 상담을 문의하였고, 지적장애 3급 및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진정보험회사 소속 상담사 장○○는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이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 나. 피진정보험회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 않고 전화상담 단계에서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 다. 피진정보험회사가 제출한 보험인수 지침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보험인수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진정보험회사는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 약물 복용과 보험사고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의학적 연구 자료 및 통계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라. 동 진정사건과 관련된 “무배당 ○○○○○○ ○○○○운전자보험○○○○”는 교통상해후유장해를 기본 보장사항으로 두고, 추가 보장사항으로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지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한 패키지 상품이다.
- 마. 상기 “무배당 ○○○○○○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계약무효 사항으로 약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0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동법 제196조제2항에 의해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법 제209조제3항제10호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 판례²⁾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임”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종합하여 보건대,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피보험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장애 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하거나, 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이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보험회사는 진정인의 상태 파악에 있어서 진정인이 고지한 장애유형과 등급, 정신과 처방약 복용을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더욱이 진정인의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아울러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급부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정의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정하는 데 보험사고 위험성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장애등급표상 장애등급을 피보험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보험회사는 진정인의 보험인수심사에 있어 진정인의 현재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검토 없이 진정인이 고지한 장애유형 및 정신과 처방약 복용만을 근거로 전화상담 과정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으며, 이는 판단 과정에 있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 장애인의 보험접근에 대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등

피진정보험회사는 정신과 질환으로 투약 받았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진정인의 경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주된 거부사유로 들고 있다. 이는 「상법」 제73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피보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고 보아 동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가는 그 자체가 완결적 개념이 아니며 법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적용이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개념 자체가 지적장애와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투약 받고,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여 모두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 즉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격한 법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인수 심사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이 장애인 등을 이유로 아예 청약의사를 막아서는 아니 되며, 인수 심사시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제시하는 등 보험계약의 인수, 유지, 지급단계에서의 차별에 관하여 원칙적이고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상법」 제73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심신박약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적 근거 등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현행 「상법」 제732조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 취지라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보험회사는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중이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바, 이는 차별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보험회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의 제공을 거부한 행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금융위원회의 재발방지 등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며,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이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여러 차례 권고³⁾하였고, 2005. 8. 22. 법무부장관, 재정경제

3) 2007. 6. 28. 06진차61 결정, 2008. 7. 23. 08진차281 결정, 2009. 6. 12. 08진차884 결정, 2009. 8. 7. 08진차886 결정, 2010. 9. 10. 09진차1552외 5건 병합 결정, 2010. 10. 20. 09진차1555 결정, 2011. 3. 8. 10진정3776 결정, 2011. 6. 30. 10진정2313 결정, 2012. 7. 18. 11진정1948 결정 등

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으며, 이후 2012. 11. 26. 금융감독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다. 이렇듯 위원회의 계속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차별 금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금융위원회가 피진정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상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5

2014. 11. 17.자 14-진정-00130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결정사항】

○○○○에게,

- 【1】 선천시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3】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선천시 손가락 결손 장애인인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회사의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거절은 심사 과정 상의 관행이거나 담당 직원의 자의적 결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는 보험인수심사기준에 진정인과 같은 선천시 손가락 결손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는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 보험회사가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09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 ○○○○ ○○○○

【주 문】

(주) ○○○○ ○○○○ 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1.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시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으로 지체 3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2013. 12. 5.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의 실손의료비 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청약이 거절되었다.

2. 당사자와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12. 5. 당사의 ○○○○지점을 통하여 실손의료비보험에 청약하였는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손가락 손실/3살시 공장에서 사고/손가락 치료(수술)”로 기재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정확한 장애의 원인, 장애의 내용, 장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달 17. ‘신체장애기록지, 장애인등록증 등 고지’를 내용으로 ○○○○지점에 보완요청을 하였는데, ○○○○지점에서 보완을 하지 않고 청약의 반송을 요청하여 같은 달 20. 진정인의 청약을 반송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진정인에게 정확한 장애내용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도 보험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이 장애인 복지카드(확정된 장애 내용 확인) 및 세부고지내역서(장애의 원인, 장

애의 상태 확인)를 첨부하여 재청약 하면 인수를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12. 5. 이 사건 보험회사의 ○○○○지점에 질병과 상해가 모두 보장되는 실손의료비보험을 청약하였다. 진정인의 보험 청약 서류에는 “손가락 손실/3살시 공장에서 사고/손가락 치료(수술)”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진정인의 지인인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진정인의 장애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로 오른손은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왼손은 검지와 중指的 결손으로 지체 3급의 장애 판정을 받았다.

나.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인수조건이나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이 사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팀은 2013. 12. 17. ○○○○지점에 진정인의 신체장애기록지와 장애인등록증 등의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보완요청을 받은 ○○○○지점은 언더라이팅팀에 진정인의 장애가 손가락 결손임을 고지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언더라이팅팀이 질병형은 가능하나 상해형은 가입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지점은 서류의 보완 없이 언더라이팅팀에 진정인의 청약을 반송요청 하였고, 언더라이팅팀은 2013. 12. 30.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청약이 거절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후 2014. 1. 3. 이 사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팀의 심사자가 진정인에게 청약반송에 대한 확인전화를 하여, 진정인이 반송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자 해당 심사자

는 장애등급에 따라 심사를 한다고 답변하였다. 진정인이 손 부위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고도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한지 문의하자, 심사자는 질병형은 손 부위를 제외하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상해형은 부담보 조건으로도 가입할 수 없어 질병과 상해에 대해 모두 보장되는 종합형인 해당 보험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다며 청약 거절의 뜻을 밝혔다.

마. 이 사건 생명보험사는 ‘절단 인수심사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적용 대상을 “절단(Amputation) 환상통, 헛통증”이라는 제목으로 “외상, 감염, 질병(당뇨, 혈관질환, 악성종양 등), 선천성 기형 등으로 인한 병소가 있는 인체의 일부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그 중 ‘실손’에 대한 인수심사기준은 ‘손가락, 발가락’의 상해입원 및 통원에 대해 ‘개별적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과 같이 외과적 제거가 아닌 선천성 결손에 대한 인수심사기준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와 제209조 제3항 제10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2. 11. 26.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에서 현대 사회에서 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장애정

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보험인수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차별사례로 제시한바 있다.

이 사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보험 청약 거절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청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점이 청약의 반송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점과 진정인의 문의를 받은 언더라이팅팀이 진정인의 청약사항 중 질병형은 인수가 가능하나 상해형은 인수가 불가능 하여 종합형인 당해 보험상품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지점이 진정인에게 청약의 반송을 요청한 것으로서, 언더라이팅팀과 ○○○○지점은 모두 이 사건 보험회사에 소속된 부서이므로 진정인의 청약거절의 주된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청약거절의 효과는 피진정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 사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팀 심사자는 진정인에게 청약거절 사유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심사를 해서 보험 인수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고, 이 때 실손의료비보험 중 상해형은 질병형과 달리 특정부위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로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해형과 질병형이 결합된 종합형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도 보험인수가 가능함을 위원회에 알려 왔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검토결과와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청약 거절 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청약 거절은 인수조건이나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언더라이팅팀의 관행이거나, 담당 직원의 자의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보험인수심사기준에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는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위반

에 해당한다.

향후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진정과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보험가입 거절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다.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1

2011. 11. 28.자 11-진정-03101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결정사항】

- 【1】 ○○사 주지에게, 향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법당 등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차별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2】 ○○○○○○○ ○○○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사의 지하법당은 일반 대중에 개방된 시설물로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지하법당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지하법당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계단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
- 【2】 피진정인들이 지하법당을 출입하는 관람객들에게 신발을 벗고 입장하도록 강제하는 이유는 신발의 흙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 법당 내부가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일 것인바, 이러한 목적은 지하법당 출입 시 휠체어 바퀴에 묻어있는 흙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당 정도 달성된다고 보이므로, 휠체어에 신발 개념이 있어 지하법당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6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진 정 인】 ○○○

【피 해 자】 ○○ ○○○, ○○○, ○○○

【피진정인】 1. ○○○(○○사 ○○○○)
2. ○○○(○○사 ○○○○)

【주 문】

1. ○○사 주지에게, 향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법당 등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차별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이고, 피해자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다.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11. 5. 19. ○○사를 방문하여 ○○○○○○을 관람한 후 지하법당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측은 규정상 휠체어는 입장이 불가하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신용식

2011. 5. 19. ○○사를 방문한 일행은 피해자들 외에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장애인보호자, 지적장애인, 약시장애인 등을 합쳐 10여명 정도 되었으므로, 지하법당 내부로 휠체어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되었다. 그러나 법당 입구에서 근무하는 관리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법당 출입을 제한하였다. 또한 진정한으로부터 ○○사의 한 스님이 휠체어는 신발이자 기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휠체어는 방에서도 사용하는 것이고, 혹시 법당이 더러워질 것을 우려했다면 휠체어 바퀴를 닦고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법당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해자들에 대해 ○○사 ○○○○○○ 지하법당 출입을 거부한 이유는 법당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은 휠체어가 장애인의 다리라고 주장하면서 휠체어를 들고 지하법당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지만, 본인은 휠체어가 장애인의 다리라면 신체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잠을 잘 때는 휠체어에서 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체가 휠체어에서 분리되므로 휠체어는 장애인의 다리 역할도 하지만 신발 역할도 한다고 보았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이 외국에서 온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법당 관람을 원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지하여 양해를 구하였더라면 입장이 허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휠체어의 법당 출입이 안 된다는 말에 진정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 따지면서 시설 및 종교 탓을 하였고,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진정인 1이 감정이 상해 진정인에게 “절에 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면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고, 남의 집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예의인데, 그것을 규정이 있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며 따지고, 뭘 절이 이런 데가 있느냐는 식으로 따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고, 휠체어에 신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참고로, 지하법당은 1990. 4. 11. 완공된 시설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므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신발을 벗은 후 들어가게 하고 있다. 또한 법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가팔라 지금까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들어간 적이 없었으며, 휠체어를 들고 들어가려면 최소 4명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은 봉사자들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업고 들어가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진정인 일행은 끝까지 휠체어를 들고 들어가겠다고 했으며, 본인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 진술서, ○○사측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5. 19. 피해자들을 포함한 진정인 일행 10여명은 ○○사를 방문하여 ○○○○ 하단에 위치한 지하법당에 입장하려 했으나, 지하법당 입구에 있는 관리인

이 휠체어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지하법당을 관람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진정인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과 함께 ○○사 종무소를 찾아가 ○○
○○인 피진정인 2에게 출입 거부의 구체적 이유 및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이 대화에 참여하며 휠체어는 기계이며 신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휠체어는
기계가 아니라 장애인의 다리이며 휠체어 바퀴의 흙 때문이라면 깨끗이 닦고 들어
가겠다고 허락을 구했으나, 피진정인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피해자들
의 지하법당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들이 출입을 거부당한 지하법당은 ○○사 경내에 위치한 33m 높이의 ○○
○○○○ 하단에 건립된 지하 2층 구조의 현대식 건축물로, 지하 1층에는 2천여
개의 작은 불상이 안치된 전시관이 있고, 지하 2층에는 법당이 있다. 지하법당
입구의 지상출입구에서 지하 1층 전시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너비 약 2m, 높이
약 10cm의 계단 1개를 올라간 후 지하로 향하는 계단 12개를 내려가야 하며, 지하
2층 법당으로 들어가려면 지하 1층에서 계단 4개를 내려간 후 계단 4개를 다시
올라가야 한다. 지하법당 입구의 지상출입구에는 관리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당
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은 지상출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만
입장이 허락된다.

라. 지하법당은 1990. 4. 11. 완공된 관계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법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는 주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다만, 지하법당 진입로의 계단 폭이 넓고 경사가
심하지 않아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조력자
2명이 계단을 오르내리면 지하법당으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하법당의 바닥
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고 내부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휠체어로 내부 통행이

가능하다.

5. 판단

가.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할 때,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물에 반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또는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지하법당 출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피진정인들은 ○○사의 지하법당은 1990년에 완공된 관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및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물이 아니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법당에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사의 지하법당은 일반 대중에 개방된 시설물로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

한 기초 위에서 지하법당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지하법당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계단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진정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특히 더 높다고 인정될만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지하법당 진입로의 계단은 그 폭이 넓고 경사가 심하지 않아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지하법당으로의 안전한 진·출입이 가능하였다. 당시 피해자들 주변에는 이들의 지하법당 출입을 도와줄 조력자들이 여러 명 함께 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들이 지하법당을 출입함에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특히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진정인들은 지하법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므로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출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들도 신발 개념이 있는 휠체어를 밖에 두고 입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약간의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피해자들과 같은 하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 장애인들은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실내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한다는 점에서 휠체어를 신발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이 지하법당을 출입하는 관람객들에게 신발을 벗고 입장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이유는 신발의 흙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 지하법당 내부가 지저분해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일 것인바, 이러한 목적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하법당 출입 시 휠체어 바퀴에 묻어있는 흙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당 정도 달성된다고 보이며, 지하법당의 바닥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어 휠체어 바퀴로 인해 바닥표면이 손상될 우려 또한 없다고 보인다.

또한 조력자가 등에 업거나 안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대개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

은 수치심과 불편함을 느끼며, 자칫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구가 탈착되거나 마비된 신체 부위에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바, 이러한 방법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휠체어에 신발 개념이 있어 피해자들의 지하법당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지하법당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영혜 위원 한태식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2011. 12. 29.자 11-진정-353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결정사항】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이더라도,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당해 수단의 선택에 따른 침해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당초 목적달성을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물에 반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또는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2011. 6. 4.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승강기를 이용하였다. 이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상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가 관리하는 상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택배와 화물이 유통·운반되며, 화물운반 작업자들이 승객용승강기에 화물을 싣는 행위로 인해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2011년 초 3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영화관 측의 요청으로 2011. 4월경 각 층 승객용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당사가 그동안 화물운반 작업자들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계속하였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말뚝을 제거하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관리인들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상시 감시하기도 어려우므로 말뚝의 설치 필요하다.

2)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상가를 방문하는 경우는 한 달에 1~2명 정도에 불과하며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설치된

말뚝을 탈착하여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옆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표기된 안내표지판도 부착 운영 중이다.

다. 참고인

1) ○○○(상가 4층 소재 ○○영화관 대표이사)

승객용승강기에 화물을 싣는 행위로 인해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2011년 초에 안전사고를 여러 번 당하여 상가 관리실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하였다.

2) ○○○(상가 4층 소재 ○○○○시네마 운영팀장)

○○○○시네마를 방문하는 휠체어 사용자는 한 달에 1~2명 정도이지만, 시네마 대관 시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방문한 적도 있다. 진정한 외에 ○○○○시네마를 방문한 다른 휠체어 사용자도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으로 출입이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한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2011. 6. 4. ○○○○상가 4층에 위치한 ○○○○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 때문에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승강기를 이용하였다.

- 나. 피진정인은 화물운반자들이 승객용승강기에 화물을 싣는 행위로 인해 상가 이용객들이 안전사고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 측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2011. 4월경 상가 1층에서 4층까지 운행하는 승객용승강기의 각 층 출입문 앞 정중앙에 폭 8cm, 높이 60cm 정도의 탈착형 원형 말뚝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는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다. 피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승객용승강기 이용을 요청할 경우 상가 1층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말뚝을 일시 제거하여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2011. 7월경 상가 각 층의 승객용승강기 외부 측면에 “휠체어 이용은 02-743-6131”이라는 안내표지판(가로10cm×세로10cm)을 설치하였다.
- 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상가 2층 및 3층에 위치한 약기상가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가 4층은 승객용승강기 외에 별도의 승강기(진정관련 시설물의 건너편 동에 위치)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으나 두 개의 건물 동을 연결하는 경사로의 경사각이 1/8 이상으로 매우 급하여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경사로를 이용할 수 없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할 때,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물에 반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또는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화물운반자들이 승객용승강기에 화물을 싣는 행위로 인해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 고객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던바, 고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승객용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하여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상업시설로서 상가에 설치된 승객용승강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말뚝 설치라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피진정인은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승강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화물운반 금지 안내표지판 부착, 상가 입주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 안내 및 계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적발 시 이를 경고·제재할 수 있는 자체관리규약 제정, CCTV, 경고방송, 경비원 등을 활용한 화물운반 현장제재 등 상가 관리주체로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말뚝 설치라는 편의적인 수단을 선택하였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행위로 승강기 이용 고객들이 찰과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사실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말뚝을 설치한 것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의 원칙 상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말뚝 설치 외의 다른 수단을 선택할 경우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과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진정인이 말뚝 설치라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인해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말뚝 설치의 상가 내 비상사태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신속한 대피에 방해가 되어 심각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휠체어 사용자가 말뚝을 보게 되면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위축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말뚝이 탈착형이어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탈착이 가능하다 해도 각 층 이동시 마다 연락하고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휠체어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말뚝 설치가 휠체어 사용 고객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객용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휠체어를 장애인보조기구로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이용 제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승객용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영혜 위원 한태식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조정)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3

2012. 5. 25.자 11-진정-0555300 결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의 차등 부과】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에 있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
-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되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한 2층 거주세대에게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승강기 없이는 2층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제18조 제1항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

- 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시·도 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시 ○○○단지 ○○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라고 한다) ○○○동 2층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이다.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층은 원래 승강기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진정한 세대가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진정한 세대는 2010. 2월부터 2012. 2월까지 2년 동안 타 세대보다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매월 부담하였다.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 세대에 비해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 아파트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2층 세대는 승강기 전기료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비도 면제해주고 있으나, 장애인 및 노약자가 있거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등 필요에 의해서 승강기 사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승강기 사용신청을 하면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다만,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앞집의 승강기 전기료를 포함한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부과 방식은 공동주택의 특성으로서 장애인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일 진정한 세대가 본인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만 납부하겠다고 한다면 최고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승강기 전기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저층에 사는 세대는 전기료를 적게 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전기료 부과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를 2배 부과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상의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아파트는 입주민의 청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층에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층에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2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필요에 의해 승강기 운행을 요청하는 경우,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3층 이상 거주 세대와 동일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층 이상 거주 세대에 비해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 피진정아파트는 같은 동이라도 각 라인별로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각 라인별 매월 승강기 전기료가 산출되며, 각 라인별 승강기 전기료 총액을 1층,

2층 거주세대를 제외한 3층 이상 거주 총세대수로 나누어 3층 이상 세대에게 매월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다.

다. 진정인 세대가 거주한 피진정아파트 ○○○동은 1997년에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15층 계단식 구조로 총 3개 출입 라인(1~2호, 3~4호, 5~6호)이 있으며, 진정인이 거주하는 ○○○호는 같은 동 ○○○호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2월부터 2012. 2월까지 총 25개월 동안 같은 동 3층 이상에 거주하는 총 26세대에 비해 매월 2배(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가 부과되어, 진정인 세대는 47,99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라. 피진정아파트 승강기 전기료는 ‘○○○단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2층 이하를 제외하고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되며, 승강기 전기료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 중순경 피진정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 건을 매월 의결하고 있다.

마. 피진정아파트 ○○○동의 3-4호 출입라인을 운행하는 승강기 내부에는 CCTV가 장착되어 녹화되고 있으며, 진정인의 앞집 세대인 ○○○호 거주자는 2011. 3. 5.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피진정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타 세대에 비해 2층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사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제한하였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장애인 세대에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이 차별인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피진정인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2층 거주세대는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타 세대에 비해 장애인 세대에게 2배의 금전적 부담을 안게 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승강기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 시설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바, 장애인이라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납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다. 승강기 전기료를 2배 부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i) 공동주택 관리차원의 특성상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아파트 3층 이상 거주 세대의 거주층, 세대원수, 세대별 방문객수, 세대별 승강기 사용횟수 등을 모두 감안하여 개별 세대별 승강기 전기료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3층 이상 거주 세대에는 승강기 전기료를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 ii) 개별적 필요에 의해 승강기 사용을 신청하는 2층 거주 세대의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서도 승강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iii) 2층에 거주하는 승강기 사용신청 세대의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피진정인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휠체어 사용자가 거주하는 진정한 세대에도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i) 피진정아파트 ○○○동 3-4호 출입라인을 운영하는 승강기 내부에 CCTV가 장착되어 녹화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호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매번 확인할 수는 없을 지라도 확인업무 자체가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진정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진정한 세대의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함에도 진정한 세대에게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토록 함으로써 피진정인이 관리주체로서의 수행해야 할 관리업무 부담을 진정한 세대에 금전적 부담으로 전가시킨 점, ii) 3층 이상 거주세대에 균등하게 부과되는 승강기 전기료가 월 평균 1,920원(세대당 71원 추가 부담)인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또는 승강기 사용 전체 세대가 이를 감당하기에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iii) 진정한 세대를 제외하고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한 2층 거주 세대에서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2층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승강기 사용을 위해서는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iv) 아파트 승강기는 아파트 거주자 및 방문객 등에게 개방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 거주자 및 방문객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승강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 대한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피진정인이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진정한 세대에게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승낙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세대의 승강기 이용에 제한을 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2012. 11. 29.자 12-진정-0012500 결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차별】

【결정사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 설치 권고

【결정요지】

【1】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주출입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심리적 위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점,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점, 전체 9개동 중 3개동을 제외하고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거주하는 등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점 등으로 볼 때,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주거시설 접근, 이용시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

【2】 동별 경사로 설치비용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에 우선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모든 동에 설치할 경우에도 피진정아파트가 부담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진정아파트의 재건축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닌 점, 구조나 건축년도가 유사한 인근 아파트에서는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송○○

【피진정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라 한다.)에 살고 있는데, 피진정건물 주출입구에 계단이 9칸 있으나 경사로가 없어 뇌병변장애인인 일곱 살 딸아이가 외출하려면 어른 두 명이 휠체어를 옮겨 주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2011년 ○○구청에 문의하였는데, 신청만 하면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고, ○○시청에서도 주출입구의 보행편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행정지도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주거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아파트는 1981년 준공된 노후된 아파트로 10층짜리 9개동, 총 1,23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없고 2010. 10. 18.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통과되어 재건축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동안 경사로 설치 건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여러 차례 검토하였으나, 승강기 탑승 위치 또한 반개 층(9계단)을 도보로 이동해야 접근이 가능한 구조라서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이다.

진정인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진정인이 거주하는 6동 출입구에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층,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1,230세대 전체를 위해 비용을 집행하여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설치가 어렵다.

다. 참고인

1) ○○시청 장애인복지과

공동주택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구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신청하도록 2011. 10. 28. 안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와 전체 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시설물관리 주체인 ○○구청과 피진정아파트 관리소에 행정지도 하겠다는 것을 진정인에게 안내한 바 있다. 그리고 ○○구청 주택관리과에서도 2012. 11. 5. 관리소장을 면담하여 ○○구청에서 시행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피진정아파트 9개동에 1층 경사로를 설치하는 비용은 총 5,000만원 정도로 ○○구청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피진정아파트에서 2,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대표자 회의시 제안할 것이다. 2012년에는 1단계로 경로당 경사로와 진정한 거주동에 우선 설치하고, 2013년에 2단계로 아파트 전체 8개동의 1층에 경사로 설치를 유도하여 재원 부담을 분산하도록 할 것이다.

2) ○○구청 장애인복지과

진정인은 2011. 9. 이사 예정인 ○○아파트의 1층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같은 해 7. 6. 접수하였고, 본 구청에서는 같은 달 20.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원 신청 하도록 회신하였다. 그리고 동 입주자대표회의에 2011. 11. 7.까지 긴급 추가신청 하도록 2011. 10. 28.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경사로 문제는 두 번에 걸쳐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모든 동과 모든 층에 혜택이 돌아가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본 구청에서는 2012. 2. 관리사무소장과 통화하여 신청하도록 계속 촉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 건물 부결되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만 신청하였다. 본 구청

에서는 1층 경사로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므로 2012. 12. 20.까지 신청하도록 재차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피진정아파트 관리소장의 의견은 ‘81년 준공 단지로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12년 째 아파트 도색도 안하고 있어 주민들이 경사로 설치 비용 지출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피진정인의 의견은 ‘타 주민과 형평성 차원에서 9개 동 전체를 해야 하며, 아파트 구조상 엘리베이터가 1층과 2층의 중간에 설치되어 누구나 반개 층은 오르내려야 하므로 1층 경사로는 해결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그리고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진정아파트는 1981년 준공되어 10층짜리 9개동으로, 총 1,23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없고 2010. 10. 18.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통과된 상태이다. 각 아파트의 출입구는 9개의 계단이 있으며 각 동별 승강기는 각 층에서 반개 층(9계단)을 도보로 이동해야 접근이 가능하다.

나. 진정인은 2011. 9. 27. 피진정아파트에 이사 왔으며, 6동 1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진정아파트 주출입구에 경사로는 없어서 이사 이후 현재까지 매일 피해자가 유치원을 가고 올 때마다 진정인이 다른 성인과 함께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하고 있다.

다.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는 진정인의 요구에 대하여 두 차례 논의하였지만 피진정아파트의 구조가 각 층의 승강기를 이용할 때 9개의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진정인이 거주하는 6동의 출입구에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아파트에 이사하기 전 2011. 7. ○○구청과 ○○시청에 경사로 설치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신청하도록 2011. 10. 28. 최초로 안내하였고, 이후에도 피진정인에게 촉구한 바 있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마.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전체 9개동 중 6개동, 29명으로 동별 거주인원은 평균 4~6명인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은 12명이다.

〈표 1〉 ○○아파트 동별 장애인 거주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3동	5동	6동	7동	8동	9동
장애인	17	4	2	3	2	3	3
하지 장애인 (보행불편)	12	뇌병변1급, 지체(하지) 1급	뇌병변 1급, 지체(하지) 4급	뇌병변1급, 지체(하지) 1급	뇌병변1급, 지체(하지)4 급	뇌병변1급, 신장2급	호흡기 1급

5.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시설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되며, 더욱이 아파트는 대단위 가구가 주거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 주택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i)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들어 올려야 하며, 특히 혼자서 이동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력으로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는 점, ii)이용이 빈번한 주출입구를 이러한 방식으로 매번 이동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심리적 위축감과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iii)장애인을 잘못 업어서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구가 탈착되거나 계단에서 실족하여 굴러 떨어질 경우 조력인 및 장애인 모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등 안전사고가 염려된다는 점, iv)피진정아파트의 경우 대단위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전체 9개동 중 3개동을 제외하고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동별로 거주하는 등 피해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시설을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i) 경사로 설치비용은 동별로 500만원~1,000만원 소요되는데,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6동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의 보조금(1,000만원)만으로 가능하고, 모든동에 설치할 경우 피진정아파트가 부담할 금액은 2,000만원 정도(세대별 16,000원 상당)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 관할구청에서는 피진정아파트의 재건축이 최소 5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재건축이 당장 실행되지 않는 점, iii) 아파트의 구조나 건축년도가 유사한 인근 아파트에서는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아파트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은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물로 한정하는 바, 피진정아파트는 1981. 준공된 시설물이므로 동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윤남근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2013. 1. 29.자 12-진정-0782400 결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3,400원을 환급할 것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그리고 피진정시설 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 【2】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 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지 불특정 다수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월정액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피진정회사가 비장애인에게는 일반주차구역에 장·단기 주차를 허용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단기 주차만을 허용하고 장기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주차서비스를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임.
- 【2】 이렇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월정액주차 신청을 피진정회사가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시설물에서 월정액 주차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월정액 주차 신청을 피진정회사가 거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주)○○○○개발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 가. 피해자로부터 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3,400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것,
 - 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피진정회사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진정시설 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청장에게,
 - 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피진정시설 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나.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평소 이용하던 ○○타워 부설주차장 공사관계로 인근에 위치한 (주)와○○○개발(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이 관리하는 ○○○강남센터(이하 ‘피진정시설 1’이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012. 10. 15.부터

2개월 동안 월정액으로 주차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피진정회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월정액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월정액 주차는 일반주차구역에만 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월정액이 아닌 일일 최대 3만원의 주차료를 지불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일반 주차공간은 사실상 이용 할 수 없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일일 및 시간당 주차료로 총 1,083,400원의 주차비를 피진정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별하거나 고액의 주차비를 징수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피진정시설 1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접근성 및 편의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웰○○빌딩(피진정시설 1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빌딩으로 피진정회사가 소유·관리하며, 이하 ‘피진정시설 2’라 한다) 1층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15만원에 월정기주차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피진정시설 1의 지상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겠다면서 당사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진정시설 1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진정시설 1에 입주한 업무시설(어학원, 카페,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기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피진정시설 1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우선하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진정시설 1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불특정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해자의 월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당사는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피진정시설 1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기 주차를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차별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제출한 자료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하반신마비의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며, 핸드콘트롤러(가속 및 제동페달을 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애인 운전보조장치)가 장착된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피해자처럼 자가운전을 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조력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차를 할 경우, 폭 2.3m의 일반주차구역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 3.3m로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시설 1(소재지 : 서울시 ○○구 ○○동 ○○○-○)로부터 약 100m 정도 인근에 위치한 ○○타워(소재지 : 서울시 ○○구 ○○동 ○○○-○)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평소에는 ○○타워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2012. 10. 15.부터 2012. 12. 16.까지 2개월 동안 ○○타워 부설주차장 공사관계로 주차장이 임시 폐쇄됨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타워 입주자들은 ○○타워 관리소 측으로부터

터 인근의 피진정시설 1, 2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받았으며, 월주차비 150,000원을 2회에 걸쳐 지급 받았다.

다. 피진정회사는 2012. 10.경 ○○타워 주차관리소 직원으로부터 ○○타워 주차장 공사기간동안 ○○타워 입주자들이 피진정회사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라. 피진정회사는 피진정시설 1, 2를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피진정시설 1의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피진정시설 2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피진정시설 1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총 3면을 포함한 총 96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피진정시설 2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총 106면의 주차공간이 있다.

마. 피해자는 2012. 10. 15. 피진정시설 1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면 중 1면에 대해 피진정회사에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기 주차할 경우 피진정시설 1을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월정액 주차신청을 거절하면서 피해자가 피진정시설 2에 설치된 일반주차공간에 월정액 주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반주차공간에는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피진정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피진정시설 1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일일주차료 3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피진정시설 1, 2의 주차장 입구에는 “일일·시간주차, 월정기주차 환영”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피진정회사는 주차장 이용을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피진정시설 1, 2 내부에 위치한 시설물 이용과 관계없이 월정기주차, 일일주차, 시간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월정액 주차를 하는 경우 피진정시설 1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하고는 운전자는 피진정시설 1, 2의 주차장 중 원하는 곳에 선택하여 주차할 수 있다.

사. 피진정회사는 피진정시설 1, 2에 설치된 주차장 이용자에게 일일주차비 3만원, 시간주차비 기본 30분 2,500원(이후 10분당 700원)을 징수하며, 월정액 주차비의 경우 피진정시설 1 주차장의 경우 150,000원, 피진정시설 2 주차장은 130,000원 ~ 180,000원을 징수한다.

아. 피해자는 2012. 10. 15.부터 2012. 12. 6.까지 피진정시설 1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두 달에 걸쳐 총 39일 동안 주차하면서, 27일간 일일주차비로 30,000원씩, 총 810,000원을, 나머지 12일간은 시간당 주차비로 총 273,400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1,083,400원을 피진정회사에 주차비로 지급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등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규정을 종합해서 보건데,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시설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월정액 주차 이용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시설물 해당성 및 시설주관기관의 시설물 관리의무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5호는 ‘시설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피진정시설 1, 2에 설치된 주차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2) 피진정시설 2는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공중이용시설로서 2002. 8. 6. 증축을 하였으므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은 장애인등이 피진정시설 2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편의증진법」 제2조 제4호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인 ○○구청장은 그 소관 대상시설인 피진정시설 2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진정시설 1, 2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가능성

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진정회사는 피진정시설 1, 2의 주차장 입구에 “일일·시간주차, 월정기주차 환영”이라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일반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2)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피진정시설 1, 2 내에 설치된 교육연구시설(학원) 및 근린생활시설의 직접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는 피진정시설 1, 2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피진정회사는 비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주차장 이용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장애인주차구역 월정액 주차 이용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시설 1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면 중 1면을 월정액 주차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간 이용할 경우, 피진정시설 1에 위치한 어학원, 카페, 식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 장애인들의 주차불편을 야기하고, 그에

따른 시설물 이용 및 접근권을 일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해자가 월정액 주차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장애인들의 시설물 이용 및 접근권을 침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피진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타워 주차장 공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타워 입주자들이 피진정회사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피진정회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피진정시설 1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공사기간인 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주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진정회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점,

3) 피진정회사는 피진정시설 1, 2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내 일반주차구역에 대하여 피진정시설 1의 업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월정액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거부 논리대로라면, 피진정시설 1의 업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장애인들에게 월정액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피진정시설 1의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비장애인들의 주차편의 및 시설물 이용 상 편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 1의 업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장애인에게도 월정액 주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4) 그리고 피진정회사는 일반주차구역은 여유가 많이 있으므로 비장애인에게 월정액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지 불특정 다수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월정액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5) 설령, 피해자가 피진정시설 1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함으로써 다른 장애인들의 시설물 이용권을 침해하였다면,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일주차를 장기간 계속하거나 시간주차를 오랫동안 하는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같이, 피진정회사가 피해자로부터 27일간 일일주차비로 30,000원씩 총 810,000원을, 12일간은 시간당 주차비로 총 273,400원을 징수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게 월정액 주차를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피진정시설 1을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들의 주차편의 및 시설물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

6) 피진정인은 일반주차구역 내 월정액 주차를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허용했으므로 장애인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휠체어 승하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차구역에는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주차구역 내 월정액 주차를 허용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월정액 주차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즉, 피진정회사가 비장애인에게는 일반주차구역에 장·단기 주차를 허용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단기 주차만을 허용하고 장기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주차서비스를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7)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제시한 사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월정액 주차 신청을 피진정회사가 거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피진정인이 피진정시설 1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장애인들의 시설물 이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월정액주차 신청을 피진정회사가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시설물에서 월정액 주차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로서 이는 시설물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및 거부를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 자동차 관련 시설
- 가. 주차장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②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6.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7.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2014. 10. 21.자 13-진정-0951100 결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
- 【2】 ○○도 ○○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탑승하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편의 시설임에도, 피진정인이 영업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휠체어를 장애보조기구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평보행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한 바, 피진정인이 도난방지를 위한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참조결정】

안전행정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의안번호 판정 제2012-40호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마트 ○○점 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수동휠체어 이용자로 2013. 12. 1. ○○마트(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비장애인에게 계단과 수평보행기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장애인의 엘리베이터 이용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는바, 이는 시설물의 접근과 이동수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이 사건 시설의 7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4층의 매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층은 영업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1층까지 내려가 장애인임을 알리고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기다렸다가 직원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진정인은 다시 매장에서 7층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진정인이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여 나갈 때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매장을 둘러본 시간을 제외하고 40여분이었다.

나. 피진정인

당점은 ○○○에 위치한 면적 13,118㎡의 판매시설로 지하 1층에서 10층까지 총 11개 층에 영업용 매장과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객을 위한 층간 이동수단으로는 계단과 수평보행기 이외에도 엘리베이터 5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은 엘리베이터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주요 층간 이동수단이 수평보행기(경사각도 12도)이므로, 해당 층에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대부분 수평보행기로 이동하고 있다.

수평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으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보안요원이 엘리베이터의 운행제한을 해제하여 원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고객이 매장내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며, 영업상 불가피한 조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수평보행기 안전사고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43,989.347㎡의 판매시설로, 층간 이동수단으로 계단과 수평보행기 외에 엘리베이터 5대가 설치되어 있다. 계단과 수평보행기로는 이 사건 시설의 전층을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는데 반하여, 5대의 엘리베이터 중에서 4대는 영업매장인 2-4층의 입구가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고, 나머지 1대의 엘리베이터는 2-4층 구간에서는 멈춤버튼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층에서 매장으로 이동하거나 매장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려야 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승강기 사고 원인을 조사·판정하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엘리베

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휠체어 탑승자가 수평보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현장 안전 요원의 도움을 요청하여 이동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휠체어 탑승자가 수평보행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휠체어 탑승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시설의 관리자로서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란 피진정인이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도의 동등한 편의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비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반하여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면 동등한 정도의 편의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수평보행기는 비장애인이 쇼핑카트를 밀고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휠체어를 장애보조기구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설령 피진정인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이동시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평보행기는 그 속성상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탑승하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편의 시설임에도, 피진정인이 영업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도난방지를 위한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2015. 9. 18.자 15-진정-0290800 결정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 【2】 경상북도 ○○시장에게, ○○동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남·여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과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물의 신축과 증축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1조에 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2】 대상 시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기존 공간을 재배치를 하면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이 건물의 소유자인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진 정 인】 이○○

【피진 정 인】 ○○동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동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도 ○○시 ○○동주민센터의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청사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 3층 건축물로 비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남자화장실, 2층에 여자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은 접근이 가능한 1층 남자화장실에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다. 여성 장애인이 방문하게 되면 직원의 안내를 통해 남자화장실 사용자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의거 장애인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현장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동주민센터로 사용되는 건물은 ○○시 소유의 건축물로서, 1991. 9. 18.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2. 6. 27. 증축되었다.

나. 비장애인 화장실은 각 층에 남·여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공용으로 1층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 1층 화장실 주변의 기존 공간 재배치를 통해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이므로 이 사건의 ○○동주민센터 건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7. 4. 10.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별표2 제3호 가목 (7)호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주민센터로 이용되는 건물에는 「편의증진법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7)의 화장실 설치기준과 달리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공간을 재배치를 하면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이 건물의 소유주인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남·여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과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물의 신축과 증축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 5. 생략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 2. 생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 ~ (6) 생략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 (17) 생략

나. 생략

4. ~ 6. 생략

2017. 6. 12.자 16-진정-04063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1】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등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경사로를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아파트 출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사로 등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임.

【2】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가 자비로 탈·부착이 가능한 경사로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의결하였으나,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주거시설로서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은 장애인 입주민의 이동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동식 경사로의 설치를 위해 피진정아파트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아파트에서 경사로의 구입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진 정 인】 나○○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경사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어머니이며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잠실우성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라 한다) 1층 출입구에는 경사로가 없고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8. 개최된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사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2동 소유자의 3/4 동의를 받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72세대 중 찬성 36세대, 반대 6세대로 3/4 동의에 미달하여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6. 10. 입주자대표회의에 철거 가능한 PE재질의 슬로프 설치에 대해 다시 안건이 상정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진정아파트가 1981년 준공되어 현관계단의 폭이 좁아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할 공간이 없고 계단구조가 급경사여서 슬로프를 상시 설치할 경우 동절기 결빙이나 우천 시 미끄럼으로 인하여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사용할 때만 설치할 수 있는 탈·부착식 슬로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되 해당 라인 거주세대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한 경우)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슬로프 설치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아파트는 1981. 12. 8. 사용 승인된 최고 15층의 아파트이며 1,842세대가 거주한다. 피진정아파트의 각 동 1층 출입구에는 경사로가 없고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피해자는 이동에 제한이 있다.

나.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사로 설치에 대해 2회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2016. 5. 17.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2동) 소유자 3/4의 동의를 받아 경사로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3/4의 동의를 받지 못해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2016. 10. 11. ‘장애인 통로(경사로) 설치 절차 변경의 건’이 다시 상정되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라인 거주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탈·부착식 슬로프를 설치하되 슬로프 설치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진정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6. 10. 11.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기 의결사항을 공고하고 진정인의 남편에게 의결사항대로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해당 비용을 피진정아파트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아파트 출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사로 등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가 자비로 탈·부착이 가능한 경사로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주거시설로서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은 장애인 입주민의 이동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동식 경사로의 설치를 위해 피진정아파트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아파트에서 경사로의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경사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한수웅

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1

2011. 4. 26.자 10-진정-373100 등 13건 (병합) 결정 【 시내버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결정사항】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버스 내 문자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안내판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인 피진정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진정인】 김○○

【피해자】 정○○, 황○○, 장○○

【피진정인】 ○○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외 11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할 것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이 2010. 4.부터 5.까지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승차해 보니, 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장치, 이하 ‘문자안내판’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들이 있었다. 이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므로 조사 및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내버스 업체(○○교통주식회사 등 10개 업체)

국토해양부 등은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2009. 3. 이후에 대차 또는 폐차되는 시내버스 내부에만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라는 공문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주식회사 등 서울 시내버스 업체는 2009. 3. 이후 대차 또는 폐차되는 모든 시내버스 내부에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운행 중이다.

2) 마을버스 업체(○○운수주식회사 등 2개 업체)

○○운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11번 버스 및 화송옥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10번 버스는 마을버스이다.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상의 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금 운행 중인 마을버스 내부에는 문자안내판이 없다. 그러나 향후 차량이 도달하여 신차로 교체 시에는 문자안내판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 진술

1) 국토해양부장관

가)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시내버스 내부에 문자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 3. 이후에 차량이 만료되어 대차 또는 폐차되는 시내버스에 한하여 문자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나) 2005년에 제정된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제1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등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버스)에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문자안내판의 오작동 방지 및 작동 안정화를 위해 일정 시험기간이 필요하였고, 시내버스업계의 경제적 부담 및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위 문자안내판 간의 상호 충돌 문제 해소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문자안내판 설치가 일정기간 동안 유보되었던 것이다. 그 후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및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이 점차 보완되는 등 문자안내판 설치를 위한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2009. 3. 1. 이후 대차 또는 폐차되는 시내버스부터 문자안내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다)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면허제로 운영되다가 2008. 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내버스 등에 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이 사정을 감안하여 문자안내판 의무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서울특별시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시내버스 내부에 문자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문자안내표지판 설치 세부기준」에는 2009. 3.에 대차 또는 폐차되는 시내버스부터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9. 5. 4.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시공문을 발송하여 2009. 3.에 대차 또는 폐차되는 시내버스부터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 3. 7.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교통약자법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의 지시공문을 발송하여,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문자안내판은 국토해양부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 설치를 유보하도록 하였고,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진정인들(시내버스 업체)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문자안내판의 설치를 유보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9. 전국 16개 광역시·도 및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문자안내판 설치 세부시행 기준 알림」이란 제목의 지시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문자안내판이 도입된 기간이 짧아 일정한 시험기간이 필요했고 버스업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문자안내판 설치를 유보하였으나,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의 확대와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문자안내판 설치 요구 등 제반 여건이 변동되어 그 동안의

유보를 철회하고 새로이 문자안내판 설치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통지하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중에서 2009. 3. 1. 이후에 대차 또는 폐차되는 버스부터 단계적으로 버스 내부에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다.

다. 시내버스 업체인 피진정인들은 국토해양부가 위 지시공문을 보내움에 따라 2009. 3. 이후에 대차 또는 폐차되는 버스부터 문자안내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2010. 8. 말 현재 피진정인들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중에 문자안내판을 설치한 버스의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사건번호	피진정인	문자안내판 설치 현황 등
10진정 372000	○○운수	1. ○○번 버스 : 총25대, 2009. 3. 이후, 대차 또는 폐차된 차량이 없어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이 없음. (총25대 중, 설치0대, 미설치25대) 2. 총 보유대수 89대 중 4대 설치
10진정 372100	○○교통	1. ○○번 버스는 총30대로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은 6대이고, 미설치된 차량은 24대임. (총30대, 설치 6대, 미설치 24대) 2. 총 보유대수 46대 중 22대 설치
10진정 372200	○○여객	1. ○○번 버스는 총 6대 중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은 1대이고, 나머지 5대는 차량이 아직 도달되지 않아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음 2. 총 보유대수 172대 중 22대 설치
10진정 372300	○○운수	1. ○○번 버스는 총19대로 2009. 3. 이후, 대, 폐차된 차량이 없어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이 없음. (총 19대 중, 설치 0대, 미설치 19대) 2. 총 보유대수 128대 중 3대 설치
10진정 372900	○○운수	○○번 버스는 총12대로 2009. 3. 이후, 대, 폐차된 차량이 없어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이 없음. (총 12대 중, 설치 0대, 미설치 12대)
10진정 372400	○○교통	1. ○○○번 버스는 총36대로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은 8대이고, 미설치된 차량은 28대임. (총 36대 중, 설치 8대, 미설치 28대) 2. 총 보유대수 87대 중 16대 설치
10진정 372500	○○여객	1. ○○번 버스는 총20대로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은 3대이고, 미설치된 차량은 17대임. (총 20대, 설치 3대, 미설치 17대) 2. 총 보유대수 158대 중 88대 설치

사건번호	피진정인	문자안내판 설치 현황 등
10진정 372600	○○교통	1. ○○○번 버스는 총30대로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은 6대이고, 미설치된 차량은 24대임. (총 30대, 설치 6대, 미설치 24대) 2. 총 보유대수 121대 중 11대 설치
10진정 372700	○○여객	1. ○○번 버스는 총11대로 2009. 3. 이후, 대, 폐차된 차량이 없어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이 없음. (총 11대 중, 설치 0대, 미설치 11대) 2. 총 보유대수 128대 중 3대 설치
10진정 372800	○○교통	1. ○○번 버스는 총8대로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은 1대이고, 미설치된 차량은 7대임. (총 8대, 설치 1대, 미설치 7대) 2. 총 보유대수 84대 중 44대 설치
10진정 373000	○○운수	1. ○○번 버스는 총19대로 2009. 3. 이후, 대, 폐차된 차량이 없어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차량이 없음. (총 19대 중, 설치 0대, 미설치 19대) 2. 총 보유대수 59대 중 4대 설치

라. 마을버스 업체인 피진정인 복지운수주식회사가 보유한 마을버스는 총 18대(○○번 및 ○○번)인데 모두 문자안내판이 없다. 운행노선은 미아삼거리 전철역에서 장위동 소재 북서울 꿈의 숲을 경유하여 수유전철역까지인데, 09번 노선의 정류장은 총 19개소이고 11번 노선의 정류장은 총 22개소이다.

마. 마을버스 업체인 피진정인 화송옥수운수가 보유한 마을버스는 총 8대(○번 및 ○○번)인데 모두 문자안내판이 없다. 운행노선은 옥수동 소재 극동아파트에서 옥수전철역까지이고, 9번 노선에는 총 15개의 정류장이 있고 10번 노선에는 21개 정류장이 있다.

바. 2011. 1.말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22개의 마을버스 운행업체가 있으며 이 업체들이 보유한 마을버스는 총 1,366대인데, 1개 업체당 마을버스 보유대수는 최소 7대에서 최대 34대이다.

사. 2010. 8.말 기준으로 버스 내부에 문자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1대당 설치비용(기계 및 설치비용 포함)은 110만원 내외이며, 서울특별시는 문자안내판 설치비용을 버스 차령기간(버스운행 수명 : 9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5. 판단

가. 버스 내 전자문자안내판이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 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 및 제8항은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별표 1]과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는 그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시내버스에 있어서 문자안내판의 설치를 법령에 규정한 것은 문자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자안내판 설치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인 피진정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나. 국토해양부가 2009. 3. 1. 이후에 대차 또는 폐차되는 시내버스에 한하여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피진정인과 같은 시내버스 업체가 장애인에게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교육·지원 및 감독을 해야 하며, 아울러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의 기준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10. 9. 모든 시내버스 업체에게 적용되는 문자안내판 설치와 관련된 시책을 시행하면서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에서 2009. 3. 1. 이후에 대차 또는 폐차되는 시내버스에 한하여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바,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문자안내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와 버스업체의 경제적 부담(1대당 설치비용 110만원 내외) 등을 이유로 2009. 3. 1.부터 대차 또는 폐차되는 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009. 3. 1. 이후에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는 이미 문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운행 중이고 국토해양부도 기술적 장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문자안내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라는 사유는 더 이상 문자안내판 미설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의 경제적 부담 부분은 서울특별시 버스 차령 기간 동안 문자안내판의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바, 시내버스업체들이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버스 내 문자안내판 설치 근거 법률인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에 시행되어 6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문자안내판이 설치된 시내버스가 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토해양부의 「문자안내판 설치 세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문자안내판 실적이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점,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승합차(시내버스 등)의 차령은 9년으로 2009. 3. 1. 이전부터 운행 중인 버스의 경우는 향후 최대 9년이 경과되어야만 신규 버스가 노선에 투입되면서 문자안내판이 설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토해양부의 현행 기준과 같이 2009. 3. 1. 이후 대차 또는 폐차되는 버스에만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등에도 문자안내판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문자안내판 설치 세부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서 마을버스를 문자안내판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해 시내버스 등은 문자안내판 설치대상으로 규율되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3. 1. 이후에 대차 또는 폐차되는 경우 새로 투입되는 시내버스에는 문자안내판이 설치되고 있는 반면에, 마을버스는 위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한 문자안내판의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자안내판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

마을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의 경우 2011. 1월말 현재 총 122개의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총 1,366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마을버스가 중요한 교통수단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 당 정류장 수도 15개 내지 22개에 이르는바, 마을버스 내부에 문자안내판이 없을 경우 청각장애인이 마을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시내버스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점, 마을버스도 문자안내판의 의무적 설치대상인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노선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을버스가 의무적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그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제·개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자안내판 의무적 설치대상에 마을버스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위 시행령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마을버스는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추진 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대중교통에 해당되는 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5호에서 교통사업자의 경우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제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된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업체인 피진정인들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시내버스 업체

피진정인인 시내버스 업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관련 법령은 이러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하여 경과규정 내지 시행유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인 시내버스 업체들이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버스에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이 일부 시내버스에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못한 경위를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10. 9. 국토해양부가 2009. 3. 1. 이후에 대차

또는 폐차되는 시내버스에 한하여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2009. 3. 1. 이전부터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에는 문자안내판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행정의 중앙기관으로서 피진정인들에 대해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자안내판 설치 근거 법령인 「이동편의 증진법」을 주관하는 소관 부처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들이 일부 시내버스에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조치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마을버스 업체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업체만이 문자안내판 설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마을버스 운영 업체인 피진정인 ○○운수 및 ○○옥수운수가 문자안내판을 마을버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 불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들의 지도·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태훈 위원 한태식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012. 7. 18.자 11-진정-0317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므로, 피진정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제2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3조 및 별표2, 「도로교통법」 제2조·제6조·제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구 ○○○○○○길(이하 ‘피진정 도로’라 한다.)은 양방향 통행 차도이며 보도(이

하 ‘피진정 보도’라 한다.)는 한 쪽에만 있는데 보도 폭이 비좁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방문 시 보도로 통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진정인은 2011. 4. 15. ○○구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0.8m인 보도 폭을 1.2m로 넓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설치된 보도이므로 편의증진대상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도 폭을 넓히려면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변경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1. 5. 31. 보도확장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왔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구 ○○○동 00-00(복지관)에서 00-000 구간에 걸쳐 개설된 피진정 도로는 ○○공사(舊○○○○공사)에서 1997. 12. 24.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2년 사업완료 시 개설하여 본 기관에 기부 채납한 도로로서 1997. 12. 24.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승인일 이후인 1998. 4. 11. 시행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2006. 1. 28.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피진정 도로는 ○○○○아파트(2,400세대) 후문 출입로 및 인접 일반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면도로로서, 보도 폭이 1.5m이나 보도 상 장애물(보안등)로 인하여 순보행 폭이 약 60~70cm로 협소하여 보행자 및 휠체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 거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절차를 거쳐 양방향 통행인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차도축소 및 보도 확장(보안등 이설)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 본 기관은 주변 거주민들에게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2011. 5. 의견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일방통행로 지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불가피하게 단시일 내 보도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피진정 도로변 보도정비(확장)는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정비가 가능한 ○○동 00-00호 복지관 앞 단절된 보도 연결 및 보안등 1개소에 대한 이설 공사를 2011. 6. 30. 완료하여 보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는 ○○○○공사가 피진정 도로를 신설하여 도로관리청인 피진정기관에 기부 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1997. 12. 24. 승인한 바 있으며, 동 사업계획은 1997. 12. 31. ○○○○시 고시 제1997-○○○호에 게재되었다.

나. 피진정 보도는 전체 길이 약 240m로 보도의 유효폭은 1m이나 약 20m 간격으로 피진정 보도 위에 설치된 10개의 보안등으로 인해 보안등 밑기둥 부분의 보도 유효폭은 55cm에 불과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 주위로는 통행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 보도의 일부구간은 바닥면의 상하 기울기가 12도에서 26도에 이르고, 좌우기울기도 10도에서 16도가 되는 등 보도의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여러 곳에 걸쳐 있고, 보도의 남쪽 시작부분에 약 15cm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을 위해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가 없는 보행자들의 경우에도 2명 이상 나란히 걷기에는 보도 폭이 협소하여 차도로 내려와 통행하고 있다.

다. 피진정 도로는 전체 길이 약 240m, 도로폭 6m(도로 가장자리 제외 시 폭 5m)의 양방향 통행이 되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도로의 한 쪽에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피진정 보도의 맞은편에 항상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아 주행차량들의 교행이 어려우며,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 시 소형 주행차량의 경우 휠체어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추월해 통행하고 있으며, 대형 주행차량의 경우 차도의 폭이 좁아 휠체어를 추월하지 못하고 휠체어 뒤를 따라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 피진정 도로의 입구(○○구 ○○○동 00-00)에 위치한 복지관은 2010. 12. 개관한 종합복지관으로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이 위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보치아 경기가 있을 때에는 약 100여명 정도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약 40~50명 정도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이 중 피진정 보도를 이용하려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보도의 폭 및 기울기, 턱 낮추기 등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걱정하게 되어있지 않아 피진정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해 복지관을 왕래하고 있다.

마. 피진정기관은 피진정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장애가 없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피진정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2011. 5. 피진정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140명의 주민 중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134명의 주민이 반대하였고, 6명이 찬성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경찰서에 2011. 5. 17. 피진정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요청을 위한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경찰서는 피진정 도로에

○○동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어 이에 따른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피진정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2011. 6. 7. 피진정기관에 회신한 바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는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보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도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 보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보도’란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피진정 도로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1997. 12. 24. 당시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179호로 1989. 12. 30. 전부개정, 시행일은 1989. 12. 30.) 제33조 제2항은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994. 12. 30. 보건복지부령 1호로 제정되고, 1995. 1. 1.부터 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에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너비, 바닥의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 보도는 보도의 유효폭, 기울기, 턱낮추기 등에서 '○○○○지구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시행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은 1m에 불과하며 약 20m 간격으로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 유효폭은 55cm에 불과하므로 통상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이 80cm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등이 설치된 피진정 보도의 부분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과할 수 없다는 점, 피진정 보도의 일부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매우 심하며, 보도의 남쪽 시작부분에 턱낮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피진정 보도의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없으며,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로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내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적합하게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은 피진정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장애가 없는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피진정 보도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피진정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대다수가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 보도의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진정 보도 위에 설치된 보안등 10개를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거나 보안등의 밑기둥이 없도록 제작된 최신 기술이 반영된 형태의 보안등으로 현재의

보안등을 변경 설치할 경우,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 유효폭이 55cm에서 1m로 확장되므로, 통상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통과 유효폭이 80cm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등만을 이전 및 변경하더라도 휠체어로 통행하기에 다소 불편은 따르지만 휠체어로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의 유효폭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피진정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평지이므로 피진정 보도의 일부 구간 중 휠체어로 통행하기에 기울기가 심하며, 평탄하지 않은 바닥면을 평탄하게 재시공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마찬가지로 피진정 보도 남쪽 시작부분의 약 15cm 높이의 턱을 낮추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 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피진정 보도를 확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서도 피진정 보도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의 판례에서는 일방통행지정으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확보 등 공익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시(2009 구합5177)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근처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당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 우선 시 될 수 없으며, 나아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더 중요시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한 사유는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을 위해 적합하게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편의증진법」 적용 여부

피진정 도로 및 피진정 보도는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며, 동 계획이 ○○○○시로부터 1997. 12. 24. 승인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1998. 4. 11.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6. 1. 28.부터 시행된 「이동편의증진법», 2008. 4. 11.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바, 위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관하여 위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마.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이 피진정 보도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 보도 등 재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 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현행)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179호, 1989.12.30, 전부개정]

제33조(편의시설) ②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 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나 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 미끄럼없는 평탄한 보도,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로 마감한 단차없는 횡단보도

② 제1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3조 (세부설치기준 및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그 설치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별표 2]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제3조관련)

1. 도로

가. 일반사항

- (1) 보도는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通行할 수 있도록 보도의 너비, 바닥의 재질,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로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점형유도블록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과 기울기

- (1) 휠체어사용자가通行하기 위하여서는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유모차등과 서로 교행하기 위하여 1.8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경사진 보도가 길게 연장될 경우에는 30미터마다 설 수 있는 수평면 휴식참을 1.5미터 길이만큼 설치할 수 있다.

다. 보도의 경계

- (1)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경계석등과 같은 뚜렷한 표시가 없는 곳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보도와 차도의 교차지점에 시각장애인의 보도이탈방지과 안전을 위하여 점형 유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보도바닥재

- (1) 보도의 바닥표면은 장애인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보도블록·벽돌등으로 보도를 덮을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 (4) 배수구등의 덮개는 휠체어의 바퀴나 지팡이 끝이 틈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자구멍이나 틈새의 간격이 2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 (5) 가로수의 가지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지면에서 2.5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6) 가로수의 밑부분이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 보도나 경사로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블라드(bollard)를 설치할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위하여 그 간격이 0.9미터이상이어야 한다.

7. 「도로교통법」(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법률 제5296호, 1997.3.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2012. 7. 18.자 11-진정-05274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
-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항공기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동등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기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에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주)○○○항공 대표이사

【주 문】

- 1. 피진정인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 가.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진정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등과 함께 제주도도 가족여행을 가기위해 ○○○항공(이하 ‘피진정항공’이라 한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피진정항공은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까지 버스로 이동한 후 스텝카를 이용해야 하므로 휠체어를 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 나. 피진정항공이 운행하는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내에 휠체어 고정 장치를 갖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좌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와 관련

가) 스텝카를 이용한 항공기 탑승은 국내 각 공항의 탑승교 부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며, ○○항공과 ○○○○항공을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은 당사를 포함하여 승객용 리프트카를 구비·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사는 타 저비용항공사들처럼 걸을 수 없는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제공하고, 직원이 승객의 이동 및 기내 착석까지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객이 원할 경우에는 탑승교를 이용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명에게는 운임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나) 각 공항의 지상조업사가 저상버스, 리프트카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가 장애인 탑승편의 시설을 직접 구매 후 지상조업사에 인계해 사용해야 하며, 이럴 경우 공항 당 약 2.5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2) 진정요지 ‘나’와 관련

좌석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항공사로서는 휠체어 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이 없을 경우 영업 손실을 항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 없이 기내 휠체어 좌석을 별도 설치하기가 어려우며, 국내 대형항공사도 휠체어 좌석을 별도 설치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당사는 기내용 휠체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 참고인(국토해양부장관)

1) 진정요지 ‘가’와 관련

가) 대형항공사는 높은 운임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략에 따라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위해 리프트카를 구비하고 있으나, 저비용항공사는 대형항공사보다 낮은 운임으로 운항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는 영업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리프트카 없이 승무원 등 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 탑승을 보조하는 대신 본인과

동반자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다만, ○○○와 ○○○○만 장애인 승객을 위해 지상 조업사의 리프트카를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항공기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시설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되어있는 운항승무원들이 장애인의 탑승을 직접 보조할 수 있고, 이것이 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 질을 낮출 수는 있으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탑승을 보조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공사의 경영상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승무원의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여지가 있고, 장애인들이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는 점과 「이동편의증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저비용항공사도 가급적이면 리프트카 등 승강설비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2) 진정요지 ‘나’와 관련

항공기에 장착되는 모든 설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운항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휠체어 고정장치 또한 돌풍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에 설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휠체어의 기내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갖춘 고정장치 설치, 기내 이동에 충분한 공간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국제기준 정비, 항공기 설계·제작비용 상승, 장애인 승객이 없는 경우 빈 좌석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의 기회비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기내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석 설치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 및 참고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현장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와 관련

1) 2012. 5.말 현재, 피진정항공, ○○항공, ○○○항공, ○○○, ○○○○ 등 총 5개의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 및 ○○○○을 제외한 3개 항공사는 리프트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행이 불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스텝카를 이용해 항공기 탑승 시 보호자 또는 항공사 직원이 장애인을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피진정항공은 탑승교 이용 불가 시 보호자가 없는 보행이 불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자 없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2) 피진정항공은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 본인, 장애등급 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장애등급 4~6급 장애인 본인에 한해서는 일반운임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3) ○○항공 및 ○○○○항공은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어 항공사 직원 및 승무원들이 장애인을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태운 후 해당 좌석으로의 이동 및 착석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항공은 기내용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거나 들어서 기내 좌석 착석을 도와주어야 한다.

나. 진정요지 ‘나’와 관련

피진정항공을 포함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과 대형항공사인 ○○항공 및 ○○○○항공도 기내에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석을 갖추고 있지 않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교통사업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가’와 관련

1)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구비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i) 공기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기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 스텝카를 이용해 항공기 탑승 시, 피진정 항공 직원들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며, 특히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점, iii)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호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등에 업고 계단으로 올라서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 iv)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하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 등의 장애인을 잘못하여 업었을 경우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구가 탈락되거나

마비된 팔 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또한 경사가 심하고 폭이 좁은 스텝카의 계단에서 실족하여 굴러 떨어질 경우 보호자 및 장애인 모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과 그 동반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다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과 편리 그리고 동등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자의적으로 유보시킬 수 없다는 점과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피진정항공이 인적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게 항공기 운임을 할인 적용할 지 여부는 민간항공사인 피진정항공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피진정항공의 비용절감 정책이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장애인 탑승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리프트카 등의 편의장비를 김포 및 제주공항에 구비하는 경우 공항 한 곳당 약 2.5억원, 총 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피진정인은 추산하고 있으나, 2011년 피진정항공의 매출원가가 약 76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설비를 구비하더라도 매출원가 증가율이 1%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피진정항공이 편의설비를 구입하는 대신 장비를 렌트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휠체어 탑승설비를 구비하는데 있어서 피진정인에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은 휠체어 승강설비 미확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나’와 관련

항공기 내에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 전용석이 별도로 갖추어지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항공사 직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휠체어에서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탄 후, 기내의 좁은 통로를 따라 좌석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수반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i) 비행 중 갑작스러운 기류변화 등으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고정장치가 갖춰진 휠체어석이라도 일반좌석에 착석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만큼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ii) 참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휠체어의 기내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갖춘 고정장치 설치, 기내 이동에 충분한 공간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국제기준 정비, 항공기 설계·제작비용 상승, 장애인 승객이 없는 경우 빈 좌석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의 기회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iii)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외 모든 항공기내에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기내 휠체어석을 갖추지 못함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기내에 휠체어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라. 휠체어 승강설비의 의무화 필요성

참고인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기차, 버스, 선박의 내부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에 반해 항공기에는 법적으로 승무원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필요할 경우 승무원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내부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i) 위 진정요지 ‘가’와 관련한 판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ii) 항공기 승무원이 대부분 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자 장애인을 업거나 들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iii) 휠체어 승강설비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의 경우에도 승강장과 열차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심한 역사에는 이동식 경사판을

모두 구비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iv) 휠체어 승강설비가 내부시설로 의무화된 기차나 선박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내부시설로 갖추지 못한 경우, 승강장 또는 부두 등 외부에 이동식 리프트 또는 경사판 등 휠체어 승강설비를 별도 비치하여 해당 교통수단과 연결한 후 장애인에게 탑승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 승강설비를 항공기 내부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항공기 구조나 기술상의 문제로 어렵다 할지라도, 항공기 외부에 리프트카 등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v) 2011년 말 기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국내선 점유율이 40%를 넘어섰으며, 항공여행이 대중화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선박, 버스 등과 달리 항공기만을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 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vi) 외국의 대표적 저비용 항공사인 영국의 이지젯(easyJet),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Ryanair), 미국의 사우스웨스트(Southwest), 프런티어(Frontier) 항공사 등도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카 및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여 직원들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기내 착석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1. 교통수단

대상시설	이동편의 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기타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 (저상형)	○	○	○	○		○		○	○	
	시내버스 (일반형)	○	○	○	○		○		○	○	
	시내버스 (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시외 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전철	○	○	○			○		○	○	○	

4

2012. 8. 22.자 11-진정-0188500 결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시티투어버스는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한 것은 재화 및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광역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가 2007년부터 ○○시 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 코스 시티투어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탑승할 수 없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티투어버스를 비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시티투어버스는 ○○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순회·관광할 수 있는 원스톱 관광서비스 제공 및 도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0. 12. 2.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2개의 순환코스(○○산, 도심)와 6개의 정기(모집)코스를 운행하며 2층 버스 2대를 포함하여 총 6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2) 도심순환코스의 경우 2010. 4.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대의 2층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산 코스의 경우 2대의 일반버스가 운행 중이나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기사 및 가이드가 탑승할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시티투어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산 순환코스는 사단법인 ○○광역시관광협회에서 2007년부터 현재 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코스는 오르막 및 커브길이 많아 차량 흔들림으로 전동휠체어 적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리프트를 설치한 2층 버스는 산간도로인 ○○산 순환 도로의 폭이 좁아 커브 길 주행이나 가로수 나뭇가지의 늘어짐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운수업체 문의 결과, 저상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해 엔진 성능이 약해 탑승객이 많거나 경사도가 심한 노선에는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민간운수사업자에게 신규로 구입하여 줄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고 현재 본 기관의 재정상태로는 차량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시티투어버스 교체 등이 있을 시 버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주체로, 동 사업은 ○○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순회·관광할 수 있는 원스톱 관광서비스 제공 및 도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이 운행노선, 운행대수 등을 정하여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은 2012. 8. 현재, ○○산 코스와 도심 코스 2개의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도심 코스는 2010. 4.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2층 버스를 개조하여 하루 4회 운행하고 있으며, ○○산 코스는 2007년부터 ○○시관광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피진정기관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다. ○○산 순환코스는 1일 6회, 45인승 1대와 25인승 1대 등 총 2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혼자 힘으로 버스에 탑승 할 수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기관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기관이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i) 시티투어버스는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기사 및 가이드가 탑승할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조력자가 등에 업고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점, iii)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하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 등의 장애인을

잘못 엮었을 경우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구가 탈착되거나 마비된 팔 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또한 비좁은 버스 계단을 통해 장애인을 업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실족하여 굴러 떨어질 경우 조력자 및 장애인 모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iv) 설령, 인적 서비스를 통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버스를 탑승한다 하더라도 버스 내 안전장치의 부재로 운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재화 및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기관의 주장대로, ○○산 코스를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착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가 일반차량에 비해 엔진성능이 약해 탑승객이 많거나 경사도가 심한 ○○산 노선에 투입하기 어렵다면,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일반버스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반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통상 소요비용이 2~3천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역자치단체인 피진정기관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 셋째, 피진정기관이 시티투어버스 위탁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참가조건을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장착된 관광버스를 소유한 사업자로 한정 공고함으로써 피진정기관이 자체예산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장착된 버스를 임차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구비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피진정기관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기관이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탑승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2015. 3. 30.자 14-진정-0547800 결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교차로에서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2】 ○○광역시장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역 근방의 ○○대로를 휠체어 장애인이 횡단하려 하면 승강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700여 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침해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교통수단, 토지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며, 피진정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한다거나, 지하상가 민원 발생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9. 7. 3. 장애인 이동권 침해 권고(08진차353), 2009. 9. 18. 장애인 이동권 침해 권고(08진차529), 2013. 11. 12. 장애인 이동권 제한 권고(13-진정-0172300, 13-진정-0113200 병합)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진 정 인】 정○○

【피 해 자】 강○○(지체장애2급, 휠체어 장애인)

【피진정인】 ○○광역시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교차로에서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장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광역시 ○○역 교차로에서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승강기가 있는 곳까지 700m 이상을 우회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의 원인이 되는 ○○역 교차로와 △△교 사이의 □□대로는 1일 차량 통행량이 양방향 80,000여대로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또한 □□대로 아래에는 327개 업소가 영업중인 ○○지하상가가 있는데 매출감소를 우려한 지하상가 업주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나 지하상가 운영자에게 장애인의 이동편의

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계인

1) ○○광역시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의거 피진정인 소관사항이고,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광역시는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교통량, 보행량,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거쳐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한 곳은 ○○지방경찰청에 설치를 건의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은 본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2) (주)○○몰 (○○지하상가 운전자)

○○지하상가는 (주)○○몰의 전신인 ○○실업이 총 공사비 130여억원을 투자하여 총 면적 11,626,97㎡에 달하는 지하상가를 준공한 후 1983. 1. 19. ○○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 ○○광역시 소유이고, (주)○○몰이 2016. 4. 21.까지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 관리·운영중에 있다.

○○지하상가는 198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는 계획안을 ○○광역시에 제안하여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에스컬레이터 16대, 엘리베이터 2대를 포함하여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이므로 진정원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과 관계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나. 진정의 원인이 되는 ○○광역시 ○○역 교차로에서 △△교로 이어지는 □□대로는 차로폭 26m, 왕복 7차로이며, 1개 차로는 가변차로인데,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도로의 횡단을 위하여 ○○역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거나 ○○역 교차로에서 700m 떨어진 △△교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반면 비장애인은 □□대로 아래의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계단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대로의 횡단보도 설치 민원은 2008년 이후 총 4건이 ○○지방경찰청에 접수되었다. 민원을 심의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부결하다가, 2014. 9. 25. 교통량 실태분석 이후 결정하기로 보류하였다.

라. ○○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보행환경 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대로의 지하상가에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마. 이 사건 □□대로 아래의 ○○지하상가는 1982년 준공된 후 증개축이 없었으므로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몰의 ○○지하상가 사용기간은 2016. 4. 21.이고, 아직 상가 리모델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교통수단, 토지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로에는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은 계단이 설치된 지하상가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는 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승강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700여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정체가 증가할 수 있어 횡단보도 설치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로의 공급이 오히려 교통량을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⁴⁾에 의해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 확대를 시도한 결과 거리의 경제가 활성화 되었던 각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도심 교통정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신호대기를 없애고 교통량의 유입을 늘리는 것보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또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교통의 안전성의 보장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8964 판결, ○○고법 1998.4.24. 선고, 97구3209 판결)

4) 브라에스의 역설 (Braess's paradox) :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가 주창하였다. 독립체들이 이기적으로 길을 선택하게 되는 어떤 네트워크의 수용력을 추가로 늘렸을 때 특정상황에서 전체적인 기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피진정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민간 운영자가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지하상가는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이 아니며, 설령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운영자에게 장애인이 자유롭게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편의시설은 지하상가의 이용 목적에 제공되는 것이지 도로의 횡단목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3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016. 12. 28.자 15-진정-0919600 결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하고, 제주공항을 비롯한 피진정인1이 관리·운영하는 공항의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함.

【결정요지】

피진정공사가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해 보안검색대 통과 및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제3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별표 24]

【진 정 인】 ○○○

- 【피진정인】 1. 한국공항공사 사장
2. 국토교통부 장관

【주 문】

-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하고, 제주공항을 비롯한 피진정인1이 관리·운영하는 공항의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15. 11. 5. 17시경,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전동휠체어 및 신체에 대한 검색을 받은 후 항공기 탑승구로 이동하려 하였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고, 탑승구까지 이동 시에도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며 진정인을 제지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전동휠체어를 위해물품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¹

1) 전동휠체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다.

2)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은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할 때 항공사에서 고시 내용을 안내받는다. 전동휠체어는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서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은 항공사 보안담당 직원의 확인이 끝난 후에 항공사가 제공하는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권유받게 되며, 전동휠체어는 탑승 수속 카운터 뒤편의 위탁수하물 검색장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된다.

3)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이 항공기 탑승 전까지 본인의 전동휠체어 탑승을 주장하는 경우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게 되며, 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을 마친 즉시 전동휠체어를 탑승구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4) 진정인은 항공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안내 받았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항공사에서는 보안담당직원의 동행 없이 진정인을 보안검색장으로 보냈다.

5) 보안검색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보안검색을 마친 후 보안검색요원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사 보안담당직원을 호출하였다. 항공사 직원이 오는 동안 진정인이 전동휠체어로 직접 탑승구까지 가겠다고 주장하여 제주공항 보안검색요원이 국토교통부 고시자료를 진정인에게 보여주며 이동을 제지하였고,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거하여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이 보호구역 및 항공기 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안내하였다.

6)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거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당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상기 지역에 대하여 ‘국내선 격리대합실’이라는 보호구역명으로 보호구역 승인을 받아 지정 운영 중으로, 보안검색 완료지점부터 탑승구까지는 보호구역인데, 진정인은 이 구역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려 했던 것이다.

7) 전동휠체어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 할 수 있어 항공사의 최종 확인이 필수적이며, 장애인이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려는 경우 탑승구 위탁수하물 처리까지 항공사에서 안내와 처리가 필수조건이다.

다. 피진정인2

배터리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보안매뉴얼(DOC8973)을 반영하여 마련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정한 위해물품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13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항공 2015. 11. 5. 17:25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8986)을 이용하기 위해 제주공항의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발권 등 탑승 수속을 하였다. 이때 진정인은 ○○○○항공사 직원과 탑승구에서 만나 추후 도움을 제공받기로 하고, 부인과 함께 ○○○○항공사 직원의 동반 없이 보안검색대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은 보안검색대에서 전동휠체어 및 신체에 대한 검색을 모두 마쳤으나, 피진정인1로부터 항공보안검색 업무를 위탁 받은 ‘○○○○○’ 소속의 항공보안 검색 요원 □□□은 진정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직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진정인의 통과를 제지하고, ○○○○항공사 직원을 보안검색대로 호출하였다.

다. 약 5분 후 보안검색대에 ○○○○항공사 직원이 도착하였고, 위 □□□은 해당 직원에게 ‘항공사 위탁처리현황 대장’에 월일, 품명, 수량, 승객명, 편명, 인계자,

인수자 소속·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위 □□□이 진정인이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에도 항공사 직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진정인은 ○○○○항공사 직원과 동행하여 탑승구까지 이동하였다.

라. 제주공항에서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을 ‘국내선 격리대합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직접 이동하려 했던 보안검색 완료지점부터 탑승구까지는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마. 제주공항에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직원은 ‘항공사 위탁처리현황 대장’을 보안검색대에서 작성해야 하며,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바. 피진정인1이 관리·운영하는 김포, 김해공항에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와 보안검색대 통과 후 탑승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항공사 직원의 동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 한국공항공사(이하 “피진정공사”라고 한다)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업법」 제2조 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보안검색 업무를 ‘○○○○○’에 위탁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규정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항공기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탁수화물로 운반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13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조장비에 건식(乾式)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여부,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등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제주공항 항공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에 대해 항공사 직원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구역 내로 전동휠체어를 탄 진정인의 진입을 제지하고,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에도 항공사 직원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진정공사는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라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의 반입 및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보안검색요원 □□□은 다른 이용자와 달리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항공사 직원의 동행이 없으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고, 보안검색대부터 탑승구까지 이동시에도 항공사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며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1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라 전동휠체어의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 이동 시 항공사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바, 항공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권 시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인지 여부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한다는 점,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안검색대에서 신체 및 전동휠체어에 대한 검색 등 위해성에 대한 보안검색이 실시된다는 점,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탑승권 및 전동휠체어 관련 수하물 짐표 확인 등 방법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시 항공보안검색요원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진정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다른 공항에서는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이용자와 다른 부가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제한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공사가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에 대해 보안검색대 통과 및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물품이 위험물로 분류되는가는 해당 물품의 용도가 아니라 폭발 가능성, 인화성 등 항공기 운행 및 승객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당해 규정에서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위해 물품 및 항공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곧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최이우 위원 김기중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항공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죠행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항공기 내에 제2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 1의2.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
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3의2. 「항공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37호에 따른 항공기 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 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6.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53호, 2013. 11. 11., 일부개정]

1. 목적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시내용 [별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물품명	객실 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비고
5) 의료·구조용 물품 ※ 의료용 물품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가능하나, 일부 위험가능 물품은 제한될 수 있음			
나. 노약자·장애인·환자·유아가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O	O	단, 휠체어 및 유모차를 객실에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
라. 장애인·노약자·환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이동보조기구(배터리 포함) 	X	O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7.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송 사업자의 승인 필요 여부	기장에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 수하물	휴대 수하물	몸에 소지			
의료용품						
5)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로 장애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승객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조장비로서, 특별 조항 A123 또는 A199에 부합하는 배터리 또는 누액방지 타입 습식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	금지	금지	필요	5의 라) iv) 참조	가) 누액방지 습식배터리는 특별조항 A67에 부합되어야 하며, 포장지 침 872에 명시되어 있는 진동 및 압력차 시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나) 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송 사업자의 승인 필요 여부	기장에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 수하물	휴대 수하물	몸에 소지			
						<p>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함.</p> <p>라) 사용자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의 경우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배터리를 탈거할 경우, 이동보조장비를 위탁수하물로서 아무런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음 ii) 탈거된 배터리는 강하고 단단하게 포장하여 화물실에 실어서 운반하여야 함 iii) 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함 iv) 포장된 배터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p>마)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p>
6)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로 장애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승객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조장비로서, 전해액 누액방지가 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이동보조장비	허용	금지	금지	필요	필요	<p>가) 탑재 가능한 장소에 이동보조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송 사업자의 승인 필요 여부	기장에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 수하물	휴대 수하물	몸에 소지			
						<p>나) 만일 이동보조장비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터리를 탈거하여 다음과 같이 강하고 단단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함</p> <p>i) 배터리포장물은 누설밀봉 조치를 하여 배터리의 전해액이 흘러서 다른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팔레트에 단단히 고정시켜 뒤집히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스트랩, 브래킷 또는 고정 장치와 같은 적절한 결박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칸 내에 고정하되, 다른 화물이나 수하물을 버팀재로 사용해서된 안됨</p> <p>ii) 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여 포장물 안에 똑바로 세워 고정시키고,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 전체 용량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흡수재로 둘러싸야 함</p> <p>iii) 이들 포장에는 '휠체어 동반 습식배터리' 또는 '이동보조장비 동반 습식배터리'라고 표기하고, 5.3의 요건에 따라 부식성 위험물 라벨(그림 5-22)과 함께 위아래 방향 라벨(그림 5-26) 부착하여야 함. 이동보조장비를 위탁수하물로서 아무런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음</p> <p>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함.</p> <p>라)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가 어디에 실려있는지 또는 포장된 배터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위치가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p>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송 사업자의 승인 필요 여부	기장에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 수하물	휴대 수하물	몸에 소지			
7)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 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로 장애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승객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조장비로서, 리튬이온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이동보조장비	허용	7의 라) 참조	금지	필요	필요	<p>마)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또한 배터리가 누액방지 타입이 아니라면, 누액방지 벤트캡으로 막음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p> <p>가) 리튬이온배터리는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Part 3, 세 부항목 38.3에 따라 각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타입의 것이어야 함</p> <p>나)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p>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함.</p> <p>라) 사용자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의 경우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탈거된 리튬이온배터리는 객실에 실어 운반할 것 ii) 배터리 단자는 노출된 단자 부위를 테이프 등으로 감아 절연하는 식으로 단락방지 조치를 할 것 iii) 배터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파우치에 넣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송 사업자의 승인 필요 여부	기장에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 수하물	휴대 수하물	몸에 소지			
						iv) 배터리를 이동보조장비에서 탈거할 경우에는 장비제조사 또는 장비소유자의 지침에 따라 탈거할 것 v) 배터리는 30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을 것 vi) 운송할 보조배터리가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최대 300와트시(Wh)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운송할 보 조배터리가 2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배터리가 160와트시(Wh)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함 마) 리튬이온배터리의 위치는 기장 에게 고지되어야 함 바)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 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 를 받을 것을 추천함.

7

2017. 6. 12.자 16-진정-0892900 결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결정사항】

○○○○(○○○)를 포함한 ○○를 이용함에 있어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를 추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기관은 ○○○(○○○) 운영과 관련하여 정차역 안내를 2회 진행하고 있는데,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은 2회의 음성안내와 1회의 문자안내를 통해 정차역을 인지할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인 객차 상단의 모니터에 표시되는 1회의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의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상황임
- 【2】 피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은 ○○○ ○○○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족한 문자 안내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하지 않음
- 【3】 피진정인은 문자안내 확충에 예산이 수반되고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당장은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를 추가하는 것이 피진정인의 예산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진 정 인】 나○○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를 포함한 ○○를 이용함에 있어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를 추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 운행 시 정차 4분 전에 음성과 문자(한국어, 영어)로 각 1회 정차역 안내를 하며, 정차 직전에 음성안내 1회를 한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이어서 문자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차역에 대한 문자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현재 정차역 안내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정차역 도착 3분 전에 음성안내와 문자안내를 병행하고 있고, 자체 방송을 통해 정차역 도착 1분 전에 음성안내를 하고 있다.

문자안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차내 영상방송 시스템 보완 및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의 경우 영상정보사업자와 영상송출 관련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문자안내 추가 시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 지장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기간(2014. 1. 1.~2018. 12. 31.) 내 보완은 어렵다. 다만, 현재 사업자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규 사업자 선정 시 문자안내 표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청각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미리 출발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승차역○○이용-도착역까지 맞춤안내를 제공하는 ‘○○○ ○○○’제도를 운영 중이며, ○○ ○서비스매뉴얼을 제정하여接客직원(○○원, ○○원 등)에게 장애고객 응대요령(대화,

에티켓 등)을 교육하여 교통약자의 ○○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는 ○○○○(○○○) 운행 시 정차역에 대해 2회의 음성안내와 1회의 문자안내를 한다. 정차역 도착 약 3분 전에 위성항법 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객차 상단에 부착된 모니터에 문자 안내가 표출되는데, 약 40초 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정차역이 안내되며, 이때 음성안내도 같이 진행된다. 그리고 정차역 도착 약 1분 전에 기장이 방송을 통해 정차역 도착 음성안내를 한다.

나. 피진정기관은 영상정보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객차 상단에 부착된 모니터로 광고 등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의 영상정보사업자는 ○○○○이며, 계약기간은 2014. 1. 1.~2018. 12. 31.이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 운영과 관련하여 정차역 안내를 2회 진행하고 있는데,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은 2회의 음성안내와 1회의 문자안내를 통해 정차역을 인지할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은 객차 상단의 모니터에 표시되는 1회의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의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다.

피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은 ○○○ ○○○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족한 문자안내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은 문자안내 확충에 예산이 수반되고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당장은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를 추가하는 것이 피진정인의 예산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의 정차역을 안내하면서 문자안내를 1회만 진행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를 포함한 ○○를 이용함에 있어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를 추가

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한수웅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정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2017. 7. 3.자 15-진정-06676000외 13건 (병합)결정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 및 시내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3】 피진정인(이 사건관련 교통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를 개조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제로 해당 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한편, 교통사업자가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와는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교통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업자가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4조 제3항

【진 정 인】 <별지1> 기재와 같다.

【피진정인】 1. 국토교통부장관

2. 서울특별시
3. 경기도지사
4. ○○시장
5. (주)○○고속 대표이사
6. (주)○○고속 대표이사
7. (주)○○고속 대표이사
8. (주)○○운수 대표이사
9. (주)○○고속 대표이사
10. (주)○○○○버스터미널 대표이사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1에게,

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해당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2층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교통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시행하기 바란다.

-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이동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고, 교통면허·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및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운영기술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3. 피진정인2, 3, 4에게,
- 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직행좌석형, 좌석형)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치와 정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 나. 교통면허·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4. 피진정인5, 6, 7, 8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를 개조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사전예약을 할 경우 해당 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5.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9, 10에 대한 부분 및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6.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진정인들이 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나. 2015. 7. 31.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1~12는 ○○○○터미널에서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터미널 직원들과 버스기사들이 무례하고 난폭한 언행 및 행동을 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다.

다. 2015. 9. 24.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1, 25~30은 ○○○○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버스터미널 직원들과 버스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1~30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토교통부장관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고속버스 운송사업자(8개사)에 대해 총 16억 원(각 운송사업자별 5대씩 총 40대×4천만 원/대)의 지원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비를 2018년도 예산으로 다시 요구하였다.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운영기술 개발 R&D사업(2017~2020년)과 R&D 시범사업(2020년)을 통한 실용화 사업(2021년) 계획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 반영되어 있다.

교통사업자가 시외 또는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경우, 튜닝⁵⁾ 내용이 자동차안전기준 및 타 법령 상 기준에 적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을 받고,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은 후, 승인내용대로 튜닝을 했는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를 받으면 자동차관리법령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장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 가능한 광역형 시내버스의 개발과 운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것이 서울특별시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이며 추진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2021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서울특별시도 국가계획인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도로 및 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광역형 시내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5)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2017~2020년) 계획에 맞춰 수립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2018~2022년)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버스 접근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2017. 5. 31. 기준 김포, 남양주, 수원, 파주 13개 노선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2층 버스 26대가 운행 중이며, 2018. 3.까지 12개시에서 2층 버스 143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2층 버스로 된 시내버스(직행좌석형)는 저상 차체로 휠체어 경사판(수동), 차체 경사장치, 휠체어 고정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탑승 가능하나, 이외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저상형 제외)가 전무한 실정이다.

2층 버스 구입비는 1대당 총 4억 5천만 원인데, 도 : 시·군 : 운수업체에서 1 : 1 : 1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운수업체에 1대당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한 2층 버스의 도입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는 저상 차체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 상 저상버스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2층 버스 도입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4) ○○시장

○○시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층 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2층 버스 2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5) (주)○○고속 대표이사

(주)○○고속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없다. 현재 고속버스 차량구조 상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는 고속버스 이용이 불가하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외버스용 차량을 제작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등에도 이와 관련된 안전성 검증 기준이나 표준이 없으므로,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완성차 제작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개조한 전세버스 차량들이 운행 중이긴 하나, 인원을 대량수송하는 고속버스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운송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법이나 기준에도 없는 휠체어 승강설비 차량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만약 불법으로 도입하여 운행한다면 오히려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

6) (주)○○고속 대표이사

(주)○○고속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한 버스는 없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재정손실보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차량구입비 및 운행비 100% 보전)이 필요하며, 업종 및 노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버스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차량에 장착된 휠체어 승강설비 작동과 관련하여 터미널 승하차장, 휴게소 주차장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근육량, 골밀도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아 작은 충격에도 몸에 큰 무리가 생기므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시속 8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속버스 지정

속도 100~110km로 운행이 불가하며, 장애인 탑승 시 운행 및 휴게 시간의 과다 소요(400km 노선기준 2시간 45분 추가 소요, 장애인 1인 기준 1시간 이상)로 일반고객이 장애인 탑승차량 승차를 기피할 수 있다.

7) (주)○○고속 대표이사

(주)○○고속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한 버스는 없다.

현행 법규상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버스제조사에서도 시외직행 저상차량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차량제조사가 합의해 차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고속이 운행 중인 시외버스 차량의 구조상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면 차량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8) (주)○○운수 대표이사

(주)○○운수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중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한 버스는 없다.

국내 차량제조사에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전용공간을 갖춘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제작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이러한 차량이 제작될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전용공간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9) (주)○○고속 대표이사

2015. 7. 31. 14:00~14:50 장애인 단체가 ○○○○터미널 2층 대합실 안에서 앰프를 이용하여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앰프 소리가 커서 터미널사업자의 대표업무 및 영업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합실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였다.

같은 날 14:50~16:10 버스승차장에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15:00 안성행, 15:10 태안행, 15:15 수원행) 승차를 시도하는 한편, 버스 진출입로를 전동휠체어로 가로막아 1시간 가량 버스들이 출발을 하지 못했으며, 장애인들이 승차권을 구매하지도 않은 다른 노선버스들의 운행도 방해하여 터미널 전체의 운영이 마비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승객들과 장애인들의 다툼이 발생하여 운전기사들이 개입하였으나 가벼운 언쟁만 있었을 뿐 몸싸움 등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터미널사업자 및 운수회사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장애인들의 현장시위로 심각한 영업방해 및 손실을 입고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다. 관계기관

1)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대상 여부 및 승인기준을 검토하며,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하고 있다. 2006~2016년 동안 교통안전공단이 대형승합자동차(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관련 튜닝 승인을 한 것은 총 243건이다.

2) (주)○○자동차

(주)○○자동차는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한 대형버스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버스 모델 중 ‘○○○○’는 고속버스 및 시외직행으로 운행할 수 있고, ‘○○○○○’ 또한 시외버스로 운행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 생산 시, (주)○○자동차에서 기본차를 제작한 후 협력 특장사인 ○○○○○와 (주)○○ 2곳에서

구조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생산·납품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관계인의 진술, 관련 법령, 현장조사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관계

1) 피진정인 1~4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으로서,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도지사, 시장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2) 피진정인 5~8은,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가 정의하는 교통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3) 피진정인 9, 10은 각각 ○○○○터미널과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자이다.

4) 2015. 7. 31. 14:00경 진정인 1~12 등 ○○○○○○○연대 회원들은, 피진정인 9가 운영하는 ○○○○터미널 2층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예매한 승차권으로 경기도 수원·광주·안성·가평 및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가 없어 탑승을 하지 못하였다.

5) 2015. 9. 24. 14:00경 진정인 1, 25~30 등 ○○○○○○○연대 회원들은 피진정인10이 운영하는 ○○○○버스터미널(○○선)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예매한 승차권으로 당진·남원·논산·경주로 가는 버스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가 없어 탑승을 하지 못하였다.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지원 현황

1) 2016. 12. 31.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는 10,730대,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는 4,635대인데, 이중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차량은 경기도에서 2015. 10.부터 운행을 개시한 2층 버스 구조의 시내버스(직행좌석형) 9대이다. 2층 버스가 증가하여 2017. 6. 30. 기준 경기도 김포, 남양주, 수원, 파주, 안산 등에서 33대가 운행 중인데, 2층 버스 구입비(1대당 4억 5천만 원)의 2/3를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3을 교통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2) 2016. 8. 1. 기준으로 피진정인5~7이 운행하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와 피진정인8이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에는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자동차관리 및 안전기준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피진정인5~8 등 교통사업자가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2006~2016년 동안 관계인1은 대형승합자동차(버스) 243대에 대해 휠체어 승강설비 튜닝 승인을 하였다.

4) 관계인2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1인 또는 2인이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고속 및 시외버스용 차량(모델명: ○○○○, ○○○○○)을 162,110,000~188,51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5)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G5100번(서울 신논현역 ↔ 수원 경희대) 2층 버스에는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가 장착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시 차체를 지상에서 최대 20cm까지 낮출 수 있으며, 버스 1층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수동 또는 전동휠체어 1대 탑승 가능 공간, 가로 75cm, 세로 143cm)과 휠체어 고정장치, 수동 접이식 경사판이 마련되어 있고, 이 공간에 접이식 의자 3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 승객 3명이 탑승할 수 있다.

6) 「교통약자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자법」 등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자동경사판 설치, 휠체어 고정장치 2개 이상 설치(수동 또는 전동휠체어 2대 이상 탑승 가능), CNG 연료 사용 등]을 충족한 저상버스 등을 구입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상버스 등의 도입으로 인한 구입비와 일반버스 구입비와의 차액’, ‘저상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 또는 기존 버스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버스 등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여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현재 저상형 시내버스(일반형)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해외 사례

1) 영국의 고속버스 업체인 내셔널 익스프레스(National Express)는 2017년 현재 약 95%의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운행 중에 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용 좌석이 1~2좌석으로 제한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출발 36시간 전에 예약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호주의 고속버스업체 V-Line은 2012. 12.말 기준으로 전체 103대의 고속버스 중 56%(58대)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Australia Wide Coache는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휠체어 탑승 공간 마련을 위한 좌석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사전 예약을 권고하고 있다.

3) 미국의 그레이하운드(Greyhound)사는 1998~2001년 제작된 차량의 약 75%, 2001~2014년 제작된 차량의 100%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2명이 휠체어에 앉아서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버스에 마련되어 있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원하는 여행일에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6. 4.부터 북미(North America) 내 도시 간을 운행하는 저가 고속버스(low cost, express bus) 회사인 메가버스닷컴(Megabus.com)은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100% 준수하며, 2층(double decker) 고속버스 또는 일반(single decker)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4) 일본은 2015. 3.말 기준 버스 50,000대 중 약 70%에 해당하는 약 35,000대를 2020년까지 논스텝 버스(non-step bus)⁶⁾화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용제외 인정차량(고속버스, 리무진버스 해당)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약 25%에 해당하는 약 2,500대에 경사판 또는 휠체어 승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교통 이동원활화 설비정비비 보조 제도를 통해 논스텝 버스 등 차량에 대해 차량 구입비 지원, 용자지원, 세제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들의 개선 계획

1) 피진정인1은 2017. 2. 14.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확정·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R&D 사업(2017~2020년)과 R&D 시범사업(2020년)을 통한 실용화 사업(2021년) 등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피진정인1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고정장치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비를 100% 지원하는^고

6) 바닥면의 높이가 지상에서 30cm 이하인 버스로 ‘배리어프리 신법’의 이동 등 원활화기준에 적합한 버스를 말함.

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위해 16억 원⁷⁾(고속버스 8개사 각 5대, 총 40대 시범 설치)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7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피진정인1은 다시 해당 사업비를 2018년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2017. 5.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2) 피진정인3은 2018. 3.까지 경기도 내 12개 시에서 2층 버스 143대를 운행할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피진정인4도 이 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에 2층 버스 2대를 도입할 예정이나, 그 밖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개선정책 및 계획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버스 이용 제한)

1) 교통행정기관(피진정인1~4)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등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7) 고속버스 1대당 전동휠체어 2인석 설치(중간문 제작,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를 위한 버스 개조비 4천만 원을 고속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전액 보조하는 비용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행정기관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대하여 제4조 제2항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7. 6. 30. 기준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피진정인1~4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

피진정인1이 2017. 2. 14. 확정·고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년)’이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상용화되기까지는 향후 약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전면적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이러한 버스들을 모두 저상버스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조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해당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도기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피진정인1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현재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저상버스의 경우에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14조 제2항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1이 고시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저상버스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 대상 차량에서 2층 저상버스 또는 버스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차량 등을 제외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교통사업자가 2층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등”을 도입하는 교통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을 시행할 것을 피진정인1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2~4에 대해서는 시외버스(직행형, 일반형) 또는 시내버스(직행좌석형, 좌석형)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치 및 정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별도로 위 권고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피진정인1이 추진 중인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및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운영기술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직무교육 및 훈령 개정 등

피진정인1~4는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독 등을 수행해야 하고, 「교통약자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면허·허가 등 시 교통수단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설치해야 할 이동편의시설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진정인1에게 교통사업자에 대한 면허·인가 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1~4에 대해 교통면허·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교통사업자(피진정인5~8)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8항,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 2 등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편의 제공자가 해당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편의 제공자의 사업이나 다른 참여자들의 관련 활동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편의 제공자의 사업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피진정인5~8은 고속·시외버스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현행 자동차관리 및 안전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고속·시외버스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장애인용 버스를 제조하지 않고 있으며,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비나 저상버스 구입비 등 교통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인1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형승합자동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관련 튜닝 승인을 하고 있고, 관계인2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대형버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한 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공간을 설치하여도, 해당 공간에 슬라이딩식, 접이식, 또는 탈착식 의자를 장착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 승객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좌석 만석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공간 설치에 따른 영업손실을 확인할 수 없어,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피진정인 5~8은 현행 버스정류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

에 따라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 현재의 버스정류장 공간 상 승강설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한편 「교통약자법」 제14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도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스정류장 공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장은 적절한 공간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무와는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이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통사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교통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진정인5~8이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5~8에 대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설치된 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버스터미널 운영자(피진정인9, 10)에 대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법」은 ‘휠체어 승강설비’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주체를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9, 10은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자들이어서 위 교통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9, 10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장애인에 대한 무례한 언행 등)

진정인1~12가 진정사실과 관련된 피진정인들의 언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반면, 피진정인9는 비장애인 승객들과 장애인들의 다툼이 발생하여 운전기사들이 개입하였으나 가벼운 언쟁만 있었을 뿐 몸싸움 등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당사자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1~12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진정인1, 25~30은 피해사실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시간, 피진정인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한수용

<별 지 1>

진정인 명단

- | | |
|---------|---------|
| 1. 문○○ | 16. 김○○ |
| 2. 김○○ | 17. 이○○ |
| 3. 김○○ | 18. 조○○ |
| 4. 김○○ | 19. 김○○ |
| 5. 노○○ | 20. 이○○ |
| 6. 이○○ | 21. 이○○ |
| 7. 이○○ | 22. 류○○ |
| 8. 신○○ | 23. 김○○ |
| 9. 정○○ | 24. 윤○○ |
| 10. 진○○ | 25. 박○○ |
| 11. 최○○ | 26. 오○○ |
| 12. 한○○ | 27. 이○○ |
| 13. 이○○ | 28. 이○○ |
| 14. 임○○ | 29. 이○○ |
| 15. 정○○ | 30. 최○○ |

〈별 지 2〉

관 련 규 정

1.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마.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1

2011. 5. 17.자 10-진정-00366900 외 7건 (병합) 결정 【진료기록부 발급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 【1】 ○○대학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발급 시에는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을 권고
-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결정요지】

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와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등이 이미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는 점, ii) 진료기록부는 발급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개인정보 누출이나 진료기록부 원본 훼손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학 전문용어가 많아 점자화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한 점, iii)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의료법」 제19조·제21조·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4조 등

【진 정 인】 이○○

【피 해 자】 김○○, 김○○, 유○○, 조○○, 전○○

【피진정인】 1. ○○○대학교 ○○○○병원장
2. ○○○대학교병원장

3. ○○○○○○병원장
4. ○○○○병원장
5. ○○대학교병원장
6. ○○대학교병원장
7. ○○대학교병원장
8. ○○대학교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1 내지 8에게,

시각장애인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당해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마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함에 있어 당해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마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사본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들이 2010. 4.에서 같은 해 5. 사이의 기간 동안 ○○대학교병원 등 서울시내 8개 종합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시각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관련

피진정 병원들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시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의 활자크기로 인쇄된 종이 사본만을 제공하고 있다. 피진정 병원들은 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위 사본을 점자로 제공하거나, 문자를 확대하여 제공하거나, 전자 텍스트 파일로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해주거나, 진료내용을 녹음하여 제공하는 등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나. 병원 내 유도블록 미설치 등 편의시설 관련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를 병원 입구까지 안내해주는 유도블록과, 병원 내부의 각 진료과를 안내해주는 유도블록 설치가 필요하다.

2) 병원 입구 및 내부를 안내해주는 음성유도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3) 병원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현관 근처에 촉지도식 안내도 또는 점자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4)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떼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확대경 또는 확대기 설치가 필요하다.

다.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성 관련

피진정 병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그래픽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개발된 스크린 리더기로도 위 그래픽 내용은 읽을 수가 없다.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점자로 번역하기 어려운 전문의학용어가 많아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점자 등으로 발급하는 것에는 곤란함이 있다.

2) ○○대학교병원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시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기록이 개인적 확인서류가 아닌 법적 증빙서류로서 활용되고 발급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소개하여 점자자료, 큰활자로 확대된 문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의료원

진료기록부는 개인정보문서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문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의료기관에서는 점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진료기록을 메일로 전송하거나 녹음하여 제공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향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다.

4)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의 점자화된 자료 제공,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제공, 메일 전송, 녹음파일 제공 등은 현재 본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본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원본과 같은 사본 형태로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신속하게 발급하고 있다. 진료기록은 병원이 환자에게 시행한 진료와 치료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문서이므로 가공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앞으로 기술적 보완과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5) ○○○대학교 ○○○○병원

향후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시 점자화된 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텍스트파일의 메일 전송 및 녹음 파일이 제공될 수 있는지 타 병원을 벤치마킹한 후 검토하겠다.

6) ○○○대학교 ○○○○병원

향후 환자들이 진단서 및 의무기록 요약에 대한 점자화된 자료를 요청할 시 제공 가능하도록 점자자료 제공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낭독 요청 시 도우미 지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7) ○○대학교 병원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 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요청 시 종이문서 외에 발급 가능한 기준 등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환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독해 주거나 글자 확대기능을 이용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 ○○대학교병원장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점자, 확대문자, 메일 전송, 녹음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종이 문서로만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배○○(○○○○○○○○공단 직원)

시각장애인은 저시력자와 전맹자로 구분되고, 저시력자는 다시 전체적으로 미약하게 보이는 사람과, 눈의 중심 부위만 시력이 남아 있어 중심부만 미약하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눈의 주변 부위만 시력이 남아 있어 글자 등을 크게 확대해야 미약하게 보이는 사람 등이 있다. 전맹자이지만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내용을 점자프린터로 인쇄하여 제공하면 되고, 전맹자이지만 점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전자 파일을 제공하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탑재된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청취하면 된다. 그리고 저시력자인 경우는 병원에서 제공한 전자 텍스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 내용을 적절한 크기(2~16배)로 확대하여 보거나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듣는 방법도 있다.

2) 한○○(점자프린터 판매업체 직원)

당사에서 판매하는 점자프린터 가격은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합병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점자화 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사 제품 ○○ 정도면 가능하고, 당 제품의 1대당 가격은 600만원 내외이며, 이 점자프린터는 한글 뿐 만 아니라 한자와 영어가 포함된 자료도 점자화 하여 출력한다.

3) 김○○((주)○○○○○○○○○○○ 직원)

당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인데, 당사에서 판매하는 ‘업그레이드용 ○○○○ ○○○○○ ○’ 제품은 전자문자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들려주는 기능을 하며, 음성으로 변환 가능한 전자문서정보의 종류는 텍스트 파일, 엑셀파일, PDF파일, 웹페이지상의 문자형태의 정보 등이 있다.

4) 이○○((주)○○○○○ 대표)

당사는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생성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바코드가 생성된 인쇄물에 자신이 소지한 리더기를 가까이 접촉하게 되면 그 인쇄물에 기록된 문자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게 된다. 당사 제품의 가격은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컴퓨터 1대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격은 약 100만원 내외이다.

5) 조○○(○○○대학교○○○○○병원 외래업무팀 차장)

병원 실무상 진료기록부 열람과 사본 발급은 차이가 없으며, 지금까지 진료기록부 열람을 신청을 해 온 사람은 없었다. 진료기록에는 MRI 촬영이나 CT 촬영 등 각종 검사자료와 처방전 등도 포함되는데 진료기록부 전부를 사본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진료기록부 중에서 필요한 일부 사항만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MRI 등 특수촬영자료는 컴퓨터디스켓에 복사하여 발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들은 2010. 4.부터 5.까지 피진정 병원들을 각 방문하여 진료 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서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한 문서, 전자텍스트파일 또는 녹음파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진료기록부 원본을 종이로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 나.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며 CT촬영, MRI촬영 자료 등도 이에 포함된다. 환자 등은 진료기록부 전체를 사본 발급 요청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지정하여 사본 발급을 요청하며, 문자로 작성된 자료는 복사하여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종이문서로 제공하고 MRI 및 CT촬영자료 등은 사본을 컴퓨터 디스켓에 담아서 제공한다.
- 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시각장애인과 시력이 남아 있는 저시력장애인이 있으며, 저시력장애인은 눈 중앙 부위에만 시력이 남아 있는 저시력자와 눈 주변 부위에만 시력이 남아 있는 저시력자로 구분되는데, 이 같은 시각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저시력자가 미약하게나마 볼 수 있는 문자의 크기는 각각 다르다.
- 라.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디지털 문자정보로 표현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수단으로는, 피진정인이 점자프린터를 구비하여 진료기록부 내용을 점자로 제공하는 방안(점자 해독 가능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피진정인이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변환 바코드가 진료기록부 사본에 표시되도록 하여 제공하면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소유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이하 ‘스캐너’)를 활용하여 진료기록부 사본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사본 내용을 음성으로 듣는 방안, 피진정인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 텍스트파일로 제공하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탑재한 음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위 파일 내용을 음성으로 듣는 방안, 피진정인이 진료기록부 사본의 문자 크기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안(저시력장애인의 경우에 해당), 그리고 피진정인이 진료기록부 내용을 육성으로 녹음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다.

마. ‘점자프린터’의 판매가격은 1대당 약 600만원 내외이고,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컴퓨터 1대 설치 기준)은 약 100만원 내외이며, ‘스캐너’(○○○○○ 제품인 ‘○○○○○ ○○○ ○○’ 기준)의 1대당 판매가격은 29만원이나 시각장애인이 스캐너를 구입할 경우에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232천원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 금액은 58천원 정도이다. 그런데 스캐너의 경우 정부예산액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하기에 현재 시각장애인에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바. 피진정인인 ○○○○○의료원은 2010. 2. 3.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진단서와 처방전은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가 생성된 종이문서로 제공하고 있으나, 진료기록부는 아직까지 전자문자가 아닌 의사가 종이에 직접 수기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있기에 음성변환바코드가 생성된 사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 진정인은 2011. 1. 17. 진정요지 나항 편의시설 미설치 부분, 진정요지 다항 홈페이지 접근성 미비 부분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들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시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20조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는 의료기관 등은 자신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전자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하고, 비전자정보는 전자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한다.

3)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 3] 및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1.부터 종합병원은 자신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제2항에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6) 위 관련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진료를 받은 자의 병력, 진료경과 등을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의사가 수기로 작성하는 기록이므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진료기록에는 질병 치료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질병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시각장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의료기관은 장애인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해야 하고, 특히 의료기관 중에서 종합병원은 2009. 4. 11.부터 진료기록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제공 등 편의 제공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피진정 병원들은 시각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요구를 한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각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등의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구에 대하여 종이문서만을 발급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1) 피진정인인 ○○대학교병원은 점자로 번역되는 기계가 없고 진료기록에는 전문의 학용어가 많아 점자 등으로 번역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피진정인인 ○○대학교병원은 진료기록부는 법적 증빙서류여서 발급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에 점자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주장을, 피진정인인 ○○○○의료원은 진료기록부는 개인정보문서이기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점자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피진정인인 ○○○○병원은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은 법적문서이기에 내용의 가공이 여의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피진정인인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은 지금은 어렵고 향후 점자제공, 확대문자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피진정인인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은 현행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진료기록은 종이문서 외에 점자자료 등으로 발급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문자정보를 점자자료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점자프린터와 디지털문자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을 수 있는 인쇄물음성변환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이미 사용 중에 있으며 위 기기들은 한글을 포함한 영어 등 외국어 정보도 처리 가능한 점, 피진정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하면서 사본 내용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인

데 전자정보는 필요한 경우에 비밀번호 부여 등의 안전장치가 가능하며,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발급되므로 개인정보 누출이나 진료기록부 원본 훼손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문의학용어가 많아 점자화 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장 그 자체로 편의 제공 의무를 거부하는 것인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사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차별행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2010. 4월에서 5월 기간 중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료기록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시 점자자료, 텍스트 파일 또는 녹음자료를 함께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점자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피진정 종합병원들이 점자로 번역되는 기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한 행위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각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병원 내 유도블록 등 미설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근성 미흡 관련

병원 내 유도블록 미설치 등 편의시설 관련 및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근성 미흡과 관련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2011. 1. 17. 진정을 취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태훈 위원 한태식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 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

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료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5.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2012. 5. 1.자 10-진정-0563400 외 92건(병합) 결정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결정사항】

피진정인인 지상파 방송3사 및 △△지역방송사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으로 자막, 원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자막을 음성과 동기화시킨 폐쇄자막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각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 방송사에 대하여 웹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접근·이용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이와 같이 방송사들이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게 하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6조·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진 정 인】** 1. ○○○ 2. ○○○ 3. ○○○
4. ○○○ 5. ○○○

- 【피진정인】** 1. ○○○○○○ 사장
2. △△△사 사장
3. □□□사 사장
4. XXX사 사장
5. ▲▲▲사 사장
6. ■■■ 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으로 자막, 원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자막을 음성과 동기화시킨 폐쇄자막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이 운영·관리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접근성이 취약해서 시각 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 웹 사이트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시정해 주기를 원한다.

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 ○○○ 및 ○○○ 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정보, 반복되는 메뉴 건너뛰기 기능, 회원가입 시 보안문자 음성 정보, 각종 서식의 레이블, 논리적인 순서의 메뉴 구성 등이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현란한 그래픽 등 저시력자의 웹 접근성 저해 요소가 존재하고 장애인 전용 사이트의 내용 제한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다.

나. △△ ○○○, △△ ○○○, ○○○ 웹 사이트의 경우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제공, 바로가기 서비스 기능, 모든 기능 키보드 사용, 페이지 제목 제공, 테이블 설명 기능 등이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 웹 사이트(www.○○○.co.kr)

가) ○○○ 웹 사이트 이용자들이 사용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1. 5. 제시한 웹 사이트 개선 계획에 따라 2012. 3.까지 대체 텍스트 제공, 반복되는 메뉴 건너뛰기, 체계적인 메뉴구성, 깜빡임 등 저시력자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 메인 페이지와 라디오 섹션 및 각 라디오 프로그램 웹 사이트 개편 시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개별 섹션 및 사이트는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편의제공(자막, 화면해설, 수화) 관련, 자막추출 기술 및 저장 인프라 등 기술적 한계로 자막방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막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자막방송의 스크립트를 자막파일 형태로 추출·저장하는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본사 기술연구소와 함께 자막편집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프라가 구축되고 추출된 자막의 품질이 서비스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인터넷 다시보기 등을 통한 자막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막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과 함께 인프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효율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화면해설방송은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수화방송의 경우 지상파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웹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다) 장애인 전용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노약자가 ○○○ 다시보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4. 5.부터 장애인 전용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 11. 장애인 편의성 개선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요구 수준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듣기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 개선 등 장애인 전용 사이트를 개편하였다.

2) ○○○ 웹 사이트(www.○○○.com)

가) ○○○ 웹 사이트는 자회사인 △△△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1. 4. 00. 제시한 웹 사이트 개선 계획에 따라 2012. 3.까지 ○○○ 대표 메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메인 페이지 등 주요 메인 페이지들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선 완료하였다. 그 외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맵, 편성표, 온에어 등 공통서비스와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프로그램 사이트 등은 2012년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 프로그램 사이트는 사전에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작할 예정이다.

나) 멀티미디어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편의제공 관련, 자막방송의 경우 송출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자막 데이터를 추출·생성하여 플레이어에서 영상과 동시에 재생될 수 있도록 본사와 협의하여 2012년 상반기 중 검토 작업을 거쳐 2013년 1분기에 적용 완료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방송에서 자막은 1회성/휘발성으로 이탈자가 있어도 이슈가 적지만 인터넷 다시보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료로 서비스되기에 서비스 노출 전 자막 품질관리 즉, 방송자막에 대한 교정·검수 후 서비스가 불가피하며, 이와 같은 자막관리 시스템 구축에 8개월 간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자막 교정·검수 관리 등에 연간 약 8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막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전 방송콘텐츠 약 87,500개는 소급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화면해설방송은 재방송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본방송 대비 방송시간이 적어 웹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중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제공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용과 화면해설용 등 2개의 영상물 관리가 필요하여 저장장치, 인코딩 장비 등 별도 추가적인 시스템 구성과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수화방송은 송출된 화면에 수화가 포함된 경우 지상파와 동일하게 실시간 및 다시보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장애인 전용 사이트 운영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2006.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기반의 사이트를 개통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위 사이트를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검토하고 기획하였으나 사용자의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의거 개별 사이트를 개편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 검토를 중단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다시보기 무료 및 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문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추진을 중단하였다.

3) ○○○ 웹 사이트(www.○○○.co.kr)

가) ○○○ 웹 사이트는 자회사인 ○○○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별 개선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기획 및 개발을 진행하여 2012년 말까지 80%이상 웹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다. 2012. 3.까지 프로그램 다시보기에 대한 자막 서비스 적용과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편성표, 온에어의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적용하였고, 2012년까지는 TV, 라디오, 뉴스 등 주요 페이지 웹 접근성 구현, 모든 메뉴를 키보드로 이용 가능토록 플래시 사용 메뉴 개선, 장애인을 위한 무료 및 할인서비스 검토, ○○○ 본사와 협조를 통해 방송송출용 화면해설, 자막방송 등 방송신호를 활용하여 다시보기 서비스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 멀티미디어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편의제공 관련, 자막방송의 경우 원본 방송영상물에 자막이 포함되지 않아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나, 다시보기 서비스에서는 공청망을 통해 수신한 동영상(MPEG2)에서 자막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막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서비스하고 있다. 단, 추출된 자막정보가 영상과 동기화하지 않아 프로그램별 전체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영상에 동기화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정 프로그램 개발, 보정 인력 투입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의 추가가 예상된다. 화면해설방송은 본사로부터 화면해설 부가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원본 방송영상물 소스를 전송받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수화방송은 프로그램 내 수화방송이 삽입된 경우 지상파와 동일하게 실시간 및 다시보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 웹 사이트(○○○.co.kr)

○○○ 웹 사이트는 ○○○에서 운영방향 등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웹 접근성 점검 결과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콘텐츠 명도대비, 정지 기능 제공, 반복영역 건너뛰기, 제목 제공, 기본언어 표시, 표의 구성, 마크업 오류 방지,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과 초점 등의 항목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 플레이어 관련하여서는 신규 동영상 플레이어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 ○○○ 특성상 전체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 ○○○ 웹 사이트(○○○.co.kr)

○○○ 웹 사이트는 △△지역 민영방송으로 ○○○에서 관리하고 외부용역업체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웹 접근성 14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웹 접근성 지침에 따른 인식성, 기술성 부분은 준수율을 높였지만, 운용성 및 이해성 부분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자막 등 제공은 지역 방송콘텐츠에 대한 자막방송 시스템 설치가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이므로, 자막방송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되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방법을 확정한 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더불어, 웹 사이트 전면개편 계획을 2012. 5. ~ 8. 수립하여 전체적으로 웹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웹 페이지 작성을 위한 차기 표준 언어인 HTML5(Hypertext Markup Language)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6) ○○○ 웹 사이트(○○○.co.kr)

○○○ 웹 사이트는 △△△지역의 민영방송으로 ○○○이 관리하고, 자회사인 ○○○을 통하여 위탁운영 하고 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한 13개 항목에서 2012. 3.까지 대체 텍스트 제공, 제목 제공, 기본언어 표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표의 구성, 레이블 제공,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 완료하였다. 키보드 사용 보장,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논리적 순서 제공 등에서 조치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콘텐츠가 방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중영 프로그램 페이지도 검사하기 때문이므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2012년 중 단계별 개편과는 별도의 웹 접근성 사이트를 구축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결과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3사는 3차례(1차 2010. 11, 2차 2011. 6, 3차 2012. 3), △△지역 방송사는 1차례(2011. 4. ~ 7.) 웹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의 웹 접근성 준수율은 지상파3사, △△지역 방송사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사별 웹 사이트 평가결과 준수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지표별 평가결과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웹 사이트	평가결과(준수율)		증감	비고
	2차 (2011. 6.)	3차 (2012. 3.)		
○○○	8 / 22 (36.4%)	11 / 21 (52.4%)	16.0%p	
○○○	8 / 22 (36.4%)	12 / 21 (57.1%)	20.7%p	
○○○	8 / 22 (36.4%)	11 / 21 (52.4%)	16.0%p	
○○○	8 / 22 (36.4%)		-	2011.4.평가
○○○	7 / 22 (31.8%)		-	2011.7.평가
○○○	9 / 22 (40.9%)		-	

※ 평가결과는 '준수항목수/평가항목수' 임

나. ○○○, ○○○, ○○○ 웹 사이트 접근성 관련

1)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미제공, 반복되는 메뉴의 건너뛰는 기능 미제공, 방송영상물 다시보기 및 방송의견 제시를 위한 회원가입시 보안문자 입력에서 음성정보 미제공, 회원가입 시 입력항목에 레이블 미제공 등으로 인하여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확인 및 접근이 어렵다는 진정사항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등이 상기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생략]

2) 또한, ○○○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 ○○○(○○○.co.kr)은 방문접수, 우편접수를 하지 않고 웹 사이트를 통해서만 지원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장애인들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시 보조도구 사용, 시험시간 추가 제공 등 '장애인 응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험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이 혼자서 시험 접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 초기 화면의 경우 스크린리더가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메뉴 자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3) ○○○, ○○○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 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비용 결제 과정에서 팝업창 안내, 대체 텍스트 제공, 레이블 제공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이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이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4) ○○○, ○○○, ○○○ 웹 사이트 개선 현황

가) 피진정인 ○○○는 2011. 5. ○○○사이트에 대해 ○○○ 메인 및 뉴스 페이지, 회원가입 및 인증 페이지, TV 및 라디오 각 프로그램 페이지 등을 2011. 12.까지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같은 해에 개선 작업을 하여 2012. 3. 현재 대체 텍스트, 반복메뉴 건너뛰기 기능, 체계적인 메뉴 구성, 저시력자 웹 접근성 저해 요소 제거 부분을 ○○○ 메인 페이지 등에 개선 반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기관 점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 텍스트, 반복메뉴 건너뛰기, 회원가입 입력도움 기능 등 장애인이 웹 사이트를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항목들이 개선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2012. 3. 추가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 예산확보 등 실질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않아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 ○○○는 웹 사이트에 대해 2011. 4. 제시한 단계별 개선계획에 따라 ○○○ 메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메인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들을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2012. 3. 현재 개선 완료하였다 하고, 회원가입, 로그인, 편성표, 온에어 등 공통서비스와 각 프로그램별 페이지를 2012년까지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기관 점검결과 등에 따르면, 2011년 대비 약 20% 개선이 이루어져 자체 개선 계획을 어느 정도 준수 하고는 있으나, 개선 완료하였다고 한 부분 중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웹 사이트 접근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통서비스, 즉 회원가입 및 결제처리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인 ○○○는 ○○○ 웹 사이트에 대해 2012년까지 80%이상 웹 접근성 준수를 목표로 개선작업을 하여, 2012. 3. 현재 회원가입, 로그인, 편성표, 온에어 등의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적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2년까지는 대부분의 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전문기관 점검결과에 따르면 약 50%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1년 대비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웹 접근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타 방송사 웹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 결제처리 등 기본적인 공통서비스는 개선이 되지 않았다.

다. ○○○, ○○○, ○○○ 웹 사이트 접근성 관련

1) 피진정인들이 관리하는 웹 사이트는 진정인이 제출한 조사결과와 전문기관에서 점검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접근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표 생략]

2) ○○○, ○○○, ○○○ 웹 사이트 개선 현황

가) ○○○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 ○○○는 당초 2011년까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선 예정이었으나, 점검결과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진정인 ○○○은 ○○○ 웹 사이트에 대해 2011년까지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보장 등 웹 접근성 14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2012. 3. 현재 사용자 인식성, 사용자 조작 용이성 부문에서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1. 7. 점검 결과 대비 대체 텍스트 제공 등 기본적인 접근항목에 대해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키보드 사용 보장, 반복영역 건너뛰기 등 운용성 측면에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진정인 ○○○은 ○○○ 웹 사이트에 대해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레이블 제공 등 웹 접근성 준수 8개 항목은 2011. 12. 31.까지 개선 예정이었으나, 키보드 사용 보장,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논리적 순서 제공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 7. 점검결과 대비,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용에 여전히 제약이 있다.

라.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편의제공(자막, 화면해설, 수화) 관련

1) 방송사 웹사이트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웹 접근성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즉 웹 접근성 지침에서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인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2) 웹을 통한 자막서비스는 방송사에서 송출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시간정보(time code)가 포함된 자막데이터를 추출하고, 영상과 동기화 작업을 한 후, 자막 교정·검수 과정을 거쳐 플레이어가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즉, 자막데이터 추출·관리와 재생 플레이어 체계를 갖추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수작업(자막입력, 동기화 작업)으로 하여 제공하기에는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 방송사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에도 실시간 자막서비스에서 자막의 오타자 등에서 품질의 한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 피진정인들의 편의제공 현황을 보면, ○○○의 경우 자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자막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추출된 자막의 품질이 서비스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자막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기술, 자원 및 예산 측면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의 경우 2012년 상반기 중 검토 작업을 거쳐 2013년 1분기 적용 완료하여 서비스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도입 예산, 구축 기간 및 솔루션 도입 방안, 연간 예상 운영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의 경우 자막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막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추출된 자막정보가 영상정보와 동기화 되지 않아 프로그램별 전체 자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 ○○○의 경우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으로 자막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4) 화면해설서비스의 경우, 지상파 3사 및 △△지역 방송사 모두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실시간 방송시 송출화면에 화면해설이 포함된

경우 지상파와 동일하게 서비스 하고 있다. 수화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내 수화가 삽입된 경우 지상파와 동일하게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장애인 전용 웹 사이트 운영 관련

○○○와 ○○○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웹 사이트로 ○○○, ○○○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이트는 텍스트 기반으로 다시보기, 뉴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 2011. 11.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듣기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토록 확대 개편하여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사이트를 사용자의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향후 폐쇄할 예정임을 밝혔다. ○○○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5. 판단

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및 법인의 의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같은 법 제21조는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서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각장애인 등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웹 사이트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사용자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13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국가표준으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9호, 2010. 12. 31.)되었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 의무화된 웹 접근성 부문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지침은 장애인 등이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침 1.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에서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지침은 제정목적에서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방법만을 이용하여 구현한 웹 콘텐츠라 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동 지침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 및 사용이 어렵다면 이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동 지침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고 있는 점, 현재 동 지침조차 준수되지 않은 웹사이트가 다수인 점, 진정인이 특정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동 지침에 준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방송사 웹 사이트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모든 기능의 키보드 이용 보장, 회원가입 시 입력도움 등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며,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무료 혹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되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 되지 않는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한편, 피진정인 ○○○에서 관리하는 웹 사이트를 통해서 ○○○에 응시하거나, 수신료 말소/면제 요청 및 시청자불만처리 등 방송관련 민원·행정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해당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해당 피진정인의 웹 사이트의 경우 장애인의 웹 사이트 사용성 평가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웹 콘텐츠로서, 이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진정사항 중 ○○○ 및 ○○○의 장애인 전용 웹 사이트 내용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이트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추가적인 웹 사이트이고, ○○○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2011년 개선하였고, ○○○는 폐쇄 예정이므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문제와 웹 접근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웹 사이트의 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개선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웹 사이트상 기본적인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술수준에서 자막을 추출하여 영상과 동기화된 방식의 자막서비스 제공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의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기술 적용 및 관리에 있어 피진정인들의 재무현황 및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웹 사이트 구축에 수반되는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서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진정인 ○○○ 및 ○○○는 2009. 4. 11.부터, 나머지 피진정인은 ‘그 외의 법인’에 해당되므로 2013.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 외의 법인’에 대하여 2013. 4. 11.까지 적용을 유예한 것은 피진정인을 권리구제 절차에 있어 강제이행(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서 유보한 것이지 피진정인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자체를 면제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피진정인 ○○○ 및 ○○○는 2009. 4. 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피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대상에 해당한다.

6. 결론

피진정인 ○○○는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방송콘텐츠 자막서비스는 기술·재정적 한계로 서비스 품질이 확보되면 실시할 계획임을, 피진정인 ○○○는 2012년까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개선하고 자막서비스는 2013년 상반기에 서비스할 계획임을, 피진정인 ○○○도 2012년까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막서비스는 현재 동기화되지 않은 자막을 제공하고 있음을, 피진정인 ○○○은 전면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피진정인 ○○○은 2012년 중 단계별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위 사항과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은 웹 사이트를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기에 제약이 있어 각각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되나, 2010년 진정제기 후 지금까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점은 방송 관련 서비스라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 및 관련 규정, 정당한 사유 등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피진정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별표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원칙 (4개)	지침(13개)	검사 항목(22개)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2.1(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광고민성 발작 예방) 광고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원칙 (4개)	지침(13개)	검사 항목(22개)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 (Robust)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별 지 2〉

피진정인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결과

원칙 (Principle)	지침 (Guideline)	검사항목 (Requirement)	준수여부						
			○○ ○	○○ ○	○○ ○	○○ ○	○○ ○	○○ ○	
1.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1.1 대체텍스트	1.1.1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X	X	X	X	X	X	
	1.3 명료성	1.2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1.2.1 자막 제공	X	X	X	X	X	X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	○	X	○	○
		1.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1.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	○	○	○	○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	○	○	X	X	○
1.3.4 배경음 사용 금지	1.3.4 배경음 사용 금지	○	○	○	○	X	○		
2.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2.1 키보드 접근성	2.1.1 키보드 사용 보장	X	X	X	X	X	X	
		2.1.2 초점 이동	X	○	○	○	X	X	
	2.2 충분한 시간 제공	2.2.1 응답 시간 조절	○	○	○	○	○	○	
		2.2.2 정지 기능 제공	○	○	○	X	X	○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	○	○	○	○	○	
	2.4 쉬운 내비게이션	2.4.1 반복영역 건너뛰기	2.4.1 반복영역 건너뛰기	X	X	X	X	X	X
2.4.2 제목 제공		2.4.2 제목 제공	○	X	X	X	X	X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	○	○	○	○	○	
3.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3.1 가독성	3.1.1 기본 언어 표시	X	X	X	X	X	X	
	3.2 예측 가능성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X	○	X	X	X	X	
		3.3.1 콘텐츠의 선형화	3.3.1 콘텐츠의 선형화	○	○	○	○	○	X
	3.3 콘텐츠의 논리성	3.3.2 표의 구성	3.3.2 표의 구성	X	X	X	X	X	X
		3.4 입력도움	3.4.1 레이블 제공	3.4.1 레이블 제공	X	X	X	X	X
3.4.2 오류 정정	3.4.2 오류 정정		○	○	○	○	○	○	
4. 견고성 (Robust)	4.1 문법 준수	4.1.1 마크업 오류 방지	X	X	X	X	X	X	
	4.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4.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	X	X	X	
		준수 개수	11	12	11	8	7	9	

3

2016. 4. 22.자 14- 진정-0887500 외 1건(병합) 결정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결정사항】

【1】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A기업이 본인확인을 위한 보안문자 확인단계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할 때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및 제23조의 3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주)○○○○○○○○ 대표

【주 문】

피진정인에게,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본인이 가입한 웹사이트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2014. 1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웹사이트 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본인확인 절차 중 자동입력 방지를

위한 보안문자 입력 단계에서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진행을 할 수 없었던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바, 피진정인이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에서는 음성지원이 되고 있어 진정인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에서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정보주체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은 후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 웹과는 달리 모바일 웹에서는 보안강화 수단으로 제공되는 본인확인 보안문자에 음성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 제조사, 브라우저 종류, OS버전 등이 너무나 다양하고 상이하여, 모든 환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작하도록 개발하기 어렵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기기 테스트 및 프로그램 변경 작업 등의 진행이 필요하며,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모바일 웹에서 보안문자 음성듣기 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다. 참고인(한국○○○○○원)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확인 보안문자 부분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신용평가, 신용조회, 본인확인 등 신용정보 전 분야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피진정인은 포털사이트 ‘○○’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와 달리 모바일 환경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듣기 등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사실로 인정된다.

3) 피진정회사와 같이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며, ios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나. 판단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법인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역시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와 브라우저가 다양하므로 모든 환경에서 일률적으로 동작하도록 개발하기 어렵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안문자 음성듣기 지원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의 의견에 의하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본인확인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 지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고, 피진정인과 유사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업체가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확인 보안문자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구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이 모바일 환경에서 진행되는 본인확인 절차 중 보안문자를 음성 등의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정보 접근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차별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바,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강명득 위원 최이우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 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바.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

1

2012. 6. 13.자 11-진정-0074901 결정
【장애인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에 의한 차별】

【결정사항】

○○시장 및 ○○도시공사 사장에게, ○○○○○○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조속히 제공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 실내수영장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수영장 내 출입 시 계단 또는 이동식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며 수영장 입수를 위한 입수보조시설인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 【2】 ○○구청의 경우에는 ○○○기념관 실내수영장 주출입구 쪽 이면도로의 통행로에 대해서 휠체어 장애인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통행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수영장 내 장애인 화장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1. ○○시장 2. ○○도시공사 사장 3. ○○구청장

【주 문】

1. ○○시장 및 ○○도시공사 사장에게, ○○○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조속히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기념관의 실내수영장에 다음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으니 시정을 원한다.

가. 실내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닥 등이 잘 정비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수영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안내판이 부식형으로 읽기가 매우 불편하고, 장애인화장실에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자동센서 장치가 없는 등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이 없었다.

나.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영장 탈의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이동형 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는 크고 무거워 이동형 리프트를 이용할 수도 없다. 또한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장애인은 수영장 내에서 입수할 수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시장, ○○도시공사 사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 실내수영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적 의무시설 이외에 권장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초등학교 장애인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간대별로 장애인 및 재활치료 위한 전용 레인(일일 평균 55명 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월 회원 중 장애인 이용객은 7% 정도가 정규반 수강 중에 있다.

나) ○○도시공사 ○○○○부 강○○

○○○수영장 특별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은 곰두리수영반, 아쿠아로빅반(주3회, 주2회)이 있다. 곰두리수영반은 초등생부터 중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2회 운영하고 있고, 아쿠아로빅반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포함하여 비장애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15:00 ~ 15:50 무료 강습 운영하고 있고 자유 수영은 시간대별로 장애인 등을 위해 지정한 레인에서 할 수 있다.

수영장 주출입구에 설치된 점자축지도의 경우 부식형은 신모델이자 보급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설치한지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고 예산 문제도 있어 방부형으로 교체를 한다면 2013년에 가능하다.

다) ○○구청장

휠체어 이용 시 장애인을 위한 해당 지역 보행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진정인과 보행로 개선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2012. 3. 중으로 보행로를 개선할 예정이었으나 재생아스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6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시장, ○○도시공사 사장

수영장 시설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이동식 리프트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나) ○○도시공사 ○○○○부 강○○

실내수영장은 2층 건물 구조로 되어 있고 휠체어 장애인 등의 입수 편의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검토했으나 경사로 설치시 수영장 바닥의 파손 등의 문제로 인해 보류가 되었다. 대신 리프트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기념관 실내수영장 주출입구 쪽 이면도로의 통행로의 경우, 통행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2012. 6.중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에 대한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 수영장 주출입구에는 부식형의 점자촉지도가 설치되어 있다.

3) 수영장 내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물 내림 자동 센서, 비상벨, 세정장치, 수도꼭지 감응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은 곰두리수영반, 아쿠아로빅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도 ○○시의 인구는 728,775명이다.

2) ○○○기념관 실내수영장에는 엘리베이터 내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수영장 내 출입 시에는 계단 또는 이동식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며 수영장 입수를 위한 입수보조시설인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청에서는 ○○○기념관 실내수영장 주출입구 쪽 이면도로의 통행로에 대해서 2012. 6월중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에 대한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수영장 내 장애인화장실에 물 내림 자동 센서, 비상벨 및 인터폰, 세정장치, 수도꼭지 감응장치 등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으로 곰두리수영반, 아쿠아로빅반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그리고 점자(또는 촉지도식) 안내도 설치 시 방부형으로 할 것인지 부식형으로 할 것인지는 설치 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식형의 점자촉지도 설치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사항 관련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 제2항 관련)’에 의하면 편의시설 공통 필수로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내시설 수영장에는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10. 4. 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체육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진정 대상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체육시설로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와 ○○도시공사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 ○○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은 수영장 내 엘리베이터 및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물 구조 및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영장이 있는 건물을 직접 현장조사한 진정의 전문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는 관계없이 내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현재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이동로는 계단 또는 이동식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 ○○시의 연간예산 규모(2011년 세출예산 7,472억원)에 비추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점,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진정대상 수영장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대상 ○○○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단주

2

**2012. 6. 13.자 11-진정-03715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진정도서관 내 자료실, 열람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과 ○○시립 ○○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기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층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서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제2항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진정도서관 내 자료실, 열람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과 ○○시립 ○○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본관(이하 ‘피진정 도서관 1’이라 한다) 및 ○○시립 ○○도서관(이하 ‘피진정 도서

관 2'이라 한다)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층의 시청각실 및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실, 학습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정보접근, 교양함양, 학습기회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 도서관 1은 1993년에 사용 승인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피진정 도서관 2는 1985년 사용 승인된 3층 건물이다. 피진정 도서관들은 각 2층 이상의 건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각 도서관별로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대출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이 도서관 내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직원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어 피진정도서관 1, 2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동 행사 개최 이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도서관 1은 1993. 5. 3. 사용 승인된 후 2003년 3층을 증축하여 3개 층을 도서관으로 사용 중에 있고, 피진정도서관 2의 본관은 1985. 6. 20. 3층 건물로 사용 승인된 후 2005. 10. 26. 1층을 증축하였으며, 별관은 1999. 1. 11. 증축하여 3개 층을 도서관으로 사용 중이다.

2) 피진정도서관 1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에 시청각실, 1층에 아동자료실·디지털자료실, 2층에 일반자료실·문화강좌실, 3층에 일반열람실·남녀학생 열람실이 있으며, 피진정도서관 2의 본관은 2층 건물로 1층에 한옥어린이자료실, 2층에 일반자료실·속보자료실이 있고, 별관은 3층 건물로 1층에 디지털자료실·시청각실, 2층에 남녀학생학습실·남녀일반학습실, 3층에 연구실·휴게실이 있으나, 피진정도서관 모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지하층 혹은 2층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같은 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진정도서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2010. 4. 11.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도서관에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피진정 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i) 피진정 도서관 1, 2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 피진정 도서관에서는 층간 이동을 원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직원들이 휠체어를 통째로 들어 옮기는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방식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도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고 내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층간 이동시마다 도서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직원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등 피진정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적서비스는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는 점, ii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의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진정 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 도서관의 편의시설 미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은 피진정 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2012년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 우선배분으로 피진정도서관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진정도서관에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여수세계박람회와 같은 국가적 행사와 관련된 사업 등에 피진정인이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2011년도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2012년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어 피진정도서관에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예산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

그러나 i)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 예산규모가 2011년도 6,731억원, 2012년도 6,895억 원이며, 피진정도서관 1, 2 모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총 4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진정 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i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iii) 피진정인이 동 행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피진정 도서관 1, 2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피진정 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피진정인이 피진정 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진정 도서관의 지하층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서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별표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 사업자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2013. 4. 3.자 12-진정-0636400 결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기각함.

【결정요지】

- 【1】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2. 4. 11.부터 사립대학박물관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2】 피진정인은 관람대상이 제한적이기에 「편의증진보장법」을 근거로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점자 등이 있는 안내 책자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 및 비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 기재와 같이 피진정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대학박물관으로 2012. 4. 11.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점자로 된 안내자료 제작비나 바코드변환프로그램 구입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진정인이 점자 등이 있는 안내책자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함.
- 【3】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1. 피진정인이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진 정 인】 이○○

【피 해 자】 박○○

【피진정인】 ○○ 대학교 총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2. 7. 24. ○○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점자안내책자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나. 화장실은 박물관 내 지하에 있었는데 계단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학교 박물관 규정 제3장 제14조에 의거 관람대상이 본교에 재직이나 재학중인 교직원 및 학생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제2조 제7항의 ‘공중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학을 방문한 내외빈이나 지역주민들이 관람을 요청할 때에는 되도록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대학교 박물관은 1973년에 개관하여 현재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된 상태이다. 본 박물관은 지상5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화장실 등이 있고 2~5층은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화장실은 별도로 없고 승강기도 없어 장애인이 관람을 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1층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건물 노후 및 구조 등의 문제로 인해 박물관 전체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조속한 기간 안에 있을 예정인 본 박물관의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의 계획이 세워지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점자안내책자와 장애인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서울 ○○구 ○○동에 위치한 ○○대학교 박물관은 1973.에 개관되었고, 5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화장실 등이 있고 2~5층은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2) ○○대학교 박물관 관리규정 제14조에는 관람대상으로 ‘이 대학교 교직원, 이 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관장이 소장품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람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 이용안내에는 관람시간 및 약도가 있고, 관람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진정요지 관련

1) 현재 ○○대학교 박물관 출입구에는 점자블록, 촉지도식 안내판 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화장실도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2) 현재 ○○대학교 박물관에는 박물관을 소개하는 점자안내책자 또는 음성지원 되는 안내책자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3) 2013. 4. 1. 피진정인은 ○○대학교 박물관을 비롯한 ○○대학교 교내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박물관에 점자블록,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부착 등의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점자책자 등의 인쇄물도 예산에 반영하여 제작 및 비치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 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2. 4. 11.부터 사립대학박물관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①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③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④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대학교 박물관은 관람대상이 제한적이기에 「편의증진보장법」을 근거로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점자 등이 있는 안내 책자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 및 비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 기재와 같이 ○○대학교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으로 2012. 4. 11.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점자로 된 안내자료의 경우는 20쪽 100부 기준 소요 경비는 약 100만원 내외이고,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자료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약 1,800만원~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점자 등이 있는 안내책자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1. 피진정인이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차별

1

**2012. 3. 23.자 10-진정-0621700 결정
【피해보상금 산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기왕증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액을 재산정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장애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를 종합평가함에 있어 진정인의 기왕증에 대하여 전문의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진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장애 2급을 적용하였는데, 노동 상실률은 장애 2급이라 하더라도 장애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법」상 장애 2급이 「학교안전법」상 장애 2급에 반드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은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장애급여를 산정하였으며, 이는 사법·행정절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피진정인】 김○○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기왕증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학교안전사고 공제 급여 지급액을 재산정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장애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광역시 소재 ○○과학정보고등학교에 재학 중, 2009. 10.경 학급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왼쪽 4번째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제14급 제7항 장애등급을 받았다. 진정인은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지체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전문의사의 진단도 없이 ‘노동력이 없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만 지급하고,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진정인은 이미 뇌세포 손상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평소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약간의 외부 충돌로도 넘어질 수 있는 상태이다. 2009. 10. 22. 2교시 시험을 마치고 학생들이 책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책상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사물함의 열쇠고리 부분을 짚었다. 이로 인해 좌측 제4수지 건열 골절 및 신전건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2) 본 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거, 별표 3의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에 따라 지체장애 2급이 이번 사고로 인하여 받은 장해진단 제14급 제7항 보다 최상급이어서 일실수익은 지급할 수 없었다.

3) 그러나 본 공제회에서는 진정인의 노동력 상실률 5%에 대한 위자료 산정액 중 과실상계 40%를 적용하여 1,35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뇌세포손상으로 인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며, 피진정인은 「학교안전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다.

나. 진정인은 2009. 10. 22. ○○정보과학고등학교 교실에서 왼손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최하급인 제14급 제7항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진정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2009년도 종합소득 886,000원)을 피진정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일실소득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보상금 지급심사 자료에 진정인의 소득 자료를 반영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은 2009. 12. 7. 피진정기관으로 부터 1차 공제급여 결정통지서(치료비 89,680원)를 받았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여 2010. 9. 3. 2차 공제급여 결정통지서(위자료 1,350,000원)를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의 경우 지체장애 2급으로 평생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이므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을 적용하여 일실수익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기왕증인 지체장애 2급에 대한 신체장애 등급 및 노동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문의 등 전문가의 소견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 2급을 적용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등으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재화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위반 여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종류와 장애등급을 구분한 목적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장애인복지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것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이고, 「국가배상법」과 「학교안

전법」의 장애등급은 1급부터 14급이다. 둘 다 의학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 또는 장애 등급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의사의 진단과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엄정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가 및 행협 배상업무처리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등급 및 이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은 반드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병원의 장애등급 판정결과가 별표 2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맥브라이드 방식이나 미국의학협회(A.M.A.) 방식에 의한 것인 때는 별표 2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재판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애를 종합평가함에 있어 진정인의 기왕증에 대하여 전문의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진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장애 2급을 적용하였다. 노동 상실률은 장애 2급이라 하더라도 장애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법」상 장애 2급이 「학교안전법」상 장애 2급에 반드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은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장애급역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법·행정절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3.3.>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정도의 판정기준·장애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신체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① 제15조에 따라 장애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장애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장애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장애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애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별표 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全廢)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팔꿈치관절(肘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무릎관절(膝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腕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관절(足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자 6.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100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00
제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 기능이 모두 폐용(廢用)된 자 7. 두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0
제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80
제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廢用)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0
제7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中等度)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애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60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흉한 모양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와 검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	50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시아협착(視野狹窄) 또는 시야변상(視野變相)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를 상실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40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10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컷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가 폐용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0
제1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안구(眼球)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애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애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가 폐용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남은 자 	20
제1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애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한 귀의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가슴뼈(胸骨)·늑골·어깨뼈(肩胛骨)나 또는 엉덩뼈(骨盤)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 장관골(長關節)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국부에 현저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 	15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아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검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未關節)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9.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0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자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 (주)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屈折異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喪失)이란 엄지의 경우에는 지관절(指關節),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의 폐용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애로 본다.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애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9	8	8	8	8	8	7	6	5	4	3	2	1
8	8	7	7	7	7	7	6	5	4	3	2	1	1
7	7	6	6	6	6	6	5	5	4	3	2	1	1
6	6	5	5	5	5	5	4	4	4	3	2	1	1
5	5	4	4	4	4	4	3	3	3	2	1	1	1
4	4	3	3	3	3	3	2	2	2	1	1	1	1
3	3	2	2	2	2	2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주) 별표 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애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

6. 국가 및 행협 배상업무처리지침

제12조(신체장애등급과 노동력상실률) ① 장애등급 및 이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은 반드시 영 별표 2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②병원의 장애등급판정결과가 영 별표2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맥브라이드방식이나 미국의학협회(A. M. A.)방식에 의한 것인 때는 영 별표2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재판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등급판정결과가 병원마다 다른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 재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장애등급판정결과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영 별표2의 노동력 상실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상의 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한다.

2

2012. 6. 28.자 12-진정-0440800 결정
【중증장애인 구급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결정사항】

○○교도소장에게, 피해자가 수용 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여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 【2】 진정요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3】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및 「헌법」 제10조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 「헌법」 제10조

【진 정 인】 이○○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피권고인】 ○○교도소 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해자가 수용 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바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손발을 사용할 수 없는 선천성 뇌성마비 1급의 중증 장애인인 바 2012. 6. 14.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2012. 6. 19. 16:30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어서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피해자는 현재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생명 및 신체 상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주장

1) 강○○ (○○교도소 의료과장)

입소 첫날인 2012. 6. 19. 중증장애인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보고, 교정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해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으나 결국 불허되었다.

이후, 피해자를 5일 정도 세심히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장애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노○○ (○○교도소 보안과장)

○○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재차 건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 우○○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후, 담당 검사가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하여 수용 상태를 확인하였고 의료과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두 다리의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손의 떨림 현상이 있어 몸을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등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뿐 현재 다른 병이 있거나 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료 거실에 수용되어 재소자 2명의 보조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수용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법적 검토결과, 진정인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4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급 기관인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4) 박○○(○○지방검찰청 검사)

○○지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의견내용을 검토하였고 규정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위, 현재 ○○소 의료거실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황 등을 참작하여 지청의 담당검사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절차에 따라 불허 처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의 주장내용, ○○교도소 의료과장 등 관계인들의 진술,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사건이 2012. 6. 14. 대법원(2011도9879)에서 형이 확정되어 2012. 6. 19.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교도소 의료과장 강○○는 입소첫날인 2012. 6. 19. ‘피해자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며, 목이나 어깨 요통의 증상과 보행장애 및 양손 사용이 불가능하여 수감생활시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며,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사망의 위험성이 농후한 자로 형의 집행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 며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 우○○ 검사는 담당검사의 ‘현장확인 및 피해자와 의료과장 등 면담자료’ 및 관련 법조를 검토하여 상급기관인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2. 6. 21.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측은 2012. 6. 22. 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재신청을 한 상태이다.

라. 피해자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여 ○○교도소 측은 1일 동료수용자 2명씩을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용전에 복용하던 한약환을 투여 받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물리치료요구와 목욕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4. 판단

- 가. 형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권리로 보기 어렵고(2011헌마347), ○○지방검찰청이 담당검사의 현장확인과 피해자와의 면담 및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 처분한 것이 불합리 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 나.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직접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구치소 의료과장의 소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의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법상 부여된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다. 아울러,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항 제6호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기왕에 권역별로 갖추어져 있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라.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에 의하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UN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제2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

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사건의 판단에 앞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3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결정사항】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사기관은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2】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반전화 발신번호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진정한 스스로 답변·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련 내용 문의 시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음.
- 【3】 최근 전자정보통신의 발달에 걸맞게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므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26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협약」 제13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검찰총장

【주 문】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2010. 8. 3.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발신번호가 일반 전화번호라서 관련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없었다.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 인권옹호 방안 추진에 관한 지시’(대검 형사기획과 - 8544호, 2004.12.31)를 시달한 바 있다. 이 지침에 청각장애인 관련 업무처리 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16개 협회와 91개 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화통역센터’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건 관계인 소환은 공적인 업무로서 검찰청에 비치된 공용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만약 검사 또는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임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대질조사 시 경찰조사과정에 참여한 수화통역사를 참여시키는 등 청각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현재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가족,

친지 등에게 부탁하여 검사실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가족, 친지 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향후에는 청각장애인을 출석 요구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스스로 문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에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4. 12. 31. 피진정인은 ‘장애인 인권옹호방안 추진에 관한 지시’(대검찰청 혁신 기획과 - 0000)를 소속기관에 시달하였으며, 첨부된 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은 ① 신체장애인을 위한 출장조사 적극 시행, ② 심신장애인에 대한 진술 보조권 행사 방안, ③ 수화통역인 활용시스템 구축, ④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필·대독, 점자 서비스 제공 방안 등 주로 수사과정에서 진술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나. 2010. 8. 3. 피진정인 소속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는 “2010형제00000호 상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지청으로 2010. 8. 19. 10:00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청 000호 검사실 박○○ 수사관”이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일반전화(000-000-0000) 발신번호로 진정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진정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음성통화를 할 수 없어 당일 날 저녁 지인에게 전화연락을 부탁하여 출석 요구 사유 등을 확인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9. 12. 10. ○○○○경찰서에서 관련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수화통역사는 ○○농아인협회 소속 김○○ 수화통역사가 참여하였고 동 수화통역사가 피진정기관의 조사에도 참여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함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장애인 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은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법·행정절차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

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포함되며, 따라서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에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피진정 기관이 진정인에게 일반전화 발신번호로 출석요구를 한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살펴보면, i)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경우 구술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ii)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정인 스스로 답변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하였던 점, iii) 그 결과 진정인은 출석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iv) 그리고 수사 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출석 요구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사법·행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라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여부

피진정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공용 휴대전화번호나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안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통지가 가능한 점으로 볼 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피진정인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2004. 12. 3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위 방안에는 장애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2008. 4.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적극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자정보 통신기기의 발달로 화상통화, 3자 통화, 보이스아이, 인터넷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있는바, 이러한 통신수준에 걸맞게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예방을 위하여 장애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한 수사과정에서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사법접근성

1.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2012. 8. 22.자 10-진정-0621700 결정
【제빵 실기시험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빵 실기시험에 수화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시험주관기관인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의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2】 청각장애를 가진 수험자의 경우 수화통역이 아닐 경우 다른 수험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필기시험에 있어 청각장애인 수험자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며, 실기시험에 있어 수화통역사를 위촉하지 못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3】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실기시험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각장애인 수험자의 수험편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기관의 시혜적 행위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동 법의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진 정 인】 허○○

【피진정인】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빵 실기시험에 수화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2급 장애인으로,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2011. 12. 16.자 제빵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소속 부산본부에서는 필기시험에만 수화통역이 가능하고 실기시험에는 수화통역 없이 필답으로만 진행한다고 하면서 수화통역 제공을 거부한 바, 이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제빵실기시험 접수시 수화통역자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청각장애인은 필기시험의 경우는 장애인 증명 자료를 받아 전산등록한 후 수화통역을 위촉하며, 실기시험의 경우는 공단 자체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4항에 의거 청각장애인이 작업형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자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시험 진행 중 필답 등을 통하여 수험정보를 전달하여야 하기에 별도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실기시험시 수화통역사 위촉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수화로 대화를 주고받기에 시험감독관이 제공하지 않는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수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빌미 제공의 여지가 있어, 수험자 편의제공이라는 측보다는 공정한 국가자격시험 집행을 위하여 배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진정인의 실기시험은 자체제작 유인물과 진행요원의 필답으로 전문 수화통역사 없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며, 2011. 12. 16. 시험 당일에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실기시험 진행순서, 오븐사용법, 믹싱기 사용법, 시험장 배치도 등을 제공하

여 시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서류, 피진정기관의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진정기관에서 주관하는 2011.12. 16.자 제빵기능사 실기시험을 접수하면서 수화통역사를 요청하였고, 피진정기관 실기팀 000 과장은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화통역사 제공을 거부하였다.

나. 2011. 12. 16. 실시한 제빵실기시험의 응시자는 총 19명으로, 장애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청각장애인 3명이며, 진정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보청기를 착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시험 시작 30분전에 대기실에서 검정장 배치안내, 소지품 보관, 시설물 배치도 등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 졌고, 실기 시험장에서 오븐사용법, 전자저울사용법, 믹싱사용법 등 장비에 대한 설명이 10분간 실시되었으며, 시험은 오후 1시 10분에 시작하여 오후 5시 10분에 종료되었다.

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시험 시작이후, 장비사용법 등에 대해 장애인이 이해를 못하거나 질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감독 위원이 청각장애인에게 필답으로 설명하였고, 장비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필답 또는 직접 시연을 통해 설명하였다.

라. 진정인은 자신이 착용한 보청기와 감독 위원의 입모양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나, 다른 청각장애인 한 명은 감독 위원의 설명을 전혀 들을 수 없어, 진정인이 수화로 시험감독관의 설명을 동료 청각장애 수험자에게 설명하였다.

- 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피진정기관은 “실기시험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수험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수화통역사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을 2012. 4. 5. 개정하였다.
- 바. 동 지침 개정이후, 2012. 5. 청각장애 2급 ○○(○○.○○.○○.생, 남)이 제빵 실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수화통역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산하 ○○○○○○ ○은 시험전날인 2012. 5. 14. ○○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필기시험과 달리 실기 시험에서는 수화통역사를 위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 사. 행정안전부 및 공군에서는 청각장애인 수험자를 위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있어 모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b)항은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의한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법, 형태를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할 것’, 동조 (c)항은 ‘인터넷을 포함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을 위한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시험주관기관은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의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제빵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제빵 실기시험은 수험자의 신분확인 후 수험자 유의사항 및 시험장배치도, 시험장비 사용법, 시험 과제 등에 대한 설명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청각장애가 없는 수험자는 수험생들에게 배포되는 유인물 외에 감독위원의 구두 설명과 즉각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나, 청각장애를 가진 수험자의 경우 구두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고 궁금한사항에 대해 필담(筆談)형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러하듯, 필기시험 응시에 있어 청각장애를 가진 수험자는 수험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수험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필담을 통한 의사소통은 구술에 의한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시험시간으로 고려하지 않아 청각장애인 수험자는 다른 수험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필기시험에 있어 청각장애인 수험자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기관이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과도한 부담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진정기관은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에 수화통역사를 위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i)수화통역사는 피진정기관이 위촉하는 것으로 수화통역사 또한 시험 감독위원의 지위에 있는 점, ii)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사를 위촉하고 있는 점, iii)행정안전부 등 다른 기관의 면접, 실기시험에서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는 점 iv) 수화통역사를 위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회당 8만원 ~ 12만원 정도이며, 피진정기관 소속 부산본부의 경우 연간 한 두건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실기시험에 있어 수화통역사를 위촉하지 못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동 지침의 개정 필요성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2012. 4. 5.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4항의 말미에 “다만,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수험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수화통역사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실기시험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각장애인 수험자의 수험편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기관의 시혜적 행위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동 법의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이 인정사실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지침의 개정 이후에도 실기시험에 있어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바,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 지침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관주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장애인,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의 방법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b)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의한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법, 형태를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할 것
- (e) 수화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궤배제궤분리궤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궤설비궤도구궤서비스 등 인적궤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26조(사법궤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궐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궐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궐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4. 산업인력관리공단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감독위원 배치 및 관리) - 개정 전

④ 청각장애인이 필기궐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감독위원 1인은 한국농아인협회 소속의 수화통역사로 위촉하고, 작업형 실기시험은 소속기관에서 자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시험 진행중 필기 등을 통하여 수험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위원 배치 및 관리) - 개정 후(2012. 4. 5. 개정)

④ 청각장애인이 필기·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감독위원 1인은 한국농아인협회 또는 단체(공공기관 우선) 소속의 수화통역사로 위촉하고, 작업형 실기시험은 소속기관에서 자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시험 진행중 필기 등을 통하여 수험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수험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수화통역사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5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

【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결정사항】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지적장애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이나 위축감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더욱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이나 진술권 등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임.

정신적 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형사·사법절차에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핵심적 내용임.

그러나 피진정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소장 작성 경위,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 등을 질문하는 등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음.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21조
-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이○○

【주 문】

1. 2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내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2009년에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진정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2010. 3. 고소를 하였다. 2010. 8. 25. 피해자는 사건담당 검사인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때 좋죠?"라는 등의 질문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신뢰관계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조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0. 8. 25.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 동석하였던 상담원이 휴대전화 통화를 위해 한차례 정도 영상녹화실 밖으로 나갔는데, 상담원이 나갔다 온 시간은 15분 이하로 그렇게 길지 않았다. 또한 조사 당시 본인은 남자이고, 피해자와 상담원은 여자인 점을 감안하여 본인은 조사시간 내내 영상녹화실의 문을 열어 놓고 조사를 하는 등 괜한 오해를 피하려고 하였다.

조사당시 본인은 상담원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하거나 상담원이 부재중인 시점을 노리고 특정 질문을 한 바 없다. 또한, 상담원이 영상녹화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상담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여러 차례 본인에게 진술하였던 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하였던 것이다.

또한, 직접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을 형사사건의 특성상, 상담원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진술을 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냥 동석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와 같은 사건의 성격상, 가령 상담원이 수사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전혀 새로운 주장 사실에 대한 질문이 있지도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비장애인 조사 시와 비교하여 차별을 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조사에 상담원이 동석하도록 배려하였고, 진정인의 폭행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소로 대피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내용,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 조사관련 녹취 CD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0. 3. 진정인이 고소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피진정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당시 ○○지방검찰청 ○○지청 근무)로 현재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고 있다.

나. 같은 해 8. 25. 피해자는 성폭력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영상녹화실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당시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원이 동석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을 당시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켜주어 피진정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녹음하였다.

라. 조사 당시, 피진정인은 조사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면서 피해자와 동석한 성폭력 상담센터 상담원이 자리를 비운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그런데 막상 성관계를 하면 하고 싶으니까, 그게 좋아서”, “본인도 성관계 하는거 자체는 싫은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사람과 하는게 아니다란 생각은 들었다는 거죠”라는 질문과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 고소장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성폭력상담센터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때 좋죠?” 등의 질문을 한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진정인은 주장하나,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CD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한 질문은 “그런데 막상 성관계를 하면 하고 싶으니까, 그게 좋아서”, “본인도 성관계 하는 거 자체는 싫은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다는 거죠”라는 내용으로, 이는 가해자의 위계·위력에 의한 강간 여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상 불가피한 질문으로 판단되는 바, 성적 함의가 담겨져 있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지적장애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이나 위축감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더욱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이나 진술권 등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 장애인에게 동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사법·행정 절차 등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

법」 제221조 제3항에서는 수사과정에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하듯 정신적 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형사·사법절차에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소장 작성 경위,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 등을 질문하는 등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위원 궤관주 위원 강명득

〈별 지〉

관 련 규 정

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6.1]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2014. 4. 22.자 14-진정-0160100 외 7건 (병합) 결정
【6·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

【결정사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결정요지】

- 【1】 현재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라 정해진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1조 제7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됨. 한편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와 더불어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대원칙에도 반하는 것임.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제7항에 근거하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기표대의 폭이 75cm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움. 따라서 현행 기표대의 규격을 조정하고,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3】 현재의 기표방식으로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어 정확히 기표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는 투표의 필수 과정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거인과 동등한 정도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임. 피진정인이 이를 개선함에 있어 정당간 합의가 필요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특수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천공식 기표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음.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직선거법」 제151조제7항, 제157조 제6항

【진 정 인】 1. ○○○ 2. ○○○ 3. ○○○ 4. ○○○
5. ○○○ 6. ○○○ 7. ○○○ 8. ○○○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4. 6. 4.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견수렴, 정보제공, 기표대, 기표방식에서 아래와 같이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 가. 피진정인은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신형 기표대의 제작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나. 피진정인은 2014.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비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일반형 신형 기표대(이하 '비장애인 기표대'라 한다)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장애

인이 사용 가능한 거동불편사용 신형 기표대(이하 '장애인 기표대'라 한다)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이 제작한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이 우측에만 설치되어 있어, 오른쪽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다.

라. 피진정인은 비장애인 기표대와 장애인 기표대를 구분하여 제작하였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용기표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피진정인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이 제작한 장애인 기표대는 폭이 좁아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서 기표할 수 없다.

사.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의견수렴

장애인 기표대를 제작하기 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고, 제작 후에도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정보제공

장애인 기표대를 제작한 후 장애인단체의 보완 요구가 있어 최종 형태의 결정이 늦어져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었으나, 2014. 3. 24. 장애인 기표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의 장애인 기표대의 기표판 위치

장애인단체의 문제제기로 기표대 전면에도 고정식 기표판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이것 역시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책받침 형태의 임시 기표판을 마련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의 공용기표대 제작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공용기표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규격이 상향 조정 되어야 하는데, 투표소의 한정된 공간 및 제작 예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5) 진정요지 마항의 기표방식의 다양화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도록 기표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6) 진정요지 바항의 투표보조

투표 보조인 2인이 장애인 기표대의 후측면에서 기표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

7) 진정요지 사항의 시각장애인의 기표확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투·개표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하여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견수렴

피진정인은 2014. 6. 4.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될 장애인 기표대의 규격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중 지급건수 상위 5개 품목을 선정하고, 2013. 8. 12. ○○○○○○○○○○○○, ○○○○○○○○○○○○○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은 2013. 8.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 기표대 규격 결정을 위해 제시한 전동휠체어 5개 품목, 전동스쿠터 5개 품목에 동의함. 하지만 일부 특수 제작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제작된 기표대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선거과정에서 기표대 이용의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같은 날 ○○○○○○○○○○○○는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을 위한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샘플을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동안의 지급건수가 높은 5개 품목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존 보급제품도 반영할 수 있도록 샘플 품목 선정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또한 정형화된 기성제품의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제품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용 기표대를 제작하여야 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본래의 계획대로 상위 전동휠체어 5개 품목, 전동스쿠터 5개 품목을 기준으로 장애인 기표대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기표대 정보제공

피진정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될 비장애인 기표대의 정보를 2014.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장애인 기표대에 관한 정보는 같은 해 3. 24.에 공개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기표판 위치

피진정인은 당초 장애인 기표대 안의 기표판을 우측에만 설치하였다가 2014. 2. 28. ○○○○○○○○○○○○○가 기표판 위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기표대 정면에도 기표판을 설치하였다. 또한, 정면과 우측의 기표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책받침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A4용지 크기의 임시 기표판을 마련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기표대 구분

피진정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될 기표대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각 30,000개와 78,000개를 제작하였다.

장애인 기표대는 높이가 82cm로 비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낮고, 비장애인 기표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폭이 좁고, 기표판의 위치가 높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구분된 기표대를 전국의 사전투표소 3,506개소에 장애인용 기표대 1개와 비장애인용 기표대 1개를 각 설치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에는 전국의 13,600여 투표소에 장애인용 기표대 2개와 함께 투표소 규모에 따라 비장애인용 기표대를 평균 4~6개 설치할 예정이다.

제작단가는 장애인 기표대가 38,000원이고 비장애인 기표대가 27,000원이므로 비장애인 기표대를 모두 장애인 기표대로 제작할 경우 비용은 현재의 32억 6천 5백만원에서 8억 6천 6백만원이 추가 소요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의 기표방법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거소투표의 경우에 기표용지에 "○"표를 하는 것 외에 다른 기표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 진정요지 바항의 투표보조

장애인 기표대의 가로 폭은 95cm이며, 기표대 제작을 위해 참고한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급여지급 상위 5개 품목의 너비는 최소 56cm에서 최대 66.8cm의 범위에 있다.

기표대의 우측과 정면에 설치된 기표판의 폭은 20cm로, 기표대에서 기표판의 폭 만큼 을 제외한 사람의 활동 가능공간의 가로 폭은 75cm이다.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대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 어렵다.

사. 진정요지 사항의 시각장애인의 기표확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하여 본인이 직접 기표하거나, 보조인을 통하여 기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표 후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기표가 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은 현재 정당 간 합의된 바가 없어 공직선거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견수렴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여 2009. 1. 10.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4조(일반의무) 제3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야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한 일반적인 의견수렴 및 참여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진정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될 장애인 기표대의 규격을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인 ○○○○○○○○○○○○과 ○○○○○○○○○○○○ ○에 의견을 요청한 뒤 가장 많이 보급된 전동휠체어 5개 품목과 전동스쿠터 5개 품목의 규격을 기준으로 장애인 기표대를 제작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급적 장애인 단체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 관련 규정들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지 않은 한, 피진정인의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기표대의 기표판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초 장애인 기표대의 우측에만 기표판을 설치하여 오른쪽 신체를 사용하기 힘들거나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리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기표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기표대의 정면에 기표판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우측과 정면의 기표판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책받침 형태의 임시 기표판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진정인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별다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기표대 정보제공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초 장애인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나 2014. 3. 24. 홈페이지에 장애인 기표대의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원회의 별다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기표대의 구분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는 “보편적 설계”를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면서, 같은 협약 제4조(일반의무) 제1항 (바)호는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제작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예정인 장애인 기표대는 높이가 낮아 비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비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이 높고 폭이 좁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용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한되어 살펴볼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가능한 기표대를 제작하는데에 8억여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점, 폭이 넓은 장애인 기표대로 전부 설치할 경우 투표소에 따라서는 장소가 협소할 수

있고, 투표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예산과 투표소 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 외에 이 진정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이 장애인 권리협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진정요지 마항의 기표 방식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라 "L"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기표방법으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와 더불어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바. 진정요지 바항의 투표보조인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당사국에게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

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7조 제4항에서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보조인과 함께 2인 이상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이를 제외한 기표대의 폭이 75cm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투표보조인이 기표대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도 기표대의 뒷면에서 팔 등 신체 일부만 기표대 내에 넣어 투표보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그와 같은 투표보조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표 및 보조 방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표대의 규격이 조정되어야 하며,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 진정요지 사항의 시각장애인의 기표내용 확인

진정요지 마항에서 살펴본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와 같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기표방식으로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자 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선거인이 기표 후 기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투표의 필수적 과정 중 하나인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보조인은 기표행위 자체만을 보조하고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기표가 되었는지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에 반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기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고 보조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결국 본인에 의한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투표의 필수 과정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거인과 동등한 정도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기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간 합의가 필요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특수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천공식 기표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마항, 바항, 사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2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2014. 11. 24.자 13-진정-0822000 외6건(병합) 결정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은 차별】**

【결정사항】

- 【1】 경찰청장에게 시력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 【2】 진정사건은 각 기각

【결정요지】

- 【1】 한쪽 눈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시야각이 좁고 거리감각에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 운전 시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시력이 낮을수록 교통사고율이 높고 단안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운전수행능력이 있어 결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2종 운전면허 경우보다 더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
- 【2】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보조장치가 개발되고 있는 점, 단안 시각장애인의 운전능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상반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안 시각장애인의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이 필요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5. 8. 22. 05진차112 결정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주 문】

1.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시력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사건은 각 기각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개요

가. 진정인 : 최○○, 이○○, 정○○, 한○○, 김○○, 이○○, 장○○

나. 피진정인 : 경찰청장

다. 진정요지 : 진정인들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이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 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개별적인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형 자동차는 차량의 길이·폭·높이가 일반 자동차와 달라 운전자의 시야 및 거리 감각이 중요한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하 ‘단안 시각장애인’이라 한다)은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감각 등에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상의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단안 시각장애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 사안에 대해 2003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나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영국과 독일 등 외국의 경우도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9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대한 단안 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바,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조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췌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므로, 한쪽 눈이 실명되었거나 또는 한쪽 눈의 시력이 0.5 미만의 저시력인 사람들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의 운전에는 있어서 시력은 주변의 교통상황, 위험발생의 가능성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므로 운전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시력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2002헌마677, 2003. 6. 26.)한 바 있다.

다. 우리 위원회는 진정사건(05-진차-0000112, 사건명 :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용역이용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2005. 8. 22.)한 바 있다.

5. 판 단

단안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시야각이 좁고 거리감각에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 운전 시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시력이 낮을수록 교통사고율이 높고 단안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운전수행능력에 있어 결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2종 운전면허 경우보다 더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Ⅱ.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권고

1. 정책권고 배경

우리 위원회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2종 운전면허 경우보다 더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보조장치가 개발되고 있는 점, 단안 시각장애인의 운전능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상반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안 시각장애인의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2. 판단 및 참고기준

미국 「연방 시력면제 프로그램」(The Federal Vision Exemption Program)⁸⁾, 호주 「상업용 및 자가용 운전적성평가」(Assessing Fitness to Drive for commercial and private vehicle drivers)⁹⁾, 뉴질랜드 「의학적 측면의 운전 적성, 의사를 위한 가이드」(Medical aspects of fitness to drive, A guide for medical practitioners)¹⁰⁾를 참고하였다.

3. 판단

가. 운전면허 관련 법령의 개정 현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이 2008. 6. 22. 삭제되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도 2010. 7. 23. 삭제되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3) 청각장애인도 단안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으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2010. 7. 23.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를 청각장애인표지 및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 부착하는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일정한 청력기준(55데시벨)에 미달하는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착용을 조건(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8) <http://www.fmcsa.dot.gov/medical/driver-medical-requirements/driver-exemption-programs>

9) Assessing fitness to drive for commercial and private vehicle drivers, medical standards for licensing and clinical management guidelines, March 2012, The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NTC), Australia

10) <http://www.nzta.govt.nz/resources/medical-aspects/6.html> : Medical aspects of fitness to drive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제1종 대형·특수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으나 신체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을 2013. 12. 17. 개정된 결과 신체장애인이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외국 사례

버스, 트럭 등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에 대해서 영국, 독일과 같이 단안 시각장애인에게 면허취득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면허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1) 미국

가) 미국 교통부 연방자동차안전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은 「연방 시력면제 프로그램」(The Federal Vision Exemption Program)¹¹⁾ 운영을 통해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안 시각장애인 운전자에게도 주간(州間) 상업(Interstate Commerce)¹²⁾ 목적의 차량(Commercial Motor Vehicle, CMV) 운전면허 자격을 최대 2년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갱신이 가능하다.¹³⁾

나) 위 프로그램은 단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단안 시각장애인 운전자가 주(州)와 주(州) 사이를 운행하는 상업용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법 49 CFR 391.41(b)(1-13)¹⁴⁾에 규정된 신체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거나 기타 유효한 의학적

11) <http://www.fmcsa.dot.gov/medical/driver-medical-requirements/driver-exemption-programs>

12) 주간 경계(State Boundary)를 넘나들며 승객, 화물 등을 수송하는 영업

13) Federal Register / Vol. 69, No. 161 / Friday, August 20, 2004 / Rules and Regulations

14) <http://www.ecfr.gov/cgi-bin/text-idx?rgn=div5&node=49:5.1.1.2.34#49:5.1.1.2.34.5.11.1>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상업용 차량운행에 필요한 최소 시력기준 적용 면제(vision exemption)를 받으려면 매년 건강진단과 안과 의사 또는 검안사에 의한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매년 상업용 차량 운전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재인증 시험에서 운전자는 시력면제(vision exemption) 증서와 안과 전문의가 발행한 시력검사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1년간 면허 자격이 유지되고, 운전자에게 의학검사증명서가 발급된다.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시력면제 증서와 의학검사증명서를 소지할 책임이 있으며, 단안 시각장애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 의학적으로 적격이며, 단안 운전자를 위한 최소 시력기준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년 시력면제(vision exemption) 프로그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라) 위와는 별도로 미국은 저시력 운전자들에게 조건부 면허(restricted licence)를 발급해 주는데, 통상 부여되는 조건은 주간에만 운전(daylight-only driving), 고속도로 운전 금지, 특정구역만 운전 허용, 추가 거울(additional mirrors left and right outside, wide-angle, panoramic) 부착, 망원렌즈(telescopic lenses) 착용 등이며, 이러한 조건들은 법규 또는 안과의사의 권고에 기초하여 운전면허발급기관이 부여한다.¹⁵⁾

2) 호주

가) 호주 교통위원회(National Transport Commission)의 상업용 및 자가용 운전적성평가(Assessing Fitness to Drive for commercial and private vehicle drivers)¹⁶⁾에 의하면, 시력 기준은 원칙적으로 자가용 면허의 경우에 단안 혹은 양안 시력이 최소 0.5 이상이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상업용 면허는 좋은 쪽 눈 시력이 최소 6/9 (약 0.6)이며 동시에 좋지 않은 쪽 눈의 시력이 최소 6/18 (약 0.3)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나, 이러한 시력 기준을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391.41 Physical qualifications for drivers. (b)A person is physically qualified to drive a commercial motor vehicle if that person ~

15) <http://serinet.meei.harvard.edu/faculty/peli/papers/Ch401-X0016.pdf>, Chapter 401, June 2007(저자 : Eli Peli)

16) Assessing fitness to drive for commercial and private vehicle drivers, medical standards for licensing and clinical management guidelines, March 2012, The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NTC), Australia

충족하지 못하는 단안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업무의 성격, 안과의사 및 검안사에 의한 시력검사 소견서, 시야각 등을 운전면허기관에서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건부 상업용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나) 호주 교통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단안 시각장애인은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안과의사 또는 검안사가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장애가 없는 다른 한쪽 눈에 대해서 최소한 매년 검사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전자의 과거 안전운전경력도 고려하고 있다.

다) 호주 교통위원회는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 상업용 차량은 통상 도로의 바닥보다 운전석의 높이가 2~3m 높으며, 단안 시각장애인의 시야각 결손을 보충해줄 수 있는 넓은 앞 유리창과 측면 후사경이 있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쪽 눈을 갑자기 실명한 경우에는 통상 새로운 시각 상황과 거리감각에 다시 적응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 보통 3개월 정도 후에 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뉴질랜드

가) 트럭, 버스 등 대형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기 위한 시력기준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켜 시력이 최소 0.7 (6/9), 두 눈의 시력이 각각 최소 0.3 (6/18) 이상이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야각(Visual Field)이 최소 140도를 충족해야 하나, 단안 운전자(Drivers who have vision in only one eye)의 경우, 시력에 관한 기준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형자동차 면허 신청 및 갱신 시 시력기준 면제(exemption)를 신청해야 한다.¹⁷⁾

나) 뉴질랜드에서 단안(單眼)은 한쪽 눈만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쪽 눈의 시력이 0.1 (6/60)이하인 경우로 정의 되며, 좋은 쪽 눈이 운전에 적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병리적 요인이 없을 경우 운전면허 발급기관은 상업용(버스, 트럭 등 대형자동차) 운전면허를

17) <http://www.nzta.govt.nz/resources/medical-aspects/6.html> : Medical aspects of fitness to drive

예외적으로 발급해 주고 있다. 예로, 단안인 사람이 상업용 운전면허를 기존에 발급받은 후 면허 갱신 시 예외적으로 대형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안과 의사 또는 검안사로부터 좋은 쪽 눈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긍정적 소견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소견서에는 좋은 쪽 눈에 대한 시력 및 시야 기준 충족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차량 외부 양쪽에 후사경(external rear-view mirrors on both sided) 장착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한쪽 눈 실명 후 적응과정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므로 의심이 가는 경우 운전면허발급기관은 실제 도로주행을 허가하기 전 대상자에 대해 주행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다. 외국 연구자료

1) 양안 운전자에 비해 단안 시각장애인 운전자가 갖는 시야각 협소 및 원근감, 입체감 등의 문제와 실제 교통사고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들의 결론은 연구자료에 따라 그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청이 우리 위원회에 기존 제시한 연구자료 4건¹⁸⁾에 의하면 ① 시력이 낮은 집단이 보통 이상의 시력을 가진 집단보다 교통사고율이 높았고, ② 시야에 손상을 입은 운전자 군의 교통사고율은 정상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운전자군에 비해 2배가 높았으며, ③ 단안인 운전자는 시각기능 중 대비시력, 야간시력, 탐시력, 눈부심 저항력 등에 결함이 있었으며, 운전수행능력 중 정보인지능력에서 차이가 있었고, ④ 시각손상자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2) 반면 우리 위원회가 본 진정사건 접수 후 조사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시야와 안전 운전 관계」(The relationship of fields of vision to safety in driving)¹⁹⁾를 연구한 다니엘슨(Danielson)은 시야각 결손(Vision Field Deficits)을 가진 높은 위험군에 속한 운전자들과 사고경력이 많은 운전자 등 총 68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시야각 결손으로 사고가

18) Hofstetter(1976, 미국), Keltner와 Johnson(1983, 미국), McKinght 등(1985, 미국), Rogers 등(1987, 미국)

19) Danielson R: The relationship of fields of vision to safety in driving. Am J Ophthalmol 1957; 44:657-680.

유발되었다고 믿어질 수 있는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평가했으며, 또한 다른 연구²⁰⁾들도 교통사고율과 시야각 결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시야 손실과 운전 수행에 관한 소급연구」(Visual field loss and driving performance: a retrospective study)²¹⁾에서는 시야 손실의 정도(The extent of visual field loss)가 운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야 손실의 위치(the location of the loss)가 운전 적합성(driving fitness)과 상당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테스트를 한 결과, 조사대상 단안 운전자들의 79%가 안전 운전자들(safe drivers) 이었으며, 단안이라는 결함이 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특히,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단안 및 양안 각 40명 운전자들의 시력에 따른 운전수행 능력을 비교 평가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단안 및 양안 운전자들의 시각 및 운전수행에 관한 연구」²²⁾ 결과, 단안 운전자들은 양안 운전자들에 비해 명암 민감도(Contrast Sensitivity)가 낮고, 야간 및 빛이 환한 곳에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며, 거리 감각이 부족하나, 정지 상태에서의 시력과 이동 상태에서의 시력, 개별 안구의 시야각(양안 : 173도, 단안 : 145도), 눈부심 상태에서의 회복 시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등 단안 및 양안 운전자 그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시각적 탐색, 차선 유지, 차간 거리 판단, 공간 지각 능력, 위험 발견, 정보 인지 측면에서 양안과 단안 운전자들의 운전수행능력은 차이가 없었다. 다만, 양안과 단안 연구 대상자들 모두 운전수행능력 및 시각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개인차가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단안 운전자들

20) ① Ivers RQ, Mitchell P, Cumming RG: Sensory impairment and driving: the blue mountains eye study. Am J Public Health 1999; 89:85-87. ② Decina LE, Staplin L: Retrospective evaluation of alternative vision screening criteria for older and younger drivers, Accid Anal Prev 1993; 25:267-275. ③ Ball K, Owsley C, Sloane ME, et al: Visual attention problems as predictors of vehicle crashes in older drivers. Invest Ophthalmol Vis Sci 1993; 34:3110-3122. ④ Burg A: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on test scores and driving record: general finding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Department of Engineering; 1967. Report 68-27.

21) Racette L, Casson E: Visual field loss and driving performance: a retrospective study. In: Abstracts of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vision in vehicles. Boston, MA: Boston University; 1999:17.

22) The visual and driving performance of monocular and binocular heavy-duty truck drivers(1991, 미국), 출처 :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ume 23, Issue 4, August 1991(저자 : A.J. McKnight, D. Shinar, B. Hilburn)

은 양안 운전자들에 비해 일정 부분의 시기능(視技能) 축소로 인해 특정 운전기능 수행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나, 안전 측면을 고려한 일상적 운전 기능에 있어서 단안 운전자들은 양안 운전자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최신의 운전보조장치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신의 다양한 운전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²³⁾들이 현재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첨단

23) ADAS에 관해, 교통안전공단 이기호 선임연구원의 칼럼 참조

(<http://board.auto.daum.net/gaia/do/car/column/read?bbsId=carcolumn&articleId=188&pageIndex=5&forceTalkro=T&objCate1=26>)

- ① 전방충돌 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주행 차선의 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를 감지하여 전방 자동차와의 충돌 회피를 목적으로 운전자에게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경고를 주기 위한 장치
- ② 자동비상 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주행 차선의 전방에 위치한 자동차와의 충돌 가능성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운전자의 반응이 없거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돌을 완화 및 회피시킬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동적으로 감속시키기 위한 장치
- ③ 적응순항 제어장치(ACC, Adaptive Cruise Control): 운전자의 설정조건에 의해 주행차선의 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그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감속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목표 속도로 자동 주행하기 위한 장치
- ④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주행하고 있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벗어나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경고를 주기 위한 장치
- ⑤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주행하고 있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탈하려는 것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운전자의 반응이 없거나 차선을 이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선 이탈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본래 주행 중이던 차로로 복귀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 ⑥ 사각지대 감시장치(BSD, Blind Spot Detection): 접근하는 자동차 그리고 사각지대에 위치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로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근접하는 자동차로 인해 사고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 ⑦ 적외선 후방감지 카메라: 후방감지카메라를 사용하여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야간에도 적외선 후방 감지카메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
- ⑧ 주차 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를 사용하여 차 뒤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
- ⑨ 보안경: 보안경(ELVEX)을 착용할 경우 야간운전 시 더 밝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
- ⑩ 사각지대 없는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 없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
- ⑪ 슈퍼와이드 곡면 룸미러: 300MM길이의 와이드 룸미러를 통해 사각지대를 차단하여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
- ⑫ 어라운드 뷰 모니터(Around View Monitor): 차량 주행 시 차량 주변 360도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감지 센서와 지능형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전방 충돌회피, 차선이탈경고, 사각지대 감시, 향상된 후방감시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시야각과 거리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단안 시각장애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운전보조장치들을 활용할 경우 단안 시각장애인의 안전운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 제1종과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9인승 승합자동차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1~12인승 승합자동차는²⁴⁾ 차량의 길이, 높이, 폭이 동일하거나, 길이와 폭이 근소하게 차이가 날뿐 두 종류의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달리 규정할 정도로 운전방식과 차량의 구조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호주에서는 승용차 운전면허(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로 12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는 승용차 운전면허(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로 4.6톤 이하 트레일러까지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 소결

제2종 운전면허 보다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더 높은 시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의 경우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거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의 사용을 조건으로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이

24)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승합차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와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이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7년 5월 그랜드 스타렉스(11~12인승) 출시 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9인승 승합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생산된 스타렉스 차량제원을 확인한 결과, 스타렉스 점보(9~12인승)의 경우 9인승, 11인승, 12인승 모두 전장(5,035mm), 전폭(1,820mm), 전고(1,970mm)가 완전 동일하며, 스타렉스 RV(7~9인승)의 경우 전장(4,695mm), 전폭(1,820mm), 전고(1,885mm)가 스타렉스 점보에 비해 전장은 340mm 짧고, 전고는 85mm 낮으나, 전폭은 동일하다. 한편, 2014년 8월 현재,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한 9인승 및 11인승 승합차인 카니발의 경우 9인승 및 11인승 모두 전장(5,115mm), 전폭(1,985mm), 전고(1,740mm)가 동일하다.

가능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안 시각장애인도 다양한 운전보조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버스, 트럭 등 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단안 시각장애인에게도 안과의사 또는 검안사가 발급한 시력검사 소견서, 건강진단서 또는 운전업무의 성격 등을 운전면허 발급기관에서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건부로 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 및 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시력과 운전능력의 상관관계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9인승 승합자동차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1~12인승 승합자동차의 길이와 폭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예외나 조건부 면허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III. 위원 강명득의 소수의견

다수의견은 단안 시각장애인은 시야각이 좁고 거리감각에 문제가 있어 교통사고 연결 가능성이 높은 점과 시력이 낮을수록 교통사고율이 높아 운전수행능력상의 결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을 합리적 이유로 삼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상의 기준이하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의 원천적 배제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아래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6항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득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할 정도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적극적 평등조치를 법률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운전면허제도는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능력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운전을 허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제 면허시험 응시자의 운전능력 유무를 심사하여 운전능력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가 가능할 경우 발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응시자의 운전능력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일괄하여 기준시력에 미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이 규정상의 기준시력 미만의 장애인을 배제·거부하여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위 규정이 제1종 운전면허의 적성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자에게 해당 운전면허의 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의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적절한 수단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운전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없이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므로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가) 피진정인이 제시한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통계 및 운전면허 소지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0월까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178,902건 중 비장애인은 178,787건(99.94%), 장애인은 115건(0.06%)이며, 이를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로 환산할 경우, 비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의 사고발생율은 0.49%(178,787건/36,560,281명)인

반면, 장애인은 0.08%(115건/137,794명)로 비장애인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장애인 운전자에 비해 약 6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신의 다양한 운전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들이 현재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첨단 감지 센서와 지능형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전방 충돌회피, 차선이탈경고, 사각지대 감시, 향상된 후방감시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시야각과 거리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시각장애인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러한 보조장치를 활용한다면 위 규정 기준시각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에도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들에 대해 안전운전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차량 카메라, 센서, 레이더 등으로 주변 정보를 분석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무인자동차가 개발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다) 위 규정상의 제1종 운전면허의 시력기준은 2002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된 것으로, 그 이후 십여 년 동안 눈부신 자동차 성능 개선, 운전보조기구 등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 도로안전시설의 확충 등을 고려해보면 안전성능이 보장된 운전보조기구 등으로 충분히 안전한 운전이 가능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한 세부적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제1종 운전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득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할 정도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적극적 평등조치를 이행하여 진정한과 같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다 덜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다른 장애인과의 사이에서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 보통·소형, 제2종 면허의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제1종 대형·특수면허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보청기 착용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고,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외의 면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보청기 착용이나 청각장애인표지, 볼록거울 부착을 요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거나 신체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의 사용을 조건으로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예외를 규정함이 없이 이 규정상의 기준시력 이하의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허되고 있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과 다른 장애인들을 다르게 취급하여 시각장애인만 운전능력의 보충을 조건으로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본 진정사건 접수 후 조사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시야와 안전운전 관계」(The relationship of fields of vision to safety in driving)를 연구한 다니엘슨(Danielson)은 시야각 결손(Vision Field Deficits)을 가진 높은 위험군에 속한 운전자들과 사고경력이 많은 운전자 등 총 68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시야각 결손으로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믿어질 수 있는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평가했으며, 또한 다른 연구들도 교통사고율과 시야각 결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시야 손실과 운전수행에 관한 소급연구」(Visual field loss and driving performance: a retrospective study)에서는 시야 손실의 정도(The extent of visual field loss)가 운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야 손실의 위치(the location of the loss)가 운전 적합성(driving fitness)과 상당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테스트를 한 결과, 조사대상 단안 운전자들의 79%가 안전 운전자들(safe drivers) 이었으며, 단안이라는 결합이 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단안 및 양안 각 40명 운전자들의 시력에 따른 운전수행능력을 비교 평가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단안 및 양안 운전자들의 시각 및 운전수행에 관한 연구」 결과, 단안 운전자들은 양안 운전자들에 비해 명암 민감도(Contrast Sensitivity)가 낮고, 야간 및 빛이 환한 곳에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며, 거리 감각이 부족하나, 정지 상태에서의 시력과 이동 상태에서의 시력, 개별 안구의 시야각(양안 : 173도, 단안 : 145도), 눈부심 상태에서의 회복 시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등 단안 및 양안 운전자 그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시각적 탐색, 차선 유지, 차간 거리 판단, 공간 지각

능력, 위험 발견, 정보 인지 측면에서 양안과 단안 운전자들의 운전수행능력은 차이가 없었다. 다만, 양안과 단안 연구 대상자들 모두 운전수행능력 및 시각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개인차가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단안 운전자들은 양안 운전자들에 비해 일정 부분의 시기능(視技能) 축소로 인해 특정 운전기능 수행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나, 안전 측면을 고려한 일상적 운전 기능에 있어서 단안 운전자들은 양안 운전자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규정상의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의 원천적 배제 및 거부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위 규정상의 기준 미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6항 및 제7항에 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김영혜 위 원 장명숙 위 원 유명하
위원 한태식 위 원 윤남근 위 원 곽란주 위 원 한위수
위 원 강명득 위 원 이선애 위 원 최이우

8

**2017. 4. 3.자 16-진정-1022500 외 24건(병합) 결정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지무원 소집순위 차별】**

【결정사항】

병무청장에게 사회복지무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 보충역의 자원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체등급 판정을 할 때 병역자원의 수급상황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를 가진 자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병역자원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일단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자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에게 후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참조조문】

「헌법」 제39조, 「병역법」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항, 제28조, 제31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26조, 「병역법 시행령」 제52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26조

【진 정 인】 박○○ 외 24명

【피진정인】 병무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무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6. 1. 1.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자를 사회복지무원 소집순위에서 가장 후순위인 5순위로 정하고, 사회복지무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

관 본인선택제도(이하 ‘본인선택제’라 한다)의 선발방식에서 소집순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진정인 등의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입학·취업·여행 등의 진로설계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소집 대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역법」 제28조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는 수행사유 보충역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4급 보충역을 5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는 병역의무 부과와 시급성과 병역의무자를 사용하는 복무기관의 자원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수행자와 정신질환자는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복무관리에 더 많은 행정소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소집통지 시 복무기관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31조 제5항에 의해 복무기관의 장이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어 수행사유 보충역과 정신질환 4급 보충역을 병무청장이 임의로 배치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2010년 감사원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에는 5순위자의 배치를 제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복무기관의 사회복지요원 활용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복무 관리·감독 측면과 감사원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15. 12.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순위를 4순위에서 5순위로 변경 조정하게 되었다.

본인선택제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이행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집자원 적정시기에는 모두 소집이 가능하므로 본인선택 시 소집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2015년 이후 소집자원의 잉여 및 소집순위 제도 취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개인별 자질을 감안하여 소집해야 하므로 본인선택제에 소집순위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현역·보충역 처분기준이나 소집순위 등은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복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사람이 훨씬 많은 현재 상황에서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수형자와 정신질환자의 본인선택 순위를 뒤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수형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인 사람이 복무를 희망할 경우 재학생입영신청서·우선소집신청서 제출, 본인선택제도를 활용하여 소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지연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4년) 소집되지 않을 경우 장기대기사유로 소집을 면제(전시근로역 편입)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역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1급~4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2016. 1. 15. 공고를 통하여 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체등급 중 4급을 보충역에 편성하고 있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한 신체등급 4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20조, 제21조 관련 [별표 2]에 따라 판정되는바²⁵⁾, 「병역법」과 피진정인이 수립하는 병역수급계획에 의하여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해당한다.

다. 「병역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1항은 개인별 소집통지의 순서를 1~5순위로 정하고 있는데, 병역기피자나 병역 기피우려가 있는 자 또는 병역처분이 변경된 자는 1~2순위, 재학생입영신청서 또는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 별도소집대상자는 3순위, 일반소집대상자는 4순위,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병역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

25)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기질성 정신장애 정도, 물질관련 장애 중등도,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조현병,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이외의 정신병적 상태) 정도,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등도, 신경증적 장애 중등도,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중등도, 기면병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중등도,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정도,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중등도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4급에 해당함.

법 위반자는 제외)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5순위가 된다(위 소집순위에 관한 규정은 2015. 12. 23.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규정 개정 전에는 현재의 4순위와 5순위가 구분 없이 함께 4순위로 분류되었다).

마. 4순위인 일반소집대상자가 복무순위를 앞당기고자 할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신청제·본인선택제·우선소집신청제·선복무신청제 등을 활용하여 본인이 선택한 시기에 인접하여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나, 5순위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는 재학생입영신청제와 우선소집신청제만 이용이 가능하고 본인선택제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추천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사회복지요원 소집률은 2015년 72.0%, 2016년 62.0%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4급자의 소집률은 2015년 32.9%이고, 5순위로 소집순위가 변경된 2016년 8.0%였다.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본인선택제의 경우 2016. 12. 기준 전체 신청자 46,492명 중 10,941명이 선발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4급자는 신청자 6,015명 중 113명이 선발되었다.

5. 판단

「병역법」 제3조 제3항은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규정」 제17조는 사회복지요원 소집순위를 정하고 있고, 제26조는 본인선택제라고 하여 소집대기 중에 있는 자가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병무청장이 추천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집순위에서 5순위를 부여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4급자는 소집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되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거나 개척할 시기에 입학이나 취업 등의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본인선택제에서 순위를 두어 선발함으로써 사실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복무시기를 앞당기거나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사회진출 지연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4년) 소집되지 아니할 때 소집이 면제된다고 하나, 병역판정을 받은 자는 병역수급계획에 의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는 자로 장기대기 끝에 궁극적으로 소집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기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자의 자원활용도가 낮다고 주장하나, 다른 신체등급 4급자에 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자의 자원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를 가진 자에 대하여 신체등급 판정을 할 때 병역자원의 수급상황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를 가진 자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병역자원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일단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에게 후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의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정하는 것은 「병역법」 제3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한수용

<별 지 2>

관 련 규 정

1. 「헌법」

제39조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 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지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병역법 시행령」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 1의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2. 법 제33조의10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 의사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소집순위) ①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2. 영 제52조제4호·제5호, 이 규정 제16조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9호·제13호·제14호·제15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3. 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한 별도소집대상자
4. 일반순위 소집대상자
5.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병역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③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소집대상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별도소집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순위를 변경하지 않고 당초의 소집순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5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2.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행방불명자 등)
3.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재학생입영신청서 또는 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 소집신청서 제출자)
4. 제16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우선소집신청서 제출자)
5. 제16조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선복무신청서 제출자)
6. 제31조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
7.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 받은 사람)
8. 영 제5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소집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을 소집단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조 및 규칙 제85조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집 대기 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인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하고,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복무기관 지정이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복무기관에 대한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⑥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본인선택한 일자에 소집하게 할 수 있다.

5. 괴롭힘 등

1

**2011. 10. 18.자 11-진정-01701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결정사항】

- 【1】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 횡령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 고발
- 【2】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6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과 피해자의 통장·도장·신용카드·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
- 【3】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 2의 금전적 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1은 피해자 소유의 금융자산을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가족 및 가정내에서 장애의 특성을 이용하여 장애인 동생의 금전을 착취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 【2】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진정인 1의 행위가 가족 내 형제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명백한 만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함.
- 【3】 피진정인 2의 경우에는 금전적 착취를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형법」 제355조·제361조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1. 이□○ 2. 이□△

【주 문】

- 1.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을 고발한다.

2.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과,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 2의 금전적 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셋째 형이고, 피해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현재 ○○○도 ○○군 △△면사무소 ○○과에 근무 중이다. 피해자의 넷째 형인 피진정인 1과 첫째 형인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피해자 모르게 적금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의 금전을 착취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제는 피해자가 결혼하였으니 피해자의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즉시 돌려주기 바라며, 그동안 피진정인 1이 임의로 사용한 돈도 함께 돌려주기 바란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본인은 사업에 실패한 후 형들의 권유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돌보기 위하여 2009. 1. ○○○도 ○○으로 내려왔고 2011. 4. 10. 피해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면서, 가사일과 피해자의 통장관리를 대신해 왔다.

그러던 중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피해자의 급여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약 6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본인 아들의 학비조로 약 4백만원을 사용한 바 있다.

피해자의 급여는 매월 2백7십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그 중 매월 약 35만원을 피해자의 용돈으로 사용하였고, 우체국 적금으로 매월 2백만원을 납입하였다. 그리고 우체국 적금은 피해자의 결혼 3개월 전에 해약하였는데 그 해약 금액이 약 2천800만원 정도가 되었다. 그 중에서 약 1천만원은 친척 이모의 아들에게 맡겼으며, 나머지 1천500만원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급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와 다른 형제들에게 잘못된 것이고 죄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겠으며 앞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피진정인 2는 최근에 ○○으로 이사 와서 본인이 피해자의 급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도 없다.

2) 피진정인 2

본인은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돈 약 6천만원을, 그리고 이복동생 이△이 약 4천만원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형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 ○○에 내려 왔다. 본인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거나 한 것은 없고, 피해자를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의 돈이 피해자에게 들어갔다.

라. 참고인 ○△△

참고인은 ○○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원으로, 19년간 피해자와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기도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이혼 후 ○○으로 내려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면사무소 소장과 합의하여 피진정인의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처음 1년은 잘 관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피해자가 사촌형 이○△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과 피해자의 우체국 적금 2천500만원을 피진정인 1이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이야기를 진정인으로터 들은 적이 있다. 피해자는 혼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집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집안이 지저분하였다. 피진정인 1이 동생인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통장내역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피해자는 취학 시기에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지만 간단한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선호의 표현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19년째 현 직장인 ○○군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넷째 형으로서 2009. 1월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 3월부터 2011. 3월까지 2년 1개월 간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해 왔다.

다. 피해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09. 3월부터 2011. 3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면사무소로부터 월급과 여비, 보상금으로 총 73,994,000원을 수령하였고, 2011. 1. 27. 사촌형 이○△으로부터 10,000,000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1이 통장을 관리한 약 2년 1개월간 피해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총 83,994,000원에 상당하며, 2011. 3. 27. 통장 잔액은 48,638원이다.

라. 피진정인 1이 2009. 3. 5.부터 2011. 3. 27.까지 CD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30,780,000 원, 적금이체 금액 18,000,000원,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 17,731,000원, 그리고 2010. 2월부터 2011. 2월까지 납입하고 2011. 3월에 해지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보험 불입금 24,794,000원을 합하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액은 총 91,305,000원에 상당한다.

마.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첫째 형으로서, 2011. 4월에 ○○으로 이사 와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11. 4월 이후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항은 가족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 의거할 때,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장애를 가진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을 장애를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있어 제한하거나 금전적으로 착취할 경우 이는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금융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착취를 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이 2009. 3월부터 2011. 3월까지 피해자의 통장을 혼자 관리해 온 점, 피진정인 1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월급 등이 들어오는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소유의 금융자산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그 사용액수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 1개월간 피해자에게 준 용돈 8,750,000원과 결혼자금으로 주었다는 15,000,000원을 합친 23,750,000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이 약 2년 1개월간 피해자의 예금통장, 도장, 신용카드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임의대로 처분한 금액은 최소 60,244,000원에 상당한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금액은 피진정인 1이 임의 사용하였다고 피진정인 2가 진술한 금액인 6천만원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금액이라는 점, 또한 피진정인 1이 동 금액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착취한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현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진정인 1의 행위가 형제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2의 경우에는 2011. 4월 이후 ○○에 내려와서 피해자의 통장 등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진정인 2에게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는 금전착취와 관계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해 금전적 착취를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 그리고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태훈 위원 한태식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6. (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3. 5. 6.자 12-직권-0001700 외 1건(병합) 결정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결정사항】

- 【1】 대한○○○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시 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결정요지】

-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 및 비하적 언어 사용과 성희롱, 폭행, 금품수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지도자의 경우 장애인선수에 대한 구타 및 폭언 등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함.
- 【2】 이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대한○○○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들을 지도·지원하는 상위기관으로서의 책임이 무거움.
- 【3】 또한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등 그동안의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체육활동 참여 및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스포츠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34조·제43조

【피 해 자】 ○○○ 등 장애인 체육선수 6명(별지 1 기재와 같다.)

【피조사기관】 대한○○○체육회

【피조사자】 ○○○ 등 12명(별지 2 기재와 같다.)

【주 문】

1. 대한○○○체육회장에게,

- 가.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할 때 첫째, 장애 특성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교육, 둘째,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 교육, 셋째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하여 실시할 것,
- 나.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시 장애 특성 및 장애 유형 이해교육,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발할 것,
- 다. 장애인 선수들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를 이천장애인훈련원에 배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를 이유로 선수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
- 라. 장애인 체육 지도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체육 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가.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나.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보치아²⁶⁾ 종목 국가대표팀 수석코치의 체육선수 폭행 및 금품갈취에 대한 장애인 체육선수 피해자 가족의 검찰 고발 사건이 2012. 9. 17. 언론 및 2012. 9. 18. MBC 9시 저녁뉴스에 보도되어, 2012. 9. 27. 상임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내용

- 가.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폭언, 폭행 행위 여부
- 나.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성희롱 행위 여부
- 다.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금품갈취 행위 여부
- 라. 관리·감독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및 조치 여부 등

3. 조사의 방법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보치아 종목 국가대표팀 수석코치의 체육선수 폭행 및 금품갈취에 대한 장애인 체육선수 피해자 가족의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대한○○○체육회는 2012. 10. 8.부터 10. 31.까지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82명(보치아 종목 제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26) 장애인 스포츠 중의 하나로 표적구에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임.
- 경기방법 : 표적구를 먼저 던져놓고 적색공과 청색공을 규칙에 의해 모두 던진 후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며 점수의 합으로 승패를 결정함. 경기는 남·여 구분이 없는 혼성 경기로서, 두 사이드로 구성되며 폴리그 방식으로 진행됨. 경기용 공은 적색과 청색 각 6개의시합공과 백색의 표적구 1개로 구성됨.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공을 잡거나 던지기가 불가능할 경우 흡통을 이용하여 굴려서 경기할 수도 있음.

검토하고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 감독 및 코치 등 피조사자와 동료선수 등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 3. 20. 장애인 체육의 정책적·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가 및 경기지도자, 선수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4. 직권조사와 병합된 진정사건 개요

가. 사건개요

- 1) 진정인 : ○○○(○○○ 종목 국가대표 선수)
- 2) 피진정인 : ○○○(○○○ 종목 수석코치)

나. 진정요지

1) 폭행 관련

○○○ 코치는 2010년 포르투갈대회 합숙 때부터 진정인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합숙시 이천훈련원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 머리, 휠체어를 수 회 가격하였고, 2012. 5.경 런던장애인올림픽 프레대회²⁷⁾ 3일 전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을 셀 수 없이 때렸다. 그 당시 다른 코치가 폭행하는 것을 말렸는데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너무 많이 맞아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2. 8. 28. 런던 선수촌에서 새벽에 자고 있는데, ○○○ 코치가 만취된 상태로 방으로 들어와 진정인과 동료선수 ○○○을 주먹과 발로 전신 폭행 하였고, 스탠드를 집어 던져 머리를 맞았다.

27)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경기시설과 운영 등을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개최하는 비공식 대회

2) 금품수수 관련

○○○ 코치는 진정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돈을 지급하면 상습적인 폭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 ○○○ 코치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4.경부터 2012. 8.경 까지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당시 국가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수령하여 겨우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훈련비의 50%를 주었다. 그리고 2010년 포르투갈대회 때 비행기 요금 명목으로 누나(○○○)의 농협통장에서 50만원을 송금한 적도 있다.

II. 관련 법령

<별지 3>의 기재와 같다.

III. 인정사실

앞서 든 위원회의 각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장애인체육 및 대한○○○체육회 현황

가. 장애인체육

국내 장애인체육²⁸⁾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와 1989년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라는 장애인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결성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반체육과 달리 전문적인 체육 행정 시스템이 아닌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다뤄지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국민체육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에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학계와 장애인선수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5. 7. 29.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법적 뒷받침과 2005년

2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백서」의 내용을 정리함(2011 체육백서, 2012.8, pp352-354).

12월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체육과 설치 및 2005년 11월 대한○○○체육회 설립과 같은 조직 기반이 큰 역할을 하였다.

장애인체육은 일반체육처럼 생활체육, 국제체육을 포함한 전문체육, 학교체육으로 구분되지만, 이에 더하여 재활체육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체육에서는 연령·성별 스포츠 경험이 다를 수 있으나, 장애인체육에서는 연령과 성별 외 장애유형별 스포츠 경험이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격, 배치, 근무기준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항 및 규칙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체육 기준의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²⁹⁾, 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내지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제시하는 일반 체육 분야의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체육 전공 및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체육 지도자 역시 장애인 체육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인 체육교육의 전문성에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장애인 체육은 선수가 장애인이라는 측면에서 체육교육 뿐 아니라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돌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격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1년 12월 국가공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부터 양성이 이루어질 예정³⁰⁾이다.

29) 1984. 2. 16. 제정된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칙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 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시행, 수료증 교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3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백서」, 2012.8, p368

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체육분야의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2005. 11. 25. 설립되었으며, 회장 1인, 이사 26인, 감사 2인 외 사무처 전체 현원은 65명이다. 또한 정관 제54조에 근거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는 16개 시·도 지부가 있다.

대한○○○체육회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과 2012년 예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한○○○체육회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국 고	기 금					자 체
		전문체육 육 성	소 계	생활체육 지 원	전문체육 지 원	훈련원 운영	기관 운영	기관운영 보 조
2011년	33,970	4,341	23,790	7,537	5,733	6,157	4,363	5,839
2012년	41,546	6,567	30,814	7,762	6,815	11,483	4,754	4,165
전년비 증감액	7,576	2,226	7,024	225	1,082	5,326	391	△1,674

※ 자료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012. 8.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³¹⁾는 종목별 경기단체 27개, 유형별 체육단체 4개로 총 31개이며, 별도의 인정단체 10개를 포함할 경우 총 41개이다. 경기단체는 각각의 시·도지부(총 377개 지부)를 두어 활동하고 있다.

2008년 2월부터 선수등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각 경기단체별 선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는 총 30개 단체에 12,318명(남 9,528명, 여 2,790명)이다.

선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탁구(총 1,505명, 남 1,110명, 여 395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축구(총 1,343명, 남 1,310명, 여 33명), 론볼(총 1,217명, 남 843명, 여 374명), 육상(1,115명,

3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백서」, 2012.8, pp358-359

남 790명, 여 325명), 볼링(총 768명, 남 525명, 여 243명)의 순으로 선수가 많다.

2.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폭언,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가. ○○○ 수석코치, ○○○

○○○은 대한○○○체육회로부터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 훈련 ○○○ 종목 지도자’로 승인받은 국가대표팀 수석코치로, 2005년 겨울부터 1급 뇌병변장애인인 ○○○ 선수를 지도하였다.

○○○은 유력한 금메달 획득이 예상되었던 8강 단체전에서 패한 다음날인 2012. 9. 4. 맥주를 마신 후 ○○○과 ○○○ 선수 숙소를 방문하였으며, 다음 날 시작되는 개인전 출전에 대해 독려를 한다는 이유로 ○○○의 뒤통수를 1~2대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2. 5.경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프레대회’ 참가를 위한 합숙훈련 시 ○○○은 ○○○에게 감정과 힘을 실어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 합숙 훈련시 ○○○이 ○○○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때렸으며, ○○○에게는 손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전국체전 등 대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선수를 때리거나 훈련 중에도 ○○○ 공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의 가족은 피조사자 ○○○에 대하여 2012. 9. 17.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대한○○○체육회는 2012. 9. 19.부터 26.까지 진상구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 선수에 대하여 ○○○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확인하였고, ○○○○○○○연맹 상벌위원회는 2012. 10. 2. ○○○에 대한 ‘영구자격정지’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한편, ○○○이 ○○○ 선수를 수시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 ○○○ 코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방조한 사실이 있고, 대한○○○체육회는 2012. 10. 5. 제6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에게 폭언, 폭행하는 것을 ○○○가 목격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감봉’ 징계조치를 결정하였다.

2008. 9. 26. 서울신문 기사 중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 종목에서 개인전과 페어전 2관왕을 차지한 ○○○ 선수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으며, 해당 기사에서 ○○○은 ○○○ 선수의 근성을 키우기 위해 ‘뺨을 때린 적’도 있다고 말하였고, ○○○은 자신이 ‘드러운 녀’이란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며 주변에서 “장애인에게 그러면 되느냐”는 소리도 솔하게 들었지만, “○○○를 장애인으로 대하면 훈련을 견뎌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은 자신이 훈련과정 중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며, 폭력을 장애인 선수의 경기력이나 정신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 코치, ○○○

○○○은 대한○○○체육회로부터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종목 지도자’로 승인받은 국가대표팀 코치로, ○○○ 선수가 ○○○의 지시에 불순하게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6. 18:00경 이천훈련원 생활관 215호실에서 따귀를 2회 때리고,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2012. 2. 17. ○○○에게 징계조치로 경고(벌점 30점 및 1주 근신) 조치를 결정하였다.

다. ○○ 선수, ○○○

○○○는 대한○○○체육회로부터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로, 2012. 4. 5. 14:00경 ○○국가대표 훈련장소인 ○○○○○○○체육센터 내 식당에서 음주 행위를 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17:20경 훈련장에 있던 자신의 지도 코치인 ○○

○를 찾아가 경기력에 슬럼프가 찾아온 것과 관련한 서운한 마음을 격한 감정으로 표현하였다. ○○○는 자리를 피하였고, 옆에 함께 있던 ○○○와 언쟁이 시작되어 ○○○는 ○○○에게 폭력 행위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지도자 및 선수들이 ○○○를 진정시켜 기숙사로 돌려보냈으나, ○○○ 선수의 방에 재차 찾아가 2차적인 폭력 행위를 하였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12. 4. 6.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와 ○○○○○○ ○○○○○ 강화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수단 14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였고, 2012. 4. 6. ○○○ 경고(3주 근신), ○○○ 주의, ○○○·○○○·○○○ 경고 등 사건 당사자인 선수와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는 지도자에게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라. ○○코치, ○○○

○○○은 대한○○○체육회로부터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종목 지도자’로 승인받은 국가대표팀 코치로, 2012. 3. 5. 국가대표팀 코치로 승인되어 훈련원에 입촌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팀 코치로 12년간 재직하였고, ○○대표팀 코치직 수행을 위해 2012. 9. 7.까지 휴직하였다.

○○○과 여자 ○○선수들과의 불화 문제로 대한○○○체육회는 2012. 7. 13. 제8차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수들과 코치의 불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여자선수 3명과 코치에게 화합을 위한 자정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2012. 7. 16.부터 22.까지 자정기간을 부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2. 7. 27. 대한○○○체육회는 제9차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치로 인한 선수단 불화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에 대하여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지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 제10조 제1항에 의거 ‘퇴촌’ 결정하였다.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종목 지도자’는 감독 1명, 코치 2명(남 1, 여 1)이었는데, 위 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에 대한 퇴촌 결정으로 런던장애인올림픽 ○○ 여자부 국가대표팀은 코치직이 공석 상태인 채로 2012. 8. 29.부터 9. 9.까지 개최된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였고, 이후 ○○○은 2012. 9. 25. 자진 사임 하였다.

○○선수들은 ○○○이 훈련과정 중에 선수들을 극심하게 경멸하고 비하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피조사자 ○○○은 선수들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 자료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즉, 참고인 ○○○이 ○○○은 일상적으로 선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고 선수단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타 종목 동료선수인 ○○○이 습관적으로 욕설을 한다는 ○○○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선수단 폭력 진상조사 결과보고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선수들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주장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3.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가. ○○ 코치, ○○○

○○○은 대한○○○체육회로부터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종목 지도자’로 승인받은 국가대표팀 코치이며, 피해자 ○○○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이고,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출전이 확정된 선수가 와일드카드³²⁾로 지정되어 추가적으로 2012. 6월 말경 런던올림픽 출전 기회가 주어졌다.

○○○은 ○○○과 2012. 6.경부터 2012. 7.경 대한○○○체육회의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이천훈련원 휴게공간에서 상담한 사실이 있고, ○○○은 대한○○○체육회 및 위원

32) 일반적인 자격을 갖지 못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경기 기회

회의 면담조사에서 모두 ○○○이 ‘활동보조인이 지원되지 않으면 내가 목욕도 시켜주고 용변도 처리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은 당시 ○○○이 활동보조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하며, 성희룡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발언 내용에 대하여 부인하지는 않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은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으로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시 활동보조인 지원 여부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당시 ○○○의 활동보조인 지원 문제가 수차례 이야기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2012. 12. 13. ○○○○○○○연맹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연맹은 2012. 12. 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나. ○○ 코치, ○○○

○○○은 대한○○○체육회로부터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종목 지도자’로 승인받은 국가대표팀 코치로, ○○종목의 국제대회는 선수가 벤치에 누운 상태로 진행되며, 주심의 시작 신호 이후 선수는 바를 가슴까지 내려야 하고 가슴에서 움직이지 않고 1초 정도 멈추었다가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 종목이다.

○○○은 훈련 중에 자세를 설명하다 ‘가슴이 크면 유리하다’는 발언은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은 특정선수를 지칭하여 ‘가슴이 크다’는 등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당시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선수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여 피해사실을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 감독 ○○○은 위 발언과 관련하여 ○○○에게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적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선수들끼리 ‘가슴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며, 경량급 선수는 체격이 왜소하다보니 ‘나도 저렇게 크면 ○○를 많이 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 종목의 특성상 ‘가슴’ 부위에 대한 언급 없이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여성선수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2012. 12. 13. ○○○○○○○연맹에 ○○○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연맹 임원의 임기가 2012. 12. 31. 만료 되어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연맹은 2013년도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집행부를 구성한 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대한○○○체육회에 통보하였다.

4.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 행위

가. ○○○ 수석코치, ○○○

○○○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 ○○○에게 월체어 등 훈련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 명의의 농협은행으로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는 없다고 인정하였다.

○○○과 ○○○의 누나 ○○○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9회에 걸쳐 565만원을 ○○○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2010년 1회 50만원 : ○○○ 계좌, 2011년 3회 205만원 : ○○○ 계좌, 2012년 5회 310만원 : ○○○ 계좌 250만원 및 ○○○ 계좌 : 60만원), ○○○은 2012. 9. 17. ○○○ 가족의 검찰 고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당일 ○○○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 9. 21. ○○○의 계좌로 165만원, ○○○ 계좌로 210만원을 입금하였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12. 9. 19.부터 26.까지 대한○○○체육회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였고, ○○○○○○○○연맹에 ○○○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에 대하여 2012. 10. 2. ‘영구자격정지’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나. ○○ 코치, ○○○

○○○은 대한○○○체육회로부터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종목 지도자’로 승인받은 국가대표팀 코치로, ○○○ 선수의 금메달 획득 여부를 두고 200만원 상당의 술을 사는 것으로 내기를 하였고, ○○○는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에 출전하여 ○○ 단체전 2위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은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의 ○○종목 경기를 모두 종료하고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에게 내기와 관련하여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내기는 2008년 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인 ○○종목 올림픽 대회 성적이 좋아 장난으로 보낸 것이고, 실제로 송금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의 행위는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위계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코치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정직’ 징계조치를 결정하였다.

5. 지도자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조치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최근 3년간 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사건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은 총 3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치 ○○○의 선수 폭행 건, ○○선수 ○○○의 동료선수 폭행 건, ○○코치 ○○○의 지도방식 및 언어표현으로 인한 선수들과의 불화 사건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해당 가맹단체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사후조

치를 하였다.

그리고 ○○○ 코치와 관련된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 코치의 폭행 및 금품수수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대한○○○체육회는 2012. 9. 19.부터 26.까지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소속 가맹단체를 통해 ○○○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이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사실을 묵인·방조한 대한○○○체육회 소속의 ○○○ 전임지도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 전임지도자는 ○○○의 ○○○에 대한 구타 및 폭언 등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훈련 또는 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 간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를 포함한 대다수 지도자들이 선수에 대한 폭행이 야기하는 문제점 등 인권적 측면에서의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건을 계기로 대한○○○체육회는 2012. 10. 8.부터 31.까지 ○○○ 종목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대한체육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고 국가대표 8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폭언, 폭력, 성희롱, 금품요구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당 가맹단체에 요구하였고, 대한○○○체육회 소속 전임지도자 2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어 관련 선수들이 2차적 피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장애 특성이나 유형에 대한 사전교육과 폭력의 문제점 등 스포츠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선수들을 지도하였고, 그 결과 지도자와 선수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6.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보치아 종목 국가대표팀 코치의 체육선수 폭행 및 금품갈취’에 대한 MBC 9시 저녁뉴스 보도 직후 2012. 9. 19. 피조사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런던 장애인올림픽 출전 전 종목에 대한 유사사례 발생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하였고, 2012. 10. 4. 전문상담사를 포함한 진상조사단 구성 등 조사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3차례 실시한 바 있는데, 모두 일반 행정 및 회계감사 중심의 점검으로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향상과 예방관련 점검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IV. 판단

1.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가. 법령 규정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 ○○○, ○○○, ○○○, ○○○의 인권침해 행위

체육 분야 폭력³³⁾이란 체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와 명예 훼손, 모욕, 공갈, 협박, 강요,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³⁴⁾과 함께 언어 등으로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³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체육 분야 폭력은 지도자와 선수, 동료나 선후배 등 선수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기관 책임자, 행정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체육을 매개로 함께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훈련, 경기, 합숙, 이동 등 체육활동에 관련된 시간 뿐 아니라 이어지는 일상생활에서, 경기장, 훈련장, 합숙소, 이동 차량 등 체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어 일상화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이 ○○○과 ○○○ 선수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행위, ○○○이 ○○○ 선수의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한 행위, ○○○ 선수가 ○○○ 선수의 신체에 물리적 폭력을 가한 행위는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및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위협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행위, ○○○이 ○○○선수 개인 또는 전체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행위는 「장애

33)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2010. 12. 6. 권고)’의 내용을 참고함.

34)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에 대해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음.
 · 경기력 향상이나 정신력 강화를 명목으로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 훈련태도나 성적 불량, 경기결과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 위계적인 규율과 통제 속에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 사전계획이나 합의 없이,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 일정시간 집단에서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 지도자의 분노, 좌절, 또는 힘의 과시 등에서 비롯된 체벌과 폭력

35) 언어 등으로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에 대해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음.
 · 개인 또는 전체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
 · 권한이나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진로 선택이나 경기 참여를 제한하려는 협박이나 강요
 · 권한이나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진로 선택이나 경기 참여를 제한하려는 협박이나 강요
 · 대중 앞에서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사전 계획이나 상호 합의 없이 자유 시간, 귀가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정하는 행위
 ·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인복지법」 제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2.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

가. 법령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직위 등을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같은 조 제5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체육 분야 성폭력³⁶⁾이란 체육과 관련된 공간적·관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총칭하며, 훈련장, 합숙소, 이동 차량 등 체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동료나 선후배, 지도자, 심리·의료 전문가, 행정 담당자, 기관 책임자, 자원봉사자 등 모든 체육 관련자들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이성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동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이 모두 체육 분야의 성폭력에 포함된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희롱이나 불쾌한 성적 농담 등 성과 관련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인 폭력 행사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폭력 여부나 정도는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지, 피해자가 불편, 모욕, 수치, 신체적 위협

36)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2010. 12. 6. 권고)’의 내용을 참고함.

등을 느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희롱³⁷⁾’이라 함은 “본인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조사자 ○○○과 ○○○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의 화장실과 욕실 사용 등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의 행위는 ○○ 경기를 위한 지도과정에서 행해진 것이고 ○○ 종목의 특성 상 ‘가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특정 선수의 가슴에 대하여 지도자가 언급할 경우 여성이라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조사자 ○○○과 ○○○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3.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 행위

가. 법령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금전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령규정을 적용하면, 자신이 7년 넘게 지도하던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으

37) ‘성희롱’에 대해 정의한 국내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등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로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은 피조사자 ○○○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할 힘이 미약한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착취한 행위로 판단되며, 피조사자 ○○○이 ○○○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것은 비록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위계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대한○○○체육회 조치의 적절성 여부

가. 법령규정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를 근거로 설립된 기관으로 동 조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지도 및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경기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지도자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 및 괴롭힘 행위가 적지 않았고, 소속 지도자가 선수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훈련 또는 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 간과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들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 관행화되어 있고 성희롱적 문화 또한 남아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들에 대하여 지도 및 지원하고 있는 상위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직권조사 당시 피조사자 ○○○, ○○○, ○○○, ○○○, ○○○, ○○○, ○○○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조치를 취한 것과 피조사자 ○○○은 2012. 9. 25.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별도의 피조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피조사자 ○○○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직권조사 사건과 병합된 피조사자 ○○○의 폭행 및 금품수수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소결

대한○○○체육회에서는 장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스포츠 인권교육과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폭행 또는 폭언,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폭행이나 성폭력이 의심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와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상담가와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

가. 법령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에 의해 대한○○○체육회를 감독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책 및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과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 9. 체육선수의 지도과정에 있었던 피조사자 ○○○의 장애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상담사를 포함한 조사단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사가 주로 행정감사나 회계감사에 그치고 장애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예방관련 점검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실태 파악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후 장애 체육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일반 체육계에 만연한 감독과 코치의 체벌과 선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1. 7. 교육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그 이전인 2007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훈련·시합 등을 이유로 출석 등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다 평등한 체육활동 참여 및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스포츠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본 직권조사 사건과 병합된 구타·가혹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별 지 1〉

피해자 명단

- 1) ○○○(○○○ 국가대표 선수)
- 2) ○○○(○○○ 국가대표 선수)
- 3) ○○○(○○ 국가대표 선수)
- 4) ○○○(○○ 국가대표 선수)
- 5) ○○○(○○ 국가대표 선수)
- 6) ○○○(○○ 국가대표 선수)

〈별 지 2〉

피조사자 명단

- 1) ○○○(대한○○○체육회 ○○○장)
- 2) ○○○(대한○○○체육회 ○○○○○ 부장)
- 3) ○○○(대한○○○체육회 ○○○ 부장)
- 4) ○○○(대한○○○체육회 ○○○○○ 부장)
- 5) ○○○(대한○○○체육회 ○○○ 실장)
- 6) ○○○(○○○ 국가대표 수석코치)
- 7) ○○○(○○ 국가대표 코치)
- 8) ○○○(○○ 국가대표 감독)
- 9) ○○○(○○ 국가대표 코치)
- 10) ○○○(○○ 국가대표 코치)
- 11) ○○○(○○ 국가대표 코치)
- 12) ○○○(○○ 국가대표 선수)

〈별 지 3〉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제8조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는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⑧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한다.

3

2013. 9. 24.자 13-진정-0177400 결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결정사항】

- 【1】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해자, 진정인, 다수의 참고인의 진술과 사진 및 동영상 등에 의할 때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폭언한 행위는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 【2】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찾아가 내부고발한 것에 대해 피고발 당사자인 피진정인 1과 개별면담만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학교장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운 바, 피진정인 2에 대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형법」 제26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45조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주 문】

- 1.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초등학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진정인 1(◇◇초등학교 특수교사)은 장애학생인 피해자(◇◇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게 2012. 5. 23. 방과후수업 시간에 폭행 및 폭언을 하였으며, 2012. 6. 15. ○○미술관 현장학습 시 폭행하였으며, 2012. 9. 6. 피해자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체벌하였으며, 2013. 4. 23.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붉게 멍들도록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지도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폭언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2012. 6. 7.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 의해 장애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의 학대가 지속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진정인 1은 본인을 때린 적이 있고 ‘주사’ 이야기를 하며 무섭게 하여 도움받으러 가기 싫다.

다. 피진정인 1

2012. 5. 23. 방과후수업 시간에 피해자를 옆으로 앉히기 위해서 의자를 당기다가 떨어져서 울었는데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등을 치기는 했지만 때린 것은 아니었다. 의자에서 떨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 있다고 해서 너를 안 혼낼 것 같아? 내가 혼자서 잘 하라고 했지? 너는 끝이 없어. 아주 끝이 없어. 수업 안 할거야? 집에 안 갈거야?”라는 의미의 말은 한 것 같다.

2012. 6. 15. ○○미술관 현장학습 시 피해자가 전시물을 만질 때, 못 만지게 하면서 등을 때린 기억이 없다.

2012. 9. 6. 피해자가 학교에 곧장 오지 않고 돌아 다녔기 때문에 1분 정도 손을 드는 벌을 세운 후, 1교시는 도움반에서 공부하고 2교시에 통합학급으로 보냈다.

피해자가 해야 할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때 목소리에 힘을 주어 “여기 보세요.” 하며 책상을 가볍게 치기도 했다. 그것은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나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 노력했으나 교사로서 부족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겠다.

라. 피진정인 2

2012. 6. 7. 진정인(공익요원, ◇◇초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 근무)과의 면담시 제공한 인쇄물의 내용은, ‘장애학생에 관한 것’과 ‘피진정인 1과 보조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었다. 진정인과의 면담은 피진정인 1이 학생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으나 중심된 면담내용은 특수교육보조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 1의 언동에 대해 토로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진정인 1은 학생들에 대해 심하게 대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피진

정인 1도 보조원들과의 불화를 집중적으로 토로함에 따라, 양측의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같은 현상을 볼 때 다른 시각차를 보임으로써 학생관련 특정 상황을 부각하여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힘쓰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구두지도 하였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 피진정인 1에게 주의 및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수시장학, 수업공개 등 장학활동이나 관찰을 통하여 확인한 바,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다.

최초 진정인이 본 사안에 대해 보고한 이후부터 2013. 4. 25. 인권위의 진술서 요청이 있을 때까지 피진정인 1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교육적 조치 및 개선이 미진하고 충분한 주의와 경고를 하지 못해 폭력행위를 예방·근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마. 참고인

1) 이●●

참고인 1은 2012. 3. 1. 부터 2013. 2. 28.까지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보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5. 23. 방과후수업 중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자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올려 학생을 바닥으로 패대기 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있다고 안 혼낼 것 같아? 수업 안 할거야? 집에 안 갈거야?” 등의 말을 하며 떨어져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퍽퍽 소리가 나게 때렸으며 이 상황은 참고인 1과 진정인이 같이 목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 있으면 못 혼낼 줄 알아? 어? 여기가 어딘데 울어? 울지 마!”라고 욕박질러 피해자는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다. 피진정인 1은 만성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하지만, 학생들이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게 억압하여 다른 교사들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

참고인 2는 피해자의 아버지이며 학교에 자주 들리면 편인데 교실 밖에서 들으면 피해자를 울리거나 소리치는 걸 가끔 목격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때리는 줄은 몰랐다. 아침약을 잊고 안 먹인 날 학교로 갔다 주러 갔는데 피해자가 울어서 피진정인 1에게 물어보니 “뭘 하다가 속이 상하니까 재가 온다.”라고 말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 식으로 학교에 가끔 갔는데 피진정인 1이 “아버님은 수시로 학교에 오세요?”라고 물어서 “나는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씩 온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미리 말 안하고 학교에 자주 오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였다.

2012. 4. 피해자가 1학년 재학 시, 피해자가 방과후수업 시간에 교실에 없어서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체육시키러 운동장에 보냈다고 하여 가보니 체육교사는 없고 피해자만 있었다. 집으로 데리고 오려다가 체육수업을 한다고 하니 놔두고 귀가했는데 좀 있으니 피해자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입이 찢어져 피가 나고 토해서 119 구급차를 불렀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그날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뇌CT촬영을 하고 상처를 치료한 후 밤 12시쯤 귀가했다. 다음날 피진정인 1에게 “해야 하는 방과후수업을 안 시키려면 체육교사에게 인계해야 하지 않냐?”고 항의했더니 “체육교사가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운동장에 분명히 체육교사는 없었다. 이 일로 인해 피진정인 1이 문제가 많고 책임감이 없다고 느꼈다.

진정사건 조사가 시작된 후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머리도 맞고, 볼도 맞고, 선생님이 때려서 스트레스 받으니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다.

3) ◁◁◁

참고인 3은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로써 2012. 6. 15. ○○미술관 현장학습시 ◇◇초 특수반과 함께 ♣초등학교 특수반도 연합하여 참가했다. 그날 학생들은 즐겁게 체험 활동을 했었고 분명히 체벌상황은 없었다.

4) ♣♣♣

참고인 4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수업 강사이며 만들기수업을 진행하였다. 본인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피진정인 1의 지원으로 원활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 장애학생들은 수업 중 돌발행동이나 문제행동이 잦은 편인데 그럴 때 피진정인 1이 학생들을 지도하면 본인은 고개를 돌리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 이유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 2명이 지도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

참고인 5는 2012. 9. ◇◇초등학교에서 광주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였다. ◇◇초등학교 재학시 특수학급 학생으로 피진정인 1의 지도를 받았으며 간질증세로 장애등록하였고 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도움반 선생님이 나도 때리고, △△△ 하고 ◎◎◎형도 때렸다. 나는 세대 정도 맞았다. 작년에 왜 애기 안했냐면 집에 가서 애기한 것을 도움반 선생님이 알면 더 많이 혼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했던 것이다.

6) □□□ 모

참고인 6은 참고인 5의 모로서 피진정인 1은 학생이 수업 중 자세 등이 흐트러지면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아이는 항상 긴장하고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피진정인 1은 학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해서 하교 시 밖에서 기다릴 때도 눈치가 보였으며, 참고인 6의 자녀는 피진정학교에 다닐 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오늘 학교 안가면 안 돼?” 라고 물어보는 등 학교에 가는 것을 힘들어 했다. 광주로 전학 후 피진정인 1에 대해 물어보니 자기도 맞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도 많이 맞았다고 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1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의 피해자 폭행 및 폭언과 관련하여,

1) 2012. 5. 23. 방과후수업 시간에 피진정인 1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세계 잡아당겨 학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웅크리고 있는 학생의 등을 폭행하며 “다른 사람 있다고 내가 너를 안 혼낼 것 같아?” 등 의 폭언을 하였으며 이 상황을 진정인과 참고인 1이 목격한 사실이 있다.

2) 2012. 6. 15. 피진정인 1은 현대미술관 현장학습 시 피해자가 전시물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모습을 진정인이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별지 2)

3) 2012. 9. 6.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아침에 학교로 곧장 오지 않고 배회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이 수업하고 있는 책상에 피해자를 앉혀 손드는 벌을 주었으며, 진정인이 도움반 밖에서 보니 피해자가 손을 들고 울고 있었고, 동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별지 3)

4) 2013. 4. 23.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붉게 되도록 피진정인 1이 때린 사실이 있다.(별지 4)

5) 피진정인 1이 평소 장애학생들에게 비아냥대며 말하거나 억압적으로 말하여 겁에 질리게 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2의 보호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2012. 6. 7.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찾아가 피진정인 1에 의해 장애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적의처리하지 않아 피진정인 1의 학대가 지속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교원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그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장애인에 대해 괴롭힘 금지를, 같은 법 제35조는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의 피해자 폭행 및 폭언과 관련하여,

2012. 5. 23. 방과후수업 시간에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당기다가 학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며 등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 있다고 내가 너를 안 혼낼 것 같아?” 등의 말을 하였다고 피진정인 1이 인정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진정인과 참고인이 동 상황을 목격하였다.

2012. 6. 15. 현대미술관 현장학습 시 전시물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피진정인 1 및 같이 동행한 참고인 3이 진술하였으나, 학교별로 전시관 관람이 다르게 진행되어 동 상황에서는 참고인 3이 같이 있지 않았으며 당일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행위를 목격하고 촬영한 사진이 있다.

2012. 9. 6. 피해자가 아침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1분간 손을 드는 벌을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지각해서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학교에

오지 않고 배회하여 1분간 손드는 벌을 주고 1교시 수업을 도움반에서 시킨 후 2교시에 통합학급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도움반 밖으로 나와 교실 안을 보니 피해자가 손을 들고 우느라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고, 동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분 안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3. 4. 23.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붉게 되도록 피진정인 1이 때린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목격한 당시 특수학급에는 피진정인 1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당일 피해자가 진정인에게 “도움반 선생님에게 맞았어요. 다른 애들 없을 때 때렸어요.”라고 얘기한 점, 당시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눈 주위가 빨갱게 멍들어 있는 점, 피해자는 장애학생이고 현재 10세로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우나 피진정인 1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조사관에게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본인의 부에게 “학교에서 도움반 선생님에게 맞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얘기한 점, 광주로 전학 간 참고인 4가 “△△△과 ○○○형이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은 학생들이 수업 중 주의집중을 하지 않을 때 가볍게 책상을 치면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여기 보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이 억압적으로 말해 공포심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가기 싫다고 진술한 점, 통합학급 교사 등 참고인 다수가 피진정인 1이 평소 장애학생들에게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이양대거나 함부로 말하여 특수교육보조원들이 같이 생활하며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2의 보호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지위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들을 대한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2. 6. 7.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찾아가 피진정인 1에 의해 장애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내부고발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가 적절히 조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시장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별다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발 당사자인 피진정인 1과 개별면담만을 실시하였고 내부 관계자나 장애학생의 학부모 등과는 면담조차 실시하지 않은 점, 장애학생에 대해 폭행 행위가 보고되었을 때 심각한 체벌사항으로 보아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교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5조 학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진정인 1의 학대가 지속된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학교장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운 바, 피진정인 2에 대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별 지 1〉

관 련 규 정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25조 (아동학대 신고 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정 2011.5.19,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2015. 6. 30.자 13-진정-0841400 결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 장애아동 비하발언 등】

【결정사항】

- 【1】 ○○시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게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
- 【2】 ○○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피진정인의 표현들이 피해자들을 면전에 두고 모욕감을 준 것은 아니나, 피해자들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참고인들에게 하였던 것으로써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할 특수교육실무원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일은 아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진 정 인】 김○○

【피 해 자】 ○○○, □□□, △△△

【피진정인】 김○○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의 1)과 다항의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시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게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

나. ○○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나머지 진정요지는 기각 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고등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인 피진정인은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하였다.

가. 피해자 ○○○에 대하여

- 1) 20××. ×. 중순경 피해자가 학교 교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걸레질 하면서, 피진정인은
“내가 이런 거 치우려고 이 학교 왔나 미친놈 꼴도 보기 싫다”고 하였다.
- 2) 20××. ×. 말경과 ×. 초순경의 사이에 “소변 못 가리고 먹는 것만 꾸역꾸역 잘 먹어댄
다”고 하였다.
- 3) 20××. ×. 초순경 피해자가 학교 뒷산 등산 시 올라가지 않고 멈췄다는 이유로 죽비로
영덩이와 등을 두어 차례 때리면서 “등산 시에는 무조건 죽비 챙겨야 한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하여

- 1) 20××. ×. 중순경 피해자가 교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병신 같다”, “정말 싫다”, “쳐다보기 싫다”고 하였다.
- 2) 20××. ×. 말경에서 ×. 초순경 피해자가 혼잣말로 우는 듯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개”라고 표현하였다.
- 3) 20××. ×. 중순경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빼앗고,
손목을 비틀어 꺾어 올렸다.

다. 피해자 ○○○에 대하여, 20××. ×. 중순경 피해자의 대소변을 보조할 때 “더럽다, 짜증난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부터 ○○고등학교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던 동료 특수교육실무원 ○○○이 피진정인을 모함하기 위해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모든 것이 과장되었다.

진정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말과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요지 나항의 3)의 내용은 피해자 ○○○가 다른 학생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지하려던 것이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2 (교직원)

진정요지 나항의 3)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 ○○○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 올린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2) 참고인 3 (교직원)

진정요지 가항의 3)과 관련하여 죽비는 피진정인의 것이 아닌 특수교사 김○○의 것이고, 진정요지 나항의 3)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 ○○○의 팔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3) 참고인 4 (학부모)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 ○○○를 지칭하면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4) 참고인 5 (학부모)

진정요지 가항의 1)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 ○○○을 지칭하면서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냐. 짐승과 다르게 뭐가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참고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의 1)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참고인의 구체적인 표현에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이 20××. ×.경 피해자 ○○○을 지칭하면서 짐승에 비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 ×.경 피해자 ○○○를 지칭하며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라. 나머지 진정요지와 관련하여서는 진정인과 다툼관계에 있는 동료 특수교육실무

원 ○○○의 말을 진정인이 전해들은 것인데, ○○○의 전언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 ×.경 피해자 ○○○을 짐승에 비유하거나 피해자 ○○○를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표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표현들은 피해자들을 면전에 두고 모욕감을 준 것은 아니나, 피해자들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참고인들에게 하였던 것으로써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할 특수교육실무원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일은 아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의 1)과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고, 나머지 진정요지는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
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2017. 3. 6.자 16-진정-1038200 결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 착취 등】

【결정사항】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2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7호 위반 혐의로 고발
-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주시설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리하는 대상은 제외함)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3】 ○○군수에게,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 【4】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

【결정요지】

- 【1】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였고 피해자의 노동력이 피진정인들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들 소유의 축사 및 농지에서 10년 이상 가축을 돌보고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피진정인1은 피해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 임금으로 인정할 만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2】 피진정인2는 인정사실 라.~사.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임의로 피진정인들의 생활비와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위 지출내역을 피해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그동안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를 돌봐주고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 식사 등을 제공하고 병원치료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것으로 피진정인2의 위와 같은 행위가 묵인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음. 결국,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행위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를 위반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적 착취를 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 위반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32조, 제3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8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7조, 제109조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2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주시설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리하는 대상은 제외함)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군수에게,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다리를 절고 정신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도 ○○군 ○○면에 소재한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농사일 등을 하며 살고 있다. 피해자를 피진정인들과 분리하여 장애인 시설로 데려가 보호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15년 이상 살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논 6,000~7,000평,

밭 3,000평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고 있다. 몇 년 전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이후에는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못한다.

피해자가 일이 힘들어 가끔 도망을 갔으나, 그때마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

2016. 12. 20.경 마을회관에 갔다가 동네 주민 ○○○으로부터, 피해자가 피진정인1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몸에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동네 주민 ○○○에게 옷을 벗어 맞은 곳을 보여주고 피진정인1이 때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진정인은 3년 전에 피진정인1이 지게작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봤으며, 동네 사람들도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였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살았으며, 가축을 돌보고 농사일을 하였다.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일한 대가로 돈을 주지는 않았고, 소 2마리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진정인들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소를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팔아서 돈을 준다면 받고 싶다.

피해자가 술 먹고 통장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막 쓸 것을 우려하여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통장, 도장, 카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른다.

2016. 12.말쯤 노인정에 가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피진정인1이 “왜 술 먹었냐?”고 하며 장작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진정인1을 고발하러 노인정에 갔는데, 당시 노인정에 있던 ○○○, ○○○ 등이 피해자의 상처를 보았다.

다. 피진정인들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통장·카드·장애인증·도장·주민등록증을 관리하다가, 2017. 1. 19. 피해자가 ○○시 소재 장애인 시설에 들어갈 때 돌려주었다.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게 밥을 해주고 돌봐주고 치료를 해주었으며 영양제 같은 것도 사주었다. 피진정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으며 외식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이 먹었다. 피해자와 함께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샀으며 TV도 작은 것을 구매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화상을 입어 ○○군 소재 ○○병원에 일년 반 정도 입원한 적이 있으며, 3~4년 전에는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목 부위의 신경이 죽었다고 해서 수술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에게 중풍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이때부터 다리를 잘 못 쓰게 되어 신경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치료를 피진정인들이 도왔으며,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돌보았기에 피해자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는 했으나 인건비를 줄 정도는 아니며, 몸이 불편하여 일을 잘 하지 못 하였다. 소여물을 줄 때도 피진정인2가 10분 동안 할 일을 피해자는 30분 정도 걸려서 하였다. 콩·팥·옥수수 등 발농사와 논농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눈에 들어가면 허우적거리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주로 피진정인2의 일을 도왔다. 피해자가 일한 대가로 소 2마리를 준다고 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 등을 지출한 것이 있어 소를 주지 않았다.

2016. 12.경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노인정에는 피진정인1도 안 가고 피진정인1의 어머니도 안 가는데 왜 노인정에 가서 술을 얻어 먹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궂방망이 혹은 등을 한 대 친 적은 있으나, 이 외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들, 참고인 등의 진술서,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해자는 주민등록표(초본)상 2007. 7. 10. 피진정인들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같은 주소지의 안채 건물에 부부인 피진정인들과 피진정인1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행랑채 건물에 피해자가 거주하였다.
- 나. 2010. 7. 9. 피진정인들이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피해자의 장애인단서를 ○○군청에 제출하여, 2010. 7. 30.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 다. 2007. 8. 13. 피진정인2는 피해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비 수급통장(이하 ‘제1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하 ‘제2통장’이라 한다)을 1개 더 개설하였다. 2007. 8. 20. 제1통장에 315,450원이 생계주거비 명목으로 입금된 이후 정부지원금이 매달 입금되었다.
- 라.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통장 및 도장, 주민등록증, 직불카드, 장애인 신분증을 관리하면서, 제1통장에 연계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013. 4. 9.부터 2017. 1. 10.까지 총 475회에 걸쳐 ○○군 인근의 마트, 약국 등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였는데,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합계 17,442,320원에 이른다.
- 마. 2011. 6. 7. 제1통장에서 사단법인 ○○축협으로 4,848,524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금액은 피진정인2의 대출금이자 및 신용보증료 상환에 사용되었다.
- 바. 피진정인2는 2010. 2. 25. 제1통장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이후 2010. 3. 11. 500,000원, 2010. 5. 6. 1,000,000원, 2010. 6. 4. 500,000원, 2010. 6. 28. 1,000,000원, 2010. 8. 31.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 사. 피진정인2는 2010. 3. 11. 2,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제1통장에서 제2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2012. 12. 27. 제2통장을 해지하여 잔액 11,493,588원을 인출하였다.

- 아. 피해자는 피진정인2가 통장에 입금되는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이나 용처, 통장잔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였다.
- 자. 위 라.~사.항의 이체 또는 인출 금원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 또는 인출한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차.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방(행랑채)과 식사 등을 제공하며, 논농사, 밭농사, 고추하우스 4동과 가축 돌보는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카. 피진정인1은 2016. 12.경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의 주거지 안채와 행랑채 사이에서 장작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피진정인1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초기에는 “긧방망이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긧방망이를 때린 적은 없고, 등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을 바꿨다.
- 타. 피해자는 2017. 1. 19. ○○시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로 이전하였으며, 이때 피진정인2는 보관하고 있던 통장 등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1의 피해자 폭행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과 제4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86조 제3항 제2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피진정인1이 인정사실 카.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1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피진정인2의 피해자 금품 임의사용에 대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리,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1항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는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86조 제4항 제2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였고 피해자의 노동력이 피진정인들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들 소유의 축사 및 농지에서 10년 이상 가축을 돌보고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피해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 임금으로 인정할 만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2는 인정사실 라.~사.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임의로 피진정인들의 생활비와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위 지출내역을 피해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그동안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를 돌봐주고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 식사 등을 제공하고 병원치료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것으로 피진정인2의 위와 같은 행위가 묵인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결국,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행위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를 위반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적 착취를 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조치의견

이에,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2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주시설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리하는 대상은 제외함)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군수에게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체불임금 및 금전적 착취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이선애 위원 김기중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7 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7 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의7 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의7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⑤ 제59조의7 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017. 6. 12.자 17-진정-01691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결정사항】

- 【1】○○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 하고, 향후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2】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진정인(피해자의 외삼촌)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 ○○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근무했음. 이 기간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피진정인)는 피해자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으며 인권위에 진정했음.
- 【2】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도서관 정보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주의를 줬으나, 피진정인이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서 컴퓨터 플로터와 연결시스템 및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렸으며, 다음 날에도 정보기기를 무단으로 만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 양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다고 진술했음.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피해자 동의하에 벌을 줬다고 주장했음.
- 【3】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강하게 주의를 줄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특히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음.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진 정 인】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고등학교장

【주 문】

1. 피진정인2에게, 피진정인1을 징계조치 하고, 향후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항, 다.항, 라.항은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조카인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인데,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00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근무하는 동안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등을 당하였다.

- 가. 피진정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1은 현장훈련 기간(2015. 10. 26~11. 13.)과 직무지도 기간(2015. 11. 16~12. 24.) 내내 피해자에게 한글 자음·모음 쓰기 교육과 분류기호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100, 100.1, 100.11 등의 숫자 쓰기 교육만 시키고, 바코드 스캔이나 도서출납 전산작업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직무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피진정인1은 “나만 장애인을 돌봐야 하느냐”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2016. 3. 1.부터 계약직 사서보조로 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만을 표출하였다.

나. 2016. 3. 1.~2017. 2. 28. 피해자가 피진정학교에서 사서보조로 근무하는 동안,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다.

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1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 수차례 상담을 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학교의 교장인 피진정인2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6. 10. 28. 진정 외 특수학급 전담선생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00이(피해자)를 보살필 사람이 없다. 여러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 학교는 복지 기관이 아니다.”고 하며 피해자에 대한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11. 30. 피해자에 대한 해고 작업을 진행하여 2017. 1. 24.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이 2016. 3.부터 피해자에게 체벌과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재계약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2017. 1. 20. 재계약을 논하는 회의에서 피진정인1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피해자 어머니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도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총류(000), 철학(100), 종교(200), 사회과학(300), 자연과학(400), 기술과학(500), 예술(600), 언어(700), 문학(800), 역사(900) 등 총 10가지로 분류하고, 청구기호는 도서분류법, 분류기호, 저자기호, 권차기호, 복본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서가배열은 위 청구기호의 순서를 따른다.

분류기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서관의 배가(청구기호를 보고 책의 자리를 찾아 꽃음)작업을 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분류기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분류기호의 순서를 이해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예를 들어 분류기호 813.824에서 소수점 아래 824(팔이사)를 824(팔백이십사)로 혼돈하고, 한글 자음의 순서를 바로 떠올리지 못해서 ‘ㅂ’을 찾을 경우 ‘ㄱ, ㄴ, ㄷ, ㄹ, ㅁ, ㅂ’을 외운 후 해당 자리로 찾아가고, 한글 모음은 더 어려워하여, 직무지도 과정에서 분류기호와 저자기호를 가르치는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당초 피해자의 현장훈련 지도기간은 2015. 10. 26~11. 13. 3주간으로 예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분류기호와 저자기호를 어려워하여, 2015. 11. 16~12. 24. 3주간을 연장하여 약 2개월간 지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직무역량을 길러 주고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반복연습을 시켰다. 분류기호와 저자기호를 익히게 하는 직무교육 자료가 약 100장에 달하고, 플라스틱 블록을 통해 배가연습과 실제 도서를 통한 배가연습을 반복해서 시켰으나, 방학이 끝난 후 피해자는 그동안 배웠던 분류기호와 저자기호를 잊어 버려 2016. 3. 한 달 동안 재교육을 시켰다.

피진정인1은 평소 특수학급의 장애학생과 그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서관 사서업무를 익혀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무지도에 임했으며, “나만 장애인을 돌봐야 하느냐”고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으로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아 컴퓨터, 플로터, 시계, 빔 프로젝트, 복합기, 도어록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자기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전자기기들을 만져 고장을 냈고, 도서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시스템 속도가 느려서, 도서 대출·반납 업무 프로그램 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오류에 대비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오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바코드 스캐너를 무한반복으로 스캔하는 등 대출·반납 처리를 하면서 실수를 자주 하였다.

피해자는 근무시간 중 책상에 놓여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로 조작하여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에서 도서대출 이용자나 등록도서를 삭제하고, 대출도서를 반납처리하고, 도서 미대출자를 대출자로 처리하여 업무량을 가중시켰으며, 2016. 7.경에는 장서점검기에 저장된 약 2,500권 분량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였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직무지도를 맡게 되었을 때부터 특수학급 전담선생님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강하게 해라”,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야단쳐 주세요”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니, 피해자는 “벌을 받겠습니다”고 약속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도서관 정보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었으나, 2016. 12. 피진정인1이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는 도서 컴퓨터와 플로터 연결시스템을 삭제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하였고 도서검색용 갤럭시탭을 만졌다. 피해자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또 다시 만지기에, 왜 만지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난 후 “OO야! 다시 정보기기를 만지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라고 묻자 피해자가 “벌을 받겠다”고 하여 “이번에는 1대지만 다음에 또 같은 잘못을 했을 때는 2대, 3대다”고 주의를 주면서 30cm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대 때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음날에도 정보기기들의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다시 업무를 마비시켜 전날 이야기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손바닥을 2대 때렸다. 피해자는 3일째에도 연이어 정보기기를 무단으로 만지고, 여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이상한 행동을 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도 있고 강하게 경고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손바닥을 때리지 않고 양손을 들게 하는 벌로 대신하였다.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벌을 주었지만 잘못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 피진정인2

1)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는 2013. 3.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여 2016. 2. 졸업하였으며,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등을 거쳐 2016. 3. 피진정학교에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피진정인1은 교무행정지원사로 교무행정지원 업무 외에 사서업무를 보조업무로 담당하며 피진정학교의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1이 2015. 11.~ 2015. 12. 피해자를 직무지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3년 동안 지도했던 특수학급 전담선생님과 협조하도록 조치하였다. 특수학급 전담선생님은 풍부한 장애 학생지도 경험과 학부모와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 왔다.

2016. 3. 피해자가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된 후 피진정인1이 피해자와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을 토로하여, 1개월 동안 특수학급 전담선생님에게 피해자를 지도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다. 이후에도 수시로 도서관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격려하였으며, 피진정인1의 애로사항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6. 11.말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장애인이라고 비하하고 업무능력이 없는 것으로 무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피진정인1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억울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1에게 언행을 신중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2017. 1.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니, 피진정인1은 처음에 딱 한번 손바닥을 문구용 플라스틱 자로 때렸으며,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이에 피진정인1에게 횡수와 관계없이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채용 전에 피진정학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신분을 학생으로 착각하였다고 해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2017. 1. 당시 피진정인1은 방학기간이라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는 도서관이 아닌 제1교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진정인1과 피해자의 분리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 피진정인1로부터 사건경위서를 징구하였다.

2)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1의 차별 등의 행위를 재계약 문제와 연계하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진정인1의 행위는 재계약 문제와 별개임을 설명하였다.

피해자와의 재계약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희망일자리 사업 계획과 피진정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관계 문제이다. 「00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하였다.

피해자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의 정도와 업무 역량, 희망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 계약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른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와의 형평성, 지난 1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이전 계약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와 함께 일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의 일부였으며, 징계의 경우에는 「00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징계위원회 및 절차) 제3항에 따라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라. 참고인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는 피해자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중증장애인 지원 고용)를 제공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는 피해자의 취업 및 일에 대한 적응을 위해 취업지원 및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 시점인 2016. 12. 8.에는 재계약 관련 상담과 다른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피해자의 어머니와 2차례 전화통화 하고, 1차례 대면상담 하고, 3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피진정학교에 1년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으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에 공감은 하지만, 재계약 여부는 고용계약 주체인 피진정학교에서 결정하고, 근로상 고충 처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휘·감독하는 문제이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제한적이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턴과정을 거친 학생을 졸업 후 기간제 근로자(교육공무직원)로 채용하는 사업인데,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채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근로계약 종료 이후 무기계약 전환 등의 판단은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은 2010. 12. 10.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선발하고, 참여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무보조·행정보조·시설관리보조·사서보조·급식보조 등의 직종에서 현장훈련 등을 시킨 후 해당 학교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피진정학교는 서울특별시 00구에 소재한 공립고등학교이며, 피진정인2는 위 학교의 교장이고, 피진정인1은 교무행정과 사서업무 담당자이다.

다.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이며, 2015년 피진정학교 3학년 재학 중 희망일자리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0. 26~11. 13. 및 2015. 11. 16~12. 18. 피진정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었다. 위 기간 동안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게 도서

배가 업무를 위한 분류기호 및 저자기호 분류, 대출·반납 연습 등의 직무지도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직무지도 기간을 마치고 2016. 2. 피진정학교를 졸업한 후, 2016. 3. 피진정학교에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7. 2. 28.까지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08:00~09:00에는 교무실에서 교무보조 업무(우편물 전달 등)를 하고, 09:00~12:00에는 도서관에서 피진정인1의 보조로 도서 대출·반납, 도서 입수, 배가 작업 등을 하였다. 다만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교무실에서 교무보조 업무만 담당하였다.

마. 2016. 12. 22. 피진정인1은 피해자를 호출하였는데 빨리 오지 않았다고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복사기를 만지자 “너 이리와, 1대 맞아야겠어, 손 내밀어, 자꾸 선생님이 기계만지면 안된다고 했지!”라고 주의를 주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30cm 길이의 플라스틱 자로 1대 때렸다. 그리고 2016. 12. 23. 피해자가 컴퓨터를 만져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자 “00이 오늘도 매 맞아야겠다”, “저번에는 몇 대 맞았어?”, “2대 맞는 거야, 계속 늘어나”, “나중에는 진짜 아프게 세계 때릴 거야!”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30cm 길이의 플라스틱 자로 2대 때렸다.

바. 2016. 12. 28. 피해자가 다시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만지자,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는 벌을 주었으며, 다음날에도 피해자가 컴퓨터를 만지자 “00아 너 컴퓨터 왜 자꾸 만지는데, 자꾸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00이 또 벌 서야겠네”라고 꾸짖었다.

사. 2017. 3. 15. 00장애인복지관 소속 000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2016. 3.부터 불안증상·대인기피 증상 및 우울증 의심증상이 나타났으며, 2016년 후반기에는 현저히 악화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1회성의 강한 정신적 외상이나 낮은 강도의 지속적인 정신적 외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2017. 5. 16. 000000병원 소속

000 의사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 일상생활의 적응이 어려우며,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치료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1의 체벌 및 재계약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3회 면담을 하였다.

2016. 11. 30. 1차 면담에서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별을 받고 매를 맞고 혼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재계약에 대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0선생님(피진정인1)한테 물론 힘드신 거 알지만 조금 더 희생하시고 봉사하셔야 합니다라고 나서서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도 00이(피해자)가 1년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여건은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00이하고 누군가는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함께 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힘들어도 해야 됩니까?”라는 말을 하였다.

2017. 1. 9. 2차 면담에서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체벌한 증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며, 재계약에 대해서“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장애인 복지기관이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이잖아요. 피해자를 끝까지 다 보살피진 못했지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라고 말하였다.

2017. 1. 12. 3차 면담에서 피진정인2는 재계약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그 분(피진정인1)은 원래 무기계약직이에요. 원래 학교에서 계속 하시는 분이예요. 원래 2년 넘게 근무해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 가신 분이예요”, “00이 어머니, 사서 선생님이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와 00이 계약연장은 별개의 문제예요”, “00이 계약할 문제하고 사서선생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등의 말을 하였다.

자. 2017. 1. 20.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피진정학교의 000 교감, 000 특수학급 교사, 피진정인1 등과 회의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와 업무 역량, 희망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 계약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른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와의 형평성, 지난 1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이전 계약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7. 1. 24. 000 교감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직무교육 소홀 및 장애인에 대한 불만 표출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1의 직무지도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분류기호 및 저자기호 분류연습, 대출·반납 연습 등을 지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진정인1이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체벌 등)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과 제4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에게 강하게 주의를 주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하나, 피진정인1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며, 인정사실 마.항 및 바.항과 같이 피해자의 등과 손바닥

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인사권자인 피진정인2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향후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는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조치 미흡 및 재계약 거절) 및 라.항(재계약 관련 소명기회 미제공)

피해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에게 언행을 신중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하고, 피진정인1의 차별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고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인정사실 라.항 및 자.항과 같이 피해자는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피진정학교와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와 업무역량, 희망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 계약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른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와의 형평성, 지난 1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이전 계약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0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상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00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

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한수웅

〈별 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7

**2017. 8. 11.자 17-진정-0270400 결정
【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결정사항】

- 【1】 피진정인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

【결정요지】

- 【1】 피진정인1은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장애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진정인1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2】 피진정인2는 2017. 3. 21. 피해자 및 수강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대체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동일한 강의를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3.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함. 이후 피진정대학은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1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17. 6. 15. 교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2017. 2학기부터 피진정인1의 강의 배정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기에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진 정 인】 백○○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1. 임○○
2. ○○대학교총장

【주 문】

- 1. 피진정인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단법인 ○○○○○○○○연구소 인권센터 간사이며, 피해자는 시각1급 장애인으로 ○○대학교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해자는 장애를 이유로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

가. 피해자는 20××. ×. ×. 도우미 학생과 함께 ‘○○○○와 ○○의 ○○’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피진정인1이 강의 도중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김○○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다.”라고 한 뒤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하였고, 이어 피해자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였다. 도우미 학생에게는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가리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장애 학생에게 퀴리 부인에 대해 가르쳐라.”라고 말한 뒤 또 한 번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진정인1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본인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진정인1은 “좋은 의도로 한 말이였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인1의 위 발언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교무처와 행정팀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다. 학교 측은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개설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과 모욕감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그 발언이 강의를 폐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위였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을 물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 ×. ××.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피해자와 총학생회가 주장했던 ‘교수 해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는 더 이상

의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피진정인1은 ‘○○○○와 ○○의 ○○’ 첫 수업이 있던 20××. ×. ×. 프로필과 강의내용을 소개하고, 수강생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위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0××. ×. ×. 수강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익명으로 각각 진로상담을 해주었는데 이에 대해 수강생 모두가 고마워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의 도우미 학생이 피진정인1에게 자신이 ‘장애인 학생의 도우미’라고 밝히고 특정한 좌석을 가리키며 지정좌석으로 할당해 달라고 부탁하여 흔쾌히 승낙하였다.

2) 피진정인1은 20××. ×. ×. 장애인 자격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을 비하하지 않았다. 수강생 전원이 4년 동안의 급우로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 점을 공표할 필요가 없었으며, 장애인 자격은 지식테스트(예로서 퀴리 부인)를 통하여 인증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학문이라고 하는데 4년 동안 수업을 잘 수행해왔다”라고 칭찬하고, 도우미 학생에 대하여는 “모두 4학년으로서 취업준비에 바쁠 것인데 ○○대 교훈인 ‘사랑의 실천’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심성이 거룩하다. 따라서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도우미 학생에게 “자네는 퀴리 부인을 아는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류문명사에 크게 기여한 여성 과학자 퀴리 부인을 모르면 안되지!”라고 강조했으며, “여유시간이 있을 때 퀴리 부인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받아, 옆에 학생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거라.”라고 권장하였다.

3) 피진정인1은 20××. ×. ××. 11:55 도우미 학생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본인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 ×. ××. ○○대학교 이○○ 총장 등에게 ‘○○인 가족 모두에 대한 사과의 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본인의 과목을 수강한 모든 학생들에게 ○○대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사과문을 발송해달라고 학교에 부탁하였다.

다. 피진정인2

1) 20××. ×. ××. 피진정인1의 위 발언과 관련하여 ○○○○대학 교원인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 ×. ××. ~ 20××. ×. ××. 학장의 지휘 하에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학생과 대체강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강의를 개설하고, 피진정인1의 강의를 계속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 20××. ×. ××. 진정인의 ‘○○○○대학 임○○ 교수 장애인 차별적 발언 건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에 대해 ○○○○대학 행정팀장 명의로 ‘○○대학교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내용으로 전자우편을 보냈다. 20××. ×. ××. 본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 명예교수 처분 의뢰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진정인1에게 전달하였으며, 피진정인1은 수강한 모든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으로 전자우편을 보냈다.

3) 피진정인1은 명예교수로서 임용직이 아닌 명예직에 해당되어 해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피해자와 총학생회가 피진정인1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20××. ×. ××. 개최된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바와 같이 피진정인1의 발언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해당 강의를 수강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였다.

4) 20××. ×. ××. 15:00 ‘20××학년도 제4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1에 대해 향후 강의배정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참고인

1) 참고인은 ○○대학교 ○○○○대학 학생으로 피해자의 친구이다. 3년 전부터 피해자의 ○○○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 1학기에 피해자와 함께 피진정인1이 담당하는 ‘○○○○와 ○○의 ○○’ 과목을 수강하였다.

2) 20××. ×. ×. ‘○○○○와 ○○의 ○○’ 수업 시간에 피진정인1이 “여기는 김○○ 학생이고 장애인인데, 여기 배우려고 앉아있다. 박수를 쳐라.”라고 한 후, 참고인1에게 “그 옆에 앉아있는 자네는 누구인가?”라고 하여 “입○○입니다.”라고 했더니, 피진정인1이 참고인 이름을 말하며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박수를 쳐라. 복을 많이 받아라. 행복해라.”라고 하고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진정인1이 갑자기 퀴리 부인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당황해하자 피진정인1이 “퀴리 부인을 모른다니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한 후 참고인에게 “퀴리 부인에 대해 알려주어라.”라고 하였다. 그 당시 참고인과 피해자는 당황하여 피진정인1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3)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피진정인1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대해서만 전자우편을 보냈고, 그 내용을 보면 ‘좋은 의도로 했다, 학교의 분반조치 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이 있는 등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다. 피진정인1은 참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억울하다. 기자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4) 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바로 분반 조치를 해주었으며, 강사를 구하는 일주일 동안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해 수업 출석을 인정해 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참고인 문답서,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사립대학으로 총학생수 15,454명, 장애인 총학생수 53명이고, 피진정인1은 피진정대학 ○○○○대학 명예교수이다.

나. 피해자는 시각1급 장애인으로 20××년 ○○대학교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며, 20××. 1학기에 도우미 학생과 함께 피진정인1이 담당하는 ‘○○○○와 ○○의 ○○’ 과목을 수강하였다.

다. 피진정대학은 20××. x. xx. 피진정인1의 발언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 x. xx. ‘○○○○와 ○○의 ○○’ 강의를 수강한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강한 학생 36명 중 23명이 “장애학생에게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답하였고, 36명 중 20명이 “장애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진정대학은 20××. x. xx. 피해자 및 피진정인1의 강의 수강을 원치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피진정인1이 강의하는 수업과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교원이 강의하는 동일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분반 조치를 취하였다. ‘○○○○와 ○○의 ○○’ 최초 수강자 53명 중 29명이 대체 강좌 수강을 희망하였다.

마. 피진정대학은 20××. x. xx. 09:00 ‘20××학년도 제1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수업 분반을 승인하고, 김○○이 차별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임○○ 교수가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며, 교수의 사과가 미진할 경우 차기 학기 수업배정 제외 및 임○○ 교수가 현재 전임교원 신분이 아니고 정년 후 명예교수로 예우되고 있으므로 명예교수 직위에 대한 재심의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바. 피진정인1은 ‘20××학년도 제1차 교원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20××. x. xx. ‘○○○○와 ○○의 ○○’을 수강한 ○○○○대학 학생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사. 피진정대학은 20××. ×. ××. 15:00 ‘20××학년도 제4차 교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교원이 강의 수강학생들과 피해학생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미진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번 학기 이후부터 해당교원에게 강의 배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이에 해당 교원에게 향후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함.”이라 결정하였다.

아. 피진정대학은 20××. 4차례에 걸쳐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 학생지원센터에서 모든 부서에 20××. ×. ××. ‘장애학생 개인정보보호 및 모욕비하 차별금지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고, 20××. ×. ××. ‘장애학생 개인정보보호 및 모욕비하 차별금지 관련 안내 및 장애유형별 교수학습가이드-교수 배포용’을 제작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1의 발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1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의 진술과 해당 강의 수강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1이 피해자 등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1은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장애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1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2의 조치 미흡)

피진정인2는 20xx. x. xx. 피해자 및 수강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대체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동일한 강의를 신설하였고, 20xx. x. xx. 교원인사위원회 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1의 사과가 미진할 경우 차기 학기의 수업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진정대학은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1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xx. x. xx. 교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20xx. 2학기부터 피진정인1의 강의배정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기에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조현욱

6. 기타 사건

1

**2013. 6. 18.자 12-진정-0519200 결정
【국어능력인증시험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결정사항】

(재)○○○○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국어능력인증시험 결과는 언론사·공기업 등への 입사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대학 등의 입학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뇌병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국가시험 서비스 제공 매뉴얼이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안전행 정부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2】 국어능력인증시험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KBS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시청각 장애인 뿐 아니라 기타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을 위하여 '뇌성마비 등 기타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그들의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장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3】 (재)○○○○문화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16만원 정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피진정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국어능력인증시험 시 글씨를 쓸 때 비장애인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장애의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진정인】 정○○

【피진정인】 (재)○○○○문화연구원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2012년 5월에 (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하였는데, 2교시 쓰기 시험의 경우 문제의 반 정도를 100자에서 300자까지의 답안을 써야 한다. 뇌병변 장애가 있다 보니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간 연장 등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재)○○○○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은 정규 교육과정과 일상생활을 통해 취득한 국어사용능력 및 언어사고력 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읽기와 듣기'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분석해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답을 선택하거나 기술하는 시험으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응시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대활자 시험지 제공, 시간 연장, 듣기시험 대본 제공, 보조기기 사용 승인 등 차등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파악되면 계단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1층 강의실로 고사실을 배정하거나, 계단형 강의실의 경우 맨 앞자리에 별도로 책상을 배치하여 주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위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간연장’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바, 본 연구원으로서 진정인이 ‘읽기와 듣기’에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물론 ‘정당한 편의’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시간연장’의 경우 고사장, 감독관, 방송장비를 모두 별도로 준비하여야 함은 물론 고사본부장 및 진행요원의 근무시간도 연장하여야 되는 관계로 응시료의 5~6배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기에 다른 방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그리고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출생 과정에서 소뇌를 다친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몸의 강직 현상과 불수의(不隨意)적인 움직임이 동반되고 있어 자주 어깨 등을 주물러 줘야 한다. 현재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4년째 치료약을 복용 중이며, 장애로 인해 글씨를 쓰는데 불편함이 있어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나. 진정인은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 요건으로 (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 다. 진정인은 2012. 5. 첫 번째 시험에 응시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 6.경 (재)○○○○문화연구원에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2. 7. 20. 인 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라. 국어능력인증시험은 (재)○○○○문화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인 받아 수행하고 있는 시험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은 「자격기본법」 제23조에 의거 국가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시험은 언어기초·언어기능·사고력 등 3영역으로 구성되며 2교시로 나뉘 130분 동안 진행된다. 1년에 6회의 시험이 있으며, 총점은 200점이고 점수에 따라 1~5급이 부여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 마. 국어능력인증시험 결과물의 용도는 주로 언론사·공기업 등에서의 입사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대학교 등의 입학전형에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바. (재)○○○○문화연구원은 뇌병변장애인에게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려면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편의제공 요구를 거부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는 당사국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9조(정치와 공적생활 참여)에서는 장애인이 공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직업활동 수행과 관련되는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배제당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정인의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시험시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의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글씨를 쓰는 것에서 비장애인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장애의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재)○○○○문화연구원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국어능력인증시험 결과는 언론사·공기업 등에의 입사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대학 등의 입학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뇌병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국가시험 서비스 제공 매뉴얼이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르면 안전행 정부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 구체적 매뉴얼³⁸⁾을 마련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8) 별지 2, 3 참조

또한 국어능력인증시험의 대체제³⁹⁾라고 할 수 있는 KBS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시청각 장애인 뿐 아니라 기타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을 위하여 ‘뇌성마비 등 기타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그들의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장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재)○○○○문화연구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뇌병변 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며, 진정인이 본 시험을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응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국어능력인증시험 인증서와 성적표를 통해 공기업 등의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39)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어능력인증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인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며, 응시 요건으로 ‘국어능력인증시험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다는 점 등 이 두 가지 시험은 사실상 그 효력과 응시 대상자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별 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UN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1.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 (b) 장애인이 공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별 지 2>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 서류(안전행정부, 2013년)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 장애	- 1급~2급 - 3급2호, 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없음 (단, 3급2호, 4급2호는 점자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점자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3급 4급 5급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없음 (단, 시각장애 6급은 의사진단서)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기타 (시각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뇌병변 · 지체 장애	중증 뇌병변 (1급~3급) 중증 상지지체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중증뇌병변)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경중 뇌병변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경중 상지지체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하지지체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2013. 6. 18.자 12-진정-0519200 결정 【국어능력인증시험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청각 장애	2급~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 (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타 장애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 (논문형시험)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서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 5(등)급 2차 논문형시험의 시간연장범위는 시각장애 1급~2급·3급2호·4급2호는 1.5배, 그 외는 1.2배
 -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 * 확대답안지(선택형시험) : A3, B4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4종류 중 택1

<별 지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p.83~84 (2012.8.)

뇌병변장애 1~3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 서류	없음. ※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지원 내용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 시험시간 연장(1.5배) ② 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실시 ③ 확대 문제지 ④ 확대답안지 ⑤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⑥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 시험시간 연장(1.2배) ② 확대문제지 ③ 답안작성용 컴퓨터 ④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 면접시간 20분 연장 ②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③ 전담도우미 지원 ④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⑤ 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뇌병변장애 4급~6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 서류	없음. 다만 시험시간 연장시 의사진단서 제출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진단서 -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의사진단서로 응시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및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원 내용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 시험시간 연장(1.5배) ② 확대문제지 ③ 확대답안지 ④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⑤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 시험시간 연장(1.2배) ② 확대문제지 ③ 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 전담 도우미 지원 ③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 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별 지 4〉

(재)○○○○문화연구원 장애인 응시규정(제33조 관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TOKL 정기시험에 응시하는 장애 응시자의 응시 환경을 지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장애인의 범위]

본 규정의 장애의 정도는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TOKL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의 장애를 증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응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시각 장애인
2. 청각 장애인

제3조[장애의 증명]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다음 각 호 중 1)를 TOKL 시행본부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1.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
2.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② 증빙 서류의 제출 마감일은 해당 시험의 접수일 마감일과 동일하다.

제4조[편의 제공]

제3조에 의해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보건 복지부가 규정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1. 시각 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시험 환경 요건' >

장애등급	장애 정도	편의 제공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확대된 문제지(200%)를 제공하고 시험 시간은 연장할 수 있다.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장애등급	장애 정도	편의 제공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문제지의 확대(118%)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연장할 수 있다.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문제지는 일반인과 똑같은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시간은 연장할 수 있다.
5급 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장애 등급은 보건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 등급 판정기준에 따른다.

가. 보조도구의 사용: 장애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나. 별도의 고사실 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본부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2. 청각 장애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시험 환경 요건' >

장애등급	장애 정도	편의제공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듣기 영역은 대본을 제공하여 평가한다.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별도의 고사실과 헤드폰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일반인과 같은 고사실에서 보청기 등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가. 보조 도구의 사용: 장애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청력 증진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를(보청기 등)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나. 별도의 고사실 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2

2013. 6. 18.자 13-진정-0073700 결정
【법무사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및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의 경우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법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 진정인은 아직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은 없어, 직접적인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약시와는 달리 아무런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을 무작정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
- 【3】 법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대법원이 사용자의 위치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법률 관련 분야 등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므로 피진정인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및 제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권고) 제1항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맹으로 1급 시각장애인인데 2013년 현재 법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며 법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기 등 특수 기계를 지참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아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무사 시험시 약시인 시각장애인에게는 편의 제공이 있으나,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편의 제공이 없는 상황이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에 대하여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의 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법무사 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피진정인이 제출한 법무사 시험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에 따르면 약시(양안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인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독서기 지원 허용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나. 2013. 2. 26.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공고한 제19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선발예정 인원은 120명이고, 시험방법은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주관식 필기시험, 제3차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 8개 과목이고,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7개 과목이다. 시험은 연 1회 있으며, 2012년에 시행된 제18차 시험의 경쟁률은 29.3:1 이었다.

다. 법원행정처에서는 2013. 6. 현재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라. 참고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2006년도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험 공간 제공,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점자 답안지 사용, 답안 작성시 도우미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1, 2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는 당사국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에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25조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인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법무사 시험 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현재까지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의 진정인에 따르면 진정인은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은 없으나 현재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장기적으로 법무사 시험을 치를 계획이라 2013년 1월 중순 경 피진정기관에 법무사 시험 관련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및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법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사건에서 진정인은 아직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은 없어, 피진정기관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시와는 달리 전맹인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을 무작정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법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대법원이 사용자의 위치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채용시험은 아니지만, 시험 통과시 합격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여 법률 관련 분야 등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므로 피진정인이 법무사 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평등권’ 및 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다.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시험을 주관하면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별 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UN장애인권리협약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1.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 (b) 장애인이 공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별 지 2>

법무사 시험시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편의 지원 항목	제출 서류
시 각 장 애	약시 (양안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연장 1.2배 ·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 시험시간 연장 1.2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중증 뇌병변 (1~3급) 및 중증 상지지체 (1~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대필(선택형 필기시험) · 노트북(논문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연장 1.2배 · 면접시간 10~20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경중 뇌병변 (4~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노트북(논문형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연장 1.2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경중 상지지체 (4~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노트북(논문형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하지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시험실 배정 (1층 또는 승강기 이용가능 시험실) · 휠체어 전용책상 (높이가 높은 책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 각 장 애	2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면접시간 10~20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2013. 6. 18.자 13-진정-0073700 결정 【법무사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장애유형		편의 지원 항목	제출 서류
기 타 장 애	- 특수 및 중복 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 ·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	· 별도 시험실 배정 (논문형 필기시험) ·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논문형 필기시험)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확대문제지 제공 - A3 규격의 118%(14point)로 확대된 문제지
- 확대답안지 제공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기입형 중 택일

<별 지 3>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 서류(안전행정부, 2013년)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 장애	-1급~2급 -3급2호,4급 2호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자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없음 (단 3급2호, 4급 2호는 점자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점자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3급 4급 5급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없음 (단, 시각장애 6급은 의사 진단서)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기타 (시각중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뇌병변 · 지체 장애	중증 뇌병변 (1급~3급) 중증 상지지체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면접시간 20분내 연장(중증 뇌병변)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경증 뇌병변 (4급~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경증 상지지체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하지지체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2013. 6. 18.자 13-진정-0073700 결정 【법무사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청각 장애	2급~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 (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타 장애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 (논문형시험)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및 의 사진단서((서로 다른 (상급)종합 병원에서 발급받 아야 함)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5(등)급 2차 논문형시험의 시간연장범위는 시각장애 1급~2급·3급2호·4급2호는 1.5배, 그 외는 1.2배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선택형시험) : A3, B4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4종류 중 택1

CHAPTER II

정책권고 결정례

1. 고용

1

2013. 11. 12자 결정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결정사항】

안전행정부장관에게

- 【1】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
- 【2】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안전행정부는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각종 편의제공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제공범위, 근로기준인 자격 등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각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 【2】 국가는 장애인근로자에게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지원인의 제공에 있어 비공무원인 장애인근로자와 공무원인 장애인근로자를 차별할 합리적 사유도 인정할 수 없음.
- 【3】 또한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참조결정】

노동부 2000. 05. 02, 근기 68207-1332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7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주 문】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
2.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이 유】

I. 검토배경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지체 1급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는 출퇴근 및 업무상 출장을 위한 이동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나, 예산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피해자는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문의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13-진정-0251800, 0253200, 0255100, 0256300, 0256600 병합).

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7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현황

1. 근로지원인 제도의 의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2007년 9월부터 노동부와 공단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19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대상에 대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지원인 사업의 실질적 운영은 위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위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하나로 국가는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동료 직원들 및 고용주의 부담도 경감시켜 이들의 고용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민간사업장에서의 근로지원인 제도 현황

가. 운영 현황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사업에 2010년 1,500백만원, 2011년 1,790백만원, 2012년 2,15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2010년 225명, 2011년 365명, 2012년 7월 현재 287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2013년 11월 현재 월172시간의 범위에서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사업평가』에 따르면, 2011년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 중증 임금근로자 158,966명 중 신체기능의 제한, 이동능력의 제한, 의사소통의 제한 등으로 인해 업무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15.2%에 이르고, 많은 수가 도움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거나 직장동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들에 의한 사적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장애인 고용 유지 및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참여로 인해 근무 시 장애로 인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1.7%로 나타나 이용자의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서비스가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93.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및 근로지원인이 판단하는 생산성 향상 정도도 각 46.3%, 43.6%로 나타난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 및 동료들이 근로제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공무원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재원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동 기금은 사업주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현황

가. 행정부의 장애인 고용 현황

2011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수는 약 250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4,665명, 시도의 경우 8,128명, 헌법기관의 경우 464명, 교육청의 경우 4,884명인데, 이 중 중증장애인의 수는 각 712명, 1,178명, 51명, 686명이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진출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도입하여 실시해오고 있고,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총 129명을 선발하였다.

나. 공무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공 관련 규정

안전행정부는 현재 「균형인사지침」을 근거로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경상경비 등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균형인사지침」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인¹⁾, 보조공학 도구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서는 업무보조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보조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본 권고에서는 ‘근로지원인’이라 통칭함.

그 외에도 2012. 8.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서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당한 편의지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하는 모든 수단과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편의지원의 원칙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인,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바, 그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들고 있다.²⁾

다. 공무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현황

현재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지원인은 물론 위와 같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나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정도의 편의제공만 하고 있는 수준이며, 일부 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거나 안정성, 지속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임시방편적 편의를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로지원인 제공 요구가 있더라도 제공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있더라도 예산 및 제공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세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부처에서는 예산 및 인력 수급 형편상 자체적으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지원인 제공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더불어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예시하고 있는데,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해서는 “외부 출장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동이 불편하므로 근로지원인 도움 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업무보조인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직원 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 배치로 직원간 의사소통 지원”을 제시함.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지원인 제공 현황〉

* 2013년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자료

	기관명	근로지원인 제공 여부(현황)
중앙 행정 부 처	교육부	없음
	국방부	없음
	국토교통부	없음
	기획재정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없음
	법무부	없음
	보건복지부	업무보조인 지원 가능하나, 현재 요청자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여성가족부	없음
	외교부	없음
	통일부	없음
	해양수산부	없음
	환경부	2013년도 예산 배정하여 지원 가능하나, 현재 요청자 없음
지 방 자 치 단 체	강원도	없음
	광주광역시	없음
	경기도	없음
	경상남도	없음
	경상북도	없음
	대구광역시	없음
	대전광역시	없음
	부산광역시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근로(기간제 근로자) 활용하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없음
	울산광역시	없음
	인천광역시	없음
	전라남도	없음
	전라북도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충청남도	없음
	충청북도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행정도우미제도 활용해 도우미 배치

이처럼 각 부처 및 지자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근거규정,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안전행정부와 위와 같이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도 현재까지 이를 직접 시행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행 정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근로지원인 지원 현황 및 계획이 없는 부처 및 지자체들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아직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약 15.2%의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업무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바 공무원의 경우에도 수요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까지 근로지원인에 대한 요청이 적었던 것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로지원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장애 당사자들도 근로지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직 내에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공을 불필요한 추가적 비용 발생으로 인식하는 조직 내 분위기 속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편의제공을 먼저 요청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때 ‘사업’, ‘사업장’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³⁾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바 있다.³⁾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금이 사업주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나, 정부내부수입의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부담금 징수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닌 일반회계나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논거는 공무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거절의 타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⁴⁾.

다만,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복리후생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균형인사지침」 및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무원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역시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V. 판단

1. 국가의 의무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차적 의무를 부담함.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제27조

3) 노동부 2000. 05. 02, 근기 68207-1332

4) 김용탁,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2012,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9-20쪽 참조

에서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근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제37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바, 특히 낮은 취업률로 인해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이는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권리아자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인사지침」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되, 단순히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부가 「균형인사지침」과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두고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구체적 방안 마련 및 홍보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이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의 침해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민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같은 중증장애인임에도 단지 공무원인지 여부만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때, 이처럼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정당한 권리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차별적 상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만 한다.

본래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부수적 업무수행을 지원하여 이들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민간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은 취업 및 고용의 유지에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인으로서 두 집단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공무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제도 및 지원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공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차별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5)에서 장애인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편의제공의무 중 하나로 보조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2009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규정의 1차적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장애당사자가 본인의 장애유형,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요청이 있기 전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법령에서는 장애인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해 이들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한편 이들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은 근로지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지침이 근거로 들고 있는 위 법령들을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등 편의제공의 근거규정으로 보아 구체적인 근로지원인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행 정부는 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3. 11. 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2. 교육

1

2015. 6. 30.자 결정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 【1】 교육부장관에게,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취학유예 또는 면제절차를 거치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 【2】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지사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과연령 장애인이 의무교육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과 교육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에 의해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아예 취학하지 못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의무교육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시설거주 장애인은 학령기에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아예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 유예나 면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방임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부의 지침은 방임의 피해자인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의무교육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교육부장관에게,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취학유예 또는 면제절차를 거치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지사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과연령 장애인이 의무교육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과 교육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정책권고의 배경

시설거주 장애인 5명이 과연령을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아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이 2015. 1. 6.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되었다.

위원회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하여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 또는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이나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아 진정사건을 기각하였으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기에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결과로서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31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III. 검토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의무교육

우리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은 1994. 7. 1. 시행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법제화 되었는데,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2008. 5. 25.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무교육 대상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장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특수교육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아예 취학하지 못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의무교육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2. 대안교육을 위한 의무교육 중단과 교육소홀로서의 방임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령기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와 같은 취학의무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교육 기관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교육 기관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에 취학하거나 취학하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는 것은 취학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만약, 보호자가 학령기 장애아동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공교육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교육 기관에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학령기 장애아동으로 하여금 어떠한 교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므로, 보호자의 그러한 선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에게 따로 의무교육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을 중단한 것이 아닌, 보호자가 장애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연령 특수교육 신청자”는 보호자의 교육소홀로 인한 방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책으로서 만 17세가 경과한 이후에라도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과연령 특수교육 신청자에 대한 의무교육 보장방안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은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반드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교육부는 매년 시행하는 「특수교육운영계획」을 통해 시·도 교육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2014년 각 시·도 교육청의 과연령 특수교육 신청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현황을 보면, 신청자 256명 중에서 29명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29명 중에서 21명이 시설거주 장애인으로서, 학령기에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시설거주 장애인은 학령기에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아예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 유예나 면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방임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학령기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받은 경우”에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방임의 피해자인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의무교육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만 17세 이상의 학령기를 넘긴 성인 장애인의 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통한 의무교육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과정에 의한 교육기회 제공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으나, “2014년 특수교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 전남,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이 부족한 상태이며, 종사자의 45%가 사회복지사이고 특수교사는 7.7%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특수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선택한 결과로서 의무교육 연한을 경과한 것이 아닌 방임의 피해자로서 의무교육의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2

2015. 7. 2.자 결정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해

- 【1】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성비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 및 보조인력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예산확대와 교육·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일반교사의 통합학급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강화 및 전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 【2】 교육부 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 구축, 학교폭력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평가조정을 포함한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인 지원
- 【3】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책의 시행을 권고함.

【결정요지】

2014년에 실시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과 사생활침해 그리고 교육차별실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7조, 제3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1조, 제2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6조의2, 제17조의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권고한다.



1. 17개 시·도교육감에게,
 - 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 나. 성비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 및 보조인력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 다.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예산확대와 교육·안내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 마. 일반교사의 통합학급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바.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강화 및 전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2. 교육부 장관에게,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 구축
 - 다. 학교폭력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 라. 평가조정을 포함한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 마.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바.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인 지원

3.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유】

I. 정책권고의 배경

2014. 9. 30.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고,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⁶⁾ 에서도 국내의 통합교육이 물리적인 통합에만 그치고,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7조, 제3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1조, 제2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6조의2, 제17조의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6)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는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모집단(11,027개교) 중 지역과 교육과정별로 974개교를 추출하였고, 974개교의 특수교사, 일반교사(통합학급 담당교사), 보조인력 및 장애학생 부모 974명씩 총 3,8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사 408명, 일반교사 581명, 보조인력 266명 및 학부모 380명 등 총 1,635명이 응답하였고(응답률 41.9%), 이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 29명(특수교사 9명, 일반교사 4명, 보조인력 3명, 학부모 13명)을 제외한 1,606명(특수교사 399명, 일반교사 577명, 보조인력 263명, 학부모 367명)을 최종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2. 참고기준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제13조, 제16조,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6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14.9.),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호」(2006.9.)

III. 검토 및 판단

1. 학교폭력 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

가. 인권침해 실태

1) 학교폭력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위원회의 실태조사’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특수교사·학부모·보조 인력이 응답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36.7%이며, 놀림·비하·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24.0%, 금품갈취·과도한 장난·강제심부름·따돌림 등의 괴롭힘은 19.2%, 상해·폭행·체벌 등의 폭력은 16.0%였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이 2014년도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학교 폭력 경험률은 14.0%⁷⁾인데 반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서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1.2%⁸⁾로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이 비장애학생보다 1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7) 국립특수교육원의 2014년 1차 실태조사는 전국의 장애학생 71,413명 중 43,944명이 참여하였으며(응답률 61.5%), 이 중 특수학교 11,325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25,375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7,244명의 장애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에 관한 정책검토가 주 목적이므로, 전체 응답자 중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응답률만 포함하였다.

8) 국립특수교육원의 2014년 제2차 실태조사는 2014. 9. 15 ~ 10. 24. 초등4학년에서 고등 2학년에 재학중인 약 434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만 8천명의 1.2%였다.

2) 사생활침해 실태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사생활 침해 경험률은 16.3%이었는데, 그 중에서 사적공간 침해가 12.1%, 소유물 침해 4.4%, 초상권 침해 1.9%, 개인정보유출 1.1% 순으로서 사적공간 침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생활 침해는 장애남학생(17.2%)이 장애여학생(7.0%) 보다, 중증 장애학생(20.3%)이 경증 장애학생(12.2%) 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데, 중증 장애학생의 신변처리나 착·탈의를 돕는 보조인력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링 활동 강화

교육부는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2년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모니터링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경찰·성교육 및 장애인인권 관계자를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의 대상은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도 주로 학교의 교무부장이나 특수교사를 면담하거나 학교폭력 신고현황 및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개최현황, 인권교육·성교육 등의 교육현황점검 등 학교기록을 확인하는데 의존하고 있어 세심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주로 ‘또래’에 의해 ‘교실 내’에서 발생되며, 교사가 없는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데, 46.6%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의 활동은 교사나 학교기록에 의존하는

9)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구성 운영 중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수는 190개, 참여위원 수는 1,974명이며, 2013년 상설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학교의 수는 5,162개 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학생을 직접 면담하고 학습환경 등의 장애학생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 지표’ 개발이 요구되며, 모니터링 대상을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 구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한 상담과 조사가 실시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보호를 심의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피해·가해자가 장애학생일 때는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2014년 학교폭력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의 피해·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는 특수교육전문가(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학내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에 의하면 법에 저촉된 장애아동은 적절한 언어 및 여타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 훈련을 받은 법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해 접견되어야 하며,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는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사소통 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장애학생 및 학부모가 동의하는 자를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사소통지원) 제2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두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학교폭력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학교폭력의 피해·가해자가 장애학생일 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상담 및 조사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한 보호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단위학교 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일반학교의 학교폭력 관련학생이 주로 비장애 학생이고 장애학생은 소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재심을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도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인권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조치와 대처, 그리고 예방책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 강화 및 전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주된 경로는 장애학생 스스로가 부모나 특수교사, 보조인력에게 말하는 경우이며, 현재로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장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기에, 교육을 통하여 장애학생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되어있는 장애학생 대상의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2012)”가 있으나 주로 폭력과 성폭력에 한정돼 있으며, 그 외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2014)”은 교사용 교육자료로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학습연령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량학습시간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기옹호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비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장애상태를 놀리거나 따라하거나, 흉내 내기 등이 장애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따돌림, 괴롭힘, 폭행 등은 아주 심각한 학교폭력임을 강조하는 학교폭력에 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가 함께하지 못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간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인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거나, 또래 학생들이 인권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5) 성비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 및 보조인력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통합교육현장에서 사생활 침해의 주요 원인은 장애여학생(35.1%)보다 장애남학생(64.9%)이 많은데, 장애학생의 신변처리를 지원을 보조하는 인력은 남성(11.4%)에 비하여 여성(88.6%)이 더 많기 때문이며,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은 사생활 침해만이 아니라 장애남학생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은 남성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및 사회복지무요원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보조인력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남성보조인력 확보방안과 함께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인권교육이 요구된다.

2. 교육차별 실태 및 대책 검토

가. 교육차별 실태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비율은 4.7%, 교육기회의 차별이 12.5%였고, 그 중에서 교내외활동배제가 13.7%로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인식조사」에서도 교내외 활동배제가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슷한 15.2%로 나타나고 있다.

교내외 활동배제의 주요한 이유로는 교육편의 미제공이 29.9%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통학지원 미제공 21.8%, 의사소통 미지원 13.2%, 보조인력 미지원 9.8%, 정보접근 미지원 8.8% 교수학습자료 미지원 4.4%, 편의시설 미지원 2.0%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나 의사소통기기 등의 교육편의 미지원이 교내외 활동의 배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4.4%였고, 그 중에서 평가과정에서의 비고려가 8.0%, 행정적 조치에서의 비고려가 7.2%, 수험편의 비고려가 5.3%, 교육과정운영 과정에서의 비고려가 4.4% 순이다.

나. 교육차별의 개선을 위한 대책

1) 보조인력 확충

통합교육현장에서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부족은 장애학생의 교육차별로 이어지는 만큼, 보조인력의 확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의 핵심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2014. 4. 1. 기준으로 통합교육현장에 배치된 보조인력은 특수학급 6,758명, 일반학급 511명에 그쳐 교내외 수업이나 활동시 보조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회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예산확대와 정확한 교육·안내 실시

교육편의 미지원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편의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절대적 부족으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교육편의 선정과 제공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습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정확한 ‘육구사정과 선정’, ‘적용 및 평가’를 통해 지원되어야 하나, 일반학교의 경우 교사에 의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일괄 구매하여 지원하다보니 장애학생에게 맞는 학습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가 아니거나, 교사가 학습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하거나, 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¹⁰⁾.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학습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나 전문성의 부족한 만큼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본질적 해결방안일 것이나,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조차 부족한 현실이기에 지역의 보조공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을 지원받거나, 보조공학정보와 활용에 대한 연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예산확대와 장애학생에게 맞는 학습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안내, 그리고 교육편의와 관련된 정보공유,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 대한 전반적 환경의 재구축이 요구된다.

3) 평가조정을 포함한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습에만 교육편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시험편의 및 평가과정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을 위한 물적·인적 편의제공도 중요하나, 장애학생이 시험이나 평가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수험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평가방법이나 성적처리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10) 특수교육현장의 보조공학 활용실태 및 요구(201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하여야 하므로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가 요구된다.

4) 모든 일반교사의 통합학급운영 역량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는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15 ~ 60시간 연수가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¹¹⁾ 장애학생의 70%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통합학급 운영이 특정 교사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일반교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기에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물론 일반교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통합교육에 대한 운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연수가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상이한 점, 교육적 방임이나 교육기회차별이 주로 일반교사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연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과의 협력방법, 개별화교육 참여 및 지원방법, 통합학급 운영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모든 일반교사가 이수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수준의 계획추진이 요구된다.

3.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전문인력, 다양한 교육편의 이외에도 인식이나 정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 요구되기에 장애학생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11)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60.1%만이 관련 연수를 이수하였으며(전체 50,162명 중 30,167명이 관련 연수 이수), 전체 일반교원 중 88,848명이 최소1시간에서 최대 60시간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됨.

가.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 수립 및 이행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육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히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적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줄 특수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2014년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61.1%로 일반교원의 법정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수교사의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어서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국가책무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고용과 지위는 일반교사와 대등한 관계 형성이나 장애학생 지도나 지원에 있어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을 어렵게 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보다는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특수교육교원의 법정 정원 제고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특수교육교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의무교육대상이 확대되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증설되는 수치가 못 미쳐서 아직까지도 법정 정원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미설치된 학교에 비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증진이나 통합교육에 긍정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학급 신·증설이 요구된다¹²⁾.

따라서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해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12) 2014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수는 6,730개교이며, 최근 5년간 2,693학급이 증가해 연평균 274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의 수는 5,541개교에 달한다.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교육행정기관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인의 조기발견, 진단 및 평가, 학교배치,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장애학생 및 가족상담 등 특수교육 전반에 걸친 업무와 단위학교의 특수교육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1개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특수교육전문직위는 80명에 불과하고, 그 외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장학사가 센터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여타의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어서 특수교육업무에 매진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경험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의 필수요건으로,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 자문과 협력지원이 요청되는 만큼, 최소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담 장학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전담 장학사는 특수교육센터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부처별로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유영하 위원 이경숙

3

2017. 3. 23.자 결정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사항】

- 【1】 교육부장관에게,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와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지침 강화를 권고
-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는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아특수교사 충원과 보육 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 배치 및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하고,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 구축을 권고
- 【3】 국무총리에게,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권고

【참조조문】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교육부장관에게,

- 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 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하기 바람.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가.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나. 유아특수교사를 충원하고, 보육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다.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 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 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3. 국무총리에게,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수행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의 배경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제도화되어 장애 영유아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나면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단

1. 장애 영유아 교육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위원회는 2015. 5. ~ 2015. 11. 유치원(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포함),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 일반어린이집(장애아통합어린이집 포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및 학교관리자(원장, 원감),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 부모 등 1,2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 영유아 교육정책과 관련된 16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배치’, ‘유아특수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도 운영’, ‘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의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조기발견 및 진단 비용 지원’, ‘진단을 위한 적절한 도구 개발’, ‘유아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집 근처의 무상의무교육기관 확보’, ‘장애인 정책의 우선 순위화’, ‘관련 부처 간 협력’의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별 정책만족도를 살펴보면, 유치원의 교육주체는 16개 항목 중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배치’와 ‘학급당 학생수 기준 준수’ 등 2개 항목에 대해서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특수학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의 교육주체는 1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특히 ‘조기 발견 및 진단 체계 구축’, ‘진단을 위한 적절한 도구 개발’, ‘유아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집 근처의 무상의무교육기관 확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해소’, ‘장애인 관련 정책의 우선 순위화’, ‘관련

부처 간 협력'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조기발견 및 진단비용 지원', '전문적인 장학 또는 평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항목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였으며,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치료지원(치료서비스) 제공', '추가적인 돌봄지원(종일반 운영 등)의 제공',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배치'에 대해서도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여 16개 중 15개 항목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일반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육주체의 만족도가 유치원 교육주체의 만족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 유치원의 장애 유아 교육권 증진

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

2016. 4. 현재 유치원의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확보율은 65.9%에 불과하고, 부족한 정원을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다. 시간제·기간제 교사는 고용과 지위가 불안정하여 장애 유아 교육의 연속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미확보의 문제는 장애인 교육현장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특히 정원 미확보로 인한 유치원의 잦은 인력 교체는 장애 유아에 대해 양질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특수학급의 설치 증대 등

장애 유아의 부모들은 특수학교보다 유치원 통합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장애 유아 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15년의 경우 8,921개 유치원 중 5.4%인 482개 유치원만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초등학교의 67.0%, 중학교의 55.8%, 고등학교의 42.7%보다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장애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하게 정서적·학습적 치료와 개입을 하려면 특수교육전문가의 상담과 개입이 요구되므로,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사립 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이 다수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은 유치원 특수학급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를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 유아를 정원 외로 입학시키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경우 유치원에서 실제 교사가 담당하는 장애 유아의 수가 증가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 등의 차별적 처우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은 만 3~5세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어린이집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비교할 때, 시설, 특수교사 및 치료사 등 전문인력 배치, 교사 처우, 장애 유아 1인당 교육비·교재교구비 및 급식비 지원금, 통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유치원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이로 인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26조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취약보육, 즉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교육여건을 유치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 가~라.항의 내용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위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긴밀한 협의와 연계가 요구된다.

가.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 설정 및 지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교육과정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어린이집이 인력, 시설, 교구 및 교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유치원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장애 유아의 입학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공통된 최소지원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어린이집 등 장애 영유아 교육 기관의 교육환경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 유아특수교사 충원 등

위와 같이 유치원의 특수교사도 법정 정원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나, 2015년 보육통계에 의하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 확보율은 60.3%에 불과하여 유치원보다도 낮다.

특수교사 구인난은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어린이집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어린이집 특수교사를 충원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장애 유아가 한 명이라도 다니는 모든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에서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를 통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 장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와
상담 등을 담당하는 보육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편의 제공 요구와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해당되는 통학지원과
보조인력 제공 요구에 대한 거부를 경험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단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이나 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어린이
집에서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유형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보육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
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설치 증대

장애 유아의 보육기관 접근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장애 유아의 집
근처에 이용 가능한 무상·의무교육기관이 있다는 답변의 비율이 57.8%에 불과하였다.

「특수교육법」 제3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무
상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
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은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64.0%, 60.3%로 전국 평균 36.3%를 상회하나, 대구광역시 11.8%, 광주광역시는 2.0%로 매우 낮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22.0%, 대구광역시가 15.5%로 전국 평균 7.0%보다 높다. 이와 같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분포의 지역별 편차로 인해, 부모들은 장애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적절한 보육시설을 찾아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가 집 근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체계 구축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으로 6세 미만 영유아 대상의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수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 영유아 추정수 54,837명 중 4,360명은 유치원, 11,709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나, 나머지 38,768명은 어떠한 기관에도 배치되지 않았다. 2012년 ‘장애아 표준보육비 산출 방안, 장애아보육의 질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유영준, 김기룡)에 의하면, 만 3~5세 장애 유아의 23.1%는 특수교육기관, 50.4%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외 26.2%는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1/4 이상의 장애 유아가 적기의 교육과 치료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장애 영유아 자녀의 부모들은 장애인 등록 이후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련 정보 획득, 기관의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하여 검진 및 진단, 상담과 중재기관, 의료·복지·교육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전문의의 장애 진단 이후 조기개입 및 중재를 위해 지역 소아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적 지원을 하고, 조기개입 센터를 통해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전문가들의 진단 평가를 통해 적격자인 경우에 장애인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의해 조기개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상담소나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정보,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징후와 진단 및 검진에 대한 정보,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치료나 교육, 가족지원 등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계·조정해주는 기관이 없고, 기관간 연계와 협력도 부족하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검사 정보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 영유아 중재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는 각 기관에 한정된 교육이나 재활서비스, 복지시책 등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지원을 할 뿐 장애 영유아의 발달이나 장애 정도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을 통하여 장애로 인하여 향후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 가, 나.항 등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을 위하여 장애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상담과 정보, 치료·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조정할 수 있는 장애조기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한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센터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재 3개 지역에만 자치조례에 의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장애를 진단하게 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보고 및 정보의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 이외에 장애의 조기발견이나 지원에 대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한편, 「특수교육법」 제14조는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 진단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검사결과가 지원기관이나 중재기관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장애의 조기발견 및 장애아동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 그 절차와 책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부처간 협력 및 업무 조정

어린이집에서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위 권고 내용이 원활하게 추진, 이행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긴밀한 협의와 연계가 요구된다.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장애의 조기진단 및 조기자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또는 정부 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자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 권고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력 및 업무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3. 2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위원 이경숙 위원 정상환 위원 최혜리

3. 재화 및 용역 제공 관련

1

2011. 12. 23.자 결정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권고】

【결정사항】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의 시설물 및 금융자동화기기, 인터넷 뱅킹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해당 은행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의 정책적 개선책을 권고

【결정요지】

- 【1】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은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제한으로 인해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해당 은행장들에게 장애인의 금융기관 시설물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인적 서비스 제공 권고
-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및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수정·보완하여 단일한 국가 표준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장 및 해당 은행장들에게 은행에 기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와 실질적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이행을 권고
- 【3】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은행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해당 은행장들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
- 【4】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은행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에 장애인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장 및 해당 은행장들에게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은행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 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은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제한으로 인해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나.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경남은행장·국민은행장·광주은행장·대구은행장·부산은행장·신한은행장·우리은행장·전북은행장·제주은행장·하나은행장에게, 장애인의 금융기관 시설물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 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정부 제정) 및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정)을 통일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단일한 국가 표준으로 관리할 것,
 - 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회장 및 경남은행장·국민은행장·광주은행장·대구은행장·부산은행장·신한은행장·우리은행장·전북은행장·제주은행장·하나은행장에게, 은행에 기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해서도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 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은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나.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경남은행장·국민은행장·광주은행장·대구은행장·부산은행장·신한은행장·우리은행장·전북은행장·제주은행장·하나은행장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 가능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각 권고한다.

4.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은행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에 장애인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장 및 경남은행장·국민은행장·광주은행장·대구은행장·부산은행장·신한은행장·우리은행장·전북은행장·제주은행장·하나은행장에게,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 사업’(이하 ‘모니터링’ 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대표적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인터넷 뱅킹 접근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시행 후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은 무엇보다 관계기관의 인식 부족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II. 판단 기준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7조, 제21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III. 판단

1.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및 제21조는 당사국이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터넷을 포함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에게 장애인이 접근·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의 해소를 위해 제8조에서 국가가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생활 중 대표적 영역인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금융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과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러한 사항들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11년 5월 위원회에서 실시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시설물 접근성,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인터넷 뱅킹을 위한 웹 접근성 등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은행의 시설물 접근성 개선 검토

가. 은행의 시설물 접근성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우리나라 대표 시중은행 총 192개 지점(이하 ‘모니터링 대상 은행 지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은행 시설물의 주출입구, 접수대, 층간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은행 시설물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설물의 물리적 제약은 장애인들이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은행의 시설물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항목	주 출입구						중간 이동 편의 시설	접수대	
	주 출입구 턱 낮추기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주 출입구 점형 블록 설치	건물 접근로 유효폭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출입문 유효폭	중간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접수대 높이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대상 기관	185	164	185	182	62	187	97	190	189
충족 기관	89	114	146	31	51	174	49	124	111
충족 비율(%)	48	70	79	17	82	93	51	65	59

일반적인 시설물 접근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 접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차별의 해소를 위해 시설물 소유·관리자에게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높이차가 제거된 출입구, 통행 가능한 복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일반적으로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들의 경우 시설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선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행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제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금융기관이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에서 언급하였듯 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일반 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2009. 4. 11. 신축·증축·개축된 500제곱미터 이상의 금융기관에만 시설물 접근·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이러한 은행의 시설물 건축 연한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고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같은 법 제17조는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장애인이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실상 장애인을 제한·배제하게 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시설물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일반적인 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 있어 필요한 물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높이차가 제거된 출입구, 통행 가능한 복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등 「편의증진법」 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만족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고, 위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은 같은 법 제15조와 제17조에 의거 물리적 접근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제한·배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물적 조치

및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소결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시설물 접근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직접 적용대상(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들도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한·배제되지 않도록 시설물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설물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개선 검토

가. 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현황 및 문제점

모니터링 대상 은행 지점에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CD/ATM기)의 각종 투입구, LCD, 음성지원, 점자버튼, 휠체어 회전공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항목	물리적 접근성						기능적 접근성 음성지원/ 일반버튼 설치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기기 하부 공간 방해물	기기 전면 점형블록 설치	각종 투입구 높이	각종 투입구 깊이	LCD 패널 기울기 여부	
대상 기관	187	185	186	190	190	186	189
충족 기관	136	94	14	167	163	91	107
충족 비율(%)	73	51	8	88	86	49	57

현재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CD/ATM기 등 금융자동화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 CD/ATM기의 하부공간, LCD패널 기울기, 점형 블록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물리적 측면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음성지원이나 일반버튼 설치와 같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의 경우에도 관리 소홀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그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2006. 12. 27. 제정한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및 금융권 차원에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2010. 6월과 2011. 10월에 제정한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이 마련되어 있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CD/ATM 표준을 제정하는 등 자체 개선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2006년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은 현재까지 보완 및 개정된 사실이 없고,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지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대표적인 금융서비스의 하나인 금융자동화기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융자동화기기 제공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금융자동화기기는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융자동화기기에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하는 것으로 장애

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별도 유예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금융자동화기기는 2008. 4. 11. 위 법 시행과 함께 즉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자동화기기의 특성상 생산·설치 후에는 그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생산업체들에게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자동화기기의 기준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기기를 설계·제작하도록 하여 은행들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한 표준 및 지침의 지속적 관리와 실질적 활용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실질적 활용이 미진한 정부 제정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과 금융권 자체 표준인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통일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단일한 국가 표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은행에서는 기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해서도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검토

가.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및 문제점

모니터링 대상 은행 지점에 대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절차 및 과정에서 확대문서, 확대경,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의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항목	시각 장애인 순서 인지 서비스	수화통역/ 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점자자료/ 확대경/확대문서 제공
대상 기관	191	186	188
충족 기관	59	7	27
충족 비율(%)	31	4	14

모니터링 결과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및 확대문서 등의 편의 제공 현황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은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차별을 느끼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나. 금융기관이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절차 및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반적으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같은 법 제17조는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은행들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이러한 차별의 예방을 위해 “채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해당 채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익을 얻을 기회’의 박탈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거나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를 금지한 같은 법 제17조와 결부시켜 해석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조치를 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소결

금융기관들이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지 않더라도,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수화, 점자자료, 확대문서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금융상품 이용을 제한·배제하는 차별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은행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은행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인터넷 뱅킹 이용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검토

가. 은행의 인터넷 뱅킹 이용을 위한 웹 접근성 현황 및 문제점

모니터링 대상 은행 지점에 대해 총 132명의 모니터링 단원들이 시각 장애인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은행 업무 처리 가능 여부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해당 웹 사이트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통해 은행 업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132명 중 10명으로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으로 금융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이동 등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고객 집단보다도 우선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인들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 금융기관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인터넷 뱅킹은 일반적으로 웹 사이트를 통해 금융 업무를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 서비스의 일종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뱅킹이 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웹 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적용하여 금융기관과 같은 경우 2013. 4. 11. 이후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규정한 포괄적 조항으로, 인터넷 뱅킹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인터넷 뱅킹이 가지고 있는 금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간과한 적절치 않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즉, 인터넷 뱅킹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금융 업무(계좌이체, 금융상품구입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와 달리 판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금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한·배제·분리·거부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가 직접 적용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에게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도 없는 만큼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즉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보인다.

다. 소결

인터넷 뱅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웹 접근성의 단계적 범위와 달리 금융서비스의 하나로 같은 법 제17조가 직접 적용되어야 하므로 은행들은 장애



인들이 사용 가능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웹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1.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장향숙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2

2012. 12. 11.자 결정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 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결정사항】

- 【1】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보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
-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동법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에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보험업계 및 의료계에 장애인에게 보험사고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록 자료와 건강보험자료 등 현재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하는 등의 의학적·통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4조,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7조, 「보험업법」 제97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의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보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를 연계·분석하여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우리 위원회는 2005년 8월 22일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보험업법」 개정 및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 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보험차별 진정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은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적게 지불받는 등 보험 인수 및 계약 등 각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엇이 장애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험회사가 합리적 위험률 평가에 의한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장애 위험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II. 판단 기준

- 「헌법」 제11조, 제34조
-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4조,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7조
- 「보험업법」 제97조

III. 판단

1.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계약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¹³⁾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¹⁴⁾

13)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 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에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 무조건·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판단함.

14)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장애이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2. 장애인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생명보험협회는 2000년 10월 ‘장애인보험 공동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보험사에 배포하였으나, 공동심사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위 모범규준은 세부심사기준으로 선진 재보험사의 매뉴얼 및 인수기준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과, 위험 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만을 선언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실제 보험계약 인수 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현 모범규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현실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8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내부적인 인수 기준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나, 위원회의 결정(09진차0001552, 10진정0231300)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실무상 보험 취급에 있어 장애인을 달리 대우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위험률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청약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 또는 제한한다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

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호주,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위험률이 높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인수조건을 다양화하여 사례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지급조건 및 기간의 조정 등 개인별로 개별화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 가이드라인의 의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판단한다.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된다.

(다) 정 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다.

‘차별’이라 함은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단, 보험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라)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마) 인수단계에서의 차별

인수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 기회 제한 및 청약 접수 거절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장애인에게 무리하거나 불필요한 증명, 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단지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정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바)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보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단,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 대상이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함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사) 보험금 지급과 차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절차차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아)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1) 장애인 건강 통계의 필요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지 알기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의학적 분석¹⁵⁾과 통계적 분석¹⁶⁾이 요구되며, 이러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15) 예컨대 청각장애인들의 암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려면, 청각장애인들의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6) 예컨대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때 일반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이를 차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업계 및 의료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장애인의 기대여명(餘命)이나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통계적 근거가 결여된 채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 또는 보험료 산정의 중요 요소인 사고위험률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확한 여명이나 사고율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의학적 통계나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은 감안되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을 임의로 높게 설정하거나, 위험측정이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이처럼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의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특정 장애인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예단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조건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장애 또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나 사고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상병(傷病)이나 사망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은지 의학적·통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회사가 이러한 과학적·통계적 자료를 마련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민간보험사가 장애인 위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관련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한 통계의 구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특성, 보건·의료 이용, 일상생활 지원, 취업 및 직업재활, 사회 및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비장애인의 건강상태

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 측면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통계 및 의학적 분석을 위한 자료들이 잘 갖춰져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에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또는 질환, 장애 원인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개인의 건강 현황, 질병 및 합병증 등 언제 어떤 질병이 발병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하여 장애인 건강 통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붙임]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2012. 11. 26.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한태식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위원 한위수 위원 강명득

<붙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장 가이드라인의 의의

제1절 가이드라인의 제정경위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17조).
2. 「장애인복지법」에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3. 「보험업법」에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97조 제1항 제10호).
4. 실무상 보험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달리 취급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5. 이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경우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1. 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법에서 금지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에게는, 보험을 인수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절차에서, 어떤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를 안내하여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경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3절 가이드라인의 법적 의미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동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또한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6호). 이러한 권한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작성되었습니다.
2. 가이드라인은 법률에서 추상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당한 사유’, ‘차별’ 등의 개념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구체화하였습니다.
3. 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보험차별과 관련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률은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거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장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제1절 적용되는 장애 또는 장애인의 범위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이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인”이란 전항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의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복합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과거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 또는 미래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제2절 적용대상인 보험 및 보험회사의 범위

1. 이 가이드라인은 사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고, 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판매를 개시한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그 전의 보험상품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각종 공제조합 및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보험회사도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

제3장 정 의

제1절 장애의 유형과 정의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따릅니다.
2. 장애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기관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눕니다. 외부기관의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분류합니다.



제2절 차별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차별이란 다음의 하나를 말합니다.

-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전항 ①, ②의 차별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것
-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 가입절차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
-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3. 전항 ③의 차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 보험 내용의 설명에 있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제3절 차별의 예외

1. 보험 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는 ① 법률의 규정 ② 의학적·과학적 근거 ③ 검증된 통계자료 ④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⑤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제1절 입증책임 개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하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이 입증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1항).
2. 전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4.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 합리적 위험판단에 근거한 자료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5. 더 나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개연성을 높입니다.

제2절 의학적·과학적 근거

1. 의학적·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자료는 하나의 장애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애의 복합 효과를 평가하는데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 소견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는 의사나 보험의사가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탄핵할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절 검증된 통계자료

1. 보험회사가 어느 장애 또는 장애인이 해당 보험상품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험률이 높다는 검증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통계자료는 국내 자료가 바람직하나, 국내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외 자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자료를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에게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통계자료는 정부의 연구, 의학문헌에 보고된 연구, 개별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이 연구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개별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이 연구한 자료는 통계적 가치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통계자료는 작성 목적, 배경, 작성자 등에 따라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탄핵할만한 다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인수기준, 상업적 판단

1. 보험회사는 장애인에 관한 보험인수의 기준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기준은 보험통계, 의학적 통계 및 소견 등 합리적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의학적 지식의 진보, 사회복귀 및 치료방법의 진보 등에 따라 갱신되어야 합니다.
2. 합리적 근거 및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신뢰성 있는 재보험사 및 다른 회사의 인수기준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인수기준을 채택한 이유와 해당 인수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만약 인수기준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며, 더 나아가 불합리한 인수기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전사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행하여진다면 위법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4. 보험과 관련한 행위는 의학적 또는 통계학적 확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업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판단이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차이를 두는 것을 넘어설 때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절 기타 전문가의 의견

1. 검증된 통계자료,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한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임상전문가,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리인의 조언이나 의견도 의학적 연구를 해석하거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인수단계의 차별

제1절 절차상의 차별

1.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청약 접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2.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에게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증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지극히 사적이며 수치스러운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병력기록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4.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구체적 상태를 건강진단을 통해 확인하여야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건강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진단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일정기간 동안 장애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구하거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인수 여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차별입니다.
6. 장애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장애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개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만든 질문표에 장애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절 인수거절과 차별

1. 장애인등록상의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장애인등록제도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른 것이어서, 등급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 장애가 있는 경우 등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 이외에도 개인의 장애 정도, 원인, 건강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사용하는 ‘장애등급분류표’를 인수 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3. 막연한 편견, 부정확한 추측만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청각장애를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만을 이유로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암발생률이 높다는 근거나 의학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특정 장애가 암발생률을 높인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암발생에 대한 담보를 배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암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보험의 등의 진단을 거쳐 구체적 위험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보험인수 거절 역시 차별에 해당합니다.
5.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인 장애인이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2003가단150990 판결).
6.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상황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인의 장애등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7. 개인의 구체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와 동일한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은 보험인수를 할 수 있어도 개인적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장애에 따라 진행정도가 다르고 장애의 경중이나 복합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항상 같은 위험도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 있는 장애인은 신체 운동 기능, 인지 기능, 언어 기능, 동반된 만성 질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여명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여명이 짧다고 단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9.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장애와 보험의 종류에 관하여 보험이 거부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가지는 특수한 지식과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절 보험조건과 차별

1.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해당 장애가 보험사고의 위험률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장내용을 감축하거나,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2. 해당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보험 인수를 거절하기에 앞서서 할증보험료, 담보의 제한, 보험금의 감축 등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보험인수를 거절하기에 앞서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4절 「상법」 제732조의 적용문제

1.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을 곧바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정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심신상실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심신박약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심신박약자란 계속적으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때때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심신박약자가 아닙니다(대전지방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나784 판결).
3. 개별적으로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

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장애의 등급, IQ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심신박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정신장애 때문에 치료와 투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박약자로 취급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상법」 제732조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상해보험, 생존보험, 손해보험 등에 적용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6.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손해보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교육보험, 연금보험)에 사망담보 조건을 추가하여 「상법」 제732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시설, 장애인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의 가입을 검토할 때 일부 피보험자가 「상법」 제732조에 의한 심신상실, 심신박약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절 「상법」 제644조의 적용문제

1.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장애의 발생이 주계약의 달성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장내용을 부담보로 하거나 삭제하는 조건으로 보험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청각장애 2급이라서 장애지급율이 80%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 부담보 등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231300).



3. 어느 장애의 존재로 인하여 전항에서 제안된 것처럼 해당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부담보로 할 경우 보험상품의 본질적 보장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6장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제1절 부당한 해지 또는 무효화

1.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기기증자 등이 된 경우, 이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한 것이 의학적·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무효화해서는 안 됩니다(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제10조).
2.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장애가 생겨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제2절 보험조건의 부당한 변경

1.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보험금 지급과 차별

제1절 보험금 지급에서의 차별

1.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보험에서는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장애 또는 질병이 보험사고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 보험금 지급범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을 때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장애 또는 질병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제2절 보험금 지급절차에서의 차별

1.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2.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불필요한 자료 또는 무리한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8장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1.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진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해당 보험회사)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손해배상, 구제조치의 이행, 관행의 시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등의 시정을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절 법무부장관의 구제절차

1.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차별에 관한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부장관은 전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구제절차

1.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4절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구제절차

1.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단체는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절 법원의 구제절차

1.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법원에 차별행위의 중지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차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2016. 2. 17.자 결정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이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라는 점에서, 통행과 시설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보행상 장애’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 기준 개선이 요구됨

【참조조문】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장애등급판정기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정책권고의 배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자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보행과 직결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었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등급판정기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를 참고하였다.

III. 검토 및 판단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각종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표적인 장애인 편의시설로, 「주차장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은 이동보장구의 이용으로 인해 폭 2.3m의 일반주차구역에서는 승하차가 불가능하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주차구역의 폭을 더 넓게 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2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자를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로 정하고 있으며, 주차표지발급대상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는 하지절단·관절·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장애, 뇌병변 등 외형상 보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하지의 손상이나 기능이 약화된 자, 그리고 시각장애 등 감각장애로 독립적 보행이 불완전한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장거리 보행이나 보행 시 위험

성이 높은 중증의 정신적 장애 및 내부질환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상 장애’는 하지의 완전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이라는 기능의 불완전성과 보행 시 수반될 수 있는 위험성이 고려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상지장애인 중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에 대해 보행상 장애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보행상 장애인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상 장애로 인정될 때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은 장애물을 만나 충돌할 경우에 몸의 무게중심이 쉽게 흔들리고, 지지물을 짚을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낙상할 경우 그 피해가 크므로, 하지에 대한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기능적으로 보행상 장애를 갖는다 할 것이다.

아울러, 기술의 진보로 다양한 보조장치를 이용해 손이 아닌 발로 운전하는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 운전자(일명 ‘족동운전자’)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차량의 문을 개방할 때 문의 중량으로 인해 다시 닫히지 않게 하려면 문을 완전히 열어젖혀야 하나, 일반 주차공간의 폭이 2.3m에 불과하여 경·소형 자동차(1500cc 미만)라 할지라도 측면 공간이 부족해 승하차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이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통행과 시설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보행상 장애’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2. 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2016. 6. 13.자 결정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사항】

-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 [2]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하고 내릴 수 있도록 탑승교와 항공기 연결부분의 높낮이 차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
- [3] 한국공항공사사장에게, 공항건물 구조상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원주, 군산, 사천 공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 [4] 7개 국적항공사 사장에게,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교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항공기 탑승과 하기·공항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편의를 항공사에 사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

【결정요지】

- [1]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 등의 관련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를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및 인적 서비스 제공 미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권고함.

【참조조문】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9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국토교통부장관은
 - 가. 항공기에 여객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람
 - 나. 건물 구조상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이를 대체할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기 바람
 - 다.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항공기 탑승 및 하기, 공항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라. 각 항공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람
2.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 및 하기할 수 있도록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하기 바람
3.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건물 구조상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기 바람
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 가. 장애인에게 항공기 탑승 및 하기, 공항시설이용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이동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나.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항공기 탑승 및 하기, 공항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5. 각 국적 항공사(○○항공, ○○○○항공, ○○○○, ○○○항공, ○○○, ○○항공, ○○○항공) 사장은



- 가.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여객탑승교가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나.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여객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을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를 대여하여 이용하기 바람
- 다.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항공기 탑승 및 하기, 공항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 라. 항공사가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는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시·청 각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바람
- 마.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 시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를 항공사에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 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 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 약서 등을 요구하지 말기 바람
- 사. 상반신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와 기내휠체어를 비치하기 바람

【이 유】

I. 직권조사의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항공기의 이동편의시설 관련 기준적합 설치율은 98.2%로, 타 교통수단(여객선 : 17.1%, 철도차량 : 93.4%, 도시철도 및 전철 : 91.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휠체어

승강설비와 보조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언론보도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정을 통해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 이동편의시설이나 보조 인력 미비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의 대상 및 조사 내용

가. 각 국적 항공사(○○항공, ○○○○항공, ○○○○, ○○○항공, ○○○, ○○항공, ○○○항공)

- 1) 휠체어 사용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이 탑승을 희망하는 경우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 여부 및 구체적 내용
- 2) 항공기 탑승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항공사에 대한 면책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지 여부
- 3) 기내휠체어 등 관련 법령에 의무화된 이동편의시설을 구비했는지 여부
- 4) 객실승무원 등이 기내휠체어 조작법 등 장애인 탑승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
- 5)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은 항공사가 향후 장애인 탑승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1) 공항 출입구에서 항공기 출입구까지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 2)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여객탑승교(이하 ‘탑승교’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지 여부
- 3) 공항 대합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다. 국토교통부

- 1)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 거부, 서약서 작성 요구 등을 한 항공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항
- 2) 공항 및 항공기 이동편의시설 설치 미비로 휠체어 사용자 등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등

II.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III. 피조사기관의 의견

1. 국토교통부 장관

가. 휠체어 승강설비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을 얻는 항공사·지상조업사에서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항공사·지상조업사는 비용부담으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항시설운영자가 공익적 차원에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항공사에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비용부담(1회 사용 시

약 5만원)에 기인했던 만큼, 공항시설운영자가 해당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할 경우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법적 규제 필요성도 낮아짐에 따라, 항공사 내부 매뉴얼에 탑승교 주기장 배정 요청,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 요청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교통사업자는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통역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의 배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편의제공 방법은 각 공항공사 또는 항공사 자체 매뉴얼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항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공항공사로 하여금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미비, 보조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건건이 관리, 감독,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각 항공사가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휠체어 승강설비를 공항시설운영자가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승강설비 미비 등의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는 등 장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민간사업자인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이 장애인 승객을 위한 서비스 교육·훈련을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영역까지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현행 「교통약자법」에서도 철도·해운 등 타 교통사업자의 교육·훈련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법률상 일률적으로 규정 시 외항사에도 적용되나, 해외에서는 승객서비스 교육·훈련에 대해서까지 규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 바. 현재 우리나라는 운송용 항공기를 제작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교통약자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는 국제기준(미국, 유럽 등)에 의거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입되므로 국내 운영 시 문제점은 없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준을 국내 기준으로만 채택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항공기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동편의시설 세부기준을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사. 「교통약자법」상 여객의 사전요청 시 기내용 휠체어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20석 이상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를 개정하여 여객의 사전요청이 없더라도 기내용 휠체어를 기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의 경우 항공기 제작업체에 따라 고정벨트 제작 가능성이 유동적이므로 법적으로 일률적인 의무화는 곤란하다.
- 아. 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특별한 건강상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진단서 또는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국가에서 건건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은 총 74개의 주기장과 133대의 항공기 직결 탑승교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탑승 및 하기가 이루어지는 모든 탑승교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 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원활한 탑승 및 하기를 위해 항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탑승교가 있는 주기장으로 우선 배정하는 등 항공사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다. 탑승교가 없는 원격주기장의 경우, 항공사는 지상조업사와의 계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모든 지상조업사가 장애인 승객 탑승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항공사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탑승을 사유로 항공기에 대한 탑승교 주기장 배정을 요구할 경우 탑승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2013. 4. 30. 「이동지역 안전지침」을 개정하였다.

3. 한국공항공사 사장

가. 공항 사정 상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 및 하기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비용 항공사 측에 지상조업사가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나. 2015. 10. 29.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으로 항공사 등에서 탑승교 주기장 배정을 요청 시 원칙적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이동지역관리운영규정」의 주기장 배정기준을 개정하였다.

다. 현재 국내 공항 14곳 중 탑승교 부족으로 항공기가 탑승교를 상시 이용할 수 없는 공항은 8곳이며, 2014년 기준으로 접현율은 김포공항 68%, 김해공항 55.5%, 제주공항 56.8%로 나타나고 있다.

라. ○○항공, ○○○○항공에서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 공동사용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탑승을 회피하거나 타항공편 탑승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항공사의 의지가 중요하며, 항공사에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도록 법령에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항공사

가. ○○항공 사장

1) 당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부터 예약, 발권 요청 접수 시 승객의 전산예약기록을 통해 주기장 배정부서에 이를 통보하는 등 상호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탑승 항공편이 탑승교 주기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는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탑승교를 갖추지 못한 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탑승교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 공항공사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를 탑승교 대신 제공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으로부터 항공사의 책임 면제를 주장하는 서약서 접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불안정한 상태의 급성 질환자의 경우에 당사가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안정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여행을 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고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등에는 서약서 작성을 요청한다.

4) 당사는 장애인을 위한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 및 보행 불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기내용 휠체어를 모든 여객기에 비치하고 있다.

나. ○○○○항공 사장

1)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 시, 항공사 면책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지 않으며, 혼자 여행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공항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

2)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항공기 좌석을 배정하며, 좌석 여유가 많은 항공편의 경우 기내에서 휠체어 탑승객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옆자리에 다른 승객을 배정하지 않는다.

다. ○○○○ 사장

1)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한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여 항공기를 탑승 및 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혼자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등에게 도와줄 인력이 없거나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탑승을 거부한 사례가 없으며,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시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라. ○○○항공 사장

1) 고가의 승강설비를 각 공항에 항공사마다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를 구입 후 항공사가 이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용을 낮추어 고객에게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에게 장애인 보조인력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과도하며, 공항공사가 각 공항에 장애인 보조인력을 두고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내에는 장애인의 상반신을 고정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으므로 향후 제작이 가능할 시 기내에 구비할 계획이다.

마. ○○항공 사장

1) 휠체어 승강설비는 공항의 여객시설인 탑승교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탑승교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항공사에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운용 인력을 의무적으로 준비한 후, 각 항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인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는 항공기 종류 및 구조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상세한 규정을 명시한 후 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 사장

1) 당사는 현재 탑승교 승강설비가 없는 청주 공항에 탑승교 배정이 불가능할 경우, 직원이 승객의 동의하에 직접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는 공항 및 탑승교가 부족한 공항의 경우, 공항공사에서 이를 구비하여 항공사에 제공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 ○○○항공 사장

1)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교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 탑승객을 저상버스로 여객터미널에서 원격주기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항공기 탑승을 위한 승강설비는 공항운영 주체인 공항공사에서 이를 제공해야 한다.

2) 장애인이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이용해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출·도착 공항 및 기내에서의 필요사항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항공기 출발 전 당사에서 장애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능과 절차를 개발할 예정이다.

IV. 외국 사례

1. 미국

가. 관련 규정

「항공기 접근법」(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을 근거로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마련한 연방규정인 「항공 여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칙」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 14 CFR Part 382)을 1990. 4. 5. 이후 항공사가 주문하고 1992. 4. 5. 이후 항공사에 인도된 신형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항공사들은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도움에는 서비스 인력, 탑승교 제공, 접근성을 갖춘 승객 라운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로 등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탑승 또는 하기에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항공사 직원이 장애인 승객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되며, 비상 탈출의 경우에 한해 승객을 직접 들어서 이동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2) 100명 이상의 좌석을 갖춘 항공기에는 최소한 한 개의 접이식 휠체어를 적재할 수 있는 우선 공간을 객실에 확보해야 한다.

3) 통로가 1개 이상인 항공기에는 최소한 1곳의 화장실에 기내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항공사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장애가 승무원 또는 다른 승객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영국

가. 관련 규정

영국은 2003년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항공 여행 접근성 규정」(Access to Air Travel for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항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자가 여행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경우, 공항 관리 기관은 탑승수속 및 수화물 등록, 발권카운터에서 항공기까지 이동, 리프트, 휠체어 또는 다른 적절한 필요 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동승자가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자를 보조하는 경우, 항공사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의 옆 좌석을 동승자에게 배정하도록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모든 객실승무원은 장애 인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객실승무원은 안전 문제 외에는 장애가 있는 승객을 가장 적절한 좌석에서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 캐나다

가. 관련 규정

캐나다 교통청(The 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이 마련한 「장애인을 위한 항공기 접근성 규칙」(Code of Practice : Aircraft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거, 항공사들은 장애인 탑승객에게 탑승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한 개 이상의 통로가 있는 항공기에는 기내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2) 기내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춘 항공기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기내용 휠체어를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항공기 운항 관련 정보(출도착 지연, 스케줄 변경, 기내 서비스 등)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모든 항공기에는 점자 및 확대 문자로 제작된 브리핑 카드를 갖추고, 장애인 승객에게 개별적인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V. 인정사실

피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국내 공항은 총 14개(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무안, 여수, 울산, 포항, 청주, 양양, 사천, 군산, 원주)로, 이 중 여객터미널이 단층으로 되어 있어 탑승교 설치가 곤란한 공항은 3개 공항(원주, 군산, 사천)이다. 항공기 운항편이 많은 김포, 제주, 김해, 청주공항의 탑승교 이용률(탑승교 사용편수/전체 운항편수)은 2014년 기준으로 각 68.0%, 56.8%, 55.5%, 48.8%이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대해 탑승교 우선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항공사의 전화예약접수 또는 발권업무 담당 직원들이 탑승교 우선배정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휠체어 사용 탑승객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저비용항공사 측에 미리 안내해주고 탑승교가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항공사 측에서 한국공항공사에 탑승교 배정을 사전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공항 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높낮이의 차가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에 탑승교 내부에 이동식 경사판을 비치하였으나, 인천국제공사는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4. 일부 저비용항공사에서 보행이 불가능하며 혼자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보호자 동반 또는 대형항공사 항공편 이용을 권유하면서 예약 및 탑승을 거부하거나, 해당 항공사의 항공편이 탑승교에 연결되는 시간으로 탑승시간을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 항공사 직원이 장애인을 업거나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시키고,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탑승 및 하기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5.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각 항공사의 지상근무 직원과 객실승무원 중 일부는 수동휠체어를 접고 펴는 방법, 기내휠체어에서 항공기 좌석으로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방법 등 기내휠체어 조작법,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및 장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6. 일부 항공사에서 항공권 발권 후 탑승구 변경 및 항공기 출발시간 변경 등에 대한 정보, 항공기내 안내방송 등에 있어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 일부 해외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할 때 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별지2. 참조), 국내 항공사는 이러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8. 일부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항공사 면책에 관한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거나 보호자 동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9. 일부 항공사에서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지 않거나, 상반신을 혼자서 가눌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 항공기 좌석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안전벨트 외에는 별도의 상반신 고정용 벨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등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안전벨트도 뒷좌석 승객의 식판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VI. 판단

1.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9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등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히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역시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이용 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 항공기 이용 관련 편의시설 보완 필요

가. 「교통약자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업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에 대한 항공기 탑승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탑승교 주기장 배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상조업사 간 휠체어 승강설비 공동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① 탑승교 주기장 배정기준이 개정되어 각 항공사에서 요청하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해 탑승교를 우선 배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항공사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지상조업사 간 휠체어 승강설비 공동사용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부 저비용항공사에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활용하지 않는 점, ③ 인천국제 공항의 경우 탑승교와 항공기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차를 제거하기 위한 이동식 경사판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일부 저비용항공사기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항공사 직원이 업거나 안아서 항공기에 탑승 및 하기시키거나, 대형 항공사의 항공편 이용 권유 및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며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⑤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 공항 건물 구조상 탑승교 설치가 곤란한 공항에 탑승교를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다. 따라서 교통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교통약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교통사업자의 개별 노력과 별도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탑승교 부족 및 탑승교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공항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의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항공기 이용 관련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 보완 필요

가.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교통 및 관련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 이를 직접 수행하는 항공사의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교통사업자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직원들에 대해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항공기 이용 관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자신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시·청각장애인 등도 교통사업자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 탑승구 변경 및 항공기 출발시간 변경, 기내 안내방송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6.항에서와 같이 현재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 7.항에서와 같이 일부 해외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할 때, 탑승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어 탑승 시 편의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편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항공사 측에서도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장애인 탑승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요구 개선 필요

가.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하여 과도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7.항과 같이,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에 대하여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 또는 장애인 혼자 여행한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항공사 면책 서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6. 장애인 상반신 고정벨트 비치 필요

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은 “항공기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을 장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벨트 외에 어깨끈을 장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적이고, 상반신을 혼자서 기눌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좌석에 부착된 안전벨트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다. 그러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항공기의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규정 외에 장애인의 상반신을 고정할 수 있는 상반신 고정벨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항공사들도 현재 이러한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라. 좌석에 고정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탈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가 있고, 이를 각 항공사들이 일정 수량을 갖추는 것이 경영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장애인 승객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항공사로서는 이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필요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소결

가.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 등의 관련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그러나 실제 항공기를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미비, 인적 서비스 제공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 따라서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주문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V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6. 13.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위원 김영혜 위원 이경숙

위원 정상환 위원 한태식 위원 윤남근 위원 한위수

위원 강명득 위원 이선애 위원 최이우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3.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手話)·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 이동편의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보관함	교통약자용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가능표시	출입구통로
항공기	○	○	○		○	○	○		○	○

대상시설	이동 편의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공항시설		○	○	○	○	○	○	○	○	○	○	○

대상시설	이동 편의 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 검사장	여객 탑승교	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시설
공항시설		○	○	○	○	○	○			○	○		○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라. 항공기

1) 안내시설

항공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내부시설

가)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3) 그 밖의 시설

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가목7)을 준용한다.

나) 항공기 안의 통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러.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항공기의 승강구 사이에 마련된 것으로서 해당 승강구에 접속하여 여객을 여객터미널로부터 직접 항공기에 승강시키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7. 「항공법 시행규칙」

제126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침대좌석을 포함한다)을 장착하여야 한다.
- ②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벨트 외에 어깨 끈을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 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포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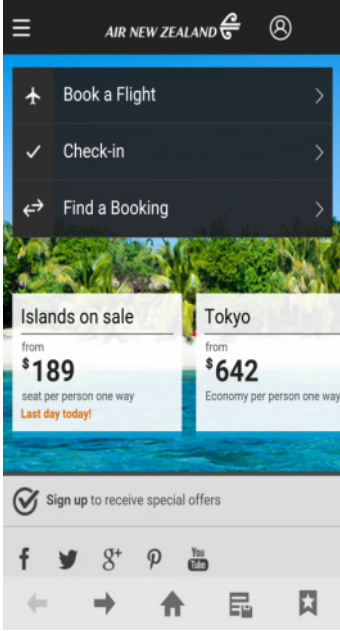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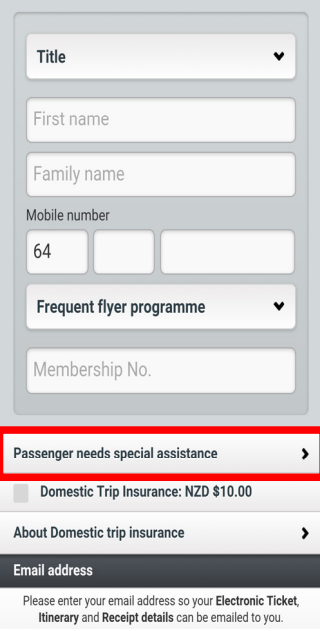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별 지 2>

<외국항공사(Air New Zealand)의 스마트폰 예약 시 장애인 편의제공현황>

	
<p>에어 뉴질랜드 항공사의 스마트폰 초기화면</p>	<p>스마트폰을 통한 예약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Passenger needs special assistance), 즉 장애인 등이 항공기 탑승 시 필요한 도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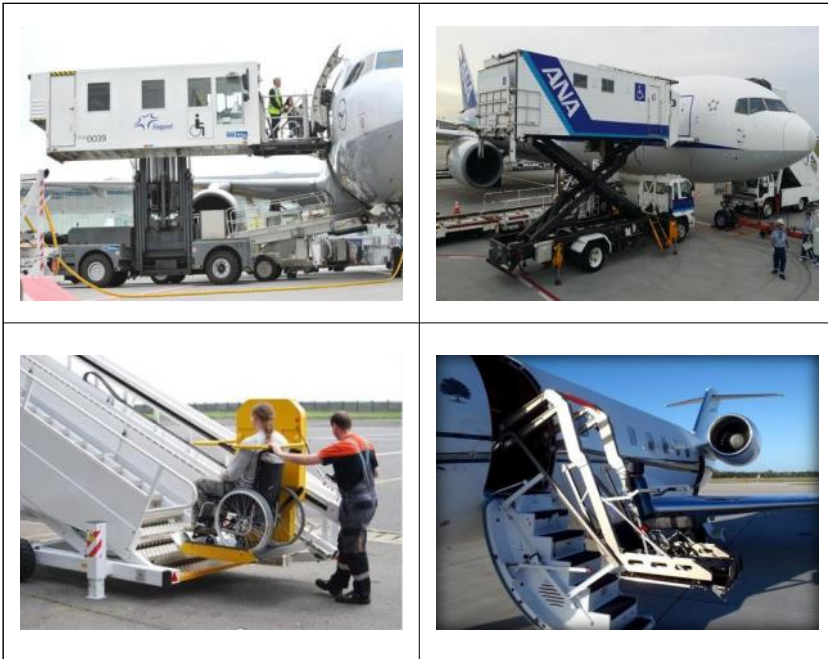
<p>Special assistance</p> <p>Select the type of assistance you require</p> <p>Blind passenger</p> <p>Blind passenger travelling with guide dog ></p> <p>Deaf passenger</p> <p>Wheelchair: unable to walk long distance, can use stairs and walk to seat ></p> <p>Wheelchair: unable to walk long distance or use stairs, can walk to seat ></p> <p>Wheelchair: completely immobile, can self-transfer to seat ></p> <p>Wheelchair: completely immobile, travelling with safety assistant to perform lift ></p> <p>Wheelchair: completely immobile, providing own safety assistant at each airport to perform lift ></p>	<p>Special assistance</p> <p>Wheelchair: completely immobile, can self-transfer to seat</p> <p>Select this option if you are completely reliant on a wheelchair for mobility and are able to self transfer between an aircraft wheelchair and the aircraft seat. Air New Zealand staff will provide assistance during your transfer if required.</p> <p>If travelling with your electric wheelchair, please phone our contact centre to advise us details of your wheelchair including size, weight and battery type so that we can make arrangements for its stowage.</p> <p>Select this option</p>
<p>장애 유형(시각, 청각, 지체 등)별로 항공기 탑승 시 세부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예시 : 휠체어를 사용하며 보행이 완전 불가능하나, 기내휠체어에서 비행기 좌석으로 혼자서 이동 가능을 선택)</p>	<p>휠체어 사용자가 보행이 완전 불가능하나 기내휠체어에서 비행기 좌석으로 이동이 가능할 경우 항공사에 장애인이 요청 시 도움을 제공함. 다만,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사전에 전동휠체어의 크기, 무게, 배터리 종류 등 정보를 전화로 콜센터에 사전에 통지해줄 것을 요청함.</p>

〈별 지 3〉

〈외국항공사의 휠체어 승강설비 및 탑승 경사로〉

□ 휠체어 승강설비(Wheelchair Lift)

- 탑승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여건상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항공기 탑승 설비



□ 탑승 경사로(Passenger Boarding Ramp)

- 비행기 탑승 시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승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고려해 제작된 경사로





5

2016. 8. 22.자 결정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사항】

-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닥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미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을 제한·배제·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여객실로 이동할 수 없는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등을 이용할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 여객선 설계·건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세부설치기준과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할 것을 권고
-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3】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향후 새롭게 건조될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해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항해 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결정요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약자법」상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접근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제5항은 당사국에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선 및 도선의 규모, 승선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함.

【참조조문】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30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여객선과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회장에게 각 권고하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1. 해양수산부장관은,

-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바람
-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닥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 다.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미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을 제한·배제·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 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여객실로 이동할 수 없는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등을 이용할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마. 여객선 설계·건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세부설치기준과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하기 바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회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향후 여객선을 건조, 개조, 수리,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장애인의 여객선 탑승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규정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기 바람
4. 국민안전처장관은,
 - 가. 향후 새롭게 건조될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해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항해 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나. 유선 및 도선에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 다. 향후 새롭게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이 유】

I. 직권조사의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 중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현황에 의하면,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16.9%로 항공기 97.7%, 철도차량 93.1%, 도시철도 및 전철 91.4%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여객선의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율 61.9%, 교통약자좌석 미설치율 92.8%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 도서를 운행하는 차도선(車渡船)¹⁷⁾의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 1. 28.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이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동편의시설 미비를 이유로 여객선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유선(遊船)과 도선(渡船)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객선, 유선, 도선 이용 관련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의 대상 및 내용

가. 해양수산부

- 1) 여객선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2)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 3) 여객선 및 여객선터미널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재정지원현황
- 4)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등에게 발생한 사고현황 등

17)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여객선)에 의하면,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은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선박을 말한다.

나. 국민안전처

- 1) 유선 및 유선장, 도선 및 도선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 2) 이동편의시설이 미비한 유선 및 유선장, 도선 및 도선장에 대해 향후 관련법 개정 추진을 통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다. 국토교통부

- 1) 「교통약자법」상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향후 유선 및 도선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2) 여객선 및 항만시설 등 이용 관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여객선·유선·도선사업자 및 ○○○○○○

- 1)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 유선, 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 2)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여객선, 유선, 도선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을 희망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구체적 편의 내용
- 3) 이동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 4) 현재 운행 중인 여객선, 유선, 도선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향후 이와 관련한 시설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

마. 외국사례

여객선, 유선, 도선 이용 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인적 서비스,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규정

II.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III. 피조사기관의 의견

1. 해양수산부 장관

- 가. 「해운법」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은 2015. 6. 1. 기준 총 162척으로, 총 58개 업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2006. 1. 28. 「교통약자법」 시행 후 건조된 선박은 총 41척인데, 이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7.3%),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4.9%)이다.

〈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국내 선박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기준일 : 2015. 6. 1., 선박 단위 : 척)

총 업체수	총 선박 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총 선박 대수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장애인전용 화장실
58개	2006. 1. 28.*이전 건조	121	8	8	11
	2006. 1. 28.이후 건조	41	3	3	2
	합 계	162	11	11	1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일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나. 「교통약자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등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통약자법」 제29조와 제29조의2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나, 「교통약자법」 시행된 이후 2015. 6.말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없다.



다. 2014.말 기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62개 선사 중 41개 선사(66%)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선박 구조변경·승인에 따른 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하나, 선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례와 근거 규정은 없다.

라.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신규 면허 부여를 위한 사업자 공모 및 평가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구비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박 건조 또는 중고선 도입 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안내하고 있다.

2. 국민안전처 장관

가. 대형 규모의 여객선과는 달리 소형 위주의 유·도선은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사업자들이 영세한 점을 감안할 때, 휠체어 전용공간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층주호, 소양호 등 약 30~40m의 급격한 수위 변화가 있는 담수호의 경우에는 환경 여건상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 선박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선박의 건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변경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3. 국토교통부 장관

가. 「교통약자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제정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시행 중인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유선 및 도선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나. 또한 「교통약자법」 제10조 제3항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기잡이·관광 등 이용 특성을 감안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법」보다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현행 「교통약자법」 제17조에서 교통사업자는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조인력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의제공 방법 등은 각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시설 관리자들이 자체 매뉴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 회장

가. 연안여객선은 소형선박이 많고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로 개조가 곤란하다. 또한 설계변경 심사, 선박 검사 등을 통한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 과다지출이 불가피하여, 국가 재정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병행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의 선박 승·하선 시 선원 등 직원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인력을 확보할 경우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며, 인력 운영 비용 대비 장애인 여객선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현재 선원 등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외국 사례

1. 캐나다

가. 관련 법령

「장애인을 위한 선박 접근성 규칙(Code of Practice: Ferry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거, 2002. 1. 1.부터 서비스 중인 또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선박(여객 전용 또는 여객과 차량을 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의 운영자들은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위 규칙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선박에 갑판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최소 한 대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엘리베이터는 차량 갑판에서 전망대가 있는 최상층을 제외한 여객용 갑판 전체로 운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선박 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갑판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선박의 구조적인 한계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 운영자는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는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선박에 선실이 있는 경우, 이 중 최소 5퍼센트, 그리고 최소 하나의 선실은 휠체어를 탄 사람을 포함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 출입구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폭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휠체어를 이동 조작할 수 있도록 문 양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선박의 복도와 통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휠체어를 이동 조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넓이가 고정된 돌출물에 의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5) 선박 운영자가 승객들에게 일정 지연 및 변경, 그리고 선상 서비스 등과 같은 안내를 하는 경우, 선상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안내를 시각적으로,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보다 개별화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박의 직원과 승객이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 필기구와 종이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미국

가. 관련 법령

「여객선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규칙(49 CFR Part 39, Transport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Passenger Vessels)」이 제정되어 2010. 11. 3.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규칙은 여객선 소유자 및 운영자(공공 및 민간 포함)가 선박을 이용하는 장애인 탑승객에게 장애 유형별 제공해야 할 도움 및 서비스, 여객선터미널 등 부두시설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 접근편의시설, 선박 이용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all passenger vessels)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여객선(passenger vessels)에는 페리(ferries), 유람선(excursion vessels, sightseeing vessels), 수상 식당(floating restaurants), 크루즈(cruise ships)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위 규칙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여객선 운영자는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여객선터미널 입구부터 매표소, 수하물 관리소, 화장실, 선박에 승·하선하는 곳까지 반드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2) 여객선 운영자는 도움 없이 여객선에 승·하선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승·하선에 필요한 도움을 즉시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 승객이 동의하는 다양한 수단(리프트, 경사로, 탑승 의자(boarding chairs), 선사 직원에 의한 도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여객선 운영자는 선박 내에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이 법적 선박안전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보행상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을 선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관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reasonable modifications)해야 한다.

4) 여객선 운영자는 여객선터미널 및 선내에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매표, 운임, 운행스케줄, 운행 지연, 수하물 보관, 안전 브리핑 등)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그러나 이 규칙(49 CFR Part 39)에는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선박 접근성 기준’(vessel accessibility standards) 조항이 보류되어 있다. 이는 소규모 선박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접근성 기준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미국 교통부는 미국 접근성 위원회(United States Access Board)가 2013년 작성한 여객선 접근성 가이드라인 초안(Proposed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Passenger Vessels)을 바탕으로 향후 이 기준을 적용받을 선박의 범위와 선박 접근성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3. 일본

가. 관련 법령

해상운송법에 의한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여객 시설 또는 차량 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규칙(移動等円滑化のために必要な旅客施設又は車両等の構造及び設備に関する基準を定める省令)」은 여객선터미널 및 선박에 설치해야 할 승강용 설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 및 통로, 화장실, 식당, 운항정보 제공 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총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나. 위 규칙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에 승강하기 위한 트랩, 기타 설비(이하 ‘승강용 설비’라 한다) 시, 해당 승강용 설비는 휠체어 사용자가 들리지 않고 승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폭은 80cm 이상이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되어야 한다.

2) 여객선 출입구(현문 또는 갑판실 출입구)중 한 곳 이상은 폭이 80cm 이상이고,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한 경사판, 기타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여객 정원 100명마다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휠체어 전용공간은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고, 휠체어 전용공간이라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4) 여객선 내 차량 구역의 출입구와 선내 휠체어 전용공간이 별도 갑판에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적합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기를 갖추어야 한다.

V. 판단

1.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9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등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교통약자법」상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물적, 인적 수단으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 여객선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필요

가. 「교통약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박과 항만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약자법」상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접근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다. 그러나 2006. 1. 28.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후 건조된 여객선 41척 중, 2015. 6. 1. 현재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여객선은 3척, 장애인전용화장실을 갖춘 여객선은 2척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여객선에 승·하선하기 위해서는 선박회사 직원 또는 장애인 동반자에게 업혀서 부두와 여객선을 연결하는 계단 트랩을 오르내리거나, 2-4명의 사람이 휠체어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없는 선박은 대부분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운항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약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 또는 항만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항만시설관리운영자 등(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을 지도·감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선박의 이동편의시설 미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마. 「교통약자법」 제29조, 제29조의2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재까지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법상 부여된 교통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 시정명령권 행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조수(潮水)의 차가 큰 부두에 설치된 부잔교(浮棧橋)¹⁸⁾ 상판과 차도선의 차량진출입 갑판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철근 가락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앞바퀴가 철근 가락에 걸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휠체어가 앞으로 전도될 수 있는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부잔교와 차도선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닥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 일부 여객선에서 혼자서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휠체어 승강설비 미비 및 해상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렵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미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을 제한·배제·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 여객실 및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상층 갑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차도선형 여객선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선박운항시간 동안 1층 갑판에서 계속 머무르거나, 상층 여객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행자나 직원에게 업혀 이동해야 한다. 특히 우천 시 및 혹서·혹한기에 여객실이 없는 1층 갑판에서 선박 운항 중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여객실로 이동할 수 없는 차도선형 여객선 등을 이용할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후 건조된 여객선의 약 93%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비취볼 때, 여객선의 설계, 검사 등 과정에서 「교통약자법」상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

18) 부두에 방주(方舟)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棧橋)로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쓴다.

과 동등하게 교통 및 관련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객선 설계·건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설치기준과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장애인 승객에 대한 인적서비스 제공 필요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법」은 물적 편의시설 설치 외에 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이로 인해 혼자서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 여객선 승·하선 시 도와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여객선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제공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여객선 업체에 대한 경영지도 강화 필요

가. 「○○○○○○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따라서 ○○○○○○회장이 해상여객운송사업자들에 대해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여객선에 설치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영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유선·도선 이용 관련 편의시설 보완 필요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한 선박을 의미하고, 도선은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이 선박들은 수십톤에서 수백톤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하나,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선박들에 승·하선하기 위한 유선장 및 도선장 역시 제외되어 있다.

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된 유람선과 유람선 선착장으로 인해 유람선을 이용해 관광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유람선을 탑승하지 못하고, 관광지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 등을 운항하는 도선과 도선장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도서를 여행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 한편, 시각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유람선에 탑승하고자 했던 시각장애인은 유람선사 측으로부터 보조견의 유람선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제5항은 당사국에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 및 여가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 특히 도선은 육지와 도서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선박으로, 국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 등에 거주하거나 이러한 도서를 여행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 유선 및 도선을 비롯한 제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국민안전처는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신규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6. 8. 22.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위원 김영혜 위원 이경숙

위원 정상환 위원 윤남근 위원 한위수

위원 강명득 위원 이선애 위원 이은경 위원 장애순

<별 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3.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手話)·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이동 편의 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항공기		○	○	○		○	○	○		○	○

대상시설	이동 편의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공항시설		○	○	○	○	○	○	○	○	○	○	○

대상시설	이동 편의 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 검사장	여객 탑승교	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시설	
공항시설		○	○	○	○	○	○				○	○		○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1. 한국수어·통역서비스
2.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3. 공중팩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 선박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목적항의 항명 및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목적항의 항명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선박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나목3)*을 준용한다.

* 3) 행선지 표시

- 가) 차량의 행선지는 차량 외부의 측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나) 행선지 표시는 밤에도 알아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 가)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판 등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총톤수 3천톤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엘리베이터 안의 넓이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충분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 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명당 1곳 이상 설치하되,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해당 선박의 규모·구조 등의 이유로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나목6)을 준용한다.
- 다)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문은 미닫이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와 선박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가목7)을 준용한다.

8) 출입구 통로

가) 출입구·객석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곳은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9.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0.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운항속도가 시속 25노트 미만인 선박
 - 나. 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운항속도가 시속 25노트 이상인 여객선

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선박

11.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의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10.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기준 등)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

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2014. 10. 21.자 결정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결정사항】

-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 【2】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안전사고 사례집 및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담은 교육책자를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만으로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교통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면하기 곤란하다는 점
- 【2】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휠체어가 차량좌석이 되므로 휠체어가 일반 차량좌석과 같이 차량의 주행 및 충돌 시에도 안전하게 차량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 【3】 일반 차량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사고로 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일반 차량의 안전벨트와 같이 휠체어 사용 탑승자의 상체와 골반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벨트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가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7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도모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2.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안전사고 사례집 및 안전장치 사용법을 담은 교육책자를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개요

1.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사건(13-진정-0943800)이 접수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휠체어 사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휠체어 형태 등을 감안해 특별교통수단 내부 안전장치에 대한 제반 안전설치 기준을 제정해 즉각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을 포함한 휠체어 사용자들이 동 차량에 설치된 탑승자용 안전벨트,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이하 “안전장치”라 한다) 미흡으로 차량 주행 중 휠체어가 뒤로 전도되면서 머리를 차체에 부딪치거나 또는 상반신이 앞으로 꺾이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수차례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가 탑승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휠체어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 결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 논의 과정

2014. 10. 21. 개최된 2014년 제10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위 진정사건(13-진정-0943800)을 의결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본 진정을 정책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특별교통수단 내부 안전장치 세부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직접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진정은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3. 권고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7항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권고 대상으로 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1. 「헌법」 제11조 제1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4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7항
4.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III. 판단

1. 특별교통수단 관련 법령 및 사고발생 현황

가. 「교통약자법」 제2조 제8호는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7항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특별교통수단은 차종(스타렉스, 카니발, 그랜드스타렉스 등) 및 차량 제작년도, 일반 차량을 장애인용 차량으로 구조변경 해주는 회사에 따라 안전장치 모양 및 설치 위치 등이 상이하나, 안전장치는 통상 휠체어 앞바퀴 2개 및 뒷바퀴 2개를 차량 바닥면에 각각 고정시키는 벨트식 고정장치 4개와 휠체어 사용 탑승자를 위한 안전벨트, 그리고 휠체어 전면 및 측면 방향에 설치된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국토교통부 자료 및 언론에 보도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차량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휠체어를 탄 채 뒤로 전도되어 부상당하거나, 차량 회전 및 급정거 시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차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등 「교통약자법」이 2006. 1. 28. 시행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된 이후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사고발생 현황 (2008. 1. ~ 2014. 4.)〉

출처 : 국토교통부

사고일자	사고원인
'08. 01. 28.	우회전중 밀리면서 차량 손잡이에 부딪혀 다침
'08. 08. 07.	오르막길에서 휠체어가 뒤로 밀리면서 다침
'09. 06. 29.	운행중 휠체어 고정벨트 풀려 다침
'09. 07. 23.	오르막길 운행중 휠체어가 뒤로 밀리면서 다침
'10. 06. 28.	좌회전중 휠체어가 쏠리면서 창에 부딪혀 다침
'11. 02. 14.	안전고리 체결 위치 부적정
'11. 03. 25.	고정장치 고장으로 밀림
'11. 09. 09.	오르막길 운행중 휠체어가 뒤로 밀리면서 전도되어 다침
'11. 09. 14.	급 정차에 따른 탑승자 충격
'12. 04. 04.	안전고리 체결 후 주행모드 미전환
'12. 08. 12.	운행중 고정벨트가 풀려서 전도되어 다침
'12. 12. 03.	급 회전에 따른 탑승자 충격
'13. 06. 03.	급 정차에 따른 탑승자 충격
'13. 06. 08.	급 정차에 따른 탑승자 충격
'13. 10. 05.	안전벨트 미착용, 급정거로 손잡이에 부딪혀 부상
'13. 10. 17.	우회전시 휠체어가 우측으로 쏠리면서 기울었다가 원상회복
'14. 03. 13.	고정장치 체결미비
'14. 04. 11.	차량 급정거

2. 외국 사례

가. 미국

1)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¹⁹⁾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미국 교통부장관(Secretary of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서비스 시행규정(4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37(Transportation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안전장치(Securement devices)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에 따르면 i) 안전장치는 장애인 출입구 인근에 두어야 하고, ii) 안전장치는 휠체어와 이동보조장치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이면서,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또는 안전장치와 이동보조장치에 능숙한 사람에 의해 손쉽게 설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iii) 휠체어 또는 이동보조장치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iv) 안전벨트 및 어깨 고정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는 바(38.159조), 미국 법규는 안전장치의 세부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버스나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용 휠체어 고정장치로 미국에서는 4-point tiedown system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용 차량의 경우 4-point tiedown system 외에 자동고정장치²⁰⁾가 사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4-point tiedown system에 대해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서 SAE-J2249²¹⁾라는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

19) 42 U.S.C. § 12184 (b)(4)(A)

20) 휠체어 자동고정장치는 미국 제품인 easy-lock과 스웨덴의 permo-lock 등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4-point tiedown system과 이들 자동고정장치들은 SAE-J2249에 따른 자동차 충돌테스트를 통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선진국에서는 유통되고 있다.

21) 참고자료 : SAE Recommended Practice J2249 Wheelchair Tiedowns and Occupant Restraints for Use in Motor Vehicles

- SAE J2249는 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이하 WTORS)에 관한 기능적, 디자인적 요구사항, 시험 방법, WTORS 제조사가 마련해야 할 WTORS 장착자 및 사용자에 관한 지침 등에 관해 규정

나. 유럽

1) 유럽연합(EU)은 2011년 ‘버스·고속버스(Coach) 이용자 권리규정’²²⁾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운영자, 여행사 등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위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버스·고속버스(Coach)에 관한 EC 특별지침’(이하 “EC Directive 2001/85”라 한다)²³⁾에서는 대중교통 운영자 등이 교통약자에게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제7장).

2) 위 특별지침에 따르면 휠체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i) 안전장치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3.8.1.1.조), ii) 차량의 종류별로 안전장치가 충족하여야 할 요건을 달리 정하면서(3.8.1.2.1.조 및 하부규정 포함), iii)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관련한 검사 기준 등도 매우 상세하게 규정(3.8.2.8.조 및 하부규정 포함)하고 있는 바, EC Directive 2001/85 또한 교통수단 내 휠체어 안전장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유럽은 오래 전부터 COST²⁴⁾라는 정부간 협동 연구기구를 통하여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특히 2005년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고속버스 및 장거리 버스의 접근성 연구’(Accessibility of Coaches and Long Distances for People with Reduced Mobility) 최종보고서를 출간했는데, 위 보고서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휠체어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 안전장치라고 하면서, 이러한 안전장치는 앞서 살펴본 EC Directive 2001/85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하며, 목과 등을 고정하는 장치의 경우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높이, 길이가 어떠한지를 도출하였다.

22) EU Regulation No. 181/2011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concerning the rights of passengers in bus and coach transport

23) Directive 2001/8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November 2001 relating to special provisions for vehicles use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24)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유럽 정부간 협동 과학·기술 연구 네트워크)

다. 호주

호주에서는 차량 이동시 필요한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AS 2942-1994 Wheelchair occupant restraint assemblies for motor vehicle)을 마련²⁵⁾하고, 체크리스트 (Restraints for Passengers in Wheel Chairs)를 운용하는 한편, 휠체어 고정장치 종류를 휠체어 유형 별, 나아가 휠체어 제작사 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²⁶⁾하고 있다.

3. 국내 연구자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기능 및 표준모델(안)에 관한 연구)²⁷⁾

가. 현재 「교통약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라 정의되어 있을 뿐, 자동차 측면에서의 기능 정의, 기능 구현을 위한 표준모델,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기능

25) 〈호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한 차량 탑승을 위한 원칙〉

1. 휠체어는 측면 방향을 바라보도록 놓이면 안 된다. 휠체어 사용자들은 흔한 정면충돌에서 특히 다치기 쉽기 때문이다.
2. 휠체어 고정 장치는 사고를 대비해 휠체어와 휠체어 탑승자의 무게를 더한 것의 약 25배 정도의 무게를 0.1초 이상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실험 결과 휠체어 고정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은 휠체어가 아니라 고정 장치였기 때문이다.
3. 휠체어와 휠체어 탑승자는 따로 고정되어야 한다. 바닥이나 벽에 장착된 안전벨트는 휠체어와 휠체어 탑승자 모두를 고정해서는 안 된다. 사고 발생 시 지나치게 큰 하중이 휠체어 탑승자에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중은 골반을 비롯한 다른 골격 구조들에 분산되어 가해져야 한다.
4. 자동차 승객 보호 시스템은 자동차 내의 견고하지 않은 금속, 목재, 플라스틱 구조가 아닌 튼튼한 금속 틀에 고정되어야 한다. 휠체어의 부가 장치들은 휠체어에 있는 파이프(tube)의 중앙이 아닌 휠체어 좌석 틀과 뒤쪽 수직 기둥의 모서리 연결부분에 부착되어야 한다.
5. 상체 보호 장치의 목적은 머리가 자동차의 구조물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넓게 부드러운 물질로 덧대어진 머리 보호 장치는 머리가 뒤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 목뼈 손상을 막을 수 있다.
6. 휠체어 탑승자를 받치는 표면(주로 비닐로 덮인 좌석)은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자동차 정면 방향을 바라보게 놓인 휠체어의 한 쪽만을 가죽 끈으로 버스에 고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정면의 충격으로부터도 탑승자를 완전히 보호하지 못한다.

26) http://ilcaustralia.org.au/search_category_paths/496

27) 2009 KSAE 부문종합 학술대회 심소정, 박요한, 윤경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의 교통체계효율화사업(과제번호 #06 교통핵심 C01,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 교량차친화형 자동차 안전성향상 기술개발”)에 의해 수행되었음.

구현을 위한 개별 장치들에 대한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나. 따라서 현재 서울, 부산 등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형태는 전혀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것이 가지는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자동차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능만이 구현가능하며, 개별 장치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 제공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능 정의, 개별 장치들에 대한 자동차 기준 검토, 그리고 각 시도 지자체가 보유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모델에 대한 표준화 등의 문제가 시급하다.

4.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개선 필요성

가. 「교통약자법」 제3조(이동권)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16조 제7항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는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장치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이고, 장애인이 이러한 장치의 안전도를 신뢰할 수 없거나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의 요인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워,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

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는 장애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장치들, 즉 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탑승객 안전벨트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가 고려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휠체어 사용 탑승자의 경우, 표준형 사양을 갖춘 휠체어를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안전장치 기준과 표준형 사양이 아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기준 등으로 유형화 및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호주와 같이 휠체어 고정장치 종류를 휠체어 유형 별, 나아가 휠체어 제작사 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한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교통약자법」 제16조 제7항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진정 사건(13-진정-0943800)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주장처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인 시장·군수가 차량 도입 시부터 관내 장애인 유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탑승 안전설비 기준을 제정할 경우, 탑승자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됨이 없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신뢰성 저하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기준 제정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

5.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만으로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교통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면하기 곤란하다는 점, ②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휠체어가 차량좌석이 되므로 휠체어가 일반 차량좌석과 같이 차량의 주행 및 충돌 시에도 안전하게 차량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③ 일반 차량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사고로 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일반 차량의 안전벨트와 같이 휠체어 사용 탑승자의 상체와 골반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벨트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가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7

2016. 11. 24.자 결정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결정사항】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 포함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및 홍보,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및 안전교육 실시, 경보·피난설비 보급 및 연구·개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정부는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나, 장애인 안전종합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에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장애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안전 관련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 하고 이를 보급할 필요가 있음.
- 【3】 장애인의 경우 위기상황 시 빠른 대처가 힘든바, 지속적으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대상의 안전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또한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대피를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널리 보급되도록 하고, 다양한 경보·피난설비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제6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험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기 바람
2.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3.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4.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보·피난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다양한 경보·피난설비를 연구·개발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 배경

「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4. 4.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취약한 재난대응 및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14. 11.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기관별로 분산되어있던 재난안전 추진체계를 통합하였다. 그러나 지진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 속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14. 10. 28.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관리 보장과 관련하여 “위험상황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을 확보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며,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안전권이 확보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권고를 하게 되었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34조 제6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III. 판단

1. 재난과 장애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크다. 일례로 2009.부터 2014.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 총 1,256명 중 장애인 사상자는 4.9%인 61명이었고, 장애인 사상자 중 사망자는 57.4%였는데, 이는 전체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인 14.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바,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높은 반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기대처능력은 낮은 편이다.

2013.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 사무국(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이 126개국의 5,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재난대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31%만이 대피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 71%는 어떠한 개인적인 대피 및 대응계획도 없다고 답하였고, △ 17%만이 지역사회가 준비한 재난대응계획을 인지하고 있으며, △ 50%가 재난위기관리 대응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각종 재난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대피방안 등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2. 검토

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상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14. 4.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한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인 등 재난취약 계층을 고려한 규정이나 장애인 안전종합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바, 향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안전종합대책 및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에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장애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필요

2016. 9.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난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위기대응능력이 낮은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국민안전처가 제시하고 있는 태풍, 지진 등 재난유형별 대처방법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 ‘시각·청각장애인 안전교육 교범’,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지체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과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매뉴얼’이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나 기관 단위에서 다양한 재난 및 장애유형, 시설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국민안전처가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매뉴얼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대피방법, 경보 전파 방법, 연락체계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점자, 음성지원, 픽토그램(Pictogram)을 활용한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장애 특성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6개 권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164개 기관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앞서 언급한 장애를 고려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기관은 전체의 48.8%인 80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또한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소방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재난 발생 경보 전파 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수집방법과 대처능력을 숙지하고 있는 기관은 56.1%인 92곳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향후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제작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을 통해 개별 기관이나 개인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필요

2016. 5. 29. 제정되어 2017. 5. 30.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 제1항과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016. 7.부터 100여 개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고, 이 중 7개의 장애인 대상 콘텐츠를 포함하여 30여 개의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나, 2016. 10. 19.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된 지진 대피훈련에서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을 대비한 교육·훈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는 점과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었다.

장애인의 경우 위기상황 시 빠른 대처가 힘든바, 당사자는 물론 가족, 장애 관련 종사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장애인 안전 관련 매뉴얼 외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 콘텐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피난기구 사용법, 재난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방법, 피난도우미, 소방 관련 종사자 등이 장애인 등의 대피를 돕거나 구조 시에 주의해야 할 장애 유형별 특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되, 다양한 유형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 장애 관련 종사자 등에게 폭넓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경보·피난 설비의 개발 및 보급 필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보설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리자 등에게 알려주는 설비이고, 피난설비는 재해 발생 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인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관련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기관 245곳, 대형 판매시설 164곳을 대상으로 경보·피난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기(비상벨) 설치율은 공공기관 43.3%, 대형 판매시설 97.6%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경광등) 설치율은 공공기관 41.2%, 대형 판매시설 92.7%로 나타나, 대형 판매시설에 비해 공공기관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의 설치가 미흡하였다.

한편, 실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계단 등을 이용하여 수직피난을 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등의 경우 비상구 또는 주출입구까지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어렵고, 피난로프·피난교·피난사다리·미끄럼대·완강기 등과 같은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수평피난을 하거나 수직피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별도 시설물 또는 기구와 피난도우미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노인, 환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피난용 계단 이송의자가 개발되어 있어 이동의 제약이 있는 사람이 착석하면 보호자가 무동력으로 계단을 내려감으로써 대피시킬 수 있으나, 대형 판매시설 164개 기관 중 계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고려한 별도 시설물 또는 기구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대피를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널리 보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개발되어 있는 피난용 계단 이송의자 외에도 거동 불편 장애인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설비 또는 소리 등 제한된 방법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피난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비, 쉬운 말이나 픽토그램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위험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경보설비 등 장애 유형 및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경보·피난설비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위원 김영혜 위원 이경숙 위원 정상환

4. 사법·행정 및 참정권

1

2010. 10. 21.자 결정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결정사항】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결정요지】

- [1]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작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직선거’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 의무 제작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으며
- [2]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의 자문 결과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 역량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며, 설혹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임.
- [3]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바, 현행 「공직선거법」관련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주 문】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전단형 포함, 이하 같다.)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 “2010. 6. 2.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관련 정보접근권이 상당부분 제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점자형 선거공보 미제공 및 면수 제한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II. 판단 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8조,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9조

III. 판단

1.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선거 홍보물로서, 특히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로 인해 선거벽보,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정보전달 매체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공직 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비용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관련 정보 접근권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제작 비용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선 선거에 참여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의 장애인 유권자를 대하는 인식의 문제를 들 수 있겠으나, 제도적으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로 하여금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아도 선거 결과에 커다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더라도 그 면수를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경우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 보다 면수가 최소 1.5배에서 2.5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해당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60~70% 정도의 내용밖에 담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은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또한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2.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

가. 차별 판단의 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이어받아 「장애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동등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2008년 12월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구체적으로는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할 것, 또한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시각장애인이 공직 선거과정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로써 국가에 의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의 합리성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 운동의 자유 보장 및 부족한 점자 인쇄시설 현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 후보자 등이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선거공보 제작이 후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선거운동 자유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 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역량이 공직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자문내용에 근거할 때, 점자 인쇄시설 부족으로 인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및 보급의 곤란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설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과 같이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시장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보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장애인 보호와 평등권 실현에 대한 「헌법」의 취지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와 더불어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한 것이 8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2010. 6. 2.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특성상 선거공보의 수량과 부피를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동등한 선거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대규모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현행과 같이 운영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제작하도록 규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다. 소결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참정권 영역에서 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애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선거에 참여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 면수를 불합리하게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관련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은 공직선거에서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제공 의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게 동등한 선거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비장애인과의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상위 규범인 헌법의 정신과 두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원 장향숙

2

2013. 5. 16자 결정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결정사항】

- 【1】 대법원장에게,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의사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고, 관련인들의 의견을 청취절차를 마련하여 본인의 생활상 수요가 고려된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후견사무 감독을 위해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
- 【2】 법무부장관에게,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판단기준과 피성년후견인의 심판절차수행능력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결격조항의 폐지 및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
-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제도를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신상 구속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할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장애인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나 신뢰관계인을 절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사건 본인에게 개인맞춤형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의 생활에 접촉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후견서비스의 질 제고 및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상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후견심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고, 의사결정 대상 별로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자격을 제한·박탈한 결격조항을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후견 개시 여부, 범위 등 결정기준이 되는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 및 사건 본인의 심판절차수행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3】 신상영역의 후견서비스는 피후견인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바,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무상의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공공후견인 양성기관 및 공공후견인 지원자들에 대한 적절한 자격 조건을 마련, 후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양성된 공공후견인에 대한 주기적 재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여 공공성을 담보한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함. 또한 의료·요양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후견인 확인 절차,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지침을 마련하고, 신상구속과 관련한 법률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3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1. 대법원장에게,

가.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 시키며, 생활상의 수요가 고려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나.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2. 법무부장관에게,

가.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

나. 가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특히 심판절차수행능력이 피성년후견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법률에 존재하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결격조항들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나.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신상을 구속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권고 배경

2011. 3. 7. 민법 개정에 따라 2013. 7. 1.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하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이라 한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제도(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를 말한다)가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그들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박탈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적 입법의 결과로 도입되었다.

현재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가사소송법」이 2010. 3. 31. 개정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2013. 4. 5. 제정되었으며, 「가사소송규칙」개정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위 「가사소송법」은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인권 존중에 필수적인 절차참여권 및 절차참여를 위한 적절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하였다.



II. 판단 기준 및 참고기준

1.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3조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2. 참고 기준

영국의 「정신능력법」, 「정신보건법」, 「민사소송법」, 「보호법원규칙」, 독일의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절차법」, 「성년후견청법」, 프랑스의 「민법」, 「공중보건법」, 「민사소송법」, 일본의 「민법」, 「임의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오스트리아의 「민법」을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III. 성년후견제도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08. 5. 3. 국내에 발효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향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장애인은 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둘째, 만약 법적 능력의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장치로써 법적인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법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의지 및 선호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장애의 가변적 속성을 이해하여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을 박탈하는 조치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조치들이 독립된 기구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IV. 판단

1. 후견심판절차에서의 절차참여권 보장

「민법」 제9조 및 제959조의14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및 특정후견 심판, 후견 종료의 심판 등의 경우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는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은 가정법원이 사건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하는 심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도, 의식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또한, 후견개시와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경우 사건 본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나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장애인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그가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의 진술청취 및 심문에 대한 위 예외규정들이 사건 본인의 의사확인 절차를 해태하는 규정으로 작용하지 않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전문가나 신뢰관계인을 후견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동복지법」 제21조²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37조, 제38조를 참고할 수 있다²⁹⁾.

28)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29)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은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후견감독인의 선임, 후견인 권한 결정 등의 심판에서 진술을 청취해야 할 대상으로 사건 본인과 후견인, 후견감독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생활상 필요한 후견서비스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사건 본인의 생활에 접촉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쇠퇴 정도만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상의 수요가 고려된 개인맞춤형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2. 후견사무 감독 인력 확보 및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민법」은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법으로 후견인 변경³⁰⁾ 및 후견감독인 제도³¹⁾를 두고 있다. 같은 법 제940조의4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4는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후견인의 재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증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31) 제940조의2 이하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을 별도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으로 후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잘못된 후견사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조사관 등 후견사무를 감독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후견사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후견인으로 하여금 활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후견사무 관리·감독의 요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부적절한 후견서비스의 제공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규정들 외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민법」 제954조를 활용하여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가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활동보고서의 정기적인 제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활동보고서 제출은 최소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공공후견서비스 제도 및 공공후견인 양성관리 시스템 구축

가. 공공후견서비스 제도 구축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후견서비스의 영역도 재산관리에서 신상보호로 확장되었다. 신상영역에서의 후견서비스 제공은 피후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장애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후견심판비용 또는 후견인보수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무상의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지적장애인이거나 독거치매노인의 경우 국가가 성년후견인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들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나 이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족 후견이 대부분이었으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가족후견이 55%~60%까지 하향되었고, 특히 2011년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성년후견청, 성년후견 사단법인이 직접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후견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전체 후견인 선임의 약 14%에 이른다. 오스트리아는 가족후견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성년후견 사단법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국은 공공후견인청이 공공후견감독서비스를 통일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호주는 주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공공후견인청이 공공후견감독서비스와 신상과 관련된 후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국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무상의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기요양급여법」 또는 「치매관리법」 등에 공공후견인제도 관련 규정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입법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공후견인 양성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양질의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공후견인 양성기관에 대한 자격조건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담보한 양성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후견인 지원자들에 대한 적절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후견인의 업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 윤리, 복지, 의료, 인권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하여 공통커리큘럼과 피후견인의 유형과 특성,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커리큘럼으로 나누어 특성화된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후견인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성된 공공후견인에 대한 주기적 재교육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후견인 자격이 부여되었더라도, 자격 획득 후 실제로 후견인으로 선임될 때까지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후견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³²⁾ 나아가 공공후견인에 대해서도 감독인 선임, 활동보고서 제출 등 적절한 감독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결격조항 대체 입법의 마련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공무담임, 각종 전문 자격, 각종 사업의 인·허가, 각종 공적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등의 취임에 대한 결격사유로 열거하는 조항(이하 ‘결격조항’이라 한다)을 다수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격조항은 공무담임의 제한³³⁾ 또는 금지, 각종 공인자격 취득의 제한 또는 금지³⁴⁾, 각종 사업의 허가·면

32) 일본의 오사카시의 경우, ‘시민후견인뱅크’를 마련해 실무강의 수강을 마친 사람들에게 연 8회의 연수를 실시해 후견인으로 선임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3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4)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허·지정 또는 등록·신고의 제한 또는 금지³⁵⁾, 각종 법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직원·사원·조합원 등으로서의 자격의 제한 또는 금지³⁶⁾, 각종 공적 위원회의 위원 자격의 제한 또는 금지³⁷⁾, 각종 재산권의 향유 또는 계약 자유의 제한 또는 금지³⁸⁾ 등 약 290여 개의 법령에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결격조항은 그 자격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온전한 정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판단이나 증명이 곤란하거나, 이를 각 개별 법령에 고유의 절차나 방법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롭기 때문에 금지·한정·한정자산 신고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제한·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견심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고, 의사결정 대상별로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치료 등으로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음에도 위 결격조항은 일률적으로 자격을 제한·박탈하고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³⁹⁾ 또는 제12조⁴⁰⁾ 등과도 조화되지 않을

3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지자산자 또는 한정자산자

36) 보험업법 제13조(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제3항 및 제130조제2호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금지자산자 또는 한정자산자

37) 건축법 제8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지자산자, 한정자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8)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1. 금지자산자 또는 준금지자산자

39) 제5조(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하는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협약 제4조 1. (b)가 요구하는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후견선고를 받았다든 사유만으로 어떤 자격이나 직무에의 접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그 동안 본인이 종사해 왔던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획일적으로 제한·박탈하는 결격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법률에 존재하는 결격조항을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및 신상구속 관련 법률규정의 정비

「민법」 제947조의2 제3항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성년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하고,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후견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과 범위, 응급상황 등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40)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성년후견인의 존재 및 그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동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응급의료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은 비자의(非自意) 입원과 관련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⁴¹⁾ 역시 노인복지시설 등에의 입소와 관련한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성년후견인을 가족 등의 보호의무자가 강제 입원·입소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과의 관계에서 누가 우선적인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위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을 구속하는 결정의 경우 후견인의 존재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등에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정도의 판단기준 마련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후견 개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⁴²⁾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안⁴³⁾은 후견 개시 심판

41) 제10조(입소조치) ②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도록 하고, 후견 종료 심판 시에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의사결정능력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에 있어 의사결정능력의 쇠퇴 정도를 생활 전반에 걸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인적 수요를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의사결정능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후견의 개시 여부, 후견의 범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시점의 판단, 법률·의료·복지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이 결정되므로, 의사결정능력 파악은 성년후견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의사결정능력 유무와 정도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은 없는 실정이다⁴⁴⁾. 종래의 행위무능력자 제도와 달리 피후견인의 생활상 필요를 고려한 개인맞춤형·한시적·부분적·보충적 후견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꾀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결정능력을 감정하는 의사나 후견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참고할 수 있는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능력평가의 6가지 원칙(개인이 능력이 있다고 항상 가정한다, 능력은 결정이 필요한 시점마다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 상실을 외양에 근거를 두고 추론하지 말라,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가 아닌 개인의 결정 능력을 평가하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의사 결정의 대행은 최후의 수단이다.)들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43)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44)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판결), 이는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정의에는 적합하지 않다.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은 의사결정능력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의 하나이다.⁴⁵⁾

45)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제1조(원칙) ① 이 법에는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②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 ③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해 스스로 의사결정능력을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 ④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사람을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 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거나 그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 또는 행해진 행동은 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 ⑥ 특정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을 필요하게 만든 목적이, 그 사람의 권리와 행동의 자유를 더 적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조(의사결정무능력) ① 이 법에서 정신 또는 뇌의 손상 또는 기능상의 장애로 인하여 특정 시점에서 특정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문제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다.

- ② 손상 또는 장애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③ 단지 다음 사항만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 a. 연령 또는 외관 또는
 - b. 타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추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행위 또는 행위의 어떤 측면의 조건
- ④ 이 법상의 절차 또는 다른 법령상의 절차에 있어서 어떤 자에게 이 법에서 말하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지가 문제된 경우 그 문제는 어떤 개연성이 더 많은지(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를 기초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

⑤ 어떤 사람(D)이 이 법에 따라

- a.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또는
- b. D가 어떤 사람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행사될 수 없다.

⑥ 제5항은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의사결정무능력) ① 제2조에 있어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

- a.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 b. 그 정보를 (기억, 메모 등을 통해-역자) 유지할 수 없거나
- c. 의사결정 과정의 부분으로서 그 정보를 비교하거나 이용할 수 없거나
- d. 결정을 전달할 수 없을 때(구술, 표시문자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는 것을 불문함).
- ②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된 정보에 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면(단순한 언어의 사용, 시각보조장치 또는 여타의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 ③ 단기간 동안만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 사람이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이 불인정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④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는

7. 소송능력 및 심판절차수행능력의 인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자의 소송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한정치산자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⁴⁶⁾.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바꾸어 볼 수 있다 해도, 피성년후견인 역시 스스로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재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당사자의 개별적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의 제한도 없는 형태로 제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및 제13조⁴⁷⁾가 규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법적 능력 향유 인정,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 법적 능력 행사 제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보장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성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소송능력의 유무는 소송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그 판단은 「정신능력법」 제3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만약 개별 소송사건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보조인을 선임한다.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있는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 그 밖에 적절한 사람 등이 소송보조인이 되어, 이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변호사가 이미 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 본인에게 당해 사건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보조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

- a. 이력저러한 방식의 의사결정 또는
 - b.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 그로 인해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46)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7)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

독일 역시, 민사소송법상 피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권한 있는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경우에 피후견인과 더불어 피후견인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피후견인의 소송수행권과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소송수행권이 양립하며, 법원에서 각자의 권리행사를 존중하여 판단한다. 유럽인권재판소도 후견관련 심판절차에서 사건본인의 심판절차수행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유럽인권조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⁴⁸⁾.

위와 같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의 규정,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을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 한시적으로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사건 본인의 소송능력 및 심판절차수행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만약 당사자의 소송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사건본인의 소송보조인 또는 심판절차수행보조인으로써 사건 본인을 조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3. 10. 3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48) [Stanev v. Bulgaria Case(Application No. 36760/06)]사건, [Kedzior v. Poland(Application no. 45026/07)] 사건

3

2014. 1. 13.자 결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

【결정사항】

대법원에 계속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함.

【결정요지】

이 사건 피고의 처분과 1·2심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 원고의 장애 특성 및 근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의족은 사전적 의미의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파손을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근로자라는 동일집단에서 장애의 특성 및 상황을 간과하고 사전적 의미의 생물학적 신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이러한 차별적 결과 발생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우리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조문】

「헌법」 제6조, 제11조, 제3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6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6. 12. 13. 채택, 2009. 1. 10. 발효) 전문, 제1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제26조, 제27조,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59호)」(1984. 6. 20. 채택, 2000. 11. 15. 발효) 제1조, 제3조, 제4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아 래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유】

I. 검토배경

의족을 장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⁴⁹⁾ 원고가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 의족이 파손되었고, 의족 파손의 상병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사건 피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내려진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근로를 통해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바, 장애인 근로자는 여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등의 위협에 노출되며, 특히 신체를 대체하는 의족, 의수 등의 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해당 보조기가 없을 경우 사실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건 소송의 쟁점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49)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59호)」 등의 국제법과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1조, 제3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6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6. 12. 13. 채택, 2009. 1. 10. 발효) 전문, 제1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제26조, 제27조,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59호)」(1984. 6. 20. 채택, 2000. 11. 15. 발효) 제1조, 제3조, 제4조를 판단 및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의족의 파손은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부상을 사전적 의미의 ‘생물학적 신체’의 부상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의족의 파손을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면서,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권리협약과 ILO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함)」 제3조는 “(b) 차별 금지”와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제4조는 “(a) 본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존 법,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d) 본 협약과 일치되지 않는 행위 또는 관행을 제한하고, 공공 당국 및 기관들이 본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5조50)에서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제12조51)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50)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과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여러 조항에 걸쳐 장애인의 평등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하여 동 협약 제27조에서는 “당사국은 고용과정 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촉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조 (e)항에서 “구직, 취업 및 지속적 근무와 복직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와 경력개발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⁵²⁾(이하 “ILO협약”이라 함)」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각 회원국은 직업재활의 목적을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보장받고, 보유하며, 진급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로의 통합 또는 재통합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재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며, 공개노동시장에서 이들을 위한 고용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 제4조는 ”장애인과 다른 근로자간에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적극적 조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고용관련 제반 사안에 대하여 장애를

2. 당사국은 장애를 사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한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한다.
 3.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본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51) 2.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능력을 누리야 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 52) ILO 협약 제159호



이유로 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법, 규정, 관행들을 폐지하는 등 모든 적절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채택하여, 장애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위 협약들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이 사건 소송의 원인이 된 처분 및 이 사건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적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의족의 파손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평등권 침해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평등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⁵³⁾ 대법원 역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이 모든 경우에 모든 점에서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대상의 차이를 전제로 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⁵⁴⁾

한편, 헌법재판소는 시혜적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경우 합리적 근거 유무에 관한 자의금지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한다.⁵⁵⁾ 자의금지 원칙의 심사요건으로는 먼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고,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 이유가 결여된

53) 헌법재판소 1999. 7. 22. 자 98헌바14 결정

54)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55) 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3헌바111 결정

것을 의미한다.⁵⁶⁾

따라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이행의 일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자의적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법규정의 목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산재보험법」의 목적

요양급여 지급의 근거규정인 「산재보험법」은 제1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조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 법은 제3조에서 “사회보험”에 대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의 일종이므로, 동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56) 헌법재판소 2002. 11. 28.나 2002헌바45 결정

다. 차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요양급여는 「산재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상’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상처를 입음”이라는 뜻인바, ‘몸’ 즉 ‘신체’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또는 그것의 활동 기능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이 때, 이 사건 피고 및 1심, 2심 재판부와 같이 ‘신체’를 문언적 의미 그대로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몸에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의족은 신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이 되더라도 부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같은 업무상의 사고로 동일한 다리 부위의 손상을 입게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일한 정도의 지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자 손상을 입은 다리 부위와 관련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급여지급대상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당사자가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면 손상을 입은 의족이 신체로 인정되지 않아 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한 결과가 발생된다.

이처럼 기 판결들에서와 같이 신체를 사전적 의미에 한정짓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가 ‘손상된 부위가 사전적 의미의 신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비장애인이 다리를 다쳤을 때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나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의족인 다리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규정된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데, 이러한 차별적 결과를 합리화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이르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4. 의족의 파손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 사유의 존재 여부

가. 근로의 측면에서 의족과 생물학적 신체인 다리와의 동일성

이 사건 원고는 우측 슬부 상단부를 절단한 후 허리에 띠를 하여 남은 다리 부위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의족을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인 이 사건 원고는 주로 아파트의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의 활동 가능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팔다리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바, 만약 다리의 한 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활동에 있어 심하게 제약을 받아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한 쪽의 생물학적 신체인 다리가 절단되어 부존재한 이 사건 원고는 이처럼 활동 가능성이 필히 요구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의족을 사용함으로써 생물학적 다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당해 사고 발생 전까지 무리없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의족은 단순히 원고의 우측다리의 부존재로 인한 불편과 기능상의 필요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다리를 완전히 대체하여 생물학적 다리와 같이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원고의 의족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비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의족의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합리적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근로자의 부상”을 단지 생물학적 신체의 부상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의 의족을 신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과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의족이 근로자의 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관련법들의 제정 목적과 취지,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업무 및 업무환경, 원고의 의족이 근로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의 의족의 파손을 단순히 생물학적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면,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의 목적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동법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의족이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의족을 완전히 신체에 고정시키는 기술이 일반에 널리 적용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조기가 신체에 체화되어 쉽게 탈부착 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탈착여부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인바, 이에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처분과 1·2심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 원고의 장애 특성 및 근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의족은 사전적 의미의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파손을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근로자라는 동일집단에서 장애의 특성 및 상황을 간과하고 사전적 의미의 생물학적 신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별적 결과 발생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이는 곧 우리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국가가 장애인

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하여 이미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을 포함하여, 「ILO 협약」,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관련 국내외 규정과 「사회보장기본법」,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의족 등 보조기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업무 중 그 의족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그간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등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등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사건 피고, 1·2심 재판부와 같이 사전적 의미만을 강조하여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원고의 의족파손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인 신체의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꾀하는 장애인 근로자로 하여금 그 의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2014. 1. 13.

국가인권위원회 전위원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위원 한대식 위원 김성영 위원 곽란주 위원 강명득

5. 복지

1

2016. 10. 6.자 결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결정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기본급여량 등의 점진적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 편차 완화,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향상을 통한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인 바,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급여까지 더하여 하루 1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11시간은 활동보조서비스 없이 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급여량이 부족함.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재정상태에 따라 급여량이 약 3.1배의 격차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바, 갑자기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만 65세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함. 또한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3】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2016년 기준 시간당 9,000원으로 이는 다른 유사서비스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인바,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3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
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 배경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07. 4.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11.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같은 해 10. 5.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2016. 10. 현재까지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원대상은 14,000명에서 61,000명으로 약 4배,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 소요재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예산은 296억원에서 5,009억원으로 4,713억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당사자와 가족, 장애단체 등 관계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급여량이 부족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4.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우리나라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권고를 하게 되었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1.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2. 참고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18조,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3조

III. 판단

1.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부족과 지역별 불균형의 문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국의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서비스의 월 급여량은 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기본급여는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해 실시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에 제공되며,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30,000원(약 47시간)에서 1,063,000원(약 118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수급자는 이 기본급여량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일반 단가 9,000원,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최소 약 1.5시간에서 최대 약 3.9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장애인의 생활환경(독거가구, 출산가구, 직장 또는 학교생활 등)에 따라 최대 9.1시간(추가급여 간 중복지원이 없는 경우)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 하루 최대 약 13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II)』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2,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 시 남의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이상이 ‘대부분, 또는 거의 모든 일상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바,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하루 3.9시간의 기본급여량으로는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급여까지 더하여 하루 1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전신이 마비된 외상 장애인, 일정 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변경이 요구되어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중 11시간을 활동보조서비스 없이 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5. 12.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평균급여량이 최소 1,013,624원에서 최대 3,132,634원까지 약 3.1배의 격차가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재정상태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급여량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그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량의 편차를 줄여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및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의 전환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요양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서 갑자기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현행 제도는 만 65세가 된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므로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그 중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

하게 되면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최중증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수요자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활동보조인의 처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시간당 8,300원에서 2016년 시간당 9,000원으로 8.4%인상(연 약 1.4%)되었다. 활동보조인은 이 단가의 최소 75%이상(6,800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받는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0,875원(방문요양 4시간 기준 43,500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인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이 서비스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한 명의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 시간이 적은 여러 명의 장애인들을 담당하게 되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 선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2014년 기준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는 여성 24,742명, 남성 40,164명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2배 가까이 되는데 반해, 활동보조인은 여성 49,808명, 남성 6,723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배 이상이 많고, 전체 활동보조인의 74% 이상이 40~50대 중장년층에 해당한다. 이처럼 활동보조인의 성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을 직업으로 인식하거나 실제 직업으로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로 인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에 의해 신변처리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거나, 외상장애인이거나 몸집이 큰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적 노동강도가 높아 활동보조인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활동보조인력 수급, 활동보조인의 장기 근무 및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사회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10. 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위원 김영혜 위원 이경숙



2

2017. 3. 30.자 결정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난민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결정요지】

- 【1】 난민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 난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바람
- 【2】 난민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참조조문】

- 「헌법」, 「난민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난민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 난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바람.
2. 난민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의 배경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보장 현황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는 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자의 범위에 난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법」 제31조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장애인이 실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난민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장애인 등록 제도와 활동지원 사업의 개요

가. 장애인 등록 제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일지라도 활동지원급여 등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등이 장애 상태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국적동포·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영주권자·결혼이민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이에 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제1급 ~ 제3급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당사자의 신청, 신청인에 대한 조사(장애등급 심사 및 방문조사 등),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등이 결정된다.

2. 난민 장애인 관련 국내 법령 및 국제인권기준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38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고,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23조, 제24조는 협약국은 난민에 대해 공공구제와 공적원조, 사회보장 등에 관하여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와 제24조는 장애인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이를 위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 9. 3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한받지 않도록 장애인 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난민 관련 장애인 등록 제도 및 활동지원 사업의 문제점

가. 장애인 등록 제도의 난민 제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15. 12. 기준 2,490,406명이며, 이 중 재외국민,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은 1,587명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자는 2016. 12. 기준 672명인데,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 중 장애인 현황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다.

장애인이 관련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 「난민협약」 등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에 ‘난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난민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나. 난민 등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배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난민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애당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이들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6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안내」를 통해 이들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제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4. 개선방안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개정

「난민법」 제30조 및 제31조, 「난민협약」 제2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나,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난민법」 제30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 장애인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 정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장애등급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특히 재정적 부담이 큰 활동지원급여에 관하여 외국인 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의 유형과 정도,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필요로 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난민법」 및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난민 장애인의 권리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향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난민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일률적 제한 정책이 유지되는 한 난민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난민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하기로 결정한다.

2017. 3. 3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위원 이경숙 위원 정상환 위원 최혜리

3

2017. 7. 3.자 결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사항】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

- 【1】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 【2】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재의 원칙, 중재의 방법과 과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3】 이용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추가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설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대책 마련
- 【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

【결정요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행동문제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개별 시설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개별 시설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해당 장애인에게 현 상황을 감내하도록 방관할 수는 없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개선을 검토함.

【참고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57조, 제58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4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권리선언」 제6조, 제9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권해(2014)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1.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바란다.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재의 원칙, 중재의 방법과 과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바란다.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추가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설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에 2016.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과잉·공격적 행동을 하고 적응을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임시이용기간 이후에 시설 이용을 배제하였다는 진정인, 2016.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이 문제행동(공격행위, 성폭력, 과잉행동, 상동행동 등, 이하‘행동문제’라고 한다)을 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을 두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배제한다는 진정이 각각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사안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과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재활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이유로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게 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존재의의가 상실된다. 한편 위 진정사건들에서 발생한 문제는 개별 시설

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써, 개별 시설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해당 장애인에게 현 상황을 감내하도록 방관할 수는 없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57조, 제58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4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권리선언」 제6조, 제9조,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14)

III. 판단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필요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62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이용정원은 10,434명으로 수요 대비 서비스 충족률은 32.78%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커서 울산(70.93%), 제주(62.71%), 대전(62.56%), 광주(59.82%)는 서비스 충족률이 다소 높으나, 강원(19.95%), 경북(18.63%), 세종(14.71%), 충남(9.74%)은 그 비율이 낮다⁵⁷⁾.

57)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창립 및 기념토론회 자료집」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현황과 발전방안' (장기성, 2017),



부산복지개발원은 2016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이하 ‘개발원 실태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 수는 평균 9.54명, 대기기간은 평균 20.97개월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대기자 수는 최대 53명, 대기기간도 최대 60개월로 조사되었다⁵⁸⁾.

개발원 실태조사에서 종사자들은 이용자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장애유형, 신변자립, 공격성, 관찰기록’등을 80% 이상 고려한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훨씬 적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자 선정 시 장애의 정도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행동문제를 가진 증증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이 훨씬 부족한 현실이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가진 증증장애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보이므로, 이들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제한·배제 등의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고 필요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장애인의 거주 현황과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그 수요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필요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5는 해당 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비·인원·재활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수행사업, 이용대상자 선정 기준, 이용

5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 매뉴얼 연구」(부산복지개발원, 2016)

시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과 지침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예방, 사고발생 시의 중재, 이용자 간 혹은 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 등 예상가능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1년 서울특별시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 사례가 있고, 부산복지개발원이 2016년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운영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2005년 서울복지재단, 2014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 인증과 관련하여 몇 개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⁵⁹⁾.

개발원 실태조사에서 행동문제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이 종결된 비율이 17.6%로 확인되었는데, 현재까지 개발되거나 진행된 상기의 운영 매뉴얼이나 평가인증 관련 연구에서 행동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행동문제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될 때의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의 행동중재 계획, 중재계획에 의한 반복적 관찰과 평가 등이 진행되어야 하고, 시설 내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처서도 행동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재의 원칙, 행동중재 계획 수립 및 진행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연구로는 2008년 경기복지재단 ‘장애인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 2015 도시경제연구원 ‘201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내용 및 기준’이 있음.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인력 증원 등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5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인력을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기능직 1인(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등 5명’을 인력배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근로·사회복무요원 등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당 종사자는 평균 3.67명이며, 종사자 1인당 이용장애인 수는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4~6명 정도이고, 종사자들의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개별활동일지 작성, 기타 행정업무, 송영서비스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행동중재가 재활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재활교사 등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진단하며 중재 계획을 마련하고 행동중재를 시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1인이 지원해야 하는 이용자 수가 많고 수행해야 할 업무가 과도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장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행동문제를 가진 이용자가 있을 경우 시설 종사자는 해당 이용자의 안전 외에도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정서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하므로, 행동문제를 가진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면 시설 종사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한편, 행동문제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어려움을 공론화 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최종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결국 행동문제를 보이는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인력을 추가배치하거나 그 시설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전문기관과 전문교육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욕구 표현이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데, 행동문제를 긍정적 행동으로 대체하고 증재해줄 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부산대학교의료원, 한양대학교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등 4개 기관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를 완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수 회에 걸친 행동치료 및 언어치료 등을 실시하는데, 현재 상담이나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개발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은 ‘행동문제 대처방안’의 마련과 ‘행동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법’에 대한 종사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우선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자 및 유관기관 대상의 홍보,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지정, 행동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등에 대한 관계자 교육 등의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7.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혜리 위원 한수용 위원 김기중

6. 인식 및 기타

1

2014. 8. 20.자 결정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결정사항】

- 【1】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및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게, 장애인 보도 준칙을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방송 및 신문기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방송과 신문에서 장애인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질 것.

【결정요지】

언론매체에서의 표현 및 활용은 일반 개인생활과 달리 여론 형성 기관에 의해,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이기에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 용어와 표현행위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적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억압과 멸시의 감정을 갖게 할 수 있고, 동등한 권리의 향유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구(舊)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어서 개칭된 지 25년이 지났고 충분히 다른 용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대체용어 등이 권장되어왔음.

언론의 이러한 표현 관행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의 근절(「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장애 관련 속담 표현 등 관행은, 그것이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개선되어야만 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및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게, 장애인 보도 준칙을 포함한 [붙임 2]의 「인권보도준칙」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방송 및 신문기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방송과 신문에서 장애인 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질 것.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사용이나 표현 문제는 장애인단체의 언론모니터링을 촉발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대 일간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어구가 사용된 바 있으며⁶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언론모니터에서는 ‘병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장남’, ‘귀머거리’, ‘정신박약’, ‘불구자’ 등의 용어가 2011년 344건, 2012년 296건, 2013년 22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매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

60) 『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심미선 외, 2013) : 201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이상 10개 일간지이며, 지상파방송은 KBS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SBS 8 뉴스> 이상 3개 방송, 종편 및 전문보도채널은 채널A <종합뉴스>, TV조선 <뉴스쇼 판>, <주말뉴스 토, 일>, MBN <MBN 뉴스 8>, JTBC <JTBC NEWS 9>, <JTBC 주말뉴스>, 뉴스Y <뉴스Y> 이상 4개 채널을 대상으로 상반기(2013.6.3~6.30), 하반기(2013.9.2~9.29)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10대 일간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어구 사용 건수가 상반기 모니터링 기간 내(2013. 6. 3. ~ 6. 30.) 8건이 발견되었으며, 하반기 모니터링 기간 내(2013. 9. 2. ~ 9. 29.) 11건이 발견되었다.

61)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매년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10개 일간지,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4개 경제지에 나타난 장애인과 관련된 비호용어 및 비하용어를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왔다.

신문기사 등 대중매체에서 ‘귀머거리’, ‘병어리’, ‘장님’ 등의 용어나 표현 사용이 장애인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라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2013년 174건, 2014년 1건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사용이나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언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의 장애 관련 용어 사용과 표현 문제를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III. 검토

1.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의 예로는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가 대표적이다⁶²⁾.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사용 실태〉

연도 비하용어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장애자	60	56	37	153
장님	56	39	38	133
절름발이	86	46	46	178
정신박약	15	7	7	29
불구자	8	8	1	17
병어리	102	127	86	315
귀머거리	17	13	5	35
총계	344	296	220	860

62) 이 외에도 장애를 표현하는 지칭 중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담은 용어로는 (1) 어근에 ‘-아’, ‘-리’가 붙어 만들어진 경우로 주로 사람보다 사물을 가리키는 말에 더 잘 붙고, 사람에게 붙더라도 부정적인 뜻을

‘장애자(障礙者)’라는 용어는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心神障礙者福祉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자료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장애자의 ‘자(者)’는 인격을 비하하는 ‘놈 자(者)’이고, 일본식 표기이므로 ‘인(人)’으로 개칭되어야 한다는 청원에 의해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지적장애인을 지칭하는 ‘정신박약(精神薄弱)’이라는 용어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지적장애를 성장이나 성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부정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는 문제지적과 함께 비록 느리지만 지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한다는 이론적 뒷받침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정신지체(精神遲滯)’로 개칭되었으며, 2007년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지적장애(知的障礙)’로 개칭되었다.

‘불구자(不具者)’는 고려시대 ‘불구폐질(不具廢疾)’이라는 기록에서 기원하는 용어로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자’의 뜻으로 주로 지체장애인을 지칭하여 1980년대 이전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왔던 용어이나, 1981년대 ‘심신장애자복지법’,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개최된 ‘장애자올림픽대회’,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으로 개칭되었다⁶³⁾.

이상과 같이 장애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장애자’, ‘불구자’, ‘정신박약’이라는 용어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거나,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갖는 일이 대부분인 경우로 곱사등이, 문둥이, 언청이, 절름발이, 말더듬이, 외팔이, 외눈박이, 육발이, 육손이, 난쟁이, 앓은뱅이, 귀머거리, 병어리/반병어리 (2) 어근에 ‘쟁이’나 ‘뱅이’가 붙어 만들어진 경우로 역시 부정적인 뜻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음. 난쟁이, 앓은뱅이, 얼금뱅이 (3) 장애인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용어로 병신 등이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63) 장애인 용어 변천(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2000)

2. 장애 관련 속담과 관용구

속담과 관용구는 간결하면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서 언론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장애와 관련한 관용구로는 주로 ‘병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속담으로는 ‘병어리 냉가슴’, ‘꿀 먹은 병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래는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병어리’라는 용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답답한 경우’를 빗댄 암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며, ‘귀머거리’는 ‘외부로부터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다.

‘절름발이’는 절름거리는 장애 상태를 비유해서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족한 양상’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며, ‘병어리 냉가슴’은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애태우는 경우’, ‘꿀 먹은 병어리’는 ‘무슨 일에 대한 내용이나 가슴에 맺힌 서러움을 말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눈 뜬 장님’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장님’이라는 용어가 ‘눈 뜬’이라는 형용사와 결합되어져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장님 문고리 잡기)’의 원래 뜻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고리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⁶⁴⁾.

이외에도 장애인 관련 속담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9,604개의 속담 중 2.7%를 차지하는 257개가 있으며⁶⁵⁾,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국어에만 있는 기이한 현상

64) 장애인 용어 변천(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2000)

65)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장애인 관련 속담은 전체 속담 9,604개의 2.7%로서 257개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관련 속담으로는 ‘봉사 안경 쓰나 마나’, ‘눈먼 놈이 앞장 선다’, ‘귀머거리 눈치 빠르다’, ‘반병어리 축문 입듯’, ‘앞은뱅이 용쓴다’, ‘엷어 맥고 짝어 맨 곰보도 저 잘난 맛에 산다’, ‘미친년의 치맛자락 같다’, ‘병신 고운 데 없다’, ‘병신자식이 효도한다’ 등이 있다 (이정복, 2014).

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표현이 전래동화나 근대소설에 투영되면서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속담이나 관용구에 주로 사용되는 ‘병어리’, ‘귀머거리’ 등의 용어 자체는 청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용어이며, ‘장님’, ‘소경’ 등의 용어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되어왔으나,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용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있다.⁶⁶⁾

위와 같은 표현들은 비록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의미가 주로 장애인이 처하게 되는 곤궁하고, 답답하며, 난처한 상황을 빗대어 상대방이나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조롱할 때 사용된다.

IV. 판단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명칭은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인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멸시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오늘날 국어학계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를 ‘차별언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올바른 용어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⁶⁷⁾

66)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중 ‘소경’은 고려시대에 종사품 벼슬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봉사’는 조선시대 종팔품 관직 명칭이었음. ‘봉사’라는 명칭은 이후 효녀 심청과 심봉사 이야기를 통해 널리 보급됨. ‘장님’이란 명칭은 조선 중기 이후 시각장애인들이 맹청을 설립하고 단체활동을 하였는데, 순위 시각장애인을 ‘장(長)에 높임말인 님을 써서 ‘장님’이라고 부른 것에서부터 유래하나, 이후 무당의 장님 타령 등으로 인해 경멸하는 호칭으로 전칭되었다(장애관련용어의 중요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00)

67) 학계에서는 성·인종·장애와 관련된 차별적 표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는데, 이정복 대구대 국어국

하지만, 언어가 사회·문화적 토대를 반영하여 변천한다는 점 그리고 단어나 용어의 의미는 의사소통의 관계와 문단의 문맥 속에서만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와 장애 관련 속담이나 관용구의 사용이 무조건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언어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과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표현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이나 장애 관련 속담 및 관용구 사용은 개인에 의해, 사적영역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표현행위가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에 의해,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달리 판단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장애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장애자’, ‘불구자’, ‘정신박약’ 이라는 용어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거나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고, 속담이나 관용구에 인용되는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 무관하게 비유대상이 됨으로써 정서적 상처나 굴욕감을 가지며, 인격적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지칭하거나 장애관련 속담과 관용구들은 특정 장애인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판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 용어와 표현행위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은 평가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문학과 교수는 ‘차별언어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4년 4월 15일 최민희 국회의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비하용어들을 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법제처는 2014년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14개 법령에서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며, 부령 및 행정규칙 등은 소관부처별로 2014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적 용어의 반복적 사용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집단에게 억압과 멸시의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향유자로의 인식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특히 구(舊)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어서 개칭된 지 25년이 지났으며, 장애 상태를 빚된 속담과 관용구가 가진 의미가 다분히 부정적이고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장애인,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누차 제기되어왔으며, 충분히 다른 용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대체용어 등이 권장되어왔다⁶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4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됨으로써, 언론과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에서 이러한 표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의 근절” 노력에 거스르는 것이며, 조약 체결 당사국으로서 대중인식 캠페인, 유아기부터의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언론기관에의 권장, 인식 훈련 프로그램의 장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68)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언론모니터보고서』(장애인민지실천운동본부, 1997~2013),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국가인권위원회, 2011), 『올바른 장애용어 및 표현을 위한 언론가이드북』(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3)

2014. 8. 20.자 결정【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만큼 장애인에 대한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장애 관련 속담을 사용하는 언론사의 표현 관행은,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V.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2

2015.12.29.자 결정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시 ○○○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

- 【1】 ‘○○중학교내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됨.
- 【2】 ○○시장과 ○○○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

【결정요지】

- 【1】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막연한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인 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것임.
- 【2】 설립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의 위험성을 빚대는 부적절한 표현은 비록 그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을 비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아닐지라도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심리적·정서적 상처가 될 수 있음.

【결정사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32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9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시 ○○○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 1. ‘○○중학교내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2. ○○시장과 ○○○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시교육청과 ○○○○○○○공단이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던 중에 발달장애인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가로 막혀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는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행위를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32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9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사건개요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시 ○○구 소재 ○○중학교의 유휴시설인 발명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발달장애학생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커리어센터’를 2015. 11월 개관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중학교내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를 결성한 지역주민들은 2015. 7. ~ 11. 교육청과 공단이 개최한 6차례의 지역주민 간담회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예측 불가능한 돌발행동“,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아이들이 위협에 노출예상”, “중학생은 중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돌발행동, 성욕)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마음으로 학교 내 센터 설립을 반대할 뿐”이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커리어센터’ 이용 연령대를 17세부터 21세까지로 제한하고, 이용시간의 조정, 안전요원 배치, 별도 출입문 설치 등 시설구조변경을 통해 ‘○○커리어센터’와 ○○중학교를 분리하고, 추후 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으나, 지역주민들은 ‘○○커리어센터’를 ○○중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독립된 시설로 설치하거나 다른 지역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 설립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이 사건의 ○○○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시 △△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이전 계획이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되풀이되고 있다.

2. 판단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시설인 ‘○○커리어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접한 건물을 사용하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성인의 발달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자주 왕래하게 될 경우 지역 내의 유아시설이나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위험성은 특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두려움으로 확대·재생산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

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이 서툰고 낮은 상황에서 심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위협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워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왔고, 따라서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은 꼭 필요하다.

한편, 지역주민들이 자녀를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싶어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며, 지역주민 개인의 평온하고 안전할 주거권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돌발행동”, “시한폭탄”, “통제불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록 그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을 비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치유되기 어려운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시설이 지역사회에 설립됨에 따라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불안감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시키기 위한 장애인의 부모와 가족이 겪어온 그간의 고통이나 앞으로도 감내하여야 할 지역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견줄 바가 아니며, 이미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설립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인류가 함께 약속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제29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철학과 정신이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인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이번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 반대 행위 이외에도 최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누려야 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거부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5. 12. 2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3

**2012. 10. 22.자 결정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결정사항】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장애인의 인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기초로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은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이라는 기능별로 분화된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21개 추진목표와 그에 따른 57개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장애인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별첨〕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의 계획이 필요한 바, 이는 관련 부처들의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동 중장기 계획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정책 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별첨〕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전략목표 및 주요 추진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국제적으로는 2006년 유엔에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성안되었고, 국내적으로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정과 더불어 2008년 12월 국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인권 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이 정부의 향후 장애인 정책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II.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작성 추진 경과

1.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실시(2011. 3. ~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장애인 인권 증진 및 차별 시정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관련 사업을 종합하고, 장애유형별·장애차별영역별 실태조사와 국내외 동향 조사 등을

통하여 각 유형별·영역별 차별시정을 위한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연구위원회 구성 (2012. 4.)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3.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연구위원회 진행(2012. 5.~ 8.)

위원회 내·외부 인사 8인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8월까지 연구위원회 회의 3차, 실무회의 5차 등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의 방향 및 원칙 그리고 세부내용 등에 논의하고 중장기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4.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2012. 8.)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연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마련된 초안을 기초로 주요 장애인단체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5.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공청회 개최(2012. 9)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 초안을 1차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Ⅲ.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은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이라는 기능별로 분화된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21개 추진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57개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연계하여 체계성과 실천지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으로 권리화하였다.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문제로 전환하고, 국제기준을 토대로 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포괄적 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권의 범주가 폭넓고 그 내용이 불분명하게 인식되는 바, 중장기 계획으로서 포괄적 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국가의 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둔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가의 가용 자원의 규모나 다른 고려 요소와 상관없이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지향성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기간 내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넷째, 기본적 권리와 함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고려하였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사회적 기반과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전략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을 4대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첫째,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은, 장애인 등록등급제를 개선하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을 개선하여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통하여 장애인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적절한 생활수준 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장이 미흡한 교육권과 건강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더불어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주요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넷째,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편견, 연령,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 보다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유형 및 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가.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현행 장애인 등록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장애 등급을 부여해 등록·관리하는 제도로서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으며, 특히 각종 복지 혜택의 수급여부를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어 장애의 다양성 및 당사자의 욕구가 무시되는 등 인권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등록등급제의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을 분리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록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사실상 장애가 있으면서도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수를 줄이기 위하여 장애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은 동일한 유형과 장애 정도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 전달체계는 장애등급만 같으면 같은 서비스 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만족도 및 체감도가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정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일선현장에 적절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달체계가 필요하나 이 역시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수립 및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부처 간 의견조정과 정책평가·모니터링 기능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연구·조사기능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에 의한 시혜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권리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하는 신청권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간편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직권신청 제도를 활성화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게 복지서비스가 분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필요한 사람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상한선을 폐지하며, 현행 65세가 넘으면 강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인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양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이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건 발생 시 사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사업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참여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이를 위해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자립홈·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등의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대안적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또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 일부를 지원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주소를 이전할 때 진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재심사 기간 동안 해당 장애인이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바.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의사소통 및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정보접근 관련 법령에 수화에 대한 규정을 명기하여 수화언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건축법」의 연계를 강화하여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작성 시부터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참고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신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제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적 규범으로서, 우리 정부가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입법적·행정적 조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장애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호에 대한 비준 유보를 철회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 및 조사권을 보장하는 등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가.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장애인연금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를 통한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나,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지원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장애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이나, 실제 장애인의 추가 지출 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실질적인 추가 비용 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나.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근로권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토대로 근로3권과 유급휴가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주에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경우 생산성이 낮거나 복합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보조금 고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권이자 다른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개별 학교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장애인이 자신의 발달 상황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개별 학교에서 이를 실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수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내실화 하고 장애인의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0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무주택기간이나 주거비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이용률은 한자리 수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12년 2월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이라 한다.) 역시 현행 주거지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주거약자용 주택의무건설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주택 개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주거약자지원법」을 실질화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열악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의 건강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료수가 차등화 등의 장애인의 진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권역별 재활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이 보조기구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바. 개인의 이동권 보장

이동권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데에 필수적인 권리이나 여전히 그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동권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법정기준대수에 맞도록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광역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및 도(道)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이 그동안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던 한계를 넘어 시·청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 내 전자문자 안내판과 음성 알람 장치의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 자기결정권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장애인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들을 제거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들을 권리로서 획득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3.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차별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즉각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 장애인권센터 설치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매우 시급한 현실이므로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의 장애인권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장애인권센터는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고,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대중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부족하여 학습, 대인관계,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현과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 방임, 성폭력,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지원 및 권리옹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시·청각장애인 중심의 의사소통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 침해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사제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약취, 금전적 착취, 학대 등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메뉴얼화 추진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시 정신보건센터가 다양한 지역사회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사회복지 시설에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서 정신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장애여성 역시 장애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장애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병원이 없고,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가 매우 미흡하며, 최근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상담·보호시설이 매우 적어 피해 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 구축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상황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양육비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시설을 확충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라.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법적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과 발달재활서비스 및 돌봄지원 등에 있어서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과정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활성화하며 △사립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함으로써 현재 전국 2개소에 불과

한 사립유치원의 통합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현행 6개 장애유형으로 제한된 서비스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별을 해소하여야 하며, 발달재활서비스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포함하여 서비스 내용을 충실화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전문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된 돌봄서비스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별첨] 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정부가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와의 진지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2.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위원	곽란주	위원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집 (2010.10~2017.12.)

발 행 일 2018년 2월 28일

발 행 인 이 성 호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주 소 (04551)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 02-2125-9913

팩스 : 02-2125-0921

<http://www.humanrights.go.kr>

인 쇄 처 리드릭(02-2269-1919)

I S B N 978-89-6114-613-5 93330